

抱川鄕土史料叢覽

-承政院日記編(第7輯)-

(仁祖15~20年)

抱川文化院

抱川鄕土史料叢覽

-承政院日記編(第 7 輯) -

(仁祖 15~20年)

抱 川 文 化 院

발 간 사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문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향토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 중 포천에 관계된 내용들을 발췌 수록한 "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편 제7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정원일기는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총 3,245책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일 뿐 아니라 더욱이 한문 초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문을 직접 접해서 읽어 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귀중하고 방대한 일기 내용 중에서 우리 포천 지역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만을 발췌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우선 번역이 이루어진 고종 일기를 시작으로, 작년도에 인조 11년부터 14년까지에 이어 올해에는 인조 15년부터 20년까지 포천에 관계된 부분을 추려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학자가 말하기를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이 시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정립되

고 과거의 역사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확립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금년에 발간하는 본 "향토사료총람"에 수록된 내용들이 조선조 중기의 역사와 우리 지역 향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우리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고장이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후세에 길이 전해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번역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한 우리 문화원에서 발췌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고전번역원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서장원 시장님, 이부휘 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료 정리와 편집에 심혈을 경주해주신 이석구 향토사연구소장님, 양윤택 부원장님, 그리고 신진희 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포천시장
서 장 원

포천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찾는 '포천향토사료총람 「승정원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천향토사료총람 「승정원일기」'를 발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이석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명을 출납하는 기구로서 그곳에서 편찬된 일기는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당대 시대상황 및 변화를 가장 자세하게 담아낸 역사 기록물로서 전란에 의한 소실로 현재 인조 이후부터의 내용만 존재하지만 그 가치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이자 원동력인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민족정서와 얼을 담아내는 향토문화야말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창적인 문화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포천문화원이 향토사료의 조사와 발굴, 보급에 관심을

기울여 포천과 관련된 시대별 사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토사의 복원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향토사료의 수집과 보급이라는 점에서 향토사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포천향토사료총람 「승정원일기」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김 영 우

우렁찬 말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빛과 희망의 갑오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천시민을 위해 포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천향토사료총람 - 승정원일기편 제7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향토는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일정한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던 곳,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고장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포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가 있음으로 향토사의 연구가 있을 수 있고, 향토사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사료가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아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

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서 결국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모른다면 역사를 통해 제대로 된 반성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포천문화원의 향토사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의 바른 모습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2014년에도 뜻하는 모든 꿈을 이루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 사



포천시의회 의장
이 부 휘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의장 이부휘입니다. 먼저 갑오년 한해 여러분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장군의 차가운 바람이 매서운 요즘 우리 포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찾아 찬란한 옛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포천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 발간을 1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격동의 21세기 문턱을 넘어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급변하는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시가 경기 동북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상 대대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우리의 것이 세계 제일이라는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일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고장 포천은 조상들의 삶의 자취가 곳곳에 남겨져

있어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며, 명승비경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적이 자태를 뽑내는 문향이며 예향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선현들의 문화유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땀흘려 가꾸어 온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고대사부터 삼국시대, 고려사, 조선시대까지의 포천의 얼과 맥이 살아 숨쉬는 『포천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의 발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지역의 참된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크나 큰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나간 역사는 다가 올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포천시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선현들의 생생한 삶의 족적을 찾고 살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포천향토사료총람』 발간에 산파 역활을 하신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상 훈

『승정원일기』는 우리 선조들의 성실성과 치열한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료 가운데에서도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기록물입니다. 3,245책, 2억4천300만자에 달하는 대역사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디지털화를 거쳐 현재 sjw.history.go.kr에서 원문을 웹상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라 일반 시민들이 그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에 포천문화원에서 승정원일기의 포천 관련 기록을 묶어 책으로 낸다 하니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E.H.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박제당한 과거로써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로써 조명되어야 합니다. 포천문화원의 『포천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 출판작업은 과거를 스승으로 삼아 한층 더 빛나는 포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잎 벌고 열매맺지 않으며, 병들어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지역, 국가가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향토사, 지역사 연구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포천문화원의 이러한 작업이 포천의 장기적 발전에 반드시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옛날 승정원의 기록관처럼 묵묵하나 열정적으로 『포천향토사료총람 - 승정원일기편』을 엮어나가신 출판 관계자 여러분과, 포천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포천문화원의 모든 연구 및 출간사업이 더욱 더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향토사료총람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에 붙여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이 석 구

본문화원 향토사연구소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2013년)까지 9년간을 이어 오면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의 일부와 승정원일기 중에서 포천과 관련 있는 내용만을 뽑아서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향토사료집의 발간은 인조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의 승정원일기에서 포천 관련 내용이다.

조선조의 인조 때는 청나라의 침입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과 싸우다가 패하여 청태종에서 항복을 한 병자호란의 불행한 역사를 남긴 시대였다.

이 고장이 낳은 한인급, 서경우, 조경, 이경여 등이 등장하여 조정 중신으로, 특히 이경여는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여 수차에 걸쳐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에도 참여한 기록이 생생하게 보인다.

여기 기록에 남겨진 승정원일기에는 비록 왕과 궁중에서 일어난 어전회의 같은 일상의 기록이지만 읽어보면 바로 어제 오늘 일어난 일처럼 가까운 이웃에서 일어난 우리 조상의 삶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생생하고 숨결을 느끼게 한다. 지나간 일이면서 그 시대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현장을 보게 되고 여기 등장하는 인간을 탐구하게 된다.

현명한 임금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임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도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역사란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반복되는 속성을 가졌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요즘 세상사를 보면서 인간은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향토사료집을 읽기 좋은 이야기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향토사팀의 신진희 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목 차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12일(임자)
맑음 / 의창군 등에게 조를 사급하라는 전교 ····· 61

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19일(기미)
맑음 / 청대한 이경여 등이 입시하여 강화하지
말고 결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61

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26일(병인)
맑음 / 청대한 이주 등이 입시하여 성을 나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66

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30일(경오)
맑음 / 성을 나가 황제에게 삼배고두례를 행하고
환도하였다 ····· 67

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1일(신사)
맑음 / 오랑캐에 투항하고 횡포를 부린 출신
김경을 효시할 것 등을 청하는 훈련대장의 계 ····· 72

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군공청의 초기는 미처 정탈하여 계하받지
못하였다는 한흥일의 계 ····· 73

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힘껏 싸운 사람들의 등급을 올려주는 일은
이경여가 체찰사와 대면하여 결정한대로 마련하
겠다는 군공청의 계 ····· 74

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산성에서 시위하지 못한 경위 등을 진달하고 석고대죄한다는 조경의 상소 ····· 74

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22일(임진) 맑음 / 남한산성을 수비할 때 달려온 경기 수령들의 도착 일자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76

1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28일(무술) 맑음 / 진대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해조에게 곡식을 옮기는 일을 조처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77

1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3월 27일(병인) 맑음 / 병화가 심한 양근 등에는 입번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78

1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5일(갑술) 맑음 / 이비가 김여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79

1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8일(정축) 맑음 / 신병이 있는 노모를 찾아보고 임소로 부임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경상 감사 이경여의 상소 ····· 79

1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가 하직하였다 ····· 81

1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를 인견하겠다는 전교 ····· 81

1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전사한 군사들에게 포를 나누어 주도록 다른 도의 감사들에게도 통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81

1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를 인견할 때 좌부승지
한형길 등이 입시하여 좌도의 토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82

1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공명하게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경상
감사 이경여에게 내린 교서 ····· 90

1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가 하직하였으므로
심연을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92

2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민역을 줄여 달라는 경상 감사 이경여의
계에 대해, 초기를 도로 내주라는 전교 ····· 92

2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8일(정해)
맑음 / 서경우를 대사간에 제수하였다 ····· 93

2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8일(정해)
맑음 / 기민을 진휼한 고양 군수 권훈 등에게
포장할 것을 청하는 진휼청의 계 ····· 93

2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2일(신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저녁에 비 옴 / 평안도
대동 등의 찰방을 개차하고 특별히 선발해서
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94

2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5일(갑오)
맑음 / 대군의 사부 등을 계품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치한 사신 등을 추고하라는 비망기 ····· 95

2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서경우의 상소 ····· 95

2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대사헌 김영조 등을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부교리 윤강 등의 차자 ····· 97

2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장령 정상리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서경우의 계 ····· 97

2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8일(정유)
맑음 / 사간 정태화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행 대사간 서경우의 계 ····· 98

2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윤4월 21일(기미)
비 / 속목을 징수해야 할 인원수와 지급해 주어야
할 인원수에 대해 경중을 헤아려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98

3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5월 21일(무자)
비 / 조강을 행할 때 영사 김류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 100

3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6월 22일(기미)
흐림 / 도목 정사가 있었다 ····· 100

3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6월 24일(신유)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01

3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7월 2일(무진)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01

3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7월 7일(계유)
아침에 비 오고 저녁에 맑음 / 충청 수사 이시영
등이 하직하였다 ····· 101

3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8월 8일(계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02

3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3일(무진)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02

3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17일(임오)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을 청하였다 ····· 103

3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2일(정해)
비 / 대사헌 서경우 대신 차관이 참가하겠다는
김육의 계 ····· 103

3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4일(기축)
맑음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하는 일에 대한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비답 ····· 103

4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5일(경인)
맑음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104

4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9일(계묘)
맑음 / 이비가 박명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05

4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0일(갑진)
눈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105

4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3일(정미)
맑음 / 시소를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107

4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4일(무신)
맑음 / 처치해야 할 대사헌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정언 서상리의 계 ····· 107

4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8일(임자)
아침에 눈 오고 저녁에 흐림 / 이비가 홍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08

4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21일(을묘)
맑음 /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장령 서상리의 계 ····· 108

4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24일(무오)
맑음 / 이비가 조중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09

4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4일(무진)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09

4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7일(신미)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10

5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8일(임신)
맑음 / 연향의 일을 정돈하는데 참가하지 않은
가제조인 행 사직 채언규 등을 엄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는 사옹원 도제조의 계 ····· 110

5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11일(을해)
눈 / 신병이 있는 주부 백대진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 111

5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13일(정축)
맑음 / 음관인 이성남을 가승지에 차임할 것 등을
청하는 윤휘의 계 ····· 111

5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2일(병술)
맑음 / 칙사가 산성에서 사냥할 때 쓸 매와 개는
서울 사대부 집에서 기르는 것을 빌려 쓰게 하겠
다는 영접도감의 계 ····· 112

5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2일(병술)
맑음 / 영위사와 전위사가 부족하므로 발행이
임박하여 다시 부표하여 들인다는 김상의 계 ····· 113

5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3일(정해)
맑음 / 서울과 경기 각 고을에서 매나 개를 빌려
쓸 곳이 없다는 병조의 계 ····· 113

5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3일(정해)
맑음 / 무오년 등에 포로가 되었다 도망해 돌아온
자를 붙잡아 보내는 일을 의처하라는 전교 ····· 114

5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5일(기축)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몇 명의 차비군 등이
와서 역을 하였는지 등을 묻는 전교 ····· 115

5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상대장에 계하된 익흥군 이응순을 추고하고
다른 대장으로 다시 부표하겠다는 병조의 계 ····· 115

5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영접도감에게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16

6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의 복색은
《오례의》에 따라 마련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116

6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군기시의 토목군과 매탄군도
삼남의 궤산한 군사로 수효로 정해서 이급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117

6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해서의 궤산한 군사를 운을 나
누어 들여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17

6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시녀는 관계된 것이 중대하므로
탑전에서 진계할 것이라는 비변사의 계 ····· 118

6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철산 부사 지학해 등을 패초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19

6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칙사가 인평대군을 만나 보려하
므로 상견 날짜 등에 대해 미리 품처할 것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 120

6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인평대군이 탈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칙사를
만날 때 다례만 행하고 예단을 올릴 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 120

6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유림은 그대로 중화에 머물러 칙사 행차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21

6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혼인할 여자를 부표한 단자에 대해, 심기원의
딸을 8세로 기록한 이유를 묻는 전교 ····· 123

6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부총관 이행원이 분군하는 일로 내병조에
나아가겠다는 도총부의 계 ····· 123

7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정주 사람 봉영운이 절충장군에 뜻이 있으
므로 참작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의 계 ····· 124

7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혼인 단자는 저녁에 형세를 보아 올려 보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24

7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우의정 신경진이 정명수와 문답한 말은 허
다한 말이 사실에 의거해 답한 것이라는 비변사의 계 ····· 125

7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본사의 문낭청
으로 대시를 지낸 조중려에게 모시고 가게 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125

7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비문은 이경석이 지은 것만 보낼 것인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 126

7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장유가 지은 비문을 정서한 단자에 잘못 쓴
곳과 누락된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126

7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부제학 이경석 등이 지은 삼전도비문을 도
감에 보내서 칙사에게 올려 보이겠다는 비변사의 계 ····· 127

7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두목에 대해 절은하는 일은 도감에서 적절히
마련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28

7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배호할 사람을
품처할 것을 청하는 김상의 계 ····· 128

7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배호할 사람은
비국의 문낭청 중에서 대시를 지낸 사람으로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129

8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30일(갑오)
눈 / 징병을 허락받았다는 사은사의 장계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129

8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일(을미)
흐림 / 안주에서 포로로 잡혔다 도망친 천일 등을
아산에서 잡아 압송해왔으므로 중로에 추송할 것
인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 130

8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일(을미)
흐림 / 헌납 조수익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
다는 서경우의 계 ····· 131

8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번을 바꿀 선운의 군병을 규례대로 별시재를
하여 상을 줄 것인지를 묻는 어영청의 계 ····· 131

8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정조사 방물표에 다시 써서 가져간다는
글은 잘못 쓴 것이므로 단자에 부표하여 들이겠다는
서경우의 계 ····· 132

8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황해 감영과 병영에서 물선을 실어 가는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133

8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부호군 이명웅을 나추하라는 비망기 ····· 134

8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정사를 해야 하는데 이비에 나아갈 승지가
없으므로 심액과 김상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서
경우의 계 ····· 134

8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옷을 얇게 입은 군사에게 옷을 지급하라는
비망기 ····· 135

8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병비가 윤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35

9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4일(무술)
맑음 / 포로로 잡혔던 사람 천신을 데려가는 일이
지체된 이유를 보고하는 병조의 계 ····· 136

9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9일(계묘)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빌려 왔다가 쓰지 않은
사복시 등의 은자를 봉하여 도로 보내겠다는 호조의 계 ····· 136

9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0일(갑진)
맑음 / 감영의 아전을 난타한 사축서 관원을 추고
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137

9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반송사 등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점목에
대해, 칙사의 행차가 강을 건너갔는데 비국이 이와
같이 회계하는 이유를 묻는 전교 ····· 138

9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직임이 다른 것에 따라 요를 제급하는 일은
계속하지 않을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138

9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반송사의 장계에 대한 호조의 점목에 대해,
부사가 안주에 도착하였으니 이 공사는 시행하지
말라는 전교 ····· 139

9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3일(정미)
맑음 / 사관 등을 대기시키라는 전교 ····· 139

9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3일(정미)
맑음 / 장계를 뒤이어 보내면서 자세히 살피지 못
하였으므로 황공하다는 비변사의 계 ····· 140

9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쓰고 남은 잡물을 별단으로
서계한다는 호조의 계 ····· 141

9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사은사 일행이 역마를 분정한 공사를 가져
가는 데 대한 마패 단자에 대해, 역마를 분정하는
공사를 들이라는 전교 ····· 142

10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지평 유심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서경우의 계 ····· 142

10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
겠다는 서경우의 계 ····· 143

10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이문을 아는 학관 1원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은사의 계 ····· 143

10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몽고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 등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144

10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병비의 정청에 나아갈 인원이 없으므로 좌부
승지 김상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윤휘의 계 ····· 146

10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우승지 허계와 동부승지 김광욱을 즉시 명초할
것을 청하는 윤휘의 계 ····· 146

10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
다는 서경우의 계 ····· 147

10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명초한 홍명일이 나아왔다는 서경우의 계 ····· 147

10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7일(신해)
맑음 / 세자 북행 때 따라간 청역 권인록 등에게
시상하라는 비망기 ····· 148

10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0일(갑인)
맑음 / 백관에게 우선 그대로 요를 지급하고 앞으로
사세를 보아 반록의 여부를 처리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148

11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내빙고의 역사를 담당한 방민에게 병조의
보목을 지급하여 분급할 것 등을 청하는 한성부의 계 ····· 149

11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예빈시 주부에 제수된 권인록 등의 본직을
승서할 것인지를 묻는 병조의 계 ····· 150

11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사관을 대명시키라는 전교 ····· 151

11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가의대부에 이른 전 군수 이기남은 자망할
수 없으므로 격식을 깨뜨리겠다는 사은사의 계 ····· 151

11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2일(병진)
맑음 / 백첩을 근거로 인흥군 집안사람들을 가둔
형조의 관원 등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김상의 계 ····· 152

115.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의주에서 좌의정 최명길을 간병한 결과를
보고하는 상의원 별제 정훤의 계 ····· 153

116.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좌부승지 신득연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54

117.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얇은 옷을 입고 갇혀 있는 한인에게 유의를 지급하라는 전교 ····· 155

118.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올봄 쓸 수 없는 조총을 무역한 좌랑 김수가 이미 죽었으므로 죄를 다스릴 길이 없다는 호조의 계 ····· 155

119.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충청 감사의 계본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에 대해, 이시방 등의 일을 옳게 회계한 것인지를 묻는 전교 ····· 156

120.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소를 사는 일에 쓰기 위해 청초도를 더 보내겠다는 호조의 계 ····· 157

121.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소를 사는 일에 쓰기 위해 석장도와 청초도를 수송하겠다는 호조의 계 ····· 157

122.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이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허계의 계 ····· 158

123.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요원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58

124.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충청 감사의 계본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는 잘못이 없는 듯하므로 공사를 도로 내줄 것인지를 묻는 김광욱의 계 ····· 15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12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4일(무진)
맑음 / 주서 이성 등이 신병이 있으므로 가주서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63

12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7일(신미)
맑음 / 숙원 산실청을 중전 산실청과 차등을 둘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163

12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7일(신미)
맑음 / 남한산성의 군량으로 쓰기 위해 가흥창
소속 곡식 등을 운송하도록 각도 감사에게 행이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164

12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이천 부사 권정길과 회양 부사 이정규를
서로 바꾸어 제수할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 165

12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소를 무역하러 가는 후운이 지니고 있는
물화가 형편없으므로 보병목 등을 더 지급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65

13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병비가 이경여 등을 관직에 제수하였다 ····· 166

13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신병이 있는 주서 이성 대신에 가주서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66

13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영숙문에 입번한 출신에게 빈 가마니를
넉넉히 제급하라는 전교 ····· 167

13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남한산성에 3월에 쓰고 남은 수량을 더
수송하겠다는 호조의 계 ····· 167

13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1일(을해)
맑음 / 이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김광욱의 계 ····· 168

13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3일(정축)
맑음 / 부제학 이경석이 상소를 올리고 나갔으므로
교리 이주를 패초하겠다는 홍문관의 계 ····· 168

13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5일(기묘)
비 / 속이고 가렸다고 지목당하였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가선대부 행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제학 이경석의
상소 ····· 169

13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5일(기묘)
비 / 기평군 유백증의 논척을 들었으므로 삭직해
줄 것을 청하는 행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서경우의
상소 ····· 171

13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6일(경진)
비 / 정사가 있었다 ····· 173

13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8일(임오)
맑음 /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은 가주서 정도영 등을
추고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73

14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9일(계미)
맑음 / 오늘 정사를 하라는 전교 ····· 174

14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5일(기축)
맑음 / 처녀가 없다고 첩보한 양주 등을 더 탐문
하여 처녀 단자를 올려 보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 174

14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8일(임진)
맑음 / 좌승지 허계와 칙사 영접 습의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서경우의 계 ····· 175

14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9일(계사)
비 / 복제를 치른 동부승지 이성신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175

14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30일(갑오)
흐림 / 내관이 심양에서 얻어 온 보를 전에 있던
곳에 보관하라는 비망기 ····· 175

14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30일(갑오)
흐림 / 현덕빈의 인장 보관에 대한 서경우의 계 ····· 176

14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11일(을사)
흐림 / 대간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정사를 열 것인
지를 묻는 이조의 계 ····· 176

14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21일(을묘)
맑음 / 영상에게 승지를 보내 돈유하게 하라는 전교 ····· 177

14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25일(기미)
흐림 / 이비가 서경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77

14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15일(무인)
맑음 / 윤방과 김류를 위리안치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177

15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0일(계미)
맑음 / 대신 등을 인견할 때 대사헌 서경우를
명초하겠다는 이목의 계 ····· 178

15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1일(갑신)
맑음 / 신경원을 논계한 일로 인피한 대사헌
서경우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최혜길의 계 ····· 178

15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2일(을유)
맑음 / 신경원에 대해 논계한 것이 대사헌 서경우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심대부의 계 ····· 179

15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3일(병술)
맑음 / 지평 심대부와의 논쟁에 뜻을 굽히지 않아
소동을 야기한 잘못 등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184

15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3일(병술)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득연의 계 ····· 186

15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윤방 등의 일로 인혐하고 물러난 집의 윤강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교리 심동귀 등의 계 ····· 187

15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신득연의 계 ····· 188

15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허계의 계 ····· 189

15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옥당이 체차하는 것으로 처치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189

15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90

16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6일(기축)
맑음 / 전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190

16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3일(병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90

16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19일(임자)
맑음 / 사진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본사의 당상에 차하하여 그대로 유사의 직임에
차임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191

16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0일(계축)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191

16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2일(을묘)
맑음 / 부제학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
하지 말고 속히 나와 공무를 행하라는 비답 ····· 192

16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4일(정사)
구름이 두텁게 끼고 미우(微雨)가 옴 / 영평 현령
이원준이 하직하였다 ····· 192

16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4일(정사)
구름이 두텁게 끼고 미우(微雨)가 옴 / 부제학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 ····· 192

16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일(계해)
맑음 / 삼전도에서 항복한 일을 뒷일을 도모하는
명분으로 삼아 시류의 폐단을 일신하고 중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시책을 진달하는 홍문관 부제학
이경여 등의 차자 ····· 193

16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일(갑자)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207

16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일(갑자)
맑음 / 문정전 월랑에서 좌의정 최명길 등을 인견할 때 우부승지 김광욱 등이 입시하여 청나라가 요구하는 군병과 군량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7

17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3일(을축)
맑음 / 인혐하여 물러간 지평 박수문과 김진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211

17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4일(병인)
맑음 / 대사간 전식과 다를 바 없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212

17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4일(병인)
맑음 / 사간 김여옥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광욱의 계 ····· 212

17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인혐하고 물러간 사간 김여옥을 체차하고 대사간 전식 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홍문관 교리 성이성 등의 차자 ····· 213

17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14

17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14

17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6일(무진)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14

17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해숭위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15

17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15

17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집의 조경이 청대한다는 김광욱의 계 ····· 216

18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문정전 월랑에서 집의 조경을 인견할 때
동부승지 최유연 등이 입시하여 일본과 교유하고
천조에도 사신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16

18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4일(병자)
아침에 흐리고 저물녘에 맑음 / 윤방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28

18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4일(병자)
아침에 흐리고 저물녘에 맑음 / 예문관 제학
이경여를 본원 제조로 차하할 것을 청하는 승문원
도제조의 계 ····· 229

18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6일(무인)
/ 문정전 월랑에서 주강을 행할 때 특진관 이시백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한 뒤 공물을
작미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29

18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7일(기묘)
맑음 / 해숭위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39

18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8일(경진)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40

18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9일(신사)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241

18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체차된 김진보다 잘못이 크므로 삭탈해 줄
것을 청하는 집의 조경의 상소 ····· 243

18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광욱의 계 ····· 244

18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인혐하고 물러간 대사헌 서경우 등을 출사
시키고 지평 김진 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는
이경석의 계 ····· 244

19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논의가 정해지기도 전에 동료들이 멋대로
전계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246

19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주청사 때 데리고 갔던 가선대부인 군관
행 부사정 장위남을 별도로 데리고 가겠다는
홍보의 계 ····· 248

19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지레 먼저 전계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집의 조경의 계 ····· 249

19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문정전 월랑에서 조강을 행할 때 영사
신경진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한 뒤 양사에서
논계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49

19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김홀의 계 ····· 254

19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집의 조경의 피혐 전계를 부득이 봉입
하겠다는 김광욱의 계 ····· 255

19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2일(갑신)
흐림 / 정사가 있었다 ····· 255

19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2일(갑신)
흐림 / 인혐하고 물러간 대사헌 서경우는 체차하고
대사간 이경석 등은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옥당의
차자 ····· 256

19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56

19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57

20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인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정언 신익전을
서경해야 하므로 대사헌 이경여와 제좌하겠다는
지평 윤양의 계 ····· 258

20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6일(무자)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58

20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6일(무자)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59

20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7일(기축)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61

20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62

20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내수사의 일을 잘 살피지 않고 논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62

20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대사헌 이경여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현의 계 ····· 263

20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김휼의 계 ····· 263

20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윤신지 등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정언 신익전의 계 ····· 264

20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 264

21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6월 8일(기해)
흐림 / 정사가 있었다 ····· 265

21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6월 12일(계묘)
맑음 / 체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최명길
등의 계 ····· 265

21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7일(무진)
맑음 / 인평대군 이요는 늦가을에 합문을 나가야
한다는 전교 ····· 266

21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0일(신사)
맑음 /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서경우의 계 ····· 266

21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0일(신사)
맑음 / 서경하도록 양사의 성상소에 명초하라고
말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 267

21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2일(계미)
맑음 / 수령 등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 267

21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5일(병술)
비 / 세자에게 능원대군을 보내 한번 만나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268

21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5일(병술)
비 / 전라 감사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정사를 열
것인지를 묻는 이조의 계 ····· 269

21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9일(경인)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 옴 / 병든 어미를 구완
할 수 있도록 체차해 줄 것을 청하고 사헌부에
재직하면서 논란을 고집한 죄가 있다는 대호군
이경여의 상소 ····· 269

21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6일(병신)
맑음 / 이비가 이행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271

22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6일(병신)
맑음 /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사 당상 이경여를
개차하고 후임을 이조 참의 정태화로 차하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272

22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8일(무술)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272

22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1일(신축)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허계의 계 ····· 272

22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1일(신축)
맑음 / 이계 등의 일에 대해 진달하고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차자 ····· 273

22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2일(임인)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최유연의 계 ····· 275

22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3일(계묘)
비 / 이비의 관원 현황 ····· 276

22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5일(을사)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276

22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20일(경술)
맑음 / 좌기 등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므로
가참의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277

22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9월 6일(을축)
맑음 / 어미의 신병 등의 이유로 본직과 겸직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병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 ····· 277

22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9월 9일(무진)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279

23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0일(무술)
흐림 / 우승지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 280

23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0일(무술)
흐림 / 인원을 갖출 수 없으므로 계복의 일을 변통
할 것인지를 묻는 정원의 계 ····· 280

23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이필영 등을 시상하는 데 대한 병조의
점목에 대해, 각각 숙마를 사급하라는 전교 ····· 281

23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정혜옹주의 조묘군은 횡간을 상고하여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병조의 계 ····· 282

23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대간이 나가므로 개문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이경여의 계 ····· 282

23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8일(병오)
맑음 / 양 의사의 의관 및 의녀의 전수에 대한
이경여의 계 ····· 283

23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8일(병오)
맑음 / 청인들이 책비에 대해 질문한다면 대답할
말을 품정하여 지시해 주고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283

23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9일(정미)
맑음 / 염초를 구워 만드는 일이 긴중하므로 감관
송응현을 기복시켜 직무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 284

23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9일(정미)
맑음 / 도적의 괴수 대립을 율문에 따라 정죄할
것을 청하는 우변포도대장의 계 ····· 285

239.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1일(기유)
흐림 / 체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남이웅
등의 계 ····· 286

240.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의주의 미와 태를 실어 나를 쇄마의 단자에
대한 평안 감사의 장계에 대해, 미와 태를 어느
곳에다 쓰는지를 묻는 전교 ····· 286

241.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세자 책봉을 주청할 사신을 미리 의망하여
차출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287

242.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사관 등을 대명시키라는 전교 ····· 287

243.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288

244.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3일(신해)
맑음 / 김유선 등에 대한 비변사의 계 ····· 288

245.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3일(신해)
맑음 / 형조 참판 허계를 유사 당상으로 차하
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289

246.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4일(임자)
맑음 / 국기와 상치되므로 중일 습사를 물려 행하
겠다는 도총부의 계 ····· 290

247.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4일(임자)
맑음 / 국기인데 추국하는 것을 늦출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이경여의 계 ····· 290

248.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6일(갑인)
맑음 / 대명하고 있는 참판 김반을 물러가게
하라는 전교 ····· 29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24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숭문당에 지사 남이웅 등이 입시하여 《시경》을 진강한 뒤 세폐를 분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95

25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김자점을 임천으로 정배하였다는 의금부의 계 ····· 299

25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이경여의 계 ····· 299

252.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내일 대간을 명초하겠다는 이경여의 계 ····· 299

253.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압송되는 중대한 죄인 윤대길이 탈출하여 격쟁하게 하였으므로 압송을 맡은 해당 차사원인 삼전도 승을 수금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300

254.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김자점에 대한 의금부의 정배 단자에 대해, 본가에 물었는지를 문계하라는 전교 ····· 301

255.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격쟁을 한 사노 끗복을 수금하여 치죄할 것 등을 청하는 병조의 계 ····· 301

256.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8일(병인) 흐리고 눈 옴 / 신여익 등을 풀어 주겠다는 의금부의 계 ····· 302

257.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9일(정묘)
맑음 / 이비가 송시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02

258.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0일(무진)
맑고 서풍(西風)이 붊 / 영원 군수 이기남이
하직하였다 ····· 303

25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5일(계유)
맑고 서풍이 붊 / 윤이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03

26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5일(계유)
맑고 서풍이 붊 / 양사의 관원을 처치해야 하므로
부제학 이경여 등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 303

26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6일(갑술)
맑고 서풍이 붊 / 부교리 심제 혼자 양사를 처치
할 수 없으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명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 304

262.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8일(병자)
맑고 서풍이 붊 /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
제수한 겸대사성의 직임을 먼저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성 이경여의 상소 ····· 305

263.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9일(정축)
맑고 서풍이 붊 / 입직할 인원이 없으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패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 307

264.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9일(정축)
맑고 서풍이 붊 / 지방에 있는 본사의 당상 행
호군을 체차하고 후임에 행 부제학 이경여를 개차
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307

265.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4일(임진)
흐리고 쇄우(灑雨)가 옴 / 조강을 행할 때 특진관
구굉이 입시하여 관청의 전마를 끌고 나간 도감의
마병을 효시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 308

266.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9일(정유)
흐리고 동풍이 붊 / 인평대군 부인이 남자 아기씨를
해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 309

267.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22일(경술)
맑고 서풍이 붊 / 정사가 있었다 ····· 309

268.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16일(계유)
흐리고 비 옴 / 인혐하고 물러난 정언 이괴 등을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행 부제학 이경여 등의 계 ····· 309

26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19일(병자)
맑고 서풍이 붊 / 이비의 관원 현황 ····· 311

27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28일(을유)
맑고 서풍이 붊 / 포천 현감 심합이 하직하였다 ····· 312

27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4월 9일(병신)
맑음 / 사간원이 사간 조경을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일을 청하였다 ····· 312

272.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5월 11일(정묘)
맑음 /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서울에서
모친을 봉양하면 충성과 효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답 ····· 312

273.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5월 12일(무진)
맑음 /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병이 나은
뒤에 올라와 바람에 부응하라는 비답 ····· 313

274.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19일(을사)
맑음 / 경상 감사에게 공산산성과 독용산성도 살펴
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313

275.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20일(병오)
맑음 /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일 등을 비국의
계사에 따라 수답할 것 등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 314

276.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21일(정미)
맑음 /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한 문답 등에 대해
회계하는 비변사의 계 ····· 315

277.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2일(정사)
맑음 / 칙사가 어제 잡은 물고기를 상께 진상하라고
하였다는 등 칙사의 동정에 대해 보고하는 영접
도감의 계 ····· 316

278.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3일(무오)
맑음 / 정축년의 예대로 예단을 마련하여 대군이
잠깐 만나 볼 것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 317

27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8일(계해)
비 / 신병이 있어 호가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직과
겸직하고 있는 양관의 직임을 모두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 ····· 318

28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8일(계해)
비 /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지사
한인급의 상소 ····· 319

28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11일(병인)
비 / 정사가 있었다 ····· 320

282.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4일(기축)
맑음 / 탈이 있는 자가 많으므로 지중추부사
이경직 등을 본사 당상으로 차하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321

283.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6일(신묘)
맑음 / 대례를 형편없이 만들었으므로 본직과
겸직한 여러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성
이경여의 상소 ····· 322

284.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6일(신묘)
맑음 / 대사성 이경여가 상소에서 대례의 체면이 형편없게 되었다고 한 것은 석전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가리킨 것이라는 목성선의 계 ····· 323

285.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4일(무오)
맑음 / 이비가 신천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23

286.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4일(무진)
맑음 / 안변 부사 서경우에 대한 형조의 조율 공사에 대해, 전 공사에 빠진 글자가 있으므로 부표해서 내린다는 전교 ····· 324

287.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6일(경오)
맑음 / 식년 문과 강경 회시 시관으로서 명초 받은 뒤 칭병하고 나오지 않은 지중추부사 한인급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신익량의 계 ····· 324

288.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8일(임신)
맑음 / 신병이 있어 문안의 반열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중추부사 한인급의 상소 ····· 325

28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9일(계유)
맑음 / 칙사 행차가 나왔으므로 파직된 전 응교 정치화를 특별히 낭청에 서용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326

29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24일(무인)
맑음 / 여러 도의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올려 보내는 일을 잠시 정지하고 본도에 교육을 맡길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327

29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26일(경진)
맑음 / 인평대군이 만 장군을 찾아볼 때의 예단 수량을 더 마련하여 들이겠다는 호조의 계 ····· 327

292.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0월 27일(경술)
맑음 / 양만고의 상소에 대해, 진달한 일은 의처
하겠다는 비답 ····· 328

293.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3일(병인)
흐림 / 정사가 있었다 ····· 328

294.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7일(경오)
맑음. 서풍 / 적임자가 아니므로 새로 제수한 본직을
체차하고 자헌대부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 329

295.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9일(임신)
맑음 / 적임자가 아니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 330

296.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22일(을해)
맑음 / 적임자가 아니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 331

297.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5일(정해)
흐리고 눈 옴 / 이유양이 복계할 때 망녕되이
법례에 따라 시행하려 한 죄는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대죄한다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계 ····· 333

298.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7일(기축)
맑음 / 감당할 수 없는 직임이고 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겸직과 실직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 334

299.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18일(경자)
흐림 / 신병이 있는 어미를 봉양할 수 있도록
걸군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 335

300.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20일(임인)
맑음. 서풍 / 정사가 있었다 ····· 337

301.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20일(임인) 맑음. 서풍 / 재신인 형조 판서 이경여가 어버이의 신병으로 정사를 올렸으므로 봉입한다는 정광경의 계 ····· 337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302.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월 12일(갑자) 아침에는 눈 오고 저녁에는 맑음 / 말미를 받아 나갔다 들어오려는 대군사부 서원리에게 초료를 성급하여 속히 들어오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341

303.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월 12일(갑자) 아침에는 눈 오고 저녁에는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41

304.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3일(을유) 맑음 / 병든 어미를 떠날 수 없으므로 본직 및 겸임하고 있는 성균관 대사성 등을 아울러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의 상소 ····· 341

305.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4일(병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43

306.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11일(계사)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44

307.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0일(임인) 맑음 / 대제학을 차출하는데 당상관 중에 합당한 사람을 천망하여 권점할 것인지를 묻는 빈청의 계 ····· 344

308.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1일(계묘) 맑음 / 이비가 목성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45

309.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3일(을사)
맑음 / 대사성을 겸직으로 계하한 전례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윤이지의 계 ····· 345

310.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3일(을사)
맑음 / 이비의 관원 현황 ····· 346

311.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5일(정미)
아침에 눈 오고 저녁에 맑음 / 연로한 신임 사복시
정 양만고를 체차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전 등의 계 ····· 346

312.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6일(무신)
흐림 / 연로한 사복시 정 양만고를 속히 체차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전 등의 계 ····· 347

313.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2월 2일(계축)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48

314.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2월 28일(기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48

315.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3월 15일(병신)
맑음 / 집의 조경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348

316.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3월 28일(기유)
흐림 / 정사가 있었다 ····· 349

317.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4일(을묘)
흐림 /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한인급의 상소 ····· 349

318.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8일(기미)
맑음 / 형조 판서 한인급의 상소에 대해, 해조에
내리라고 전교하였다 ····· 350

319.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9일(경신)
맑음 / 병비가 변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51

320.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16일(정묘)
맑음 / 사간 조경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간원 정언 김상의 계 ····· 351

321.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9일(기축)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으로 사간 조경이 사직
상소를 올려 보내는 일을 보고하였다 ····· 352

322.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13일(계사)
맑음 / 목릉의 일로 조경에게 탄핵을 받았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영의정 홍서봉의 차자 ····· 352

323.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16일(병신)
맑음 / 이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54

324.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6월 2일(임자)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신병이 있는 사간
조경이 체차해 줄 것을 청하였다는 일을 보고
하였다 ····· 354

325.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6월 3일(계축)
맑음 / 사간 조경이 사장을 올려 체차되었다 ····· 354

326.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7월 16일(을미)
맑음 / 경기 감사 허계가 대군을 배행하여 들어왔다 ····· 355

327.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8월 16일(을축)
맑음 / 인평대군 부인의 신병에 소용되는 약재를
가지고 가게 금군을 정해 보내므로 의주에서 전해
보내라는 전교 ····· 355

328.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9월 24일(임인)
맑음 / 심양에 들어가는 봉림대군에게 의자와 하사미
등을 인평대군의 예대로 마련해 주라는 전교 ····· 355

329.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0월 2일(기유)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집의 조경의 사직
상소를 올려 보낸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 356

330.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0월 3일(경술)
맑음 / 이비가 이숙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56

331.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1월 18일(을미)
맑음 / 집의 조경의 사장에 대해, 체차하라고
전교하였다 ····· 356

332.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1월 24일(신축)
맑음 / 전라 우수사 김술 등이 하직하였다 ····· 357

333.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2월 13일(기미)
맑음 / 집의 조경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357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334.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월 26일(임인)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는 비답 ····· 361

335.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2월 3일(무신)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양만고의 일은 윤허
하지 않는다는 비답 ····· 361

336.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2월 4일(기유)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 ····· 362

337.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3월 28일(계묘)
맑음 / 팔왕에게 보낼 인평대군의 회답 예물을
평안 감사에게 전해 주어 삭선을 가지고 갈 때에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362

338.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5월 20일(갑오)
맑음 / 이행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363

339.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7월 15일(기축)
맑음 / 창원 부사 백대진 등이 사은하였다 ····· 363

340.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7월 26일(경자)
비 / 창원 부사 백대진 등이 하직하였다 ····· 364

341.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8월 7일(경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64

342.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6일(기묘)
흐림 / 충청 감사가 전한 조경이 노모의 병세가
위중하여 올라가지 못한다는 일을 보고하는 서목을
올렸다 ····· 364

343.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5일(무자)
맑음 / 예를 함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365

344.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5일(무자)
맑음 / 옥당이 대사간 김남중 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 366

345.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6일(기축)
맑음 / 정언 채성귀 등이 직임을 행하였다 ····· 366

346.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6일(기축)
맑음 / 집의 이행우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
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 367

347.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0월 20일(임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67

348.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0월 24일(병인)
맑음 / 내일 행할 망궐례의 의주를 들여보낸 결과를
보고하는 접대청의 계 ····· 367

349.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1월 26일(무술)
맑음 / 완성부원군 최명길에게 규례대로 대제학을
천망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368

350.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4일(을사)
맑음 / 흉악하고 간교한 두릉도정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369

351.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5일(병오)
맑음 / 흉악하고 모진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370

352.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6일(정미)
흐림 / 두릉도정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 371

353.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0일(신유)
맑음 / 좌승지 김육은 도승지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처치하겠다는 홍무적의 계 ····· 371

354.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0일(신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72

355.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4일(을축)
맑음 / 도승지 서경우 등이 사은하였다 ····· 372

356.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5일(병인)
맑음 / 정사에서 수령을 의망한 이유를 보고하는
서경우의 계 ····· 373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357.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8일(무인)
맑음 / 체후의 조섭 등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 377

358.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0일(경진)
맑음 / 연안 부사 유전에게 베푼 은전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도승지 서경우의 계 ····· 377

359.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3일(계미)
눈 / 체후의 조섭 등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 378

360.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8일(무자)
맑음 / 성체의 조섭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 378

361.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7일(병자)
맑음 / 예문관 봉교 홍처대에 대한 추고를 속히
처치할 것을 청하는 도승지 서경우의 계 ····· 379

362.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3일(임오)
맑음 / 기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79

363.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6일(을유)
맑음 / 전한 조경이 사은하였다 ····· 380

364.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9일(무자)
맑음 / 기후에 대해 묻고 중만분소환을 더 지어
들일 것인지를 묻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80

365.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25일(갑오)
맑음 / 기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81

366.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30일(기해)
맑음 / 능원대군과 인평대군을 능성부원군 구굉과
함께 인견하였다 ····· 381

367.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4월 16일(을묘)
비 / 정사가 있었다 ····· 382

368.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4월 19일(무오)
맑음 / 봉림대군방의 왕손이 죽었으므로 기후의
조섭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82

369.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9일(정축)
맑음 / 체후의 차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83

370.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0일(무자)
맑음 / 진하사 인평대군이 심양에 들어갔다 ····· 383

371.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2일(경인)
맑음 / 인평대군이 진하 상사로 심양에 들어갔다 ····· 383

372.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3일(신묘)
맑음 / 인평대군이 먼 길을 떠나 회포가 화명하지
못해서 조섭 중인 옥체가 손상될까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 384

373.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3일(신축)
비 / 폐모론에 대한 의견을 가장 먼저 낸 성주
목사 조정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384

374.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4일(임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 중관 나업이 서목에서
5월 30일 인평대군 행차가 평양에 이르렀는데 하루
머물렀다가 출발하겠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 386

375.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4일(임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 인원이 부족하므로
호군 이경여 등을 제조로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승문원 도제조의 계 ····· 386

376.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6일(갑진)
맑음 / 천거된 유장을 정밀하게 가려 써야 한다고
말한 일로 상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이후산의 계 ····· 387

377.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7일(을사)
맑음 / 인혐하고 물러난 지평 심세탁 등을 출사
시킬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388

378.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0일(무신)
비 / 유장 추천에 대해 함부로 논계한 일로 상신의
발론을 받았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이후산의 계 ····· 389

379.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1일(기유)
비 / 인혐하고 물러난 지평 심세탁을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391

380.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1일(기유)
비 / 이조가 승문원 제조의 삼망에 이경여 등을
천망하였다 ····· 391

381.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2일(경술)
맑음 / 지평 이후산이 사직하였다 ····· 392

382.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18일(병술)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대사헌 이경여가
병세가 위중하여 올라가지 못하므로 상소를 올려
보낸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 392

383.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19일(정해)
맑음 / 대사헌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본직만 체차
하라고 답하였다 ····· 392

384.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25일(계사)
비 / 정사가 있었다 ····· 392

385.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5일(임자)
맑음 / 대사헌 서경우가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 ····· 393

386.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8일(을묘)
비 / 인평대군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 393

387.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8일(을묘)
비 / 인평대군 등이 들어왔다 ····· 393

388.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9월 20일(정해)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94

389.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9월 24일(신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94

390.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0월 10일(정미)
맑음 / 인흥군의 전답에 대한 한성부의 계목에 대해,
계축년에 측량한 양안 등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비답 ····· 394

391.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1월 8일(갑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95

392.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1월 19일(을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 395

393.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12일(무신)
맑음 / 정사를 하였다 ····· 396

394.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23일(기미)
맑음 / 정사를 하였다 ····· 396

395.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26일(임술)
맑음 / 참찬 이경여의 차자에 대해, 사양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 397

396.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2월 6일(신미)
맑음 / 허사 첨사 최승렬 등이 사은하였다 ····· 397

여 백

인조 15년 정축

(1637, 숭정10)

여 백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12일(임자) 맑음 / 의창군 등에게 조를 사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의창군(義昌君), **인흥군(仁興君)**, 영성군(寧城君), 능원대군(綾原大君)에게 각각 조(租) 2석을 사급하라."
하였다.

- 내하 《남한일기》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19일(기미) 맑음 / 청대한 이경여 등이 입시하여 강화하지 말고 결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경여(李敬輿)와 나만갑(羅萬甲)이 청대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상황이 위태롭고 다급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러 사람들이 몸을 보전할 가망이 없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은 바로 당연한 분수이니, 만약 포위를 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하는 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차마 하지 못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서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도움이 된다면야 또한 따질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적의 형세가 이와 같이 된 뒤인 만큼 설령 갖가지로 애걸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다 하고야 말 것이니, 어찌 우리가 간절하게 애걸한다고 하여 가

엾게 여길 자들이겠습니까. 당초에는 강화(講和)로 말했는데, 지금 이미 표문(表文)[1]을 올려 칭신(稱臣)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끝내 사기(士氣)가 저하되고 민심(民心)이 동요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일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상께서 성지(聖志)를 견고하게 정하시어 성을 등지고 한번 결전할 계획을 하신다면 성 안의 1만 명에 달하는 군졸을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표문(表文)을 올린다면 2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예의(禮義)가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하께서는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시 신민(臣民)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혹 이로 인하여 군부(君父)를 위태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설령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 복장을 하게 되더라도 또한 마다하지 않겠으나, 신은 그것이 한갓 치욕만 당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러므로 한번 해보려는 것이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국서의 말 가운데 차마 못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 이와 같이 된 것이다."

하였다. 나만갑이 아뢰기를,

---

1) 표문(表文) : 중국의 임금에게 보내던 외교 문서, 또는 신료나 백성들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의 일종. 표(表)란 문체의 하나로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글을 말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발표한다는 뜻임. 조선 시대 중국에 보내던 표문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담당하였음.

"신의 뜻은 전에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이성(二聖 인조와 소현세자)을 고립된 성에서 받들고 있으니, 진실로 겹겹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만 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은 화친하는 것과는 달라서 일단 치욕을 당한 뒤에는 구원병이 설령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 안에 아직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사신의 왕래로 인하여 사졸들이 이미 생기가 없게 되었으니, 만약 생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자신의 뜻을 견지할 경우에 시비가 오가는 사이에서도 일관성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전일의 말은 이와 같지 않더니 금일의 논의는 어찌하여 이리도 다른 것인가?"
하자, 나만갑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일에는 비록 강화를 하고자 하면서도 차서(次序)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어제 나가서 국서를 전하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나가는 것은 일에 차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차서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가?"
하니, 나만갑이 아뢰기를,

"전일의 국서와 지금의 국서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차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 나만갑이 아뢰기를,

"우선 이해(利害)를 가지고 오랑캐를 타이른 뒤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군부를 모시고 겹겹의 포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야 그 누군들 없겠습니까. 묘당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 귀착되는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아무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래서 타이르기를, '그 말이라면 따를 수 있지만 그 일이라면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나인들 또한 어찌 이것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겠는가. 비록 양식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또한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위로 종묘사직이 장차 망하려 하고 아래로 부형(父兄), 백관(百官), 신민(臣民)이 장차 어육(魚肉)이 될 판국인지라 우선 위로 종묘사직을 보전하고 아래로 신민을 보호하려는 구구한 생각에 요행을 바라게 된 것이니, 혹 천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거의 이로 인하여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진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그대들의 뜻과 매한가지이지만, 어떻게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핑계 댄 채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릴 수 있겠는가. 나만갑이 화친은 할 수 있어도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저들의 뜻이 만약 단지 화친에 있는 것이라면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까지 왔겠는가. 식견이 밝지 못하고 말에 조리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자, 나만갑이 아뢰기를,

"진실로 군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일에 차서가 없어 어제는 사신이 헛되이 다녀와 수모를 당함이 이미 많았는데 오늘의 문서도 여지가 없으니, 설령 구원병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뜻이 성을 공격하는 데에 있다면 일제히 군사를 모아야 하는 것인데, 신이 북문에 가서 그들의 진영을 보니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적정(敵情)을 비록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원병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을 듯하기는 한데, 사세가 다급하여 공갈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 운수가 있는 것인데, 천승지국(千乘之國)[2]의 존망이 어찌 하늘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을 견지한다면 하늘이 혹 도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혹 그렇지 못하다면 한갓 사기(士氣)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사세(事勢)가 이미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아무리 형편없기는 하지만 어찌 감히 당장 큰소리를 쳐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생각에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겠지만, 국서의 조어가 너무도 해괴하고 어긋났으니, 명분에 관련된 일인 만큼 잘 살펴서 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사람인 이상 그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형세상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이다. 만약 정도(正道)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직 성을 등지고 한번 싸워 군신과 상하가 함께 사직(社稷)을 위해 죽어야 할 따름이다."
하였다. 나만갑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묘당에 나아가 들으니, 오랑캐의 형세가 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 상께서 하교하신 것은 최명길이 적정(敵情)을 과신할까

---

2) 천승지국(千乘之國) : 일천 수레의 나라라는 뜻으로, 대(大) 제후(諸侯)의 나라를 이르는 말.

두려워하셨기 때문인데, 지금 국서를 지으면서 말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더 이상 여지가 없으니, 이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식량은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호남(湖南)과 서북(西北) 군대의 승패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서의 조어(措語)가 갑자기 과중해졌으니, 먼저 사람을 보내 그들이 나올지 확실히 알아낸 뒤에 사신을 보낸다고 한들 늦을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물러 나갔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26일(병인) 맑음 / 청대한 이주 등이 입시하여 성을 나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주(李澍)와 **이경여(李敬輿)**가 청대하였다. 이주가 아뢰기를,

"강도의 일은 진위(眞僞)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말에 동요되어 이런 망극한 계책을 세우셨으니, 신은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경여**가 아뢰기를,

"200년 지켜 온 종사(宗社)를 어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경솔하게 결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부터 저들이 점점 더 심하게 굴어 왔으니, 신은 진실로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신민을 위하여 옥체를 아랑곳 않고 성을 나가 버리신다면 신민인들 어찌 차마 전하를 홀로 호구(虎口)에 보내 놓고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소신은 여러 신하들 가운데 가장 용렬해서 10년 동안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털끝만 한 보탬도 없었고, 노모가 있다는 이유로 오래 모시지도 못했는데 결국 이런 망극한 변고까지 만났습니다. 진실로 조정의 대계(大計)가 신

의 말로 정탈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종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극하게 되었으므로 한번 용안을 뵙고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내일 성을 나가게 되면 신은 당연히 적의 칼날 아래에 죽을 것이지만, 전하께서 당하실 청성(靑城)의 치욕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월 30일(경오) 맑음 / 성을 나가 황제에게 삼배고두례를 행하고 환도하였다

청인(淸人)이 성을 나갈 때 시위하는 사람을 500명을 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이 시종 50여 명만을 거느리고 진시(辰時)에 서문(西門)을 통해 성을 나갔는데, 왕세자가 따랐다. 백관 중에 뒤에 남는 자는 서문 안에 나열해 서서 가슴을 치며 곡용(哭踊)[3]하였는데, 햇빛에 광채가 없었다. 상이 산에서 내려가 형초(荊草)를 깔고 앉았는데, 얼마 뒤 갑주(甲冑) 차림의 청나라 군사 수백 명이 좌우로 나누어 말을 달려왔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이는 이른바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신이 갈 때에도 이와 같이 합니다."
하였다. 얼마 뒤에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말을 달려오자, 상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과 더불어 두 번 읍(揖)하고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다. 용골대 등이 위로하자, 상이 답하기를,

3) 곡용(哭踊) : 초상 때 매우 슬퍼 큰 소리로 통곡하며 뛰는 것.

"지난날의 허물은 다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오늘의 일은 오로지 황제의 말과 두 대인(大人)이 힘써 주실 것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니, 용골대가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는 두 나라가 한집안이 되는 만큼 백성들은 무사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늦었으니 속히 떠났으면 합니다."
하고, 마침내 말을 달려 선도하였다. 상이 뒤따라 나아가 옛 광주(廣州) 앞에 이르자, 용골대가 시신(侍臣)들을 뒤에 떨어뜨려 두었으므로 상은 다만 삼공, 오경, 육승지, 한림과 주서 각 한 사람만을 거느리고, 왕세자는 시강원과 익위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비석 앞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황제가 마전포(麻田浦)[4]에 단을 설치하고서 위에 황옥(黃屋)을 펼치고 앉아 있고 갑주 차림에 궁검을 찬 자가 각각 방진(方陣)을 치고 옹립하였으며, 깃발과 창검이 삼엄히 늘어서서 사면으로 둘러져 있고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하였는데, 대략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용골대 등이 말에서 내리니, 상 또한 말에서 내려 비석 아래에 앉았다. 용골대 등이 먼저 들어가 보고를 하고는 이윽고 나와서 선도하여 걸었다. 상이 도보로 따라서 진 밖에 이르자, 용골대 등이 전하를 동쪽 작문(作門) 밖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상이 삼배고두례(三拜叩頭禮)를 행하자, 용골대 등이 들어가 보고한 다음 나와서 전하기를,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하면 길다. 이제 용단을 내려 나왔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천은이 망극합니다."
하였다. 용골대 등이 인도하여 들어가 동쪽 작문을 통해 들어가니, 단(壇)

4) 마전포(麻田浦) : 송파구 삼전동에 있던 마을로서, 이 마을에 삼마(麻)를 심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상에게 자리로 나아갈 것을 청하였다. 청나라 사람이 여창(臚唱)하자, 상이 다시 삼배고두례를 행하였다. 용골대 등이 상을 인도하여 나와 동쪽 작문을 통해 나와서는 다시 동북쪽 모퉁이를 지나 단의 동쪽에 앉게 하였다. 대군(大君) 이하가 강도에서 잡혀 와서 단 아래의 약간 서쪽에 늘어서 있었다. 이윽고 용골대 등이 황제의 말로 상에게 단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남쪽을 향해 앉고 상은 동북쪽 윗자리에 앉았는데 서쪽을 향해 앉았다. 청나라 왕자 세 사람은 차례로 나란히 앉고 왕세자는 또 그 아래에 앉았는데, 모두 서쪽을 향해 앉았다. 또 청나라 왕자 네 사람은 모두 서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고 봉림(鳳林)과 **인평(麟坪)** 두 대군은 그 아래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나라 시신(侍臣)에게는 단 아래 동쪽 모퉁이에 자리를 주었고, 강도에서 잡혀 온 신하는 단 아래의 서쪽 모퉁이에 앉게 하고서 차 한 잔을 올렸다. 얼마 뒤 갑자기 일어나 단을 내려가 오줌을 누었으므로 상 또한 일어나 단을 내려가 진 밖의 동쪽 모퉁이로 나가서 휴식하였다. 황제가 단상에 돌아와 앉고서 상이 다시 자리로 들어와 앉기를 청하였다. 용골대를 시켜 우리나라의 여러 시신들에게 고하기를,

"이제는 두 나라가 한집안이 되었다. 활 쏘는 솜씨를 보고 싶으니 각각 재주를 다하도록 하라."
하니, 여러 종관(從官)들이 답하기를,

"이곳에 온 자들은 모두가 문관이므로 활쏘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용골대가 굳이 청하므로 마침내 위솔(衛率) 정이중(鄭以重)으로 하여금 나가서 쏘게 하였는데, 활과 화살이 본국의 제도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번을 쏘았으나 모두 적중하지 못했다. 청나라 왕자와 제장(諸將)은 떠들썩하게 어울려 쏘면서 묘기로 여겼다. 얼마 뒤 진찬(進饌)하고 술을 돌렸는데, 술상이 차례로 예수(禮數)가 줄었으나 상의 앞에 놓인 술상은 황제의 술상과 똑같이 하였으니, 이는 존경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였다. 술이 세 순 돌자, 상을 치우도록 명하였다. 상을 치우려 할 때 종호(從胡) 두 사람이 각각 큰 개를 끌고 와서 황제의 앞에 이르렀다. 황제가 직접 고기를 베어 개 앞에 던져 주자 고기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개가 곧바로 받아먹곤 하였는데, 저들은 그것을 묘기로 여겼다. 두 종호가 개를 끌고 내려갔다. 얼마 후 상이 인사를 하고 단을 내려갈 것을 청하였다. 단 뒤쪽을 경유한 뒤에 서북쪽 모퉁이를 따라 나오니, 빈궁(嬪宮) 이하 사대부 가속으로 붙잡힌 자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다. 상이 전중(田中)에 앉아 있는데, 용골대 등이 황제의 말로 빈궁 이하 대군 부인에게 나와 절을 하도록 청하였으므로 보는 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상이 서남쪽 모퉁이로 옮겨 앉자, 용골대 등이 황제의 말로 영롱한 안장을 갖춘 백마를 끌고 와서 주었으므로 상이 친히 고삐를 잡았고 종신(從臣)이 받았다. 잠시 후 용골대 등이 초피구(貂皮裘)를 가지고 나와 황제의 말로 전하기를,

"이 물건은 당초에 주고자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 본국의 의복 제도가 이와 같지가 않다. 감히 억지로 입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리(情理)를 표하고자 할 뿐이다."
하니, 상이 받아서 입고 뜰에 들어가 엎드려 사례하였다. 마침내 도승지 이경직으로 하여금 국보(國寶)를 올리게 하였는데, 용골대가 받아서 갔다가 얼마 후 와서는 묻기를,

"고명(誥命)[5]과 옥책(玉冊)[6]은 어찌하여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책은 일찍이 갑자 연간에 역신(逆臣)의 난리가 있었을 때 이미 잃어버렸고, 고명은 이번의 난리에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

5) 고명(誥命) : 중국의 황제가 제후나 오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6) 옥책(玉冊) : 국왕, 왕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리는 문서.

인지라 잘 보존되었는지는 기필하기 어렵지만, 만약 혹시라도 잘 보전되었다면 추후에 바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용골대가 알았다고 하고서 들어갔다. 얼마 후 초구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인평대군**을 불러 입게 하고, 또 세 벌을 가지고 나와 삼공을 불러 입게 하였으며, 또 여섯 벌을 가지고 나와 오경(五卿)을 불러 입게 하였고, -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또 다섯 벌을 가지고 나와 다섯 승지를 불러다 입게 하고서 - 좌부승지 한흥일(韓興一)은 산성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을 모시고 산성에서 애썼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주는 것이다."
하자, 대군 이하의 하사받은 사람들 또한 모두들 뜰에 들어가 엎드려 사례하였다. 홍서봉(洪瑞鳳)과 장유(張維)가 뜰에 들어가 엎드리고는 가서 노모(老母)를 만나 볼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자, - 이는 그들의 노모가 일찍이 강도로 갔기 때문이다. - 김돌시(金乭屎)가 화를 내며 꾸짖고서 내보내 주었다. 상이 밭가에 앉아 진퇴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시(酉時)에 한(汗)이 비로소 환도(還都)를 명하였다. 왕세자와 빈궁 및 봉림대군과 봉림대군의 부인은 모두 머물러 두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장차 그들을 북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서였다. 상이 인사를 하고 물러나 빈궁의 막차로 들어가서 빈궁을 만나 보았다. 송파진(松坡津)을 경유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진졸(津卒)은 거의 다 죽고 빈 배 두 척만이 있었다. 강가에 다다르자 백관들이 앞 다투어 어의(御衣)를 잡아당기면서 배에 올랐다. 상이 강을 건넌 뒤에 황제가 뒤따라 말을 타고 달려와 얕은 여울을 통해 건너서 장막(帳幕)으로 나아갔다. 용골대 등이 호행(護行)하는 군병을 이끌고 길의 좌우에 도열하여 상을 인도해서 가니, 사로잡힌 자녀들이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하였는데, 길 양 옆에서 슬피 울부짖는 자가 1만 명을 헤아렸다. 살곶이

다리[7]에 이르자 날이 이미 저물어 어두웠으며, 초경(初更)쯤에 비로소 경성에 당도하여 창경궁(昌慶宮) 양화당(養和堂)으로 나아갔다. 이때 몽병(蒙兵)이 아직도 도성에 가득하여 이전처럼 노략질하였는데, 다만 궐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호종하고 온 백관들이 모두 궐내에 머물러 있었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1일(신사) 맑음 / 오랑캐에 투항하고 횡포를 부린 출신 김경을 효시할 것 등을 청하는 훈련대장의 계

훈련도감 낭청이 대장의 뜻으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군관 **이기남(李箕男)**이 오랑캐에게 투항한 사람이 삼간 병문(三間屛門) 근처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운하기에, **이기남**에게 기회를 엿보아 붙잡아 오게 하니 출신(出身) 김경(金璟)이란 자였습니다. 이자는 월전(月前)에 여러 번 심양(瀋陽)에 다녀와 안면을 익힌 오랑캐가 매우 많았는데 변란 초기에 머리를 깎고 오랑캐 진영에 투항해 들어가 호기(胡旗)를 들고는 인물, 가축, 재산을 노략질하는 등 오랑캐와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이제 잡아들이니 부모와 처자를 찾으러 오랑캐 진영에 출입하던 사람들 중에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이 성책해 놓은 총 220명의 노획한 남녀 및 소 15마리, 말 3필, 약간의 잡물들을 한곳에 감춰 놓았습니다. 일시에 포획하였더니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남녀 장정은 흩어져 달아나 버려 거느리고 온

---

7) 살곶이다리 : 성동구 사근동 102번지 남쪽 현재 성동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돌다리로서 중랑천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조선시대 다리로는 가장 길었으며 제반교(濟盤橋)라고도 불렀다.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김경이 횡포를 부린 정상을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잡혀갔던 최정세(崔廷世)와 홍인례(洪仁禮) 등이 절절하게 말하는데 듣고 있으려니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의 김경을 유사(攸司)[8]로 하여금 효시(梟示)[9]하게 하고 잡혀갔던 사람 39명에게는 모두 그들의 물건을 찾아서 돌려주고 원래의 호적지로 흩어 보내고, 적이 감춰 두었던 물건은 도감의 군병과 체포한 사람에게 논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체포한 군관을 논상하라."
하였다.

- 《훈국등록(訓局謄錄)》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군공청의 초기는 미처 정탈하여 계하받지 못하였다는 한홍일의 계

한홍일이 아뢰기를,

"23일에 세운 군공의 등제에 대해 군공청이 올린 초기와 관련하여 '이 일을 당초 정탈하여 한 것인지 곧바로 분부하여 한 것인지 문계하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청에 물으니, '23일 이전에 출전하였을 때는 활을 쏘아 적을 죽인 사람들에게 모두 1등급을 더해 주었는데, 23일 당일에 힘껏 싸운 공은 전일의 배가 됩니다. **이경여(李敬輿)**가 체부로

8) 유사(攸司) : 그 관청(官廳)
9) 효시(梟示) :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뜻으로, 죄인(罪人)의 목을 베어 나무 위에 매달아 뭇사람에게 보임

가서 대면하여 상의하였는데 미처 정탈하여 계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여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힘껏 싸운 사람들의 등급을 올려주는 일은 이경여가 체찰사와 대면하여 결정한대로 마련하겠다는 군공청의 계

또 군공청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1월 23일에 힘껏 싸운 사람들에게 2등급을 올려 주고 전투를 도와 계속 지원한 사람에게는 1등급을 올려 주도록 **이경여**가 체찰사의 처소에서 대면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대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16일(병술) 맑음 / 산성에서 시위하지 못한 경위 등을 진달하고 석고대죄한다는 조경의 상소

조경(趙絅)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지난 12월 14일에 **포천(抱川)**에 있다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동대문 밖으로 달려왔습니다만 성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성으로 들어간 뒤에야 비

로소 대가가 이미 남한산성으로 행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일 새벽 남한산성을 향해 달려갈 때 길에서 바로 대가가 또 강도로 행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신은 다시 가던 길을 돌려 김포(金浦) 관아로 달려가서 김포 군수 이회(李懷)를 만났는데 그제야 길에서 잘못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헌릉(獻陵)으로 달려갔는데 적진이 앞을 가로막아 끝내 들어가 시위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겨우 포로가 되는 것을 면하고서 전 찰방 김경(金坰)과 함께 몸만 빠져나와 밤길로 과천(果川)에 와서 의탁하였습니다. 과천 현감 김염조(金念祖)가 관악산에서 기내(畿內)의 의사들을 소집해 만에 하나라도 노적(虜賊)을 공격하고자 하여 격문 한 장을 써서 맨 먼저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에게 보냈는데 윤계와 조익(趙翼), 심지원(沈之源) 등이 연명으로 답통하기를, '수일 내로 군병을 올려 보내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사를 호궤(犒饋)할 때에 적병이 느닷없이 쳐들어와 윤계가 참화를 입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간담이 서늘해져 창의(倡義)에 호응하려고 했던 자들이 모두 감히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의 처음 계획은 허사가 되었고, 결국 김염조와 그저 관악산에서 난리를 피해 있다가 돌아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세가 궁색하여 적을 공격하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묘사(廟社)가 옮겨 있는 강도로 들어가 호위하지도 못하고서 산에서 그저 가만히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강화를 한 뒤에도 노략질하는 적들이 여전히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제야 비로소 도보로 성에 들어온 탓에 신하로서 달려와 문안을 여쭙는 의리 또한 다른 사람보다 늦었으니, 신의 죄가 이에 큽니다. 감히 한마디 말씀을 올려 우러러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리고 이어서 석고대죄(席藁待罪)하오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22일(임진) 맑음 / 남한산성을 수비할 때 달려온 경기 수령들의 도착 일자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또 아뢰기를,

"남한산성을 수비할 때에 경기의 수령은 모두 총융사(摠戎使)[10]와 수어사(守禦使)[11]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굉(具宏)과 이시백(李時白) 등에게 물으니, 남한산성에 달려온 수령 중에 양근 군수(楊根郡守) 한회일(韓會一)은 12월 14일에 서울에서부터 호종(扈從)하여 성으로 들어갔고 본군(本郡)의 군병은 15일에 일제히 도착했으며, 여주 목사(驪州牧使) 한필원(韓必遠), 이천 부사(利川府使) 조명욱(曺明勗), 지평 현감(砥平縣監) 박환(朴煥) 등은 15일 저녁에 군대를 거느리고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양지 현감(陽智縣監) 유희증(兪希曾)과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문영(李文營)은 15일 저녁에 도착하였는데, 이 두 고을에서는 군대를 거느린 일은 없었고 유희증이 정포(精砲) 12명을 거느렸습니다. 용인 현령(龍仁縣令) 이명달(李命達)은 15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도착했으며 파주 목사(坡州牧使) 기종헌(奇宗獻)은 16일 아침에 적진을 뚫고서 군대를 거느리고 도착했으며 **포천 현감(抱川縣監)** 권대유(權大有)는 16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도착했습니다. 이 밖에 성 안에 들어온 수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 군수 이문영과 용인 현령 이명달은 16일 아침에 감사가 경창(京倉)의 쌀을 각각 200석씩 성 안에 운반하는 일로 내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주사(舟師)만 달려왔으니,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어사(統禦使)에게

---

10) 총융사(摠戎使) : 1624년(인조 2) 서울의 외곽인 경기(京畿) 일대의 경비를 위해 서울 사직동(社稷洞) 북쪽에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의 군영(軍營)인 총융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 벼슬.

11) 수어사(守禦使) : 조선 인조 때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이를 수어하기 위해 설치한 수어청(守禦廳)의 종2품직 장관.

물은 뒤에야 그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일시에 조사하여 아뢸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수령 중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끝내 도착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적발하여 엄히 치죄하고, 성에 들어온 수령 중에 상을 내릴 만한 사람은 잘 헤아려서 시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2월 28일(무술) 맑음 / 진대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해조에게 곡식을 옮기는 일을 조처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또 아뢰기를,

"전쟁이 온 지역을 휩쓸어 곳곳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어 참혹하니, 비록 **한인급(韓仁及)**의 장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옛 도읍의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이 소도 없고 종자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대(賑貸)하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곡식을 옮기는 일을 충분히 강구하여 즉시 조처하게 하되, 교수(敎授) 및 심약(審藥)·검률(檢律)을 또한 접제(接濟)하기 어려우니 민생이 회복될 때까지 우선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명(使命)으로 왕래할 때에 식량을 싸서 가지고 가거나 혹은 밥을 지어서 스스로 가지고 가기를 한결같이 임진란 뒤의 고사(故事)대로 하도록 본사에서 입계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이후로 만약 지공(支供)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지적해 계문해서 추궁하여 처리할 자료로 삼게 하도록 유수(留守)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3월 27일(병인) 맑음 / 병화가 심한 양근 등에는 입번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병조가 아뢰기를,

"청대하였을 때 이주(李澍)가 아뢴 내용에, '어제 대제학 이식(李植)의 말을 들으니,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켰던 본역(本役)이 정병(正兵)인 속오군 중 양근(楊根)에 사는 이들이 다음 달 상번[12]에 입번(立番)할 차례가 되었는데 양식을 마련할 수 없어, 이 일로 원망을 터뜨리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삼가 듣건대, 조정에서 일찍이 병화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 곳은 상번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병조가 분명하게 통지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다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켰던 속오군은 모두 금군(禁軍)이니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병조에 물어보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상번 군사를 보내는 일을 똑같이 행회하였고, 2월 25일에 양근, 연천(漣川), **포천(抱川)** 등 고을에 본조의 계사를 첨부하여 이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병화를 입

12) 상번(上番) : 번(番)이 갈리어 근무 교대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

은 것은 경기가 가장 심하여 여염집들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생계가 막연하니 참으로 상번하도록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하게 재물이 바닥난 고을은 가을걷이까지는 입번을 면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접(安接)할 수 있게 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보이도록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뜻으로 본도에 행회하였기 때문에 정월에 상번할 군사들이 다른 도는 지금 입번했는데도 경기의 각 읍은 한결같이 입번을 면제하여 한 읍도 올려 보낸 곳이 없으니, 경기에 이 뜻을 통지하였다는 것은 이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한산성에서 성첩을 지켰던 속오군을 모두 금군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입번하도록 하여 침해하는 폐해가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5일(갑술) 맑음 / 이비가 김여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김여옥(金汝鈺)과 정익경(鄭翼卿)을 병조 정랑으로, **이경여(李敬輿)**를 경상 감사로, ……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8일(정축) 맑음 / 신병이 있는 노모를 찾아보고 임소로 부임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경상 감사 이경여의 상소

경상 감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몹시 비루하여 여러 신하 가운데 가장 못하다 보니, 평상시에 방백(方伯)의 직임도 감당하지 못하여 가는 곳마다 허물을 불러왔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위급하여 존망이 걸린 날에 변방의 중대한 직임을 이미 시험해 보아서 그만두어야 할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성명(聖明)께서 남쪽을 돌아보아야 하는 근심을 더 늘리게 될까 걱정스러웠지만, 때가 어렵고 위태한 상황이어서 형적이 직임을 꺼리는 모양이 되었으므로, 감히 상소를 올려 사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몹시 간절하고 절박한 점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우러러 호소합니다. 신의 노모는 올해 72세로 평소에 질병이 많아 늘 누워 있었는데, 병란(兵亂)을 겪으며 해도(海島)에 표박(漂泊)한 뒤로 기력이 다해서 곧 숨이 끊어질 사람처럼 숨소리가 약합니다. 다만 청병(淸兵)이 아직 돌아가지 않아 도하(都下)가 자주 놀랐으므로, 분의(分義)로 따져 볼 때 물러나는 것이 온당치 못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조정으로 달려왔으니, 노모의 만류를 뿌리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 엄한 일정에 쫓겨서 어미를 찾아보지 못하고 바로 임소(任所)로 가서, 한 해 넘게 이별을 하면서 하루도 볼 수 없게 된다면, 단지 자식 된 지극한 정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식을 기다리는 노모의 마음이 이에 이르러 더욱 절절해질 것입니다. 본도는 호서(湖西)와 접경이어서 만약 남쪽의 고을로 돌아서 도계(到界)하게 되면, 길을 돌아가는 것이 크게 서로 배치되지는 않아 5, 6일이 걸릴 뿐입니다. 만약 자애로운 성상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어미를 찾아 본 뒤에 부임하도록 해 주시면 모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원하는 대로 가서 어미를 만나 보도록 하

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가 하직하였다

경상 감사 **이경여(李慶輿)**가 하직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를 인견하겠다는 전교

목서흠에게 전교하기를,

"경상 감사 **이경여**를 인견하겠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전사한 군사들에게 포를 나누어 주도록 다른 도의 감사들에게도 통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한형길이 비변사[13]의 말로 아뢰기를,

---

13) 비변사(備邊司) :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

"**이경여(李敬輿)**를 인견할 때에 그가 아뢴 내용에, '신이 듣건대 조정에서 흩어진 군사들에 대해 포(布)를 징수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를 전사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한형길이 아뢰기를, '이 포를 시종 종군(從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미 분부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사한 군사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비국에 말해 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사한 군사들이 가장 가엾고 불쌍하니, 성상의 하교대로 일체 나누어 주도록 다른 도의 감사들에게도 모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4일(계미)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를 인견할 때 좌부승지 한형길 등이 입시하여 좌도의 토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상 감사 **이경여(李敬輿)**를 인견하였다. 좌부승지 한형길(韓亨吉), 가주서 윤성(尹珹), 기사관(記事官) 유철(兪橃)·김진(金振)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 중임(重任)을 맡았으니, 의당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은 재주가 남만 못하여 평상시에도 방면(方面)의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힘들고 위태로운 시기를 당하여 어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도내(道內)의 일에 대해서도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좌도(左道)의 산군(山郡)은 토양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빈궁하여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양전(量田)[14]을 행한 뒤로는 결복(結卜)[15]이 더욱 무

거워져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소신의 얕은 생각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당초 - 원문 빠짐 - 도(道)의 사람들이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백성들이 그 등수를 낮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신 - 2행 원문 빠짐 - 다른 도의 백성들에 비해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애를 쓰지만 자신도 먹지 못하는 데다 안동(安東), 봉화(奉化) 등의 고을에서는 요역이 번다하고 과중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이 - 원문 빠짐 - 라고 하니, 서민들 사이에는 원망하는 자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 병란 때에 그 도의 백성들이 가상한 일을 많이 하여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이번 통신사(通信使)가 얻은 은(銀)은 대마도(對馬島)에 해마다 보내는 목(木) 몫이라고 하는데, 이 목을 약간 덜어내어 보충해 지급하여 민역(民役)을 적절히 헤아려 줄여 준다면, 매우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가 300동(同)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급해 민역을 계산해 줄여 준다

14) 양전(量田) : 과세의 대상인 토지를 조사· 측량하던 일.
15) 결복(結卜) : 전지(田地)의 면적(面積) 단위, 또는 면적을 재는 행위. 대개 결복은 전지의 면적(面積)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음.

면, 1결에 줄여 주는 수가 얼마쯤인가?"
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

"줄어 주는 것은 비록 적지만, 백성들은 몹시 감격하여 기뻐할 것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좋을 듯하니, 그대로 행하라."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이 도의 공안(貢案)[16]은 반드시 다시 상정(詳定)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신이 외방에 있을 때 보니, 종류와 명목이 번다하면 백성들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만일 중대한 물품이라서 한 고을에 한꺼번에 부담시킬 수 없다면, 그 밖의 긴요하지 않은 물품은 각 고을에 하나하나 분정(分定)해서는 안 되고, 한 고을에 한꺼번에 정해 준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적으로 논한다면 이 말이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물품들이 귀하고 천한 것이 현격하고 토산(土産)이 각각 달라 이 고을에서 편하게 여기면 저 고을에서는 반드시 고통 받을 것이다."
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

"융통성 있게 값을 정하고 그 명목을 줄인다면 조금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이경여**가 또 아뢰기를,

---

16) 공안(貢案) : 조선시대 중앙의 각 궁(宮)·사(司)가 지방의 여러 관부에 부과, 수납할 연간 공부(貢賦)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책.

"신이 전라도에 갔을 적에 약재(藥材)를 진상하는 상황을 보았는데, 창출(蒼朮) 1냥을 열읍에서 모두 상납하기에 이를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생산되는 것에 따라 한 고을에다 합친다면 한 월령(月令)에 납부하는 곳이 10여 고을에 불과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각 고을에는 불균등하다는 말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원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균등하게 정하고, 마련하기 쉬운 공물은 합쳐서 정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한형길이 아뢰기를,

"반드시 기강을 세운 연후에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나라에서 견감해 주는 것이 많은데도 백성들이 매우 곤궁한 것은 바로 대강(大綱)을 세우지 못하고서 지엽적인 것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경여**가 아뢰기를,

"반드시 기강을 세우고 공도(公道)를 행한 연후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척(黜陟)[17]하는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스리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자, 한형길이 아뢰기를,

"**이경여**는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방백(方伯) 가운데는 혹 고을이 쇠잔한지 풍요한지는 살피지 않고 단지 수령이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살피고 요역을 편파적으로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이 어질면 한 고을이 혜택을 입고 방백이 어질면 한 도가 은덕을 입으니, 중대하지 않겠는가."

---

17) 출척(黜陟) : 관직을 혹은 삭탈하여 물리치고, 혹은 올려 줌.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서용하는 일

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

"방백의 직임은 출척을 명백히 할 뿐입니다. 그가 유능한지 아닌지를 상세히 알기는 지극히 어려운데 비록 허술하고 서투른 사람일지라도 혹 편히 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 면식이 있다거나 권세 있는 집안이라는 것에 구애되어 너그러이 봐주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물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괜찮지 않겠는가?"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주도면밀하게 상정하여 변통한다면 고치는 것이 편하겠지만, 만약 문란하게 한다면 예전대로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줄여 주더라도 또한 실제 혜택이 있겠는가. 만약 잘 처리하지 못하여 한갓 백성들에게서만 취한다면 예전대로 두느니만 못할 것이다. 공물은 사대(事大)에 쓰이는데, 저 나라에서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줄이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나라에서 의지하는 곳은 삼남(三南)인데, 지금 다른 도의 요역을 이곳으로 모아 정한다면 조금 건실한 지역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용되는 경비 가운데 겉치레에 가까운 것들은 삭감해야 하지만, 사대에 필요한 물품은 줄이기 어려울 듯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남이 이번에 병화를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근년에 그 지역에 변괴가 많았다. 이 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일본에 관한 일을 듣건대, 이웃 나라를 침략할 기세는 없는 듯하지만 관백(關伯)의 자리를 이미 삼대에 걸쳐 세습하여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 만약 사나운 자가 대신한다면 우리나라의 근심이 적지 않을 듯하다."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감히 마음을 다해 행하지 않겠습니까만, 사람의 재주와 국량에는 본디 한계가 있는지라 감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곳은 사대부가 많은 지역이라 그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또한 다를 것이다. 앞으로 만약 사변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 도를 귀의처로 삼을 것이니 이 도의 일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도의 사졸(士卒)은 몇이나 전장에 나왔다고 들었는가?"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신이 듣건대 조정에서 흩어진 군사들에 대해 포(布)를 징수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전사(戰死)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한형길이 아뢰기를,

"이 포를 시종 종군(從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미 분부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사한 군사에게 일체 나누어 주도록 비국에 말해 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舟師)가 전만 못하고 대포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 대포가 없다면 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권반(權盼)이 순검사(巡檢使)일 적에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니, 만약 부족함이 없다면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명색만 남아 있고 실재가 없다면 안 될 것이다."
하니, 한형길이 아뢰기를,

"권반이 비록 세밀히 해놓았더라도 반드시 주사에 익숙한 사람을 얻어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관방(關方)에 긴요한 물자들을 갖추어야 했는데, 신이 두 해를 계속해 영남으로 가서 살펴보았더니 믿고 의지할 만한 배가 없었습니다."
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

"반드시 체통을 먼저 세운 연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충청 감사가 세 차례나 병사(兵使)에게 전령(傳令)하였는데도 병사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평상시에 병사가 감사에게 절제를 받는다면 어찌 위급함에 임하여 분부를 듣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에 민성휘(閔聖徽)가 박서(朴瑞)를 파출하였을 적에 조정에서는 비난하였으나, 선왕조에서도 감사가 병사를 파출한 때가 있었으니, 체면을 중시한 까닭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군병은 모두 농민을 징발하여 쓰는 까닭에 비록 용맹한 자가

없기도 하지만, 평시에 또한 무휼(撫恤)[18]하는 일이 없었기에 이처럼 달아나 흩어진 것이다. 경(卿)은 지금 내려가거든 반드시 죽은 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고아를 위문하며 공이 있는 군병을 후하게 돌보는 등의 일을 힘써 행하라."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듣는 자치고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남한산성의 일로 말하자면 한 잔의 술도 먹일 수 없겠으나, 성상께서 무휼해 주시므로 모두 한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수가 평상시에 무휼한다면 어찌 승리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자, 한형길이 아뢰기를,

"이 도에 근래 선생, 장자(長者)가 없고 사자(士子) 가운데 과거 공부를 하는 자도 적다고 하니, 근심스럽습니다."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진주(晉州)는 큰 지역인데도 또한 인재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무변(武弁)[19]을 차송하여 권장하는 일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것인가? 참된 선비라면 어찌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이경여**가 하직 인사를 하고 나갔다. 한형길이 아뢰기를,

"요즈음 대각(臺閣)이 방치(放置)되어 있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소신의

---

18) 무휼(撫恤) : 어려운 처지(處地)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어 위로(慰勞) 하며 물질(物質)로 도와 줌
19) 무변(武弁) :조선시대 무무공인(武舞工人)이 쓴 모자의 일종. 또는 무관을 가리키는 말.

기력 - 원문 빠짐 - 부지런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시급한 일을 각사에 분부하여도 즉시 거행하지 않으니, 이 점이 더욱 속이 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관직에 나오는 자가 적은 것인가?"
하자, 한형길이 아뢰기를,

"조정에 논의 - 원문 빠짐 - 그러므로 사대부가 벼슬살이하려는 마음이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공명하게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경상 감사 이경여에게 내린 교서

경상 감사 **이경여(李敬輿)**에게 교서를 내렸다. 왕이 이르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즈음에 그대에게 영남 관찰사의 중책을 맡기는 것은 실로 모두가 천거하였기 때문이니, 진실로 뭇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한다. 생각건대 경은 성품이 단아하고 타고난 자질이 자상(慈詳)하여 젊은 시절부터 문재(文才)가 있어 일찍이 문원(文苑)에서 학예(學藝)를 드러냈고 평생의 출처는 밝은 세상에 조금도 부끄러운 점이 없었도다. 경악(經幄)의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을 적에는 모두들 진정한 재상감이라고 하였으며, 글을 올리고 간쟁할 적에는 늠연히 옛 쟁신(諍臣)의 기풍이 있도다. 양호(兩湖)의 관찰사에 제수되어서는 감당(甘棠)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두 고을의 어사(御史)가 되어서는 현산(峴山)의 타루비(墮淚碑)를 다시 생각나게 하였도다. 마음씀이 - 2행 원문 빠짐 - 세상이 어지럽게 되자 나라에 몸 바쳐 자신을 돌보지 않되,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았으니, 위태로운 상황에 쓸 만한 인재임을 충분히 알았도다. 이에 경을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하노라. 저 신라(新羅)의 옛 도읍을 돌아보건대 아직도 훌륭한 교화의 여풍이 남아 있어 윗사람을 친애하고 군장(君長)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절의가 지금에 이르러 더욱 드러나니, 윤리를 밝히고 학문을 독실히 하는 풍속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형남(荊南)[20]은 나라의 문호(門戶)이니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동(河東)은 우리의 고굉과 같으니, 그대가 잘 다스리라. 풍속을 살펴 다스리는 즈음 그대는 권면하고 타이르는 방도에 더욱 - 원문 빠짐 - 하며, 은택을 이어 받아 교화를 펴고서 내가 가상히 여기는 뜻을 널리 고하라. 남비징청(攬轡澄淸)[21]의 뜻을 갖고 관원의 출척을 의당 공명(公明)히 할 것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한탄하는 소리가 없게 하되 홀아비와 과부를 먼저 구휼하라.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는 경의 뜻대로 스스로 처단하되, 사죄(死罪)인 경우에는 나에게 품의한 다음 재단하라.

아, 민둥산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면 비록 어버이를 사모하는 생각이 간절하겠지만, 나라가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야 하니 어버이를 위한 효심을 나라에 옮겨 충성을 다해야 한다. 관대하고 간명함을 숭상하여 하내(河內)의 구순(寇恂)만이 미명(美名)을 독차지하지 말게 할 것이며, 덕의(德意)를 펴 동경(東京)의 종택(宗澤) 또한 경을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게끔 하라. 지금을 돌아보건대 평안한 시기인가, 위태로운 시기인가. 참으로 신하 된 자는 나라를 위하고 공(公)을 위할 뿐이다. 그러

---

20) 형남(荊南) : 형주(荊州) 일대의 중국 남방을 지칭하는 말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영남 지방을 가리킨다.

21) 남비징청(攬轡澄淸) : 난세를 구할 뜻을 품고 부임지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에 기주(冀州)에 흉년이 들어 도적떼가 일어나자 범방(范滂)이 그곳의 청조사(淸詔使)로 임명되어 떠날 즈음 수레에 올라 말고삐를 잡고서 개연히 천하를 맑고 깨끗하게 할 뜻을 품었다. 《後漢書 卷67 范滂列傳》

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직강(直講) 홍주일(洪柱一)이 지어 올린 것이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경상 감사 이경여가 하직하였으므로 심연을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한형길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 감사 심연(沈演)에 대해 새 감사가 내려간 뒤에 잡아오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새 감사 **이경여**가 이미 하직 인사를 하였으니, 심연을 도사(都事)를 보내 잡아오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5일(갑신) 흐림 / 민역을 줄여 달라는 경상 감사 이경여의 계에 대해, 초기를 도로 내주라는 전교

경상 감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뢴, 공무목(公貿木)[22]을 약간 덜어 내어 민역(民役)을 적절히 헤아려 줄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한 초기와 관련하여

22) 공무목(公貿木) : 공목(公木). 조선시대에 외국과의 공무역(公貿易)에 쓰인 무명. 곧 공무목(公貿木)을 말함.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이경여**가 진달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천천히 생각해 보고 한다는 것이지 즉시 그대로 윤허한다는 것이 아닌데도 승지가 어찌 경솔하게 거행 조건(擧行條件)에 낸 것인가. 이 초기는 도로 내주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8일(정해) 맑음 / 서경우를 대사간에 제수하였다

서경우(徐景雨)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18일(정해) 맑음 / 기민을 진휼한 고양 군수 권훈 등에게 포장할 것을 청하는 진휼청의 계

최혜길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인데, 고양 군수(高陽郡守) 권훈(權勛)과 **영평 현령(永平縣令)** 여이항(呂爾恒)은, 제일 잘한다는 명성이 애초부터 있었으며, 서북 방면에서 도망쳐 돌아온 백성들로서 본청에 고한 자 모두가 '행렬이 고양과 **영평**의 참(站)에 이르렀을 때 쌀죽을 먹고서야 가까스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청의 낭청 이수림(李脩林)이 서쪽 방면으로 황주(黃州)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의 진휼 형편을 적간하여 서계(書啓)한 내용 안에, '연로(沿路)의 기읍(畿邑) 가운데 착실한 곳은 고양이 제일이고, 파주 목사(坡州牧使) 김치근(金致勤)과 봉산 군수(鳳山郡守) 조후익(曺後益)은 진휼함이 매우 부적절하여 이미 장(杖)을 쳤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권훈과 여이항 등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포장(褒奬)하여 권선징악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2일(신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저녁에 비 옴 / 평안도 대동 등의 찰방을 개차하고 특별히 선발해서 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이덕수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평안도 대동(大同)과 어천(魚川)은 지난날 대부분 시종신(侍從臣)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남선(南銑)의 장계를 보니, 두 역(驛)의 찰방을 속히 차송해 달라는 일로 여러 차례 치계(馳啓)하였는데, 그 의도는 병화(兵禍)를 수습하는 것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지금 정목(政目)에 새로 제수된 사람을 보니, 모두 문벌이 한미하고 명망이 가벼운 사람들로 피폐한 고을을 복구하는 직임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모두 개차(改差)하고 다음 정사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성부(開城府)는 병화를 혹독하게 입어 굶주림을 구휼하고 농사를 권면하는 일이 하루가 다급합니다. 그런데 유수(留守) **한인급(韓仁及)**은 비록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사유를 갖추어 체차된 뒤에 올

라와야 하는데, 이유 없이 상경해서 임소(任所)로 돌아가지 않아 싫어서 회피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근거 없는 일로서 엄히 추고해야 하니, 우선 개차하고 그 후임을 속히 차출하여 부임을 재촉하소서. 본부(本府)가 병화를 겪은 뒤로 물력이 피폐합니다. 한 고을에 세 명의 관원을 두는 것은 폐해를 끼칠 우려가 없지 않으니 경력(經歷)이나 도사(都事) 중에 1원(員)을 또한 해조로 하여금 우선 품지(稟旨)하여 임시로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5일(갑오) 맑음 / 대군의 사부 등을 계품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치한 사신 등을 추고하라는 비망기

비망기(備忘記)로 이경증에게 전교하기를,

"대군(大君)의 사부(師傅)와 군관 등은 사행(使行)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두 계하받은 사람들인데, 사신 등이 계품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치하였으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 사신을 추고하라. 그리고 형조 판서의 질자(質子)가 병을 핑계로 뒤처진 것과 **서원리(徐元履)**가 원행(遠行)을 면하려고 행보를 지체한 것은 모두 매우 경악할 만한 일이니, 모두 나추(拿推)하여 정죄해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도록 하라. 이경전(李慶全) 또한 추고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서경우의 상소

대사간 **서경우(徐景雨)**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저보(邸報)를 접하고서야 대군의 사부(師傅)를 나추하여 정죄하라는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원리(徐元履)**는 신의 자식인 까닭에 놀랍고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서원리**가 원행(遠行)을 모면하고자 도모한 정황을 신은 실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의 집안은 선조(先祖) 때부터 대대로 국은(國恩)을 받아 오늘날까지 부자 형제가 모두 관직에 나아갔으니, 살갗 하나 털끝 하나도 성상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온 식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하다 죽는다 해도 국은에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는데, 어찌 미천하고 졸렬한 소신이 감히 원행을 면하려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 불측한 죄에 저촉되리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이 평소에 의로운 방법으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죄를 실로 도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은 현재 대사간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형편없고 이미 자식을 가르쳐 집안을 바르게 하지도 못했는데 또한 어떻게 감히 위로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 관리를 규찰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직임을 속히 파직하심으로써 신의 죄를 바로잡으소서. 신은 지극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서원리**가 지방에 있으면서 원행을 면하려고 도모한 것은 경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었으니,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대사헌 김영조 등을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부교리 윤강 등의 차자

부교리 윤강(尹絳), 부수찬 이시매(李時楳) 등이 상차하기를,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병이 위중하여 곧바로 돌아간 것은 형세상 부득이한 것이었고 일찍이 인피한 것으로 본직을 체차당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이므로 인혐할 필요가 없는데, 정원이 계사를 올려 사헌부로 하여금 적발하여 바로잡을 것을 청했으니, 법관의 몸으로 직임에 있기 어려울 듯합니다. 당초 피혐하는 동안에 논열(論列)하는 말이 많았으니 창졸간에 낙향한 것은 도리어 사소한 일이고 동료들이 출사를 청한 것도 잘못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법도상 마땅히 피혐 - 원문 빠짐 - 대사헌 김영조, 지평 최계훈(崔繼勳)은 모두 체차를 명하시고, 장령 오달승·서상리, 집의 강대수, 대사간 서경우는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6일(을미) 맑음 / 장령 정상리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서경우의 계

대사간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사헌부의 많은 관원들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니 사간원에서 의당 처치해야 하는데, 장령 서상리는 바로 신의 3촌 조카이므로 법에 있어 상피해야 합니다. 처치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신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4월 28일(정유) 맑음 / 사간 정태화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행 대사간 서경우의 계

행 대사간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사간 정태화(鄭太和)가 지금 경기 수원(水原)에 있습니다.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윤4월 21일(기미) 비 / 속목을 징수해야 할 인원수와 지급해 주어야 할 인원수에 대해 경중을 헤아려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달 14일 **이경여(李敬輿)**가 아뢴 내용에 대한 본사의 계사에 상께서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장(戰場)에서 도망쳐 흩어진 군사들에게 속죄하는 포(布)를 징수하고서 이 포를 덜어 내어서 시종 종군(從軍)한 사

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본사의 계목으로 인하여 판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한 군사가 가장 불쌍하므로 성상의 하교대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타도의 감사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뜻으로 입계하여 이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당초의 처치가 너무 모호합니다. 대개 흩어진 군사와 전사한 사람,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명수의 많고 적음을 조정에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필수(匹數)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외방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한갓 교활한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바탕이 되어 버려서 설혹 나누어 주어야 할 곳이 생겨도 지급할 필수가 없을 것이니, 처사가 일관되지 않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개탄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양서에서는 이들을 파발군으로 세우게 되니 본디 속목을 징수하여 나누어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각도의 경우에는, '흩어진 군사 몇 명, 종군 몇 명, 전사 몇 명'이라고 모두 실제 숫자로 성책해서 조정에 계문하며, 먼저 행하던 속목을 징수하는 정사는 우선 정지하고, 포를 나누어 주는 것은, 속목을 징수해야 할 인원수와 지급해 주어야 할 인원수의 다과에 대하여 조정에서 경중을 헤아려서 분명하게 분부한 후에 비로소 받들어 거행하라는 뜻으로 하삼도와 강원도, 함경도 등의 감사에게 분명하게 행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사한 군사에게 더 마련해서 제급하라."

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5월 21일(무자) 비 / 조강을 행할 때 영사 김류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조강이 있었다. 영사(領事) 김류(金瑬), 특진관 이필영(李必榮), 참찬관 이경석(李景奭), 대사간 **서경우(徐景雨)**, 동지사 이식(李植), 특진관 김남중(金南重), 지평 최계훈(崔繼勳), 시독관 이시매(李時楳), 검토관 윤강(尹絳), 가주서 윤양(尹瀁), 기사관 유철(兪橃)·김진(金振)이 입시하였다. 《시전》 〈소아〉를 강하였는데 '홍안우비(鴻雁于飛)'에서 '정료삼장장오구(庭燎三章章五句)'까지였다.

- 《옥당일기》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6월 22일(기미) 흐림 / 도목 정사가 있었다

21일과 22일에 도목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김상(金尙)을 승지로, 이필영(李必榮)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이민수(李敏樹)를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오달승(吳達升)을 인동 부사(仁同府使)로, 허직(許稷)을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이명(李溟)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
황전(黃琠)을 **영평 현령(永平縣令)**으로, ……
서경우(徐景雨)를 대사성으로, ……
삼았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6월 24일(신유)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김수현(金壽賢)을 대사헌으로, 서경우(徐景雨)를 대사간으로, 이후양(李後陽)을 장령으로, 임담(林墰)을 정언으로, 이명(李溟)을 함경 감사로 삼았다. - 나머지는 원문 빠짐 -
병비가 최계훈(崔繼勳), 이진(李袗)을 부사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7월 2일(무진)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김수현(金壽賢)을 도승지로, 이덕수(李德洙)를 승지로, 이경석(李景奭)을 대사헌으로, 이목(李楘)을 대사간으로, 서상리(徐祥履)를 장령으로, 윤미(尹敉)를 지평으로, 윤양(尹瀁)을 주서로, 권우(權堣)를 부수찬으로, 조경(趙絅)을 사인으로, 권심(權諗)을 사간으로, 정호인(鄭好仁)을 예조좌랑으로, 이진(李袗)과 최계훈(崔繼勳)을 병조 정랑으로, 황호(黃昈)를 장악원 정으로, 이후양(李後陽)을 사예로, 이계(李烓)를 직강으로, 황익청(黃益淸)을 성균관 박사로, 서경우(徐景雨)를 대사성으로, ……
병비가 이시백(李時白)을 도총관으로, 정문익(鄭文翼)을 부총관으로, 서경우(徐景雨)를 대호군으로, 김상(金尙)을 부사직으로, 남명익(南溟翼)을 부사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7월 7일(계유) 아침에 비 오고 저녁에 맑음 / 충청 수사 이시영 등이 하직하였다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시영(李時英),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후원(李厚源), **영평 현령(永平縣令)** 황전(黃琠), 고성 군수(高城郡守) 이정섭(李廷燮), 순창 현감(淳昌縣監) 유선증(兪善曾)이 하직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8월 8일(계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전식(全湜)은 말미를 받았고, 참의 한흥일(韓興一)은 병이고, 행 도승지 남이공(南以恭)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구굉(具宏)은 나왔고, 참판 이경증(李景曾)은 나왔고, 참의 홍헌(洪憲)은 병이고, 참지 윤순지(尹順之)는 나왔고, 행 도승지 남이공은 나왔다.
이비가 신계영(辛啓榮)을 승지로, 권심(權諗)을 집의로, 최명길(崔鳴吉)을 내의원 도제조로, ……
서경우(徐景雨)를 동지의금부사로, ……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3일(무진)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가 ……
양만고(楊萬古)를 판교(判校)로, 심동귀(沈東龜)를 장령으로, 이홍주(李弘胄)를 훈련도감 도제조(訓鍊都監都提調)로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17일(임오)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을 청하였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임담(林墰), 헌납 임득열(林得說), 정언 서상리(徐祥履)가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하는 일로 - 위에 보인다. - 아뢰니, 속히 정계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2일(정해) 비 / 대사헌 서경우 대신 차관이 참가하겠다는 김육의 계

또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는 사정이 있으니, 차관(次官)이 나아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4일(기축) 맑음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하는 일에 대한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비답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행 대사간 이목(李楘), 장령 임담(林墰), 헌납 임득열(林得說), 지평 조중려(趙重呂), 정언 서상리(徐祥履)·유철(兪橃)이 김자점(金自點) 등을 모두 율문대로 정죄하도록 명하는 일로 - 위에 보인다. - 아뢰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경원(申景瑗)은 구차하게 살아남았다고 말한다면 맞지만 적에게 항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9월 25일(경인) 맑음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행 대사간 이목(李楘), 장령 임담(林墰), 지평 조중려(趙重呂), 헌납 임득열(林得說), 정언 서상리(徐祥履)·유철(兪橃)이 아뢰기를,

"김자점(金自點)은 한 나라의 원수(元帥)로서 팔로(八路)의 군병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여지없이 패배하게 된 것은 실로 김자점의 죄입니다. 김경징(金慶徵)과 진실로 경중의 차이가 없는데, 김경징이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만큼 김자점이 홀로 모면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신경원(申景瑗)은 부원수(副元帥)의 신분으로서 군사를 잃고 포로가 되었으니, 이것이 적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민구(李敏求)는 강도(江都)가 함락되는 것을 좌시하고 빠져나와 도망쳐 살아남았으니, 그 죄는 김경징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관이라는 이유로 차

등이 있는 것처럼 아직껏 형장(刑章)을 모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율문대로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9일(계묘) 맑음 / 이비가 박명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박명부(朴明榑)를 승지로, 남연(南堧)을 공조 정랑으로, 유도삼(柳道三)을 성균관 박사(成均館博士)로, 윤선도(尹善道)를 사도시 정(寺導寺正)으로, **양만고(楊萬古)**를 겸춘추(兼春秋)로 삼았다.
병비(兵批)가 이홍복(李弘福)·안준(安焌)·정척(鄭倜)을 첨지(僉知)로, 한영승(韓榮承)을 소길미리 권관(小吉美里權管)으로 삼았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0일(갑진) 눈 / 김자점 등을 율문대로 정죄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행 대사간 이목(李穆), 집의 심동귀(沈東龜), 사간 임담(林墰), 장령 이후양(李後陽), 정언 서상리(徐祥履)가 아뢰기를,

"김자점(金自點) 등을 모두 율문대로 정죄하도록 명하소서. - 위에 보인다. -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팔도(八道)의 장수들이 머뭇거린 채 죽음을 아까워한 잘못 때문입니다. 당초 논죄할 때에 모두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였으니, 이것이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입니다. 후일에 설령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격려하고 진작시켜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성과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찬(流竄)[23]한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이배하니, 기율이 해이해지고 사체(事體)가 전도됨이 어떠하겠습니까.

심기원(沈器遠)은 일찍이 정묘년(1627, 인조5)에 호우(湖右)에서 검찰사(檢察使)로 있었는데, 그가 규획한 것은 한 번의 웃음거리도 안 되어 남도(南道)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비난하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변란 초기에 원수(元帥)에 임명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비록 수하(手下)가 통솔하곤 하였지만, 제도(諸道)의 군병을 또한 서둘러 권면하고 감독하여 곧바로 산성 아래로 나아가 군부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머뭇거리고 나오지 않아 끝내 국사가 망극해지는 상황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미 직임을 맡아 여러 차례 패배한 장수를 위급할 때 어디에 쓰겠습니까.

심연(沈演)으로 말하면, 평소에 처신하는 것이 본래 취할 만한 일이 없고, 난리에 임해서는 겁을 내어 군율을 어긴 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영남의 수많은 군병들이 사망하거나 궤멸되어 흩어져 여지없이 패배하도록 하였으니, 모두 심연이 일을 그르친 죄입니다. 남방의 인심이 모두 통탄스럽게 여기고 있고 근도(近道)에 정배하는 것도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국가의 보루가 되는 지역에 옮겨 주기를 청하면서 마치 위급할 때에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정에 아무리 인재가 없더라도 어찌 죄만 있고 취할 만한 점이 없는 심연 같은 자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국법이 이와 같이 문란하므로 물

23) 유찬(流竄) : 유배(流配)

정(物情)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심기원과 심연 등을 이배하라는 명을 모두 환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3일(정미) 맑음 / 시소를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와 행 대사간 이목이 아뢰기를,

"신들이 감시관(監試官)으로 시소(試所)에 나아가 참여하였더니, 철전(鐵箭)은 이미 끝나서 방포(放砲)했다가 방목에 누락된 자들만 감독하였는데, 모두 활쏘기로 입격하였습니다. 신들이 미처 몇 발을 쏘았는지 참관하지는 못했으나 출방할 때에 시종일관 함께 참가하였는데, 기록에 누락된 자가 21인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미처 상세히 살펴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신들도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들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4일(무신) 맑음 / 처치해야 할 대사헌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정언 서상리의 계

정언 서상리(徐祥履)가 아뢰기를,

"- 첫머리 원문 빠짐 -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는 바로 신의 숙부입니다. 처치하는 것이 본부(本府)의 소임이기는 하지만, 이미 똑같은 일로 연명(聯名)하여 함께 인피하였으니, 말을 만드는 사이에 실로 혐의스러운 바가 있어 신이 감히 편안한 마음으로 처치할 수 없습니다. 신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18일(임자) 아침에 눈 오고 저녁에 흐림 / 이비가 홍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홍립(洪雳)을 병조 참의로, **서경우(徐景雨)**를 예조 참판으로,
.....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21일(을묘) 맑음 /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장령 서상리의 계

장령 서상리(徐祥履)가 아뢰기를,

"어제 동료가, 이번 무과(武科) 전시(殿試)의 시관이 출방(出榜)할 때에 누락시킨 죄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성상소(城上所)로서 붓을 잡고 초본을 작성했어야 하는데, 신의 숙부 **서경우(徐景雨)**가 바로 그 당시의 감시관(監試官)으로 일찍이 이 일로 인피하여 체차되었지만 응당

논계(論啓) 대상에 넣어야 하니, 신이 감히 편안한 마음으로 직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0월 24일(무오) 맑음 / 이비가 조중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
백대진(白大璡)을 선공감 주부(繕工監主簿)로, 홍석우(洪錫禹)를 공조 정랑으로, 홍서한(洪瑞翰)을 서부 참봉(西部參奉)으로, 임연(林埏)을 순릉 참봉(順陵參奉)으로, 신응익(辛應鈘)을 감찰로, 윤정(尹珽)을 빙고 별제(氷庫別提)로 삼았다.
병비가 김반(金槃)을 대호군(大護軍)으로, 박명부(朴明榑)를 호군(護軍)으로 삼았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4일(무진)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전식(全湜)은 나왔고, 참의 정홍명(鄭弘溟)은 지방에 있고, 좌승지 김상(金尙)은 나왔다.

유정익(柳廷益)을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서경우(徐景雨)**를 호조 참판으로, 유원지(柳元之)를 군자감 주부로, 이성전(李成傳)을 이성 현감(利城縣監)으로, 김수현(金壽賢)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7일(신미)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전식(全湜)은 나왔고, 참의 정홍명(鄭弘溟)은 지방에 있고, 좌승지 김상(金尙)은 나왔다. **서경우(徐景雨)**·이목(李穆)을 승지로, ……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8일(임신) 맑음 / 연향의 일을 정돈하는데 참가하지 않은 가제조인 행 사직 채언규 등을 엄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는 사옹원 도제조의 계

김광욱이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칙사의 행차가 강을 건넌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연향의 일을 기일에 앞서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오늘 남별궁(南別宮)에서 사사로이 예를 익혔습니다만 가제조(假提調)인 행 사직 채언규(蔡彦奎), 행 사과 서득신(徐得信), 행 부사맹 정충직(鄭忠直)과 가낭청(假郎廳)

인 선공감 주부 **백대진(白大璡)** 등이 나아가 참가하지 않았고 행 익창부수(行益昌副守)는 병으로 시종 참가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모두 엄하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이번 가제조는 미천하고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중한 대례(大禮)에 필시 전도되어 예의를 잃는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택하여 차임하게 하고 익창부수 이충생(李忠生)도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11일(을해) 눈 / 신병이 있는 주부 백대진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이비가 아뢰기를,

"선공감의 첩정(牒呈) 내에, 주부(主簿) **백대진(白大璡)**이 병이 중하여 사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이 많은 때에 오랫동안 직임을 방치해서는 안 되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13일(정축) 맑음 / 음관인 이성남을 가승지에 차임할 것 등을 청하는 윤휘의 계

윤휘가 아뢰기를,

"각처의 전위사(餞慰使)를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늙고 병들었거나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거나 파직된 사람을 제외하면 무고하여 남아 있는 자가 많지 않아서 삼망(三望)[24]을 갖출 수 없습니다. 연소한 의빈(儀賓)[25]을 직질(職秩)의 고하에 구애받지 말고 추이하여 아울러 의망하였습니다.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말하면 더욱 아주 적으니, **이성남(李星男)**이 비록 음관(蔭官)[26]이나 이 직임을 감당할 만하니 가승지(假承旨)로 차임하여 보내고 심기성(沈器成)은 공신이니 또한 규례대로 마련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부마(駙馬)는 차견(差遣)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2일(병술) 맑음 / 칙사가 산성에서 사냥할 때 쓸 매와 개는 서울 사대부 집에서 기르는 것을 빌려 쓰게 하겠다는 영접도감의 계

서경우가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24일 세 칙사가 삼전도의 비각(碑閣)을 간심한 뒤에 이어서 산성을 향해 갈 때 사냥하기 위해 좋은 매와 좋은 개 각 3마리를 미리 준비하여 대령하라는 뜻으로 도감에 분부하였으므로 도감이 입계하였는데 해조에 내렸습니다. 지금 병조의 계사를 보니 경기 각 고을 가운데 있는 곳은 독촉하

24) 삼망(三望) : 조선시대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해 운영된 3배수 추천제도
25) 의빈(儀賓) :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駙馬)를 관제상(官制上) 지칭한 말.
26) 음관(蔭官) : 조선시대 공신 및 고위 관원의 자제(子弟)로서 음직(蔭職)이 제수된 자.

여 대령하게 하였는데, 다만 생각건대 각 고을에서 매와 개를 올려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 만약 삼전도에 미치지 못하면 필시 꾸짖으며 나무라고 성내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병조로 하여금 서울의 사대부집에서 기르는 매와 개를 빌려 쓰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2일(병술) 맑음 / 영위사와 전위사가 부족하므로 발행이 임박하여 다시 부표하여 들인다는 김상의 계

김상이 아뢰기를,

"재신(宰臣)으로 서울에 있는 무고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영위사(迎慰使)[27]와 전위사(餞慰使)를 겨우 채워 차임하였는데 벽제 전위사(碧蹄餞慰使) 임광(任絖)은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 낫지 않았고 안주 전위사(安州餞慰使) 홍립(洪霖)은 황해 감사에서 체임(遞任)되어 올라왔는데 전의 병이 더 심해져 아직도 사은숙배를 하지 않았고 중로(中路)에서 문안하는 가승지(假承旨) **이성남(李星男)**은 일찍이 산성에 있을 때 낙마하여 중상을 입어서 기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 상소를 와서 올리기도 하였는데 사람들이 함께 아는 병이므로 발행(發行)이 임박하여 추이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부표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3일(정해) 맑음 /

27) 영위사(迎慰使) :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맞아 접대하고 위로하는 사신.

서울과 경기 각 고을에서 매나 개를 빌려 쓸 곳이 없다는 병조의 계

서경우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영접도감의 계사에 '병조로 하여금 서울의 사대부 집에서 기르는 매와 개를 빌려 쓰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매나 개가 있는 서울의 사대부 집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영접도감의 계사로 인하여 경기 각 고을에서 매와 개를 올려 보내도록 입계하여 윤허를 내리셨으므로 위의 뜻을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각 고을에서 매와 개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빌려 쓸 곳이 달리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3일(정해) 맑음 / 무오년 등에 포로가 되었다 도망해 돌아온 자를 붙잡아 보내는 일을 의처하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청병(淸兵)이 잃어버린 마필의 일과 무오년(1618, 광해군10), 정묘년(1627, 인조5) 등 해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이번에 도망해 돌아온 자를 붙잡아 보내는 일을 참작하여 거행해야 할 듯하니, 비국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5일(기축)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몇 명의 차비군 등이 와서 역을 하였는지 등을 묻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칙사가 나왔을 때 차비군(差備軍)과 수리군(修理軍) 등은 몇 명이 와서 역(役)을 하고 몇 명이 포(布)를 바치는가? 납부한 가포(價布)는 1명당 몇 필인가? 근년에 김자점(金自點)이 재목과 기와를 마련해서 지난해 강도(江都)로 이송하였는데 그 재목과 기와가 남아 있는가? 모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상대장에 계하된 익흥군 이응순을 추고하고 다른 대장으로 다시 부표하겠다는 병조의 계

서경우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익흥군(益興君) 이응순(李應順)이 상대장(廂大將)으로 계하된 뒤에 신병을 핑계 대고 끝내 와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한 것이 이와 같으니 사체상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 이응순을 추고하고 다른 대장으로 다시 부표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영접도감에게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묘당으로 하여금 급급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영접도감으로 하여금 잘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6일(경인)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의 복색은 《오례의》에 따라 마련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김상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원의 분부 내에, '칙사가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나 보려고 하니 착용할 복색을 예조로 하여금 정탈[28]하여 호조에 이문[29]하게 하라.'고 한 분부에 근거하여, 《오례의(五禮儀)》를 살펴보니, 〈내상재선조(內喪在先條)〉에 친자(親子)는 담제(禫祭)부터 재기(再朞)까지 무양적색흑단령(無揚赤色黑團領),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군의 복색은 이에 따라 마련하여 만들어 들이라는 뜻으로 호조에 이문

28)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裁決). 또는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29) 이문(吏文) : 조선시대 중국과 교환하던 특수한 외교문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한문(漢文)의 문체(文體). 한문의 골격에 중국의 속어(俗語) 또는 특수한 용어 등을 섞어 쓴 공문서식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군기시의 토목군과 매탄군도 삼남의 궤산한 군사로 수효로 정해서 이급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서경우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인견하였을 때 이시백이 아뢰기를, '호남의 궤산한 군사를 상께서 경성(京城)의 어떤 역(役)에 조용(調用)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군기시에서 염초를 구워 만들 때의 토목군과 매탄군을 본시에서 마련해 낼 길이 전혀 없으니 호남의 궤산한 군사를 덜어 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해조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삼남의 궤산한 군사를 당초부터 비국이 헤아려 처리하였으니 이번 군기시의 토목군과 매탄군도 비국으로 하여금 수효를 정해 이급(移給)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해서의 궤산한 군사를 운을 나누어 들여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남의 궤산한 군사를 헤아려 처리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의주는 상의하교대로 들여보내지 말고 해서의 궤산한 군사를 운(運)을 나누어 들여보내는 것이 일이 매우 편리하고 마땅합니다. 호남의 궤산한 군사로서 이미 분정한 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修築)하는 자가 2700명이고 훈련도감과 총융청의 매탄(埋炭)에 종사하는 자가 200명이고 강화(江華)에서 수리하는 자가 900명이고, 영접도감의 차비군(差備軍)이 1150명인데, 다만 1개월의 가포(價布)만 거두면 아직 1개월 치가 남습니다. 이미 파발을 담당하는 자가 839명이고 응당 파발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자가 470명입니다. 이러한 명수를 계산하여 제하면 남아 있게 될 군사는 다만 2970명뿐인데 도감의 차비군으로서 아직 1개월 치가 남아 있는 자를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면 4120명이 됩니다. 경성 근처에서 어떤 역(役)에 조용(調用)하는 일 및 훈련도감의 염초(焰硝)를 구워 만드는 곳에 나누어 주는 일은 모름지기 일을 맡은 신하와 함께 그 공역(功役)의 대소를 상의한 뒤에야 파정(派定)할 수 있는 것이니, 날짜별로 안배하여 통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시녀는 관계된 것이 중대하므로 탑전에서 진계할 것이라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도승지 윤휘가 어제 명을 받들고 관내(館內)로 달려가 문답한 설화(說話)를 묘당에 말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시녀 한 항목은 관계된 것이 중대하므로 신들이 지금 청대(請對)하였으니 마땅히 탑전에서 진계할 것입니다.

향화인(向化人)[30] 및 포로가 되어 강을 건넌 뒤에 도망한 사람, 당인(唐人)으로서 도망한 사람, 통사(通事)로서 도망한 사람을 지금 본도에 행회하여 조사해 내도록 하였습니다만 상의하는 동안에 현재 아직 조사해 보고하지 않아 실로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캔 갑산(甲山) 사람을 본도로 하여금 급급히 붙잡아 보내게 하였으나 길이 대단히 멀어 미처 치보(馳報)하지 못하였습니다. 철산(鐵山)에서 말을 훔친 사람은 이미 붙잡아 보냈는데 만약 서울에서 벌을 행한다면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니 지금 마땅히, 이미 붙잡았으면 잡아 보내게 하고 만일 미처 출발하기 전이면 마땅히 도착할 곳에서 붙잡아 고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중로에 붙잡아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철산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대접한 자는 현재 아직 조사해 내지 못하였으니 조사해 낸 뒤에 치죄할 것이라는 뜻으로 도감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철산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른 나머지 일은 어제 이미 처리하였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철산 부사 지학해 등을 패초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

30) 향화인(向化人) : 야인(野人), 왜인(倭人)으로서 투화(投化)해 온 사람. '향화(向化)'는 덕화(德化), 교화(敎化)의 뜻으로 문명 사회의 어진 정치를 기려 스스로 찾아와 귀화하는 것을 의미함.

"철산 부사(鐵山府使) 지학해(池學海)와 안주 판관(安州判官) 송사호(宋士豪)를 패초하여 숙배하도록 하고 오늘 안으로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7일(신묘) 진눈깨비가 내림 / 칙사가 인평대군을 만나 보려하므로 상견 날짜 등에 대해 미리 품처할 것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김상이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은 공일이므로 전례에 따라 다담(茶啖)을 진정(進呈)하니 각기 그 방에서 받았습니다. 또 모레는 국기(國忌)여서 상께서 연회를 베풀 수 없으므로 재신(宰臣)을 보내 연회에 배석(陪席)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다만 듣건대 칙사가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나 보려고 한다고 하니 어느 날 상견할지와 응당 행해야 할 예절을 예관으로 하여금 미리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상견할 때는 증물(贈物)이 있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인평대군이 탈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칙사를 만날 때 다례만 행하고 예단을 올릴 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영접도감의 계사에, '칙사가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나 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 상견할지와 응당 행할 예절을 예관으로 하여금 미리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 상견할 때는 증물(贈物)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대군이 지금 아직 탈상(脫喪)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례(宴禮)는 행할 수 없을 듯하니 다례(茶禮)만 행하고 예단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들으니 칙사가 그믐날에 출발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믐날에 정말 출발한다면 내일이 비록 국기(國忌)이나 상견례(相見禮)를 행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유림은 그대로 중화에 머물러 칙사 행차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영접도감의 계사에 묘당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림을 도로 배소로 보내는 일은 어제 이미 복계하였는데 정명수(鄭命守)가 반복해서 간절히 진술한 말은 그의 뜻에서만 나온 것이 아닌 듯하니, 그대로 중화에 머물러 있어 칙사의 행차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연로(沿路)에서 절은(折銀)하는 일은 일후의 끝없는 폐단에 관계되니 죽을힘을 다해 극력 쟁집(爭執)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황제가 백금(白金)을 돌려보내고 특

별히 칙서를 내려, '이 때문에 명을 받들고 왕래하는데 어찌 빙자해서 뇌물을 받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혹간 한두 명이 법도를 넘어서 얻기를 탐하는 자가 있으니 짐도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다만 뇌물을 주면 사정(私情)에 따라 보답하는 자나 뇌물을 주지 않으면 문득 모함을 도모하는 자는 실로 없다. 지금 짐이 왕에 대해서 이미 두 나라는 한집안이 되었고 의혹이 모두 풀렸으니 지금 이후 무릇 만족을 모르고 탐내는 무리로서 이치를 벗어나 사사로이 토색(討索)[31]하는 자가 있으면 허여(許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은 주문(奏聞)하라. 바로 이때 만약 알고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짐이 왕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특별히 유시한다.……'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말을 잘 만들어 유시하기를, '황제께서 칙서 중에 이르기를, 「사신을 접대할 때는 남조(南朝)의 구례(舊例)를 어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조 사신이 왕래할 때는 기생을 가까이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칙사가 황제의 명이라고 말하므로 감히 어기지도 못하고 전례가 없는 일을 처음 만들어서 한다면 혹 황제께 죄를 얻을까 두려우니 이미 매우 온당치 않다. 이번에 절은하는 일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의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황제의 칙서 중에 이와 같이 간곡하게 경계하였으니 소방(小邦)은 설령 이것으로 인해 황제께 죄를 얻는다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스스로 해명하겠는가. 절은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소방의 물력으로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상(進上)하는 물품도 모양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황제의 명이라고 한다면 소방도 장차 사유를 갖추어 주문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실상을 주달(奏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들으니 7곳의 참(站)에서 은기(銀器)를 또한 말한 바대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오히려 할 수 있지만 뒤에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한결같이 뜻을 낮추어 애걸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황제의 칙서 중의 내용으로 반복해 변론하면 혹 들어줄

31) 토색(討索)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함.

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쟁집하는 말은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 접대를 담당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 뜻으로 다시 좋은 말로 쟁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8일(임진) 맑음 / 혼인할 여자를 부표한 단자에 대해, 심기원의 딸을 8세로 기록한 이유를 묻는 전교

혼인할 여자를 부표(付標)한 단자와 관련하여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심기원(沈器遠)의 딸을 전일에 인견하였을 때 이미 8세가 지났다고 계달하였는데 어째서 8세로 썼는가? 다른 여자의 나이도 자세히 살펴서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부총관 이행원이 분군하는 일로 내병조에 나아가겠다는 도총부의 계

서경우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이행원(李行遠)이 분군(分軍)하기 위해 회동(會同)하는 일로 표신(標信)[32] 없이 내병조(內兵曹)에 나아가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정주 사람 봉영운이 절충장군에 뜻이 있으므로 참작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의 계

서경우가 영접도감 낭청이 전하는 우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 역관(鄭譯官)이 말한 정주(定州) 사람 봉영운(奉永雲)은 그 직역을 물어보니 이미 사과(司果)를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있는 듯하니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 - 이하 원문 빠짐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혼인 단자는 저녁에 형세를 보아 올려 보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혼인 단자를 지금 정사(淨寫)하여 영접도감에 보내야 합니다. 우선 조금 지연시켜 저녁에 형세를 보아 올려 보이도록 하라는 뜻으로 접대를 담당한 신하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32) 표신(標信) : 조선시대 궁중의 급변을 전할 때나 궐문을 드나들 때 표로 지닌 신분증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우의정 신경진이 정명수와 문답한 말은 허다한 말이 사실에 의거해 답한 것이라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삼가 우의정 신경진이 정명수와 문답한 말을 보니 허다한 말이 다 이미 사실에 의거해 답한 것이고 그중 시녀, 혼인, 두목에 대해 절은하는 등의 일은 이미 도감으로 하여금 쟁변(爭辯)하게 하였는데 결말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궁중에서 거두어 기르는 한 사안은 신들도 지금 비로소 들었습니다. 만약 다시 제기한다면 도감으로 하여금 아뢰어서 답하겠다는 뜻으로 정명수에게 개유(開諭)하게 한 다음 그 답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 뜻을 접대를 담당한 신하들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궁중에서 거두어 기른다는 일은 분명 허언(虛言)이니, 아뢰겠다고 답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본사의 문낭청으로 대시를 지낸 조중려에게 모시고 가게 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예조의 회계에 **인평대군**이 가서 칙사를 만날 때 본사의 문낭청 중에서 대시를 지낸 사람으로 하여금 모시고 가게 한 일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본사의 낭청으로 대시를 지낸 자 2원 중에서 임담(林墰)은 납향 대제(臘享大祭)에 차출되어 청재(淸齋)에 들어갔고 조중려(趙重呂)는 막 출직(出直)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니 **인평대군**이 이미 관소로 갔다고 하니 조중려로 하여금 즉시 달려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비문은 이경석이 지은 것만 보낼 것인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조희일이 지은 것은 보내지 말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경석이 지은 것만 보냅니까, 장유가 지은 것과 아울러 보냅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유가 지은 것도 보내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장유가 지은 비문을 정서한 단자에 잘못 쓴 곳과 누락된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장유(張維)가 지은 비문을 정서한 단자와 관련하여 '잘못 쓴 곳이 있고 또 직역(職役)과 성명을 어째서 쓰지 않았는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급한 가운데 미처 잘 살피지 못하여 누락된 글자가 있게 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직역과 성명은 칙사의 행차 편에 부쳐 보내서 취사(取捨)가 정해진 뒤에 돌에 새겨 넣을 때 새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써넣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비문 2장을 어제 탑전 하교(榻前下敎)에 따라 즉시 칙사에게 보낼 것인데 3인 가운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을 보냅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대신이 택정(擇定)하여 보내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부제학 이경석 등이 지은 삼전도비문을 도감에 보내서 칙사에게 올려 보이겠다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대신으로 하여금 가려 보내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부제학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과 전 부사(府使) 조희일(趙希逸)이 지은 것 2장을 모두 도감에 보내서 칙사에게 올려 보이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조희일이 지은 것은 보내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두목에 대해 절은하는 일은 도감에서 적절히 마련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두목에 대해 절은하는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게 하였다. 속히 회계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삼가 도감의 계사를 보니 두목들이 큰 욕심이 생긴 뒤이니 반드시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종 막는다면 출발할 때에 다다라 필시 난처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니 도감으로 하여금 다시 따져 말하여 적절히 마련하여 그 욕심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배호할 사람을 품처할 것을 청하는 김상의 계

김상이 아뢰기를,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오늘 가서 칙사를 만나야 하는데 인접(引接)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본디 봉례(奉禮)가 담당하지만 반드시 배호(陪護)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할 때에 실수할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급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29일(계사) 맑음 / 인평대군이 칙사를 만날 때 배호할 사람은 비국의 문낭청 중에서 대시를 지낸 사람으로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인평대군**이 오늘 가서 칙사를 만나야 하는데 인접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본디 봉례가 담당하지만 반드시 배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할 때에 실수할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급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정원의 계사에 깊은 뜻이 있으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배호하는 사람은 본조에서 차정(差定)하기가 어려우니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국의 문낭청(文郎廳) 중에서 대시(臺侍)[33]를 지낸 사람으로 하여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1월 30일(갑오) 눈 / 징병을 허락받았다는 사은사의 장계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33) 대시(臺侍) : 대간(臺諫)으로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맡아보던 직분. 또는 그런 사람.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삼가 사은사(謝恩使)의 장계를 보건대 징병(徵兵)하는 일을 쾌히 허락하였으니 진실로 지극히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자와 대군(大君)의 환국을 청한 일은 비록 즉시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지(辭旨)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가망이 있어 낙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병을 허락받은 일은 한 나라의 큰 경사이고 세자의 일은 온화한 칙지가 간곡하였으니 칙사를 접견한 때 상께서 감격스럽고 기쁜 뜻을 별도로 표시하고 특별히 술잔을 들도록 권하시고 또 예물을 별증(別贈)하여 기뻐 사례하는 뜻을 표시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일(을미) 흐림 / 안주에서 포로로 잡혔다 도망친 천일 등을 아산에서 잡아 압송해왔으므로 중로에 추송할 것인지를 묻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전연 때 안주(安州)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친 사람을 잡아 주는 일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아산(牙山)에서 잡은 중 천일(天一)과 천신(天信) 등 두 사람을 오늘 비로소 압송해 왔습니다. 전일 충청 감사가 보고한 것으로 보건대 이 두 사람은 모두 억울한 경우에 해당되니 혹 뜻밖의 재앙을 당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어제 상께서 중로(中

路)에 추송하라고 답하셨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저가 꾸민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중로에 추송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일(을미) 흐림 / 헌납 조수익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헌납 조수익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번을 바꿀 선운의 군병을 규례대로 별시재를 하여 상을 줄 것인지를 묻는 어영청의 계

서경우가 어영청(御營廳)[34]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本廳)의 군병이 번(番)의 차례를 바꾸어 교대할 때 난리 전에는 으레 병조가 합동으로 별시재(別試才)를 하여 상을 주는 규례가 있었습니

34) 어영청(御營廳) : 조선 후기 중앙에 설치된 오군영(五軍營) 중 왕을 호위하던 군영.

다. 선운(先運)[35]의 군병은 12월 16일에 번을 바꾸어야 하는데 전례(前例)의 시재(試才)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하라. 그중 난리에 싸우러 달려가지 않은 자는 시재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정조사 방물표에 다시 써서 가져간다는 글은 잘못 쓴 것이므로 단자에 부표하여 들이겠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정조사의 방물표를 가져갈 금군의 마패에 대한 단자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방물표는 서울에서 다시 써서 보내는가? 어찌하여 다시 써서 가져간다고 말하는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다시 써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물인 석자(席子)를 받아 가지고 갈 금군의 마패에 대한 일인데 병조의 파상(把上)에 '방물표를 다시 써서 가져갑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정청(政廳)에 나아갔을 때 하리(下吏)가 살피지 못하고 병조의 파상에 따라 이와 같이 잘못 썼으니 단자에 부표하여 들이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35) 선운(先運) : 먼저 가는 부대(部隊).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황해 감영과 병영에서 물선을 실어 가는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일에 의주(義州)에서 올려 보낸 북쪽으로 갈 쇄마(刷馬)[36]의 별단에 대해서 전교하기를, '물선(物膳)은 평안도에서 으레 들여보내는데 황해 감영과 병영에서도 물선을 실어 가지고 가는 일이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황해 감사와 병사(兵使)에게 본사(本司)에서 행이(行移)하여 물었습니다. 지금 황해 감사가 본사에 첩보(牒報)하기를, '지난 7월 27일에 성첩(成貼)[37]한 배종(陪從)한 재신(宰臣)의 이문 내에 「동궁(東宮)과 빈궁(嬪宮)에게 날마다 쌀과 찬을 진배하는 사람 및 허다하게 왕래하는 사람에게 수응(酬應)하는 면피(面皮)를 모두 남초(南草)로 하고 있는데 전일에 저축한 것을 이미 남김없이 다 썼으니 매우 근심됩니다. 생각건대 올해 새로운 남초가 이미 정제되었을 것이니 이러한 절박한 일을 생각하여 편리한 대로 넉넉한 수량을 마련하여 삭선(朔膳)[38]과 일시에 들여보내되 황해도가 평안 감사에게 수송하여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마땅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장계의 봉과(封裹)[39] 및 수라에 쓸 유지(油紙)도 몹시 부족하니 넉넉한 수량을 마련해 들여보내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초와 지속(紙束)을 간략히 마련해 보내고 수라에 쓸 물선 약간을 실어 나를 말 값과 함께 평안도에 들여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보고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감히 아룁

36) 쇄마(刷馬) : 조선시대 지방에 배치한 관용의 말 또는 이러한 말의 이용을 규정한 법. 주로 사신의 왕래나 진상품의 운반 및 지방관 교체시에 이용됨.
37) 성첩(成貼) : 문서에 관청의 도장을 찍음.
38) 삭선(朔膳) : 매달 초하루에, 각 도(道)에서 나는 산무로 음식(飮食)을 차려서 임금께 올리던 밥상
39)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응당 구해야 할 물품이 몹시 부족하니 해조에 이문하여 취해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와 같이 사사로이 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부호군 이명웅을 나추하라는 비망기

비망기로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부호군 이명웅(李命雄)의 죄범은 이회(李禬)와 다름없으니 일체로 나추(拿推)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정사를 해야 하는데 이비에 나아갈 승지가 없으므로 심액과 김상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오늘 정사를 해야 하는데 도승지 윤휘, 우승지 심액, 좌승지 김상이 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부승지 김광욱은 어제부터 한질(寒疾)을 중하

게 앓았는데 지금 직방(直房)에 있습니다만 공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 **서경우**가 병비(兵批)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원(本院) 중에는 우부승지 이홍망만 있으니 이비(吏批)에는 나아갈 승지가 없습니다. 심액과 김상을 모두 패초(牌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옷을 얇게 입은 군사에게 옷을 지급하라는 비망기

비망기로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추우니 병조로 하여금 옷을 얇게 입은 군사(軍士)를 뽑아 옷을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일(병신) 맑음 / 병비가 윤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병비가 윤방(尹昉)을 영중추부사로, 정두원(鄭斗源)을 지사로, 이봉선(李逢先)을 고산리 첨사(高山里僉使)로, 여이징(呂爾徵)·민인길(閔仁佶)을 동지로, 유광춘(柳光春)을 오위장으로, 이익선(李益善)을 우림장으로, 최극녕(崔克寧)을 무겸(武兼)으로, 이명(李溟)을 대호군으로, 허계(許啓)를 호군으로, 윤순지(尹順之)·이성신(李省身)을 사직으로, 정운호(鄭雲湖)·**조경(趙絅)**을 부호군으로, ……

이기남(李箕男)·유성일(柳誠一)·박시량(朴時亮)을 부사과로, 이사룡(李士龍)·이영달(李英達)을 사맹(司猛)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4일(무술) 맑음 / 포로로 잡혔던 사람 천신을 데려가는 일이 지체된 이유를 보고하는 병조의 계

서경우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포로로 잡혔던 사람 천신(天信)을 데려갈 금군의 마패(馬牌)에 대한 단자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이 일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칙사가 머물러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무얼 하느라 이제야 하는가?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이 지체하였는가? 물어서 아뢰라.'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사람인 천신을 데려가는 일은 지난밤에 승전을 받든 뒤에 즉시 내삼청(內三廳)의 패두 장무(牌頭掌務)를 불러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1인을 가려 정하게 하였는데 내금위(內禁衛)는 2인이 연이어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고 겸사복(兼司僕)은 1인이 이미 사명을 받들고 나갔으므로 차례가 된 우림위(羽林衛) 이희증(李希曾)을 차송(差送)하되 저가 비국에 가 분부를 들은 뒤에 즉시 파상(把上)을 걸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9일(계묘)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빌려 왔다가 쓰지 않은 사복시 등의 은자를

봉하여 도로 보내겠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칙사가 나왔을 때 쓸 은자(銀子)가 부족할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어 사복시, 훈련도감, 총융청의 은자를 빌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조에서 주선하여 썼고 각 아문의 은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봉(封)하여 쓰지 못하게 하고 도로 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0일(갑진) 맑음 / 감영의 아전을 난타한 사축서 관원을 추고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윤이지(尹履之)의 이문(移文)을 보니 사축서(司畜署)[40]의 관원이 경기에서 나누어 기르던 생저(生豬)를 제때에 받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감영의 아전을 잡아가 난타(亂打)하였다고 합니다. 방면(方面)의 신하는 사체(事體)가 자별하여 육조(六曹)의 아문이라도 서로 공경해야 하는데 해사(該司)의 관원이 감영의 아전을 잡아가 곤장을 친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해당 관원을 추고하여 치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40) 사축서(司畜署) : 조선시대 잡축(雜畜)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반송사 등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점목에 대해, 칙사의 행차가 강을 건너갔는데 비국이 이와 같이 회계하는 이유를 묻는 전교

반송사(伴送使) 등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점목(粘目)과 관련하여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칙사의 행차가 지금 이미 강을 건넜는데 비국은 어찌 이와 같이 회계(回啓)하였는가?"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직임이 다른 것에 따라 요를 제급하는 일은 계속하지 않을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향실(香室) 충의위(忠義衛)에게 참상(參上) 요(料)를 제급(題給)하는 데에 대한 정원의 계사와 관련하여 해조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소각사(小各司)의 관원이 분주히 직임을 수행한 노고는 충의위의 몇 배가 되는데 모두 참하(參下) 요를 받습니다. 향실 충의는 진실로 한가한 직임인데 무슨 분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요미(料米)를 더 줍니까. 정원은 향실 충의와 자주 상접하여 빈한하고 몹시 고생을 겪는 것만 알고 허다한 참하관(參下官)이 모두 어렵게 먹고사는 근심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

다. 사람마다 더 준다면 나라의 재정이 지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임진년(1592, 선조25) 이후의 종전의 규례를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경비는 이치상 절손(節損)해야 할 것이니 한결같이 해조가 준 직임에 따르고 다른 것에 따라 제급하는 것은 계속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2일(병오) 맑음 / 반송사의 장계에 대한 호조의 점목에 대해, 부사가 안주에 도착하였으니 이 공사는 시행하지 말라는 전교

반송사[41]의 장계에 대해 호조가 올린 점목과 관련하여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부사가 이미 안주(安州)에 도착하였으니 이 공사는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3일(정미) 맑음 / 사관 등을 대기시키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사관 2원을 대명(待命)시키고 기마(騎馬) 6필을 대기시키라."

41) 반송사(伴送使) : 중국의 사신을 호송하던 임시 벼슬.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3일(정미) 맑음 / 장계를 뒤이어 보내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하다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반송사(伴送使) 등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점목(粘目)과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칙사의 행차가 지금 이미 강을 건넜는데 비국은 어찌 이와 같이 회계하는가?' 하셨습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칙사의 행차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천일(天一)을 밤낮없이 압송(押送)해 가더라도 필시 통원보(通遠堡)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초에 이 뜻으로 복계(覆啓)[42]하려 하였으나 그 장계만을 보건대 저들이 이미 천일과 천신(天信)의 이름을 아울러 들어 말하였고 추후에 통원보에 보내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반송사가 '심양(瀋陽)이라도 또한 들여보내야 할 것인데 어찌 의주(義州)에 도착하고 통원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단 말입니까.……'라고 답하였습니다.

심양이라도 또한 들여보내야 할 것이라는 말은 실로 경솔합니다. 또 이 장계가 천신을 압송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고 피차의 문답이 이미 두 사람을 아울러 들어 반드시 보내겠다는 뜻으로 말하였으니 뒷날 또한 필시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뒤이어 보내게 하였는데, 비록 미처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뒷날 수답(酬答)할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은데 신들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

42) 복계(覆啓) : ①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아룀 ②사형(死刑)에 해당(該當)하는 죄인(罪人)의 옥안(獄案)을 다시 심사(審査)하여 임금에게 아룀

므로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송사와 평안 감사가 연명으로 올린 장계에 또 안주(安州)에서 잃어버린 포로로 잡혔던 사람의 일로 공갈하여 마지않았다고 하였으니 뒷날의 일이 염려됩니다. 천일을 우선 내려 보내지 말고 그대로 경옥(京獄)에 가두어 두고 기다립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반송사가 들어온 뒤에 자세히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칙사가 나왔을 때 쓰고 남은 잡물을 별단으로 서계한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칙사가 나왔을 때 쓰고 남은 잡물을 별단으로 서계합니다. 이것은 본조에 있는 잡물이고 그 밖에 도감과 사옹원의 쓰고 남은 잡물은 바로 해사(該司)[43]에 내려 회록(會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 숫자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감이 방에 배설(排設)한 잡물 중 긴요한 물건은 모두 가지고 갔고 남은 것은 상탁(床卓), 기명(器皿), 차장(遮帳), 포진(鋪陳) 등의 물건뿐입니다. 이것은 전례에 따라 태평관(太平館)의 관원으로 하여금 장치(藏置)하여 관리하게 하고 가가(假家)는 그대로 보존하여 뒷날 사용할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守直)하는 사람이 없으면 개초(蓋草)와 고목(柧木)이 모두 도둑맞아 끝내는 하나의 목재도 남지 않는 지경에

43) 해사(該司) : 그 관청(官廳)

이를 것이니, 이것은 전일에 이미 시험하였던 일입니다. 각청(各廳)의 가가를 모두 훼철(毁撤)하여 남별궁(南別宮)에 장치해 두고 - 원문 빠짐 - 돌아가며 생기(省記)에 넣어 수직하도록 하는 것을 - 원문 빠짐 - 본조에서 쓰고 남은 것은 별도로 하나의 창고를 설치하여 두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개초는 화재가 염려되니 들여다 쌓지 말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사은사 일행이 역마를 분정한 공사를 가져가는 데 대한 마패 단자에 대해, 역마를 분정하는 공사를 들이라는 전교

사은사 일행의 역마를 분정한 공사를 가져가는 데 대한 마패(馬牌) 단자와 관련하여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이 역마를 분정하는 공사를 들이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지평 유심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지평 유심, 대사간 김영조, 정언 엄정구가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서경우의 계

또 아뢰기를,

"대사헌 유백증(兪伯曾), 집의 조석윤(趙錫胤), 장령 조중려(趙重呂)는 지방에 있고 1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지평 유심·이진은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이문을 아는 학관 1원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낭청이 전하는 사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일행이 저쪽에 도착하여 만일 정문(呈文)할 일이 있으면 이문(吏文)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학관(學官) 1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4일(무신) 맑음 / 몽고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 등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몽고(蒙古)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을 지금 막 처리하려는데 저쪽의 사정을 자세히 안 다음에라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은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만 이미 초생(草生)을 시기로 삼았는데 초생의 때는 3, 4월 동안입니다. 미리 값을 보내서 모춘(暮春)에 맞춰 사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리 밖에서 오느라 분급(分給)할 즈음에는 농사철이 지났기가 쉬우니 바로 멀리 있는 물이 가까이에 생긴 화재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들으니 저쪽의 소 값이 자못 높다고 하니 비록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으나 대개 계산해 보면 수천 금(金)을 가지고 가더라도 사는 숫자는 필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취하는 것은 청서피(靑黍皮), 청포(靑布) 등의 물건인데, 청포는 저축되어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서피는 칙사의 행차가 사 가는 바람에 거의 다 없어져 그때도 다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사서 얻는다 하더라도 필시 넉넉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설혹 넉넉한 숫자를 찾아 보낸다 하더라도 장차 저들이 욕심낼 길만 열어 줄 것이니 뒤에 어떻게 이어 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심양의 쇄마(刷馬)도 오히려 어려운데 더구나 심양을 지나서 절원(絶遠)한 곳에 있는 것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면포(綿布)나 지지(紙地)나 지삼(枝三) 등의 물건을 수운(輸運)할 때 쇄마를 요구하여 대기시키는 것은 일이 심히 쉽지 않고 필시 농사철에 미치지도 못할 소를 얻기 위해 다소의 물력(物力)을 다 써서 저들이 욕심낼 길만 열어 놓고 뒷날의 폐단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의로 헤아려 볼 때 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록 허락하였으니 사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가물(價物)을 적절

히 처리하여 때에 다다라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심양의 쇄마의 값은 이미 일체 같다고 하였는데 심양을 지나는 값이 몇 배 될 것이니 필경 십수 필의 말만 보낸다 하더라도 가목(價木)이 십수 동(同)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해 보건대 차라리 말을 사서 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마부(馬夫)는 양서(兩西)로 하여금 분정하여 보내게 하고 별도로 길러 보호하도록 하며 나온 뒤에 산 말을 양서의 역에 분급하면 쇄마에 대해 값을 소비하는 폐단은 없고 길이 공가의 쓸 것으로 삼게 될 것이니 또한 양쪽으로 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을 그만둘 수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몽고의 말을 무역하는 일과 같이 하면 뒷날 몽고가 트집 잡아 말하여 왕래하며 무역하는 폐단이 이루 다 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나라 재력이 탕패(蕩敗)되었으므로 멀리 몽고에서 사지 못한다고 말하고 심양에서 약간의 우척(牛隻)을 사 얻는다면 현재의 허비가 없을 수 있고 또 뒷날의 환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성상의 재결을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우역(牛疫)이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거의 절종(絶種)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실로 절박한 재앙이고 더할 수 없이 큰 근심이다. 내년이 지난 뒤에도 마련해 낼 곳이 없으니 비록 농사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넉넉한 숫자를 사 와서 앞으로 경작하고 자식(孳息)할 바탕으로 삼으라. 굳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염려하여 백성의 먹을 것을 궁핍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일은 황제의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말한 것과는 또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말을 사는 일은 매우 편리하고 좋으니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병비의 정청에 나아갈 인원이 없으므로 좌부승지 김상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윤휘의 계

윤휘가 아뢰기를,

"우승지 허계와 동부승지 김광욱이 대간이 피혐 내용에 속이고 은폐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하여 - 원문 빠짐 - 감히 공무를 행하지 못하고, 좌승지 **서경우**는 직방(直房)에 있으나 또한 한질(寒疾)로 공무를 행하지 못하고, 우부승지 이홍망은 소분(掃墳)하기 위해 나갔으므로 본청(本廳) 중에 소신만 있을 뿐입니다. 병비(兵批)의 정청(政廳)에는 달리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좌부승지 김상은 사가(私家)의 기일(忌日)인데 지금 이미 제사를 지냈으니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우승지 허계와 동부승지 김광욱을 즉시 명초할 것을 청하는 윤휘의 계

윤휘가 아뢰기를,

"승지는 비록 대간의 논박을 받았더라도 직방(直房)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대로 퇴귀(退歸)하지 못하는 것이 전해내려 온 구례(舊例)입니다. 그런데 우승지 허계와 동부승지 김광욱은 대간이 피혐한 계사 중에 '속이고 은폐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였다.'는 등의 말로 인해 서로 이어

서 나갔고, 좌승지 **서경우**도 한병(寒病)을 앓아 아침에 이미 나가 청중(廳中)에는 좌부승지 김상만 있습니다. 이것은 전고에 없었던 일이니 사체상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허계와 김광욱을 즉시 명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내일 명초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대사헌 유백증(兪伯曾), 집의 조석윤(趙錫胤), 장령 조중려(趙重呂)는 지방에 있고 1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지평 이진(李袗)·유심(柳濬)은 피혐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5일(기유) 눈 / 명초한 홍명일이 나아왔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홍명일(洪命一)을 명초하니 나아왔습니다. 또 상피(相避) 관계에 있는 수령에 대해 물으니 상피 관계에 있는 수령은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17일(신해) 맑음 / 세자 북행 때 따라간 청역 권인록 등에게 시상하라는 비망기

비망기로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청역(淸譯) 권인록(權仁祿)·김명길(金鳴吉) 등이 세자가 북행(北行)할 때 처음부터 따라갔으니 공로가 가장 많다고 한다. 해조로 하여금 논상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0일(갑인) 맑음 / 백관에게 우선 그대로 요를 지급하고 앞으로 사세를 보아 반록의 여부를 처리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백관(百官)에게 반록(頒祿)[44]할지의 여부는 칙사가 지나간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전에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들이 다시 상량(商量)하고 물정(物情)을 참고해 보니 산료(散料)가 반록에 비해 줄어든 수량이 거의 6000여 석에 이르므로 난리를 겪어 재정이 바닥난 이때에 절약하는 항목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난리

44) 반록(頒祿) : 임금이 관리에게 녹봉을 주던 일. 또는 그 녹봉

뒤에 사대부의 집 - 원문 빠짐 - 없어지는 대로 이어서 먹는 편리함이 있어서 전부 늠록(廩祿)으로 받고 - 원문 빠짐 - 모두 녹봉을 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일이 비록 사소하지만 그 사정은 슬픕니다. 또 임진년(1592, 선조25) 변란을 겪은 뒤에 4, 5년간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변란을 만나 감히 풍요롭고 평안할 때처럼 하지 않는 뜻이 또한 그 가운데에 있으니, 지금 우선 그대로 요(料)를 지급하고 다시 앞으로의 사세를 보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내빙고의 역사를 담당한 방민에게 병조의 보목을 지급하여 분급할 것 등을 청하는 한성부의 계

서경우가 한성부(漢城府)의 말로 아뢰기를,

"내빙고(內氷庫)는 역사를 시작한 지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본부의 얼음 덩어리는 삼강(三江), 산저(山底), 마부(馬夫) 등이 응당 바칠 숫자 및 문무관(文武官)이 바칠 숫자가 도합 5050여 장(張)인데 720여 장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원수(元數) 8000장 내에서 2000장은 전혀 찾아서 바치도록 할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성 내외의 방민(坊民)을 이어서 써서 원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문감(紫門監) 얼음 덩어리의 원수는 본부와 반을 나누어 받아들인 것이 2100여 장일 뿐이고 산저와 강 연안에 거주하는 백성의 숫자가 매우 적은 데다 이미 외빙고(外氷庫)에 장빙(藏氷)하는 역사를 치렀는데 또 자문감의 역사를 담당하게 되어 - 원문 빠짐 - 사람과 말이 모두 부족하고 길도 멀어 하루에 수납(輸納)하는 것이 1순(巡)에 불과합니다. - 원문 빠짐 - 또 분급(分給)하려고 하니 산저와 강

연안의 방민들이 모두 전에 받은 3동(同)의 가목에 대한 얼음을 아직까지 숫자대로 다 바치지 못하였는데 또 이 목(木)을 받는 것은 지극히 근심되고 고통스럽다고 여기고 한사코 억울하다고 하며 받아 가지 않습니다. 부(府)의 관원이 백방으로 알아듣게 타일렀지만 끝내 따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세(事勢)로 말해 보건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조가 더 지급하는 목이 거칠고 짧아 형편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이로 인해 더욱 심하니 병조로 하여금 전규(前規)에 따라 보목(步木)으로 바꾸어 지급하게 하고 성 내외의 방민에게 적절히 파격적으로 분급하게 하여 일시에 수납하도록 하고 뒤에 규례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부에서 당초에 올린 계목(啓目) 내에 포수·살수(殺手)·내노비(內奴婢)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출역(出役)하도록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사(上司)가 계하된 뜻을 무시하고 혹 해부(該府)에 곧바로 감결(甘結)을 보내기도 하고 혹 부(部)의 서원(書員)을 곤장으로 벌하기도 하여 여러 상사의 하인을 사역시키지 못하게 하고서 해부(該部)가 감히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본부에 첩보(牒報)하였으니 너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 상사에 신칙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또 정묘년(1627, 인조5)에는 종재(宗宰)와 백관(百官)이 모두 얼음을 실어 날랐는데 지금은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특별히 줄였으므로 외간(外間)에서 자못 불편하게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당상 이상의 종실(宗室)은 수납하는 것을 감당할 역량이 되니 문무관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입춘 뒤에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강의 얼음이 머지않아 녹을 것입니다.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 지극히 염려되므로 재삼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고 황공한 마음으로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예빈시 주부에 제수된 권인록 등의 본직을 승서할 것인지를 묻는 병조의 계

서경우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청역 권인록·김명길을 해조로 하여금 논상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권인록은 이미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를 받았고 김명길은 이미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의 직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본직은 차차 승서합니까?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4품직에 제수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사관을 대명시키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사관 1원을 대명(待命)시키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1일(을묘) 맑음 / 가의대부에 이른 전 군수 이기남은 자망할 수 없으므로 격식

을 깨뜨리겠다는 사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 낭청이 전하는 사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군수 **이기남(李箕男)**은 전에 신이 군관(軍官)으로 데리고 다닐 때부터 험난한 곳이든 평온한 곳이든 수행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자못 영리한 듯하여 저들에게 가서 - 원문 빠짐 - 자급(資級)이 이미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이르렀으니 법제상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자망(自望)[45]할 수 없으니 격식을 깨뜨리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2일(병진) 맑음 / 백첩을 근거로 인흥군 집안사람들을 가둔 형조의 관원 등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김상의 계

김상이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난밤에 전옥(典獄)을 적간할 때 백첩(白帖)[46]을 근거로 가두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탈이 있는 듯하였다. 그런데 어찌 거론하지 않았는가? 승지에게 물으라.' 하셨습니다. 원래의 단자를 다시 자세히 조사하니 나위붕(羅位鵬)·향이(香伊)·나예남(羅禮男)은 **인흥군(仁興君)** 집안에서 작란한 것 등의 일로 백첩을 근거로 가두었고 김가읍이(金加邑伊)의 처 춘이(春伊)는 사헌부에서 백첩을 근거로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45) 자망(自望) : ①스스로 요구하는 일. 자원(自願). ②자기 스스로 벼슬아치의 후보자를 추천함. 또는 그 후보자.
46) 백첩(白帖) : 백첩은 관인(官印)이 없는 첩(帖)이다. 상급 관사에서 백첩으로 해당 관할 각사에 영을 내리면 아전이 그것으로 간사한 짓을 하기 때문에 금지시켰다.

제사(諸司)에서 백첩을 근거로 사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은 전부터 천명하였고 승전을 받들기까지 하였으니 이번에 백첩을 근거로 가두어 놓은 자는 모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만 신이 대방(代房)으로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점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추고를 받아 성상께서 수고로이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또 헌부는 추고할 수 없고, **인흥군** 집안에 갇혀 있는 자는 형조에서 본가의 단자에 의거하였지만 백첩을 근거로 가두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옥관은 백첩을 근거로 가두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멍청하게 섞어서 가두었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의주에서 좌의정 최명길을 간병한 결과를 보고하는 상의원 별제 정훤의 계

서경우가 상의원 별제(尙衣院別提) 정훤(鄭晅)의 말로 아뢰기를,

"'신이 이달 18일 저녁에 달려가 의주(義州)에 도착하여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의 병세를 살펴보니, 원기가 허약하고 비위(脾胃)의 기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소 앓던 증세인데, 1000리(里) 되는 빙판 길을 병을 참고 다녀오느라 바람과 한기를 쐰 탓에 내상(內傷)과 외감(外感)의 증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양에서 올 때 첨수참(甜水站)에 도착하여 한기가 온몸에 퍼져 왼팔이 마비되어 거의 혼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구료하여 겨우 소생하게 되어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여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온실(溫室)에서 침약(鍼藥)으로 치료한 지 이미 반 달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후는 부기와 열이 오르내리며 허한(虛汗)이 항상 흐르며 왼손의 마비가 더하기만 하고 덜해지지가 않으며 하루에 먹는 것이 몇 홉이 되지도 않는 데다 맛난 음식도 없어 원기가 거의 없어져 지탱하지 못할 것 같은 상태인데 증후가 자주 변하고 더해졌다 덜해졌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배한(背寒) 증상까지 더해져 얼음 조각을 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나랏일로 근로하다가 심화(心火)가 그로 인해 생겼고 허번(虛煩)하여 위에 체증이 있어 침수가 편안치가 않습니다. 지난밤 3경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 혼도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잠시 깨어났는데 그 증세를 살펴보건대 순월(旬月) 안으로 원기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침의(鍼醫) 유달(柳達)이 동궁이 내린 영에 따라서 본부에 도착하여 이미 곡지(曲池)·삼리(三里)·절골(折骨) 등의 혈(穴)에 몇 번 뜸질하여 풍점(風漸)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왼팔의 마비를 풀기 위해서 경락에 침을 놓으려고 하는데 원기가 더욱 허해질까 두려워 우선 음식을 조금 들어 중기(中氣)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경락에 침을 놓아 풍점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하는 길이 될 듯합니다. 현재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복용하고 있거니와 열을 깨끗이 씻어 내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땀을 그치게 하고 위병을 조절하여 고치는 약제는 청심보혈탕(淸心補血湯)이 긴절한데 재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제하여 쓸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계달해 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약재(藥材)를 즉시 내려 보내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좌부승지 신득연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좌부승지 신득연(申得淵)이 현재 충청도 청주(淸州)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얇은 옷을 입고 갇혀 있는 한인에게 유의를 지급하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갇혀 있는 한인(漢人)이 가장 옷이 얇다고 하니 유의(襦衣)를 만들어 지급하도록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5일(기미) 맑음 / 올봄 쏠 수 없는 조총을 무역한 좌랑 김수가 이미 죽었으므로 죄를 다스릴 길이 없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12월 22일 인견하였을 때 우상이 아뢰기를, '올봄에 조총을 무역할 때 호조에서 사서 보냈는데 다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낭청이 좋은 것인데도 사지 않았고 좋지 않은 것인데도 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꽤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지 못할 물건을 샀다면 사람들의 비난이 없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사람들의 비난이 있는데야 더 말할 것 있겠는가. 일이 매우 부당하니 사핵(査覈)[47]하여 치죄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조총의 무역은 문서를 상고하니 올해 4월께 무역하였는데 본조의 낭청 및 훈련도감 초관(訓鍊都監哨官), 기패관(旗牌官)이 합동으로 사서 각자 서명하였고 낭청은 좌랑 김수(金藪)였는데 이미 죽었으므로 추문하여 죄를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당 초관은 적발하여 치죄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충청 감사의 계본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에 대해, 이시방 등의 일을 옳게 회계한 것인지를 묻는 전교

충청 감사가 올린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回啓公事)와 관련하여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이시방(李時昉) 등의 일을 이와 같이 회계하는 것이 옳은가? 승지는 살펴서 아뢰라."

47) 사핵(査覈)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소를 사는 일에 쓰기 위해 청초도를 더 보내겠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소를 살 때 쓸 석장도 10병과 청초도 50병을 수송하는 데에 대한 본조의 초기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수가 너무 적으니 더 보내라.' 하셨습니다. 석장도는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청초도 50병을 더 보내도록 하되 전후로 몽고 지방에서 소를 사기 위해 보낸 물건을 별단에 통틀어 적어 들여서 품지(稟旨)해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6일(경신) 맑음 / 소를 사는 일에 쓰기 위해 석장도와 청초도를 수송하겠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비변사의 감결(甘結)[48]에 '몽고 지방에서 소를 살 때 쓰기 위한 것이니, 칙사가 나왔을 때에 쓰고 남은 석장도(錫粧刀)와 청초도(靑鞘刀)를 적절히

48) 감결(甘結) : 조선시대 상급관아에서 하급관아로 보내는 공문의 하나.

수송하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한 물건에 대해서까지 속속 입계(入啓)해서는 안 되는 데다 칙사가 나왔을 때에 쓰고 남은 잡물은 다른 데에 쓰지 말도록 이미 계하하셨으므로 본조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용하(用下)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를 사는 일은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하니 석장도 10병(柄)과 청초도 50병을 수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수가 너무 적으니 더 보내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이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허계의 계

허계가 아뢰기를,

"방금 정사를 하도록 명을 내리셨는데 도승지 윤휘와 좌승지 서경우가 해가 진 뒤에 즉시 나가 신과 동부승지 김광욱만이 재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병비에는 신이 마땅히 나아갈 것입니다만 이비에는 어느 승지가 나아갑니까?"
하니, 겸하여 나아가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요원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우부승지 이홍망에게 조리하고 올라오도록 지시하는 유지(有旨)가 계셨습니다. 하인이 이 유지를 가지고 그 집에 도착하니 이번 25일에 이미 죽었으므로 유지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망궐례(望闕禮)[49]의 거둥이 있을 것인데 좌부승지 신득연이 올라오는 것이 더딜지 빠를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원(僚員)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차한 일이 많고 내일부터 연이어 국기(國忌)의 재계가 있으니 반드시 오늘 정사를 하여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 12월 27일(신유) 맑음 / 충청 감사의 계본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는 잘못이 없는 듯하므로 공사를 도로 내줄 것인지를 묻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충청 감사가 올린 계본에 대한 의금부의 회계 공사와 관련하여 전교하셨습니다. 심집(沈)·**서원리(徐元履)**는 죄가 군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도년(徒年)이니 응당 사면되는 사람 중에 있어야 할 것이고, 이시방(李時昉)으로 말하면 비록 군율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나 죄가 도년에 이르렀으니 아울러 사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규례에 비추어 풀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조정호(趙廷虎) 등의 죄목은 비록 이시방과 다름이 없으나 이미 도년의 부류가 아니므로 감사가 품질(稟秩)로 서계하였습니다. 지금 금부의 회계를 보니 대개 감사가 올린 장계의 뜻과 서로

49) 망궐례(望闕禮) : 조선 때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서 배례하는 의식.

부합하였습니다. 신의 소견으로 참작하여 생각해 보니 금부의 회계는 살피지 못한 일이 없는 듯합니다. 신이 대방(代房)으로서 율문을 알지 못하니 이 공사를 도로 내줍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에 관계된 자는 사면받지 못하는 것이 법례이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
(1638, 숭정11)

여 백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4일(무진) 맑음 / 주서 이성 등이 신병이 있으므로 가주서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주서 이성, 가주서 이숭언이 모두 한질(寒疾)을 앓고 있는데 증세가 자못 심하여 공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집으로 돌아가 조리하려고 이미 나갔으니, 가주서를 차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가주서의 삼망(三望)은 이정영(李正英), 신익전(申翊全), 임전(林)이었는데, 이정영을 낙점(落點)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7일(신미) 맑음 / 숙원 산실청을 중전 산실청과 차등을 둘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공조의 이문을 보니, 산실청의 감결(甘結)로 인해 진배한 잡물은 중전 산실청에 소용된 수량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은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한다면 중전 산실청에도 100냥을 썼고 이번 숙원(淑媛) 산실청에도 100냥을 썼으니, 차등을 두어 구별함이 없는 듯하여 사체상 온당치 않습니다. 등급의 구분은 - 원문 빠짐 -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감히 그 물건을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법도에 어긋난다는 혐의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산실청으로 하여금 참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7일(신미) 맑음 / 남한산성의 군량으로 쓰기 위해 가흥창 소속 곡식 등을 운송하도록 각도 감사에게 행이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군량을 해빙 뒤에 즉시 운송해 들이되 2만 석을 채우도록 힘쓰라는 내용을 심열(沈悅)이 직접 전교를 받들고 물러나 계산해 보았더니, 경창(京倉)에 있는 곡식은 2월의 산료(散料)[1]와 잡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량은 2만여 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삼도(下三道)[2]의 소와 가축이 모두 폐사(斃死)하여 전세(田稅)를 포구로 내올 때에 백성들이 이고 지고 나오므로 필시 지체되어 3월 초승에 경창(京倉)[3]에 납입하는 것도 필시 납입할 수 없을 것이니, 3월 한 달 사용할 것을 남겨 두어야만 합니다. 앞 항목의 2만 석 내에 1만 석은 먼저 남겨 비축해 두고 먼저 대미(大米) 9천 석, 전미(田米) 1천 석을 해빙 즉시 사선(私船)을 임대하여 운송하되, 강변에서 산성까지는 인마(人馬)로 운송할 것이니, 그렇다면 수어사(守禦使), 경기 감사에게 미리 상의하여 잘 조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상(水上) 전세 7천여 석도 곧장 산성에 봉납하게 하고 3천 석만 융통하면 2만 석의 곡식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흥창(可興倉)[4] 소속과 곧장 상납하는 전세를 해빙 뒤에 즉시 독촉해서 운송하는 일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1) 산료(散料) : 네 계절로 나누어 주던 녹봉(祿俸)을 다달이 주던 일.
2) 하삼도(下三道) :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경창(京倉) : 조선시대에 설치한 중앙(서울)의 세곡(稅穀) 저장창고로 조운(漕運)을 통해 전국각지로부터 운반된 세곡을 보관·관리하였다.
4) 가흥창(可興倉) :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남한 강변에 있었던 조창(漕倉).

"아뢴 대로 하라. 2만 석만 보내는 것은 약소한 듯하니 더 마련하여 보내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이천 부사 권정길과 회양 부사 이정규를 서로 바꾸어 제수할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서경우가 이비의 말로 아뢰기를,

"강원 감사 심로(沈路)가 내려갈 때 말하기를, '지금은 무사한 때가 아닌데 본도에 군대를 주관하는 관원이 없으니 매우 걱정된다.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정길(權井吉)은 전에 원주 영장(原州營將)을 지낼 때 사졸들의 신망을 매우 얻었으니 만약 도내의 진관(鎭管) 수령으로 옮겨 제수한다면 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고, 대신도 이 말이 매우 일리가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권정길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니 회양 부사(淮陽府使) 이정규(李廷圭)와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소를 무역하러 가는 후운이 지니고 있는 물화가 형편없으므로 보병목 등을 더 지급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소를 무역하러 가는 후운(後運) 일행이 지니고 가는 물화는 모두 외방에서 마련한 것들이어서 물건이 또한 매우 형편없습니다. 선운(先運) 편에 들여보낸 황색과 홍색으로 염색한 무명은 저들이 좋아하는 물건이고 보기에도 때깔이 났습니다. 병조의 보병목(步兵木)과 여정목(餘丁木) 중에서 6, 7동(同)을 미리 염색하게 하고, 은자 2, 3백 냥을 해조로 하여금 더 지급하여 보내게 하며, 이를 싣고 갈 복마(卜馬) 5, 6필도 좋은 것으로 골라 사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8일(임신) 맑음 / 병비가 이경여 등을 관직에 제수하였다

병비가 호군[5]에 **이경여(李敬輿)**를, 사직에 유창문(柳昌文)을, 부호군에 김상복(金尙宓)·권현(權晛)·정해(鄭楷)·박수홍(朴守弘)을 제수하였다. - 이하 1장은 썩어서 원문 빠짐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신병이 있는 주서 이성 대신에 가주서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

5) 호군(護軍) : 조선시대 5위(五衛)에 속하는 정4품의 무관직(武官職).

"주서 이성(李垶)이 한질(寒疾)을 거듭 앓아 연일 사진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주서를 차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영숙문에 입번한 출신에게 빈 가마니를 넉넉히 제급하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영숙문(永肅門)[6]에 입번한 출신(出身)[7]에게 빈 가마니를 넉넉히 제급하도록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9일(계유) 맑음 / 남한산성에 3월에 쓰고 남은 수량을 더 수송하겠다는 호조의 계

서경우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가 남한산성에 군량을 운송해 들이는 일로 올린 초기와 관련하여 2만 석만 보내는 것은 약소한 듯하니 더 마련하여 보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처음에 2만 석을 보내라는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이와 같이 마련하였

6) 영숙문(永肅門) : 창덕궁(昌德宮) 안 규장각(奎章閣)의 서쪽에 있었던 문으로 중종(中宗) 23년(1528)에 연산군(燕山君) 때 부르던 담연문(淡烟門)이란 이름을 고쳐 영숙문이라 하였음.
7) 출신(出身) : 조선시대 문과(文科: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는데, 지금 하교를 받드니 즉시 더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나 3월에 쓰고 남을 수량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니 그 남은 수량을 보고 그때 가서 더 수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1일(을해) 맑음 / 이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오늘 정사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좌승지 **서경우**는 병으로 사진하지 못하였고, 좌부승지 신득연은 삼성(三省)에 나아갔고 동부승지 이성신은 지방에 있으며 우승지 허계는 병비에 나아가야 하므로 청중에 신 김광욱만 있습니다. 이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겸하여 나아가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3일(정축) 맑음 / 부제학 이경석이 상소를 올리고 나갔으므로 교리 이주를 패초하겠다는 홍문관의 계

이성신이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부제학 이경석이 '방금 도승지 **서경우**가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차자를 올려 비방한 것으로 인하여 은대와 옥당의 직임을 체차해 주기

를 청하는 상소를 보았다. 이미 속였다는 논척[8]을 함께 받았는데 한 사람은 감히 공무를 행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태연히 입직하고 있으니 의리상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 지레 나가는 폐단을 심히 온당치 않게 여겼는데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떠나지 않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는 뜻으로 말하고 부득이 상소를 올리고 나갔으므로 상번이 비었으니, 교리 이주(李澍)를 패초하여 입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제학 이경석이 지레 나간 일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 이경석을 내일 아침 패초하여 입직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5일(기묘) 비 / 속이고 가렸다고 지목당하였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가선대부 행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제학 이경석의 상소

가선대부 행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제학 이경석(李景奭)이 상소하기를,

"진실로 황공한 마음으로 삼가 절하고 주상 전하께 상언하여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본래 엉성하고 혼매하여 - 원문 빠짐 - 논사(論思)의 장(長)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인재가 부족한 때에 후임으로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으니 - 원문 빠짐 - 삼가 스스로 생각건대 온갖 병이 교대로 침투하여 늙기도 전에 쇠잔해져서 - 원문 빠짐 -

8) 논척(論斥) :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때로는 몸을 굽혔다 폈다 하기에도 자유롭지 못하니, 옛사람이 말한 '능력을 펴서 대열에 나아가 능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라'는 것으로 보면 신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의가 보잘것없어 이미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어조가 졸렬하여 또한 군주의 직임에 보탬이 없는 채 한갓 반열을 따라다니며 하는 일 없이 녹만 받고 있으니, 옛사람이 말한 '관직을 맡은 자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난다'는 것으로 보면 신이 떠나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에 처한 데다가 동료들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비록 기롱하는 논의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감히 곧바로 사피(辭避)[9]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삼가 도승지 **서경우**의 상소를 보니, 대개 기평군 유백증이 올린 차자에서 심하게 논박을 입었다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유백증과 평소 안면이 있어 그 원고를 얻어 보니 옥당[10] 또한 논박을 받았는데, 총괄하여 말한다면, 전하께서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계셔서 바깥 논의를 듣지 못하시니 속이고 가리는 것이 이 정도인지 어찌 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속이고 가린 죄는 옥당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양사를 처치한 것은 단지 당시의 문견으로 인한 것인데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 그 사이에 무슨 좌우, 경중을 두었겠습니까. 대개 대관의 말은 남에게서 들은 것이고 이진행의 말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어찌 성상의 위엄이 지척에 있고 많은 눈이 본 일임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사정에 연연하여 기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행이 일단 기망의 율을 받지 않았으니 그가 나아와 대답한 말은 근거로 삼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견해가 시비를 어긋나게 해서 물의가 날로 격해지고 속이고 가렸다고 지목당하였으니 신하로서 속이고 가렸다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당시 처치한 사람 가운데 신만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으니 신의 혼미함이 심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가린 죄에 빠지고도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귓가로 바깥 논의를 언뜻 듣고도 또한 진작 피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백증의 차자를 보고서야 두

9) 사피(辭避) : 사양하여 거절하고 피함.
10) 옥당(玉堂)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

려워하며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으니 후회해도 늦은 일입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으나 요즈음에 지레 나가는 것이 불가함을 매우 잘 압니다만,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났으니 낭패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체하며 버젓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다면 이는 지레 나가는 것이 불가함만을 알고 나가지 않는 것이 더욱 불가함은 모르는 것입니다. 신이 외람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떠한 곳인데 명기(名器)를 거듭 욕되게 한단 말입니까. 신은 이에 물러나 죄벌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백증의 순박하고 정직함을 신이 평소 훌륭하게 여겼으니, 신은 그의 차자가 노여워서만이 아니라 실로 공의가 두려운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신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어 먼저 신의 직명을 체차하심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의 말은 서로 따질 필요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5일(기묘) 비 / 기평군 유백증의 논척을 들었으므로 삭직해 줄 것을 청하는 행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서경우의 상소

행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서경우(徐景雨)**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쇠락한 자질로 외람되이 가까이 모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 제수하는 명이 뜻밖에 나왔습니다. 한 원(院)의 장은 직임이 특별히 중하여 실로 차례대로 승직하는 직책이 아니니, 신은 참으로 조심스러워 감히 단번에 직임을 수행하러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평군 유백증이 차자로 진술한 한 조항을 보니 정원을 매우 비방하였는데 언사가 매우 준엄하였으므로 신은 듣고 나서 두려움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께서 동료 관원이 대죄한 것 때문에 종묘사직의 신주를 시위한 관원을 불러다 물어보라는 하교가 있으셨는데 동료 관원이 모두 유고하므로 신이 감히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망녕된 생각에 대신은 일반 관원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실은 말에 비복이 걸터앉아 온 것은 또한 막중한 죄목에 관계되므로 상께서 그간의 실상을 알고자 하시는 것도 혹 무방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에 감히 곧장 불러다 물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써서 아뢰면서, 실로 자신이 임금의 명에 순종하여 전에 없던 규례를 처음 연 죄에 저촉될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그 혼미하고 망녕됨이 심합니다. 속이고 은폐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더욱더 두렵고 송구한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차자가 내려지기 전에 물러나 엄한 주벌을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왕명을 출납하는 직분을 맡은 몸으로 이미 중신의 논척을 들었으니 감히 태연하게 공무를 행하고 있지도 못하겠고 밤낮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 또한 하루도 직임을 비울 수 없는 처지이니, 신의 진퇴가 실로 낭패스러워 부득불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논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매우 간절한 형편을 굽어살피시어 신의 직임을 삭직하도록 속히 명하심으로써 신의 죄를 바로잡으소서. 신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유백증의 두서없는 말을 가지고 서로 따질 것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속

히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6일(경진) 비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병비가 **이경여(李敬輿)**를 동지로, 홍보(洪霦)를 부총관으로, 이해(李瀣)를 부총관으로, 구인후(具仁垕)를 부총관으로, ……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8일(임오) 맑음 /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은 가주서 정도영 등을 추고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가주서 정도영(鄭道榮)은 낙마(落馬)했다는 핑계를 대고, 사변가주서 신면은 또한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고는 끝내 나오지 않으니 태만한 습성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영, 신면을 모두 추고하고 그 후임을 차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변가주서의 삼망은 이정영(李正英), 이휴(李休), 이숭언(李崇彦)이었는데, 이정영을 낙점하였다. 가주서의 삼망은 허적(許積), 이준구(李俊耉), 이지무(李枝茂)였는데, 허적을 낙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19일(계미) 맑음 / 오늘 정사를 하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정사를 오늘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5일(기축) 맑음 / 처녀가 없다고 첩보한 양주 등을 더 탐문하여 처녀 단자를 올려 보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서경우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기의 처녀 단자를 이달 25일로 기한을 정해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본도가 먼저 보낸 각 고을의 단자를 보니, 양주(楊州), **포천(抱川)**, **영평(永平)**, 적성(積城), 마전(麻田), 연천(漣川), 과천(果川), 양지(陽智), 죽산(竹山), 고양(高陽), 교하(交河), 금천(衿川), 안성(安城), 인천(仁川), 부평(富平), 수원(水原), 안산(安山), 정포(井浦), 화량(花梁) 등의 수령 - 원문 빠짐 - 만호 및 각 그 경내(境內) 공·경·사·대부에게 모두 처녀가 없다는 것으로 핑계 대어 첩보를 올렸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다시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엄히 더 탐문하여 내달 5일 내로 일일이 독촉해 받아 내어 올려 보내게 하되, 나이를 가감하여 시종 숨기고 단자를 올리지 않은 자는 적발하여 계문하고 중률로 처벌하도록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8일(임진) 맑음 / 좌승지 허계와 칙사 영접 습의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신과 좌승지 허계는 칙사[11]를 영접하기 위한 습의[12]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직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29일(계사) 비 / 복제를 치른 동부승지 이성신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동부승지 이성신이 복제를 이미 4일을 치렀으니, 출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30일(갑오) 흐림 /

11) 칙사(勅使) : 조선시대에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서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중국의 사신.
12) 습의(習儀) : 조선시대 국가에서 행하는 주요행사의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미리 예정된 식전절차에 따라 행하는 예행연습.

내관이 심양에서 얻어 온 보를 전에 있던 곳에 보관하라는 비망기

비망기로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호인(胡人)이 이 보(寶)를 얻어 - 원문 빠짐 - 내관이 심양에 가서 얻어 왔으니 전에 있던 곳에 보관해 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월 30일(갑오) 흐림 / 현덕빈의 인장 보관에 대한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내하 금인(內下金印) - 원문 빠짐 - 인문(印文)은 현덕빈(顯德嬪)의 인장입니다. 예조로 하여금 각(閣)을 만들어 순회세자(順懷世子) - 원문 빠짐 - 에 보관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11일(을사) 흐림 / 대간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정사를 열 것인지를 묻는 이조의 계

서경우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정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21일(을묘) 맑음 / 영상에게 승지를 보내 돈유하게 하라는 전교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영상에게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13]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2월 25일(기미) 흐림 / 이비가 서경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서경우(徐景雨)를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로, 이유사(李幼泗)를 호조 좌랑으로, 황덕유(黃德柔)를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로, ……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15일(무인) 맑음 / 윤방과 김류를 위리안치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13) 돈유(敦諭) :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학자가 노력하도록 권하던 임금의 말.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대사간 최혜길, 정언 김진이 아뢰기를,

"- 윤방과 김류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김자점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율문대로 정죄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0일(계미) 맑음 / 대신 등을 인견할 때 대사헌 서경우를 명초하겠다는 이목의 계

이목이 아뢰기를,

"대신과 비국 당상[14]을 인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이 입참해야 하는데, 대사간 최혜길(崔惠吉)은 현재 - 원문 빠짐 -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를 명초(命招)[15]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1일(갑신) 맑음 / 신경원을 논계한 일로 인피한 대사헌 서경우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간 최혜길의 계

14) 비국당상(備局堂上) : 조선시대에, 비변사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통정대부 이상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15) 명초(命招) : 임금의 명으로 신하를 부름.

대사간 최혜길이 아뢰기를,

"신경원(申景瑗)이 저지른 죄는 군법(軍法)에 관계되므로, 비록 뒷날이 염려되는 점이 있어도 논계(論啓)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이에 어제 성상의 하교로 인해 이미 탑전에서 인혐(引嫌)[16]하였고, 신이 논계에 참여한 것도 한 번뿐이 아니니, - 원문 빠짐 - **서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마침 시소(試所)[17]에 있다가 이제야 와서 인피(引避)[18]하였으니, 잘못이 더욱 현저합니다. 태연히 자리를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 어려우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2일(을유) 맑음 / 신경원에 대해 논계한 것이 대사헌 서경우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심대부의 계

지평 심대부(沈大孚)가 아뢰기를,

"무릇 신하가 되어 병부(兵符)를 쥐고 장수가 된 자로서 적이 침범했는데도 알지 못하여 적이 군부(君父)에게 이르게 하거나, 군율(軍律)을 실추하여 군대를 잃거나, 포로가 되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왕법이 용서하지 않고 군율이 반드시 시행되는 법이니, 이것은 예로부터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경원이 한 번 움직여 이 세 가지 죄를 범하였으니, 그가 지은 죄가 어찌 김자점(金自點)보다 못하

16) 인혐(引嫌) : 혐의있는 일에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
17) 시소(試所) : 과거 시험을 치르던 곳.
18) 인피(引避) :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피하던 일.

겠습니까.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치욕은 김자점에게는 없는 죄이니, 조정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신경원은 마땅히 어느 죄에 복주(伏誅)[19]되었겠습니까. 언론(言論)의 책임을 맡은 신하가 일을 논함에 있어 조리가 없고 논했다가 그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논의를 그쳤다가 다시 발론하게 되었을 때에는 신경원을 놓아두고 논하지 않아 전하로 하여금 갑자기 대죄인(大罪人)을 풀어 주고 도리어 발탁하여 군대의 요직을 맡기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야 논의를 일으켜 시끄럽게 떠들면서 원배(遠配)하기만을 청하였으니, 성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신이 처음 대사헌 **서경우(徐景雨)**와 서로 만나 먼저 합계(合啓)[20]하는 것 등에 대해 말하여 운운했었는데, 신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경원의 일이었습니다. 신이 한 말의 대의(大意)는, '대신(大臣)이 나라를 그르친 죄가 어찌 적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판 죄나 검찰사(檢察使)로서 패전(敗戰)한 죄와 같겠는가. 원수(元帥)가 군율을 실추시킨 것을 논하면서 도원수(都元帥)와 부원수(副元帥)에게 어찌 차이를 두는가. 하나의 몸에 대해 두 개의 죄과(罪科)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논의이며, 같은 죄에 벌을 달리한다면 이는 잘못된 형벌이다. 이런 식으로 성상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만두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죄를 언급하고 그 형벌을 같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서경우**가 비록 흔쾌하게는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의 말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는데, 신에게 '서로 궐하(闕下)로 나아가 사간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신이 알았다고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논의를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신이 갑자기 최유해(崔有海)의 혐의를 입었고 다음 날 다시 피혐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저지된 뒤에 곧바로 시소(試所)의 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돌아와 복명(復命)[21]한 뒤에는 **서경우**가 성상의 하교로 인해 탑전(榻前)에서

19) 복주(伏誅) : 형벌을 순순히 받아 죽음. 또는 형벌을 순순히 받아 죽게 함.
20) 합계(合啓) : 조선시대에,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이 연명하여 계사를 올리던 일. 또는 그 계사.

인혐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신도 따라서 스스로 논열(論列)하였으나, 밝으신 성상께서 내치지 않으셨으니, 신은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나와 물론(物論)[22]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서경우**와 만나 이전의 논의를 마치고자 먼저 신경원에 대해 언급하니, **서경우**의 뜻은 바로 '친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보니 성상의 말씀이 간곡하셨다.'라는 것이었으니, 도리어 논의를 정지하려는 기색이 있었고 형률을 더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의 고집스러운 성품은 결코 남으로 인해 변화하기 어려우니, 신이 **서경우**와 의견이 같을 수 없는 것은 **서경우**가 신과 의견이 같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 어찌 속내를 삼키고 할 말을 머금은 채, 얼굴을 붉히며 의견이 다른데 함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이 걸맞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 20일이 되어 가도록 모호한 태도로 구차히 따르며,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번 물러난 뒤에 죽어 여한이 있을 것이라면 망녕된 속내를 밝으신 성상께 한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이른바 윤방(尹昉)과 김류(金瑬)가 죄과가 같지 않다고 한 것은 김류를 논한 것이 과중한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윤방을 논한 것이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서도 그 처자식을 얼고 굶주리게 했다면, 제 선왕(齊宣王)도 오히려 그러한 자를 버려야 할 줄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윤방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찌 필부(匹夫)의 처자식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윤방이 보답한 것은 얼고 굶주리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만이 아니었으니, 윤방의 죄로 보자면 버려졌어야 한 지가 오래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어찌 유독 임금에게만 버림받겠습니까. 마땅히 대중들도 함께 그를 버릴 것입니다. 지금 저 귀갑(龜甲)과 옥(玉)이 궤 속에서 훼손되었다면 맡아 지키는 자가 그 잘못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종묘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윤방을 주벌하지 않으시면 조종(祖宗)에 변명할

21) 복명(復命) :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22) 물론(物論) : 여러 사람의 논의(論議), 또는 평판(評判)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필(直筆)을 가진 자가 있다면 쓰기를, '대신(大臣) 윤방에게 명하여 묘사(廟社)와 빈궁(嬪宮)을 모시고 왕자(王子)를 호종하여 강도(江都)를 지키게 하였는데, 적이 강도에 침입하자 윤방 등이 - 원문 빠짐 - 윤방이 마침내 적에게 항복하고 - 원문 빠짐 - 한 도(都)를 노략질하고 빈궁, 왕자, 나인(內人), 부인(夫人) 등 포로로 잡은 사람과 윤방 등 죽지 않은 자를 남한산성에 제시하니, 남한산성이 고수(固守)할 수 없었고 종묘의 신주(神主)가 - 원문 빠짐 - 이어서 쓰기를, '윤방을 파직하는 것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할 것입니다. 윤방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실로 김류보다 죄가 더 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논하는 자들은 간혹 윤방의 죄가 더 가볍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윤방의 종족(宗族)이 번성하고 당여(黨與)가 많다는 점에서 김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삼가 성상께서 죄를 주시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류를 윤방보다 앞세우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이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혹자는 윤방의 아들이 옹주(翁主)와 혼인하였으니, 그가 형벌을 면한 것은 옹주가 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하께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당여들만 동조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하니, 전하께서 그를 살피시면 또한 어찌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한데도 죄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인(小人)의 마음으로 전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으니,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민구(李敏求)의 명망과 재주 그리고 조정의 신임이 어찌 김경징(金慶徵)이 견줄 바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모(乳母)'라고 불렀다고 들었을 뿐, 한마디 말을 해서 김경징의 행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보면, 《춘추(春秋)》의 법으로 단죄(斷罪)할 때 이민구는 마땅히 수악(首惡)이 될 것이니, 이민구가 살아 있는 것은 김경징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아, 천자(天子)에 대한 정성이 오랫동안 끊어졌고 바닷길도 막혀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서글프니, 성상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은 비록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자에게 제후가 있는 것은 제후에게 대부(大夫)가 있는 것과 같은데, 제후가 위로 천자를 섬기고 아래로 신민(臣民)을 다스리는 것이 정교(政敎)가 됩니다. 신하로서 200년을 섬겼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준 큰 은혜가 있는데, 부득이 하루아침에 저버렸지만 지금처럼 털끝만큼의 원통한 마음도 없이 눈치를 살피며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사(西使)의 영접에 한결같이 화려한 의식을 쓰면서 지나친 점이 있으니, 백성은 염려할 일이 아니더라도, 진귀한 가발을 어찌 예물(禮物)로 쓰십니까.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비록 그만둘 수 없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쌓인 시체를 아직 덮어 주지도 못했고, 흐르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으며, 끌려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겨우 살아남은 고단(孤單)한 백성들을 독촉하여, 장식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니, 아, 또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관서(關西)에서 시작되어 해서(海西)와 기전(畿甸)으로 번지고 도성(都城)에까지 파고드니 사방(四方)이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법입니다만, 일의 처음을 잘 계획하지 않아 무궁한 우환을 열어 놓은 자는 비록 나라의 형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신이 가슴 아파하고 골머리를 앓아 성명하신 전하께 한번 아뢰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모두 아뢰지는 못하였습니다. 윤신지(尹新之)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아날 때에 처자식과 가산(家産)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챙겼으나 유독 자신의 아비는 버린 일과 이경(李坰)이 옆의 섬에 있으면서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희희낙락거리며 말하고 먹은 7일 동안 자신의 아비를 걱정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들을 마땅히 변경에 유배하여 나라 안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해야 했는데, 모두 미처 논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하늘을 저버리고 성상을 저버려 시종일관 형편없었음을 삼가 이렇게 대략 갖추어 아룁니다.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신 다음 곧바로 사패(司敗)[23]에 내림으로써 소회(所懷)가 있으면서도 진달하지 않고 부질없이 명기(名器)만

을 더럽힌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피혐은 근래의 규례와 어긋나니, 도로 내주고 조보(朝報)에 내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3일(병술) 맑음 / 지평 심대부와의 논쟁에 뜻을 굽히지 않아 소동을 야기한 잘못 등이 있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 지평 심대부와 상회례(相會禮)[24]를 행하고, 이어 말하기를 '무릇 계사는 마땅히 정성을 다해 진계(陳啓)[25]하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 - 원문 빠짐 -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은 진실로 사체(事體)를 손상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오늘 합계(合啓)에서 나열한 죄목(罪目)은 처음에는 - 원문 빠짐 - 잘라 내고 또 잘라 내 지금은 남은 것이 거의 없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자도 혹 비웃을 것이니, 어떻게 군부(君父)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토록 논집한다면 피곤하게 됨을 면할 수 없다.' 하니, 심대부가 갑자기 말하기를 '참으로 그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말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 원문 빠짐 - 윤방(尹昉)의 죄목은 실로 큰 것은 빠뜨리고 그다음 것에 중점을

23) 사패(司敗) : 형벌을 맡아 보는 관리.
24) 상회례(相會禮) : 관료(官僚) 사이에 서로 회합하여 행하는 상견례(相見禮).
25) 진계(陳啓) : 신하가 임금에게 서면(書面)으로, 또는 구두(口頭)로 사리(事理)를 가려 가며 상주(上奏)하는 것.

두었으니, 지금 추가해 넣고 또한 마땅히 형률(刑律)을 고쳐야 합니다. 이민구(李敏求)는 - 원문 빠짐 - 또한 마땅히 형률에 따라 논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대략 어제 피혐한 계사와 과연 같았는데, 그 말투가 간절하였으니 참으로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원문 빠짐 - 그러나 꺼리는 기색으로 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말하기를 '윤방의 죄는 내가 - 원문 빠짐 - 과연 빠뜨린 것이 있다면 마땅히 추가해 넣어야 한다. 이민구와 신경원(申景瑗)의 죄는 내가 일찍이 논열하였으나, 이미 - 원문 빠짐 - 잊은 듯이 하였다. 그러나 공의(公議)가 일제히 일어난다면 내가 어찌 감히 그 사이에 이견을 제기하겠는가. 지평 - 원문 빠짐 - 사간원과 상의하여 여러 의견이 귀일(歸一)될 수 있다면 윤방에게 비록 형률을 더 가할 수는 없더라도 죄목을 추가하여 넣을 수는 있을 것이고, 이민구와 신경원도 마땅히 합계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대로 아문(衙門)을 파하였습니다. 심대부가 신을 두고 일컫기를 '비록 흔쾌하게는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한 것은 또한 신이 말하지 않은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연이어 공고(公故)가 있어 다시 회합(會合)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입시하여 탑전에서 다시금 친히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반복하여 깨우쳐 주심이 간곡하셨을 뿐만이 아니었으므로 신이 삼가 - 원문 빠짐 -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며, 신경원에 대해 그토록 수고로이 하교하셨으므로 신이 - 원문 빠짐 - 단지 스스로 인책(引責)하고 물러났으니, 신은 이미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신이 병을 무릅쓰고 - 원문 빠짐 - 대개 장차 동료와 이 일을 함께 의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대부가 먼저 묻기를 '탑전에서 - 원문 빠짐 -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신경원의 일에 대해 - 원문 빠짐 - 성상의 하교가 어떠하셨기에 바로 피혐하였습니까?'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간곡하신 하교가 진실로 성인(聖人)이 죄를 용서하고 공을 세우기를 요구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감히 전날 의논했던 것을 진계하지 못하고 단지 스스로 인책하고 물러났던 것이다.' 하였습니다. 심대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 원문 빠짐 - 탑전에서 아뢰지 못하고 물러나 형률을 더 가하는 것은 형세상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심대부가 어제의 계사에서 신을 두고 일컫기를 '도리어 논의를 정지하려는 기색은 있었고 죄를 더 가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것은 또한 신이 말하지 않은 이외의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신은 평소 변변치 못해 스스로 - 원문 빠짐 - 머뭇거려 매우 풍채(風采)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개 일이 번다한 시기에 혹여 논쟁의 단서를 야기할까 염려하여 자세히 논의하여 정하고자 힘썼던 것인데, 심대부가 - 원문 빠짐 - 또한 뜻을 굽혀 따르지 못하여 소동을 야기하였으니, 신에게 참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신이 보건대, 대개 - 원문 빠짐 - 요석(僚席)에서 언급한 것이고, 그가 말하기를 '이따금 윤방의 죄가 가볍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윤방의 종족이 번성하고 - 원문 빠짐 - 또한 윤방을 편든 것입니까? 만약 윤방이 과연 하늘까지 닿는 큰 죄가 있다면 붕우 - 원문 빠짐 - 조정이 반드시 주벌할 것이니, 어찌 심대부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심대부가 만약 - 원문 빠짐 - 신은 이 점에 있어 심대부에게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개 심대부는 본래 - 원문 빠짐 - 평범한 부류가 아닙니다. 처음 언관의 직책을 맡아 소회를 모두 아뢰었으나, 계사를 도로 내주도록 명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참으로 밝으신 성상의 지나친 거조이십니다. 이것은 모두 신처럼 못난 사람이 외람되이 헌장(憲長)[26]을 담당하여 밝으신 성상으로 하여금 대간(臺諫)을 대우하는 도리를 남김없이 실추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크니, 신을 파직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3일(병술) 맑음 /

26) 헌장(憲長)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인 대사헌(大司憲)을 이르는 말.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득연의 계

신득연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 정언 김진, 장령 이상형이 다시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윤방 등의 일로 인혐하고 물러난 집의 윤강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교리 심동귀 등의 계

옥당(玉堂)의 차자를 통해 교리 심동귀(沈東龜)와 성이성(成以性)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집의 윤강(尹絳),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정언 김진(金振), 장령 이상형(李尙馨)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예로부터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방(尹昉)은 - 원문 빠짐 - 종사(宗社)에 대한 중대한 부탁을 받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곳에서 죽지 않았으니 - 원문 빠짐 -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이러한 대신이 있겠습니까. 그 죄에 따라 벌을 주지 않아 - 원문 빠짐 - 온 나라의 백성들로서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팔을 걷어붙이고 - 원문 빠짐 - 이미 종사에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심대부가 논한 바는 엄정하게 - 원문 빠짐 - 정계(停啓)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지만, - 원문 빠짐 - 심대부의 말은 천하의 공변된 말입니다.

그런데 '- 원문 빠짐 -'라고 한 것은 심대부를 잘 모르고서 한 말입니다. - 원문 빠짐 - 윤방을 끊어 버릴 줄 모르는 것은 또한 무슨 - 원문 빠짐 - 또한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의견이 - 원문 빠짐 - 그가 신경원(申景瑗)이 군율(軍律)을 실추시키고 포로가 되었던 일에 대해 오히려 - 원문 빠짐 - 그러나 계사(啓辭) 한 편 전체에 조금도 윤방의 죄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어느 것에 경중을 두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이니, 모두 구차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의 윤강, 대사헌 **서경우**, 정언 김진, 장령 이상형을 모두 체차[27]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원문 빠짐 - 체차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신득연의 계

신득연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 집의 윤강, 장령 이상형은 피혐하였고, 장령 조중려(趙重呂)와 지평 김홍욱(金弘郁)은 지방에 있고, 지평 - 원문 빠짐 -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28]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27) 체차(遞差) :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
28) 다시(茶時)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들이 날마다 한 번씩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하여 차를 마시면서 중요한 공사를 의논하던 일.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허계의 계

허계가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 정언 김진, 장령 이상형이 재차 피혐하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옥당이 체차하는 것으로 처치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가 아뢰기를,

"- 원문 빠짐 - 옥당이 체차하기를 청한 것은 진실로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천만뜻밖에 체차하지 말라는 명을 갑자기 내리시니, 신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비록 매우 변변치 못하여 이미 옥당이 체차를 청하는 차자를 올렸으나, 버젓이 - 원문 빠짐 - 신이 어찌 감히 영예를 탐하여 무릅쓰고 자리에 나아가 죄과(罪科)를 더하겠습니까. 속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시어 어리석은 분수를 편하게 하고 공의를 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은 사람의 편견(偏見) - 원문 빠짐 -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5일(무자)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이경여(李敬輿)를 부제학으로, 윤양(尹瀁)을 전적(典籍)으로, 구형(具瑩)을 와서 별제(瓦署別提)로, 정치화(鄭致和)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3월 26일(기축) 맑음 / 전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전식(全湜)을 대사간으로,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서상리(徐祥履)를 장령으로, 최문식(崔文湜)을 정언으로 삼았다.
서경우(徐景雨)를 호군(護軍)으로, 이상형(李尙馨)을 사직(司直)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3일(병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남노성(南老星)을 지평으로, 금시조(琴是調)를 봉상시 첨정으로, 이항(李杭)을 희릉 참봉(禧陵參奉)으로, **서경우(徐景雨)**를

대사성[29]으로, ……

조경(趙絅)을 집의(執義)[30]로, 김득종(金得宗)을 사평(司評)으로, 최상겸(崔尙謙)을 진산 군수(珍山郡守)로, 송국택(宋國澤)을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이의전(李義傳)을 가평 군수(嘉平郡守)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19일(임자) 맑음 / 사진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본사의 당상에 차하하여 그대로 유사의 직임에 차임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本司)의 당상이 직무에 있어 번잡하고 바빠서 혹은 병고(病故)로 인하여, 와서 사진하는 자가 항상 적습니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를 본사의 당상에 차하하여 그대로 유사의 직임에 차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0일(계축)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남이공(南以恭), 참판 김수현(金壽賢), 참의 김반(金槃), 도승지 이목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나왔

29)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당상관으로 성균관의 장(長:泮長)이 됨.
30) 집의(執義) :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다. ……
이경여(李敬輿)를 홍문관 제학으로, 이단(李檀)을 예빈시 별제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2일(을묘) 맑음 / 부제학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속히 나와 공무를 행하라는 비답

부제학 이경여(李敬輿)가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의 재주가 실로 이 직임에 합당하니 마땅히 사직하지 말고 속히 나와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4일(정사) 구름이 두텁게 끼고 미우(微雨)가 옴 / 영평 현령 이원준이 하직하였다

영평 현령(永平縣令) 이원준(李元俊)이 하직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4월 24일(정사) 구름이 두텁게 끼고 미우(微雨)가 옴 / 부제학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

부제학 **이경여(李敬輿)**가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나의 뜻을 이미 유시하였으니, 경은 굳이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일(계해) 맑음 / 삼전도에서 항복한 일을 뒷일을 도모하는 명분으로 삼아 시류의 폐단을 일신하고 중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시책을 진달하는 홍문관 부제학 이경여 등의 차자

홍문관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교리 심동귀(沈東龜)·성이성(成以性), 수찬 최유해(崔有海) 등이 상차(上箚)[31]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아, 예로부터 천하의 나라라면 화란(禍亂)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종묘사직이 오욕을 당하며 천지가 뒤바뀌어 동궁이 북쪽으로 끌려가고 나라 전체가 오랑캐의 법을 따르게 된 변고는 없었습니다. 일월성신과 곤충, 초목에 일어나는 이변이 어느 것인들 재해가 아니겠습니까만, 지금처럼 봄과 여름에 걸쳐 계속된 가뭄으로 천리 사방 거둘 만한 농작물이라고는 없어 어렵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장차 구덩이를 메우는 시체가 될 정도의 재해는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전고에 없던 변란을 당하셨고 거기에 전에 없던 재해까지 겹쳤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느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신에게 죄를

31) 상차(上箚) :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일. 차자는 소장(疎章)의 일종으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며, 상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이 있음. 상소처럼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연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음.

돌리고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이처럼 절박하게 신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여 분기할 것이니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여섯 가지 잘못을 자책하여 비가 오게 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희망이 보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남김없이 말해야 하는데, 하물며 구언까지 하시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초야의 불우한 선비라도 오히려 의견을 피력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신들이 몹시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견마처럼, 길쌈을 제쳐 두고 나랏일을 근심한 과부처럼, 주제넘은 우충(愚忠)이 늘 가슴에 그득하여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으니, 어찌 차마 끝까지 침묵을 지켜 성상의 간절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국사는 마치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안으로는 내장에서부터 밖으로는 사지에 이르기까지 터럭 하나조차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서 위급한 증세가 여기저기 계속 나타나는데, 그 병에 따라 일일이 약을 쓰다 보니 여기가 좋아지면 저기가 나빠지고 왼쪽이 덜해지면 오른쪽이 심해지는 통에 나날이 병이 중해져서 결국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 반드시 편작(扁鵲)이나 화타(华陀) 같은 명의를 얻고 또 신묘한 약으로 내장을 깨끗이 씻어 내서 병근(病根)을 제거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신들은 모두 나라를 치료할 만한 솜씨도 없고 시무를 파악하는 재주도 부족하니 어찌 감히 폐단을 해결할 계책을 응대라도 하듯 조목조목 번거롭게 진달하겠습니까. 신들은 일단 이런 것은 그만두고 우선 만화(萬化)의 근원이며 만사의 근간인 전하의 일심(一心)이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민심을 위로하여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전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극언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말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다 하여 그의 말까지 폐기하지는 마소서.

하늘이 건순오상(健順五常)의 이(理)를 사람에게 부여하여 그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되었고, 하늘이 음양오행의 기(氣)를 사람에게

품부하여 그것이 이목구비와 온몸의 골격을 이루는 질(質)이 되었습니다. 성현은 맑은 기를 타고난 사람으로서 성(性)의 본체를 온전하게 간직하여 심(心)과 이(理)가 합치되므로,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늘 절도에 맞습니다. 만물의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하늘과 흐름을 함께하니, 이른바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는' 사람이고, 이른바 '하늘이 보우하여 길하고 불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금은 모든 것에 으뜸가는 존재로 하늘을 이어 표준을 세워서 무리들을 인도하며 만물을 어루만져 길러 줍니다. 반드시 그 마음속에 태극을 세워 깨끗하고 허정(虛靜)한 상태로 온갖 이치에 환해지고, 청명한 본체를 어지럽히는 한 점 찌꺼기도 없어야만 일마다 순리로 응대하여 각각 이치에 합당하게 됩니다. 마음도 조화롭고 기(氣)도 조화로워 환하게 꿰뚫어 봄에 풍우가 때맞춰 오고 만물이 모두 번성합니다. 전하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질과 효우(孝友), 공검(恭儉)의 덕성을 지니고서 치세를 이루고자 노심초사하며 인재들을 초치해 함께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사가 끝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늘은 재앙을 거두지 않고 백성들은 원망을 풀지 않아 재해가 겹치는 바람에 눈앞에 위망이 닥쳐, 이제 곧 용렬하고 혼암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패망하고 말게 되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들은 삼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의 마음이 그 체(體)와 용(用)에 있어서 또 드러날 때나 드러나지 않을 때나, 과연 모두 하늘에 부합하였는데도 하늘이 감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반성하여 구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천(天)은 곧 이(理)이기 때문에 군주가 인자한 것, 신하가 충성스러운 것, 아비가 자애로운 것 모두가 천입니다. 다친 사람을 돌보듯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누구 하나라도 살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편단심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지극하게 군주를 섬기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화복(禍福)을 함께 해서 고식책을 쓰지 않고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들어 구해 내는 것은 지

극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당연한 준칙을 극진히 하면 그것이 바로 이치에 합하는 것이고, 일이 모두 이치에 합하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될 것이니, 어찌 오랑캐를 두려워하고 화란을 근심하며 재이를 염려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혼조(昏朝) 때에, 여염에 계시면서 종사(宗社)와 윤기(倫紀)를 염려한 나머지 난정을 뿌리 뽑고 나라를 바른길로 되돌리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에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계책을 내어 동지를 규합하고 대의를 밝혀 봉기함으로써 이륜(彝倫)을 다시 밝히고 종사를 다시 안정시켰으니, 중흥(中興)의 아름다움은 전무후무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의를 중심으로 움직여 두려워하지도 꺾이지도 않았고 사사로운 이해(利害)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서 지기(志氣)가 강명(剛明)했기 때문에 마침내 큰 공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오합지졸로 단숨에 반정을 성공시키는 훈업을 이루셨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묵묵히 도우신 것이지 어찌 사람의 계책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리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계해년(1623, 인조1) 이후로, 전하께서 만일 당시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간직하여 천승(千乘) 군주의 존귀함을 낙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힘써서 늘 전전긍긍 두려워하며 혹여라도 태만하지 않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을 신임하고 직언 듣기를 좋아하여 능히 사의(私意)를 버리고 공도(公道)를 넓히며, 궐내 기강을 엄격히 하여 사사로운 청탁을 근절하고 절검을 숭상하여 부역을 줄이며, 공리(功利)를 좇는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신하를 우대하지 않으며, 엄하게 기강을 바로잡고 겉치레를 통렬히 혁파하고 군율을 엄히 밝혀 군정(軍政)을 정비하셨다면, 채 10년도 안 되어 국사(國事)의 체계가 잡히고 나라의 근본이 차츰 공고해져 자연히 국세가 웅건해지며 인자한 성상을 칭송하는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자자했을 것입니다. 치밀한 외교 협상으로 주변 적국을 겁줄 수 있었다면, 그들의 본거지를 정복해 소탕하지는 못해도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극진히 하고 나면 하늘의 뜻은 짐작할 수 있으니, 어찌 오늘날과 같은 변고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탓하지 말라 하였으니 장황한 말은 필요 없으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장래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어떤 변고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죄를 얻어 변고를 부르는 것은 또한 하루아침의 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전철을 어찌 지금 그대로 다시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도 변란을 당하신 뒤 필시 기왕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장래의 일을 보완하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바를 신들이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예전과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결국 여기에 그치고 마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무형(無形)의 신화(神化)는 알기 어렵고 유형(有形)의 행적은 쉽게 보이는 법이니, 원근에서 전하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출성(出城)했던 일을 말하자니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수치를 품고 참아 내어 뒷일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니, 이 또한 일종의 부득이한 임시방편으로서 군신 상하가 사직과 함께 죽는 것 외에 출성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신기(神祇)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조종의 혼령도 틀림없이 전하를 용서했을 것이며, 충신과 의사(義士), 삼군(三軍)과 사방의 백성들도 틀림없이 전하를 용서했을 것이며, 성조(聖朝)의 천자께서도 부모와 같은 인자함으로 틀림없이 전하를 용서했을 것이며, 당시의 전하께서도 틀림없이 이로써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이로써 목표를 삼으셨을 것입니다.

신들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는 반드시 군덕(君德)을 분발하여 예전의 모습을 일신하고 성지(聖志)를 굳건히 하여 옛날 중흥 - 원문 빠짐 - 무엇이든 연(燕)나라 소왕(昭王)이나 월(越)나라 구천(句踐)을 모범으로 삼을 것을 온 나라의 신민들이 귀 기울이고 눈 비비며 기다려 왔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 이미 1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전하의 뜻은 기(氣)로 인해 상

실되고 기는 형세로 인해 위축되어 눈앞의 안일만 찾는 습속이 아래까지 퍼지고 퇴락으로 향하는 시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궁실과 음식, 복장을 화려하게 하고, 수레와 말, 완호품(玩好品) 등을 구비하며, 내시와 빈첩들이 시봉하는 것도 예전과 마찬가지이고, 곧은 선비를 내쫓고 아첨하는 자를 신임하며 간언을 물리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여 언로를 막는 것도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공적인 의리는 전혀 없이 사사로운 이해에만 현혹된 나머지 천지의 법도를 하찮은 일로 여기고, 사람과 사물의 떳떳한 법칙이 멸절되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천하의 대방(大防)을 유지하고 일국(一國)의 민심을 위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 죽어 가는 사람이 병을 얻은 원인은 살펴 조심하지 않고,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만 끊임없이 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한 가닥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과 같은 꼴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위에서는 하늘이 노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니, 원근의 민심이 이 때문에 애통하고 답답하여 모두 뿔뿔이 떠날 마음을 갖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한가할 때나 밤에 쉬실 때나 혹은 서책을 보실 때, 이 마음을 가만히 점검해 보신다면 과연 건순오상(健順五常)의 대체를 잃지 않고 계십니까. 인(仁)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의(義)는 군신 사이가 가장 중한데, 수오지심(羞惡之心)도 그것이 드러나는 일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미묘한 도심(道心)의 온전한 본체이고 천리(天理)가 발현되는 본연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에 있어 만약 능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보전하여 추호도 생각에 허위가 없고 잠시도 마음에 안일함이 없어서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자강불식(自强不息)할 수 있다면,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한 일도 욕될 것이 없고, 표문(表文)을 올리고 신하라 칭한 것도 욕될 것이 없습니다. 황천(皇天)과 조종(祖宗)도 더욱 돈독히 돌봐 주실 것이고, 이 땅의 신민들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받들 것이고, 천하와 후세도 탄복할 것이고, 천자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 광복의 공업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으며 무궁한 복록이 후손에까지 이어

져 끝내 이에 힘입어 사직이 장구할 것입니다. 제때에 맞춰 비 오고 개는 것을 금세 이루어 내어 일시적으로 굽혔다가 만세토록 뻗어 나가 결국 영웅호걸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구차하게 일시적인 안일만 찾아 독소를 키우고, 믿을 수 없는 자를 끝내 믿을 수 있다고 여기며 내쳐서는 안 되는 자를 끝내 내쳐도 된다고 여기고 권도(權道)를 상도(常道)라고 여기며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고, 그 밖의 마음가짐과 처사, 시행하는 명령이 모두 혼몽하고 전도되어 어영부영 해이하게 세월만 보내 날로 쇠미해지며, 인재의 취사와 진퇴, 상벌과 시비가 이(理)에 배치되어 걸핏하면 천칙(天則)에 어긋나고 무리하게 인정(人情)을 거스른다면, 황천과 조종이 돌봐 주는 마음과 이 땅의 신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전하께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스스로 조종과 신민에게 선을 긋는 것이니, 설혹 치욕을 감수하고 의리를 멸절하더라도 구차하게 국가를 보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차마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고 명하는 것보다도 더 곡진하게 경고하시니, 지금이 성상의 마음이 성(聖)이 될지 광(狂)이 될지가 나뉘고, 국가의 존망과 천심의 향배가 갈리는 기점으로서 재앙을 상서로 바꿀 시기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분발해 떨쳐 일어나 내 안에 있는 도를 구하여 - 원문 빠짐 - 군주로서, 신하로서, 아비로서의 도리를 다할 따름이니, 어찌 규벽(圭璧) 같은 제물이나 무축(巫祝)을 통해 감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면한 일에 대해 할 만한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심이 바로잡히면, 밝은 예지로 비춰 보아 모든 이치가 밝게 드러남으로써 신들이 말한 군주의 인, 신하의 충, 아비의 자(慈)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감발되므로 측은하고 애절하여 일마다 성심을 다하게 되며, 이치상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과감히 실행할 수 있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간언하지 않더라도 구차하고 비속한 생각이 절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무책도 모두 차례차례 시행되어 마치 그물의 벼리를 들어 올리면 그물눈이 모두 펴지는 것처럼 만사가

편안해질 것이니, 이것이 신들이 앞에서는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대략 언급한 까닭입니다.

신들이 외람되이 근시(近侍)의 반열을 차지하게 된 것이 최근의 일도 아닌데, 전하께서 술을 즐기거나 여색에 빠지는 과실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의 일은 지극히 비밀스러운 것이라 신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꾸며서 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신들은 이에 대해 목이 메어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하의 한 몸은 종사가 의탁하고 신민이 우러르는 바입니다. 큰 혼란이 미처 진정되지 않고 새롭게 막중한 책무가 맡겨진 이때에 차마 어찌 가벼이 처신하여 열성(列聖)과 신민을 우려하게 한단 말입니까. 통렬히 반성하여 강력하게 물리쳐 멀리하십시오.

역적 이공(李珙)의 자녀가 모두 혼인을 했으니 이는 참으로 성덕(聖德)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폐위된 동궁(東宮)의 딸이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 성상께서는 하늘에 계신 선조(宣祖)의 영령을 받들어 이미 조정 신하들의 청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제때 거행하도록 하여야 하니, 이 또한 화기(和氣)를 부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지난번 명(明)나라의 서신을 받을지의 여부는 실로 의리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고, 또 국가의 안위가 판가름 나는 문제였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하는 방도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의 처사는 이치상으로도 근거가 없고 일 처리도 적절하지 못하므로 민심이 승복하지 않아 항간에 의논이 분분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은 분명히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신중히 처리하셨겠지만, 성상의 의중을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원수(元首)인 임금과 고굉(股肱)인 신하는 의리상 한 몸이므로 일의 성패와 이해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니, 일의 득실과 편부를 충분히 따져서 함께 결론을 내는 것이 사리상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 '논의를 주창한 자가 감당하라.'는 하교까지 있었으니, 군신이 함께 논의해 국사를 결

정하는 의리가 아닌 듯합니다. 지난번 척화를 주장한 신하를 포박해 보낸 것은 부득이한 사세 때문이기는 했지만, 역시 성조(聖朝)의 미사(美事)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마치 이런 태도를 견지해 이론(異論)을 위협해 제어하고자 하는 듯하니, 말은 한번 실수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으나, 이후의 일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척화를 주장한 신하가 시세를 헤아리지 못하고서 함부로 큰소리를 쳤는데, 묘당이 제대로 참작하지 못해 결국 전쟁을 하려 한다고 꼬투리를 잡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일로 말하자면 참으로 그러하지만, 그 뜻으로 말하자면 군부(君父)를 위하고 대의를 밝히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이미 겪은 전란을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 무리를 소급해 죄주어 당시의 논의를 엄히 다스린다면, 이는 전날의 의로웠던 목소리도 함께 사라지게 하는 것이니, 후세에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심리(審理)하는 은전을 마땅히 이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하니, 완강하게 고집하여 여론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명기(名器)를 중시하지 않으면 세상을 격려할 도구가 없어집니다. 시종신은 백관의 의표이므로 가장 신중하게 가려 뽑아 조정을 맑게 해야 하니, 시세가 이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 그래도 명절(名節)을 지켜 구차하게 용납되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강직하게 국사를 논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들여 등용해서 사안마다 규정(糾正)하게 하여 그 곧은 기상이 꺾여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며 나라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나약하고 무능하며 시속에 영합하여 권문세가에 관련된 일이라면 감히 한마디도 못 하며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는 자들은 파출시켜야 하니, 무능한 자를 파출시키는 법은 먼저 신들에게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절의는 천하의 큰 법도이고 우주를 지탱하는 동량이니, 사람으로서 이것이 없다면 의관을 갖추어도 금수나 다름없고 중국에 살아도 오랑캐나 같습니다. 절의를 잃은 신하와 정조를 잃은 아녀자는 천지간에 용납될 곳이 없으니, 이는 천지의 떳떳한 법도요 고금을 관통하는 도리입니다. 옛날의

명철한 임금들은 반드시 절의를 중요시하여 융숭한 상과 높은 벼슬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엄중한 형벌을 가하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원려(遠慮)는 길이 본받을 만합니다.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사대부들과 변란을 당해 정절을 지킨 부인에 대해 대소귀천을 막론하고 남김없이 찾아내어 포장하고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속히 시행하여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야 합니다. 또 혹 살았더라도 올곧은 처신으로 인륜을 부지하고 절의를 우뚝 세운 자는, 혹 중도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락한 풍속을 진작시킬 만하니, 너무 심하게 홀대하여 중외(中外)의 의혹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들은 자의로 따라간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목숨을 버려 절조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지아비 집안으로서는 이미 부부의 큰 의리가 끊어졌으니, 어찌 강제로 다시 결합하게 하여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선정(先正)이 '실절(失節)한 사람과 짝이 되면 자신이 실절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대부들로 하여금 더럽혀진 아내를 거두어 부모를 섬기거나 제사를 모시거나 자손을 낳아 대를 잇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백 년간 내려온 국속(國俗)이 무너져 삼한(三韓)이 온통 오랑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 살 곳을 마련해 주고자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것은 관계된 바가 작지 않습니다. 비록 일제히 이혼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재취(再娶)하든 그대로 데리고 살든 임의대로 하게 허락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전함(戰艦)을 추가로 부방(赴防)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것이지만 짐을 꾸리고 떠나보내는 일로 양호(兩湖)가 소란스러운 탓에 경작과 어로(漁撈) 모두 시기를 놓쳤습니다. 열 몇 척의 선박으로는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공사(公私) 간에 각각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한탄과 원망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니, 마땅히 묘당에 자문하여 속히 변통하게 해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사망한 자로 인한 폐해가 원근이 똑같아 이웃과 친족이 피해

를 입는 등 그 해독이 백성에게 두루 미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궁핍한 백성들이 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 부지기수이니, 우선 별도로 조처하여 위급함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공물을 작미(作米)하고 전세(田稅)를 환작(換作)할 때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10배의 값을 요구하니, 연해의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조에서는 늘 경비를 염려하여 잘못임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원망을 초래하고 국체를 손상시킴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바로잡게 해야 합니다.

군액(軍額)을 충정(充定)하는 것이 가장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4, 5세의 어린아이도 부적(簿籍)에 편입시켜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입번(立番)을 대신하는 포(布)를 요구하는 탓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서 통곡하며 죽지 못한 것을 원망합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 근근이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유망(流亡)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길을 가며 슬프고 처참한 모습으로 천지에 하소연하니 어찌 재해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묘당으로 하여금 상황을 헤아려 속히 대책을 도모해 억울함을 풀어 주게 하소서.

양맥(兩麥)이 이미 손상되어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파종할 시기를 놓친 것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도가 기근으로 허덕여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죽게 될 상황이어서 병화보다 처참하니, 진휼해서 구원할 계책과 부세를 견감하는 거조 또한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북로(北路)가 이미 텅텅 비어 길에 시체가 즐비합니다. 사태가 매우 절박하니 갇힌 사람을 구해 내듯 속히 진휼하여 남은 목숨을 살려야 합니다.

무릇 이런 몇 가지 일들은 재해를 없애는 데 하나하나 절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화복의 이치는 실로 인사(人事)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큰일과 작은 일, 근본적인 일과 지엽적인 일의 병행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애쓰는 의리에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들이 앞서 진달한 것은 본원의 차원에서 생각하

시고, 뒤에서 논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차원에서 힘써 행하시어, 양자를 변함없이 닦아 나가 체(體)가 확립되고 용(用)이 행해지도록 한다면, 나라의 장구함을 기원하기 위해 달리 필요한 것이 없으니 교화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을 족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여론을 듣건대, 전하께서 성절(聖節)[32]과 천추절(千秋節)[33] 및 동지(冬至)와 원단(元旦)[34]에 궁정에 위차(位次)[35]를 설치해 예를 행하고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셨다니, 신들은 성덕에 감동하여 저도 모르게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지 신령과 조종(祖宗)의 영혼도 반드시 저 위에서 감동하셨을 것이고, 수천 리 이 땅의 신민들의 우러르고 귀의하는 굳은 마음도 해이해지지 않을 것이니, 옛사람에 버금가는 공적을 당장에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의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전하의 마음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연지성을 온전히 한다면 충경(忠敬)한 성심을 위로 신명에 질정할 수 있고 명나라를 받드는 뜻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 원문 빠짐 - 따라서 확충하면 비록 오늘날보다 더 심한 굴욕적인 일이 있더라도, 신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조금도 유감이 없을 것이고 전하께서도 굳이 자책하실 필요가 없으니,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을 극진히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들이 논하는 바는, 전하께서 검을 어루만지고 손뼉을 치면서 군대의 일을 논하고 적을 도모하여 먼저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음을 품에 안고 불을 손에 쥔 듯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여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않을 때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를 염두에 두시기를 삼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상의 뜻이 정해지고 성상의 마음이 바로잡히고 난 다음에는 매일 보필하는 신하들과 함께 내정을 닦고 외적을 물리칠 계책을 강구하고 논의하여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세를 줄일 것인지, 무슨 일을 먼저 시행해야 하며

32) 성절(聖節) : 성인(聖人)이나 임금의 생일을 경축하는 명절.
33)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일.
34) 원단(元旦) : 설날을 이르는 다른 말로 정확하게는 설날 아침을 뜻함
35) 위차(位次) : 행사나 의전에 있어서 품계에 따라 도열하는 순서. 또는 자리의 차례.

무슨 폐단을 먼저 제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나 시행하고 내일은 폐단을 하나 줄여서 이것이 해이함 없이 오래 누적되면 많은 일들이 환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자문하여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 의견을 조절하며, 책임을 완수하도록 위임하여 장구한 계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며 그들로 하여금 - 원문 빠짐 - 여러 관속들을 거느리게 하여 함께 공을 이룰 것을 도모하되, 반드시 진실한 마음을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품은 뜻을 펼 수 있습니다. 만약 - 원문 빠짐 - 펴지 못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가려 뽑아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도 되니, 일단 자리를 채우게 해 놓고 그 수족을 묶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상함은 날카로운 칼날이나 사나운 말을 제어하기 힘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쟁반 위의 물이 가만히 있기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하물며 높디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 욕망을 제어해 지키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경한 몸가짐으로 본심을 보전하고 본성을 배양하며 독서하여 이치를 밝히고 의리의 지취(旨趣)를 함양하여야만 비해(非解)의 간(干)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경연을 열어 강독하신 지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므로 항상 정일(精一)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격물치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근본을 확실하게 체득하지 못하신 듯하니, 불행히도 '책을 읽기 전에도 그 모양, 읽은 후에도 여전히 그 모양'이라는 데에 가까운 듯합니다. 신들처럼 고루하고 과문하여 앞이 꽉 막힌 자들이야 참으로 학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조정에 빼어난 인재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 그 지의(旨義)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마땅히 좌우에 두시고 지의를 강론하여 선한 일은 진달하고 나쁜 일은 막게 하면, 조금씩 젖어들고 훈도되어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마땅히 성현의 가르침에 침잠해서 제대로 알고 힘껏 실천하여, 반드시 성현을 본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중흥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적을 많이 기억하여 날로 덕을 새롭게 하며, 남이 보지 않는 은미한 곳에서 특히

신독(愼獨)하는 공부를 지극히 하여 존심(存心)하고 처사(處事)할 때 반드시 천리(天理)의 공변됨을 따른다면, 천심과 합치되어 저절로 경사(慶事)가 이를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치를 강구하는 공효를 거두신 다음에는, 우선 이겨 내기 어려운 성품의 편벽한 부분부터 극복해 나가서 몸에 밴 예전의 습관들을 일체 떨쳐 버려야 하니, 의연하고 과감한 태도와 우레와 질풍과도 같은 위엄을 견지하시고 몸을 봉양하는 외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 거처와 의복, 거마는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고 검소하게 하소서. 대공지정(大公至正)한 태도와 공손한 마음으로 국정을 살펴, 좋은 상과 엄한 벌을 내릴 때 사사로움을 따르지 말고 한결같이 공의(公議)를 따라서 덕 있는 이를 명하고 죄 있는 이는 벌주는 하늘의 뜻을 받드소서.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반드시 도(道)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판단하고, 물 흐르듯 간언을 따르는 도량을 넓혀 나감으로써 편벽된 호오(好惡)에 얽매이지 말아 충직한 이들이 권장되게 하소서. 용렬하고 구차하게 비위 맞추는 것을 후중(厚重)하다 하지 말고, 강개(慷慨)하게 나라를 근심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격하다 하지 말고, 아첨하고 순종하는 것을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지 말고, 직언으로 감히 간언하는 것을 강직하다는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뒤좇는 것을 진중하다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배격하고 선한 이들을 장려하는 것을 부박하다 하지 말고, 능력을 과시하려고 나라에 원망을 전가시키는 것을 국사에 마음을 다한다고 하지 말고, 백성을 아껴 근본을 굳건히 하는 것을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 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한 시대의 사대부로서 능력 있고 지조 있는 자들이 뜻을 펼 수 있는 자리를 얻어 제각기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간다면, 인심이 결속되고 나라의 기강이 차츰 확립되어 장차 반드시 천하에 대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아, 국가에 닥친 위망의 화(禍)는 이웃 나라의 침략이 없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인심의 이합(離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두 성상 마음속의 의리가

어두운지 밝은지에 기인하는 것이니, 신들은 이에 대해 깊이 근심하고 다급하게 논합니다. 성상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변을 멈추는 방도인데, 신들이 진달한 것은 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하늘의 뜻과 성상의 마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신들은 전하의 일심이 상천을 감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구구한 마음으로 감히 우둔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외람되이 성상께 올리오니, 더더욱 두렵고 황공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차자의 내용이 모두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니, 마땅히 유념해서 채택해 시행하겠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일(갑자)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김여옥(金汝鈺)을 사간으로, 김태기(金泰基)를 정언으로,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윤명은(尹鳴殷)을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이원환(李元煥)을 사천 현감(泗川縣監)으로, 임한백(任翰伯)을 효릉 참봉(孝陵參奉)으로 삼았다.
이경석(李景奭)을 대호군으로, 서상리(徐祥履)를 호군으로, 신유(申濡)를 부사과(副司果)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일(갑자) 맑음 / 문

정전 월랑에서 좌의정 최명길 등을 인견할 때 우부승지 김광욱 등이 입시하여 청나라가 요구하는 군병과 군량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에 상이 문정전(文政殿) 월랑(月廊)에 나아가 좌의정 최명길(崔鳴吉), 공조 판서 구굉(具宏), 호조 판서 심열(沈悅), 예조 판서 한여직(韓汝稷),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이조 판서 남이공(南以恭), 판윤 윤휘(尹暉), 대호군 이경석(李景奭), 대사간 전식(全湜), 부제학 **이경여(李敬輿)**를 인견[36]하였다. 우부승지 김광욱(金光煜), 가주서 임규(林葵), 사변가주서 남훤(南翬), 기사관 이도장(李道長)·정태제(鄭泰齊)가 입시하였다. ……

심열이 아뢰기를,

"지금의 한재는 전고에 없던 것으로 목전에 이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곡식을 얻을 방도를 도모한 다음에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공명고신(空名告身)으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의를 잃는 일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그 말이 옳기는 하지만 곡식을 얻는 방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관직을 파는 규례를 적용하여 실관(實官)에 제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자(富者)가 꼭 어진 것은 아니니, 용렬한 사람이 실관을 차지하게 되면 정사의 체모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

36) 인견(引見) : 임금이 신하를 불러 들여 만나봄.

하였다. 심열은 아뢰기를,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에는 제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직(京職) 참하관에 제수하여 재주가 있는가를 살펴본 뒤, 그에 대한 전최(殿最)[37]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휘는 아뢰기를,

"근래에 부관(部官) 2인을 보니, 비록 부(富)로써 관직을 얻었지만 모두 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부유하면서 어진 자는 대체로 드물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본디 경박하여 계책에 심원함이 없습니다. 매번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와신상담한 일을 말하지만 사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장주(章奏)[38] 중에 혹 기휘(忌諱)해야 할 말을 쓰니, 멀리 내다보는 계모가 매우 부족합니다. 어찌 성상의 마음이나 묘당의 계책이 저들의 계려(計慮)[39]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저들이 사세(事勢)의 당부(當否)를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쉽게 말하니, 정원으로 하여금 만일 온당치 않은 소장이 있으면 고쳐서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에 대해서는 자주 전교하였으나 정원이 거행하지 않으니, 승지를 자주 체차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삼사(三司)의 소차는 운운할 필요가 없으나

37) 전최(殿最) : 조선시대 경외관원(京外官員)의 근무 상태를 여러 면에서 조사해 성적을 매기는 고과(考課), 또는 그렇게 하던 기준.
38) 장주(章奏) : 신하가 임금에게 시정(時政) 등에 대해 글로써 아뢰는 것.
39) 계려(計慮) : 헤아려 생각함.

미관말직의 온당치 않은 소장이 분분한데도 고쳐서 들이지 않는 것은 불가할 듯하다."
하자, 김광욱은 아뢰기를,

"무릇 소장에 대해, 해방 승지가 나가 있을 때 간혹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봉입하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하고, **이경여**는 아뢰기를,

"대체로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대부들끼리는 말을 혹 지나치게 하더라도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신은 성상의 마음을 감발시켜 안일과 고식(姑息)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며, 성상께서도 실효를 거두려고 힘써서 겉치레를 없애야 할 따름입니다. 좌상이 진달한 말 역시 지엽적인 일로서, 기밀 문서를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심원한 계모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편전에 나아가 다만 기무에 밝은 한두 신하들과 차분하게 충분히 강구하신다면 나랏일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니, 이런 형식적인 문제는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최명길은 아뢰기를,

"**이경여**의 말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신이 말한 바가 그래도 그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무릇 소장은 다 내려 줄 필요가 없으니, 오직 성상께서 그것을 밝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장을 다 내려 줄 필요는 없지만 그 일들 가운데 회계(回啓)[40]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보류해 두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전식이 아뢰기를,

"소신은 전혀 가당치 않은 사람으로 걸맞지 않은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삼가 천재를 만나 구언하는 교지를 보고서 잠시 형식적인 말을 진달하였지만 일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신은 이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3일(을축) 맑음 / 인혐하여 물러간 지평 박수문과 김진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지평 박수문(朴守文)·김진(金振)이 '신들이 전 대사헌 이경석(李景奭)을 처치할 때, 그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을 혐의하고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였으니 즉시 차자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논의를 불가하다고 여겨 안 한 것은 아닌 듯하며 하물며 전직에서의 혐의는 더더욱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상의하여 출사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경석이 소장을 올려 심지어 신들이 출사하기를

40)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청한 것까지 편안치 않은 뜻을 드러내었으니, 신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애초에 남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탓에 도리어 심한 배척을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의하여 출사하기를 청한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경석이 올린 소장에서 한 말이 비록 불편해하는 듯하기는 하지만 실로 이들을 지적해 배척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박수문과 김진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4일(병인) 맑음 / 대사간 전식과 다툴 바 없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대사간 전식이 피혐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 전에 본직에 있으면서 역시 합계를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처치에 있어서의 혐의는 전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어려운 형편이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4일(병인) 맑음 / 사간 김여옥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사간 김여옥, 대사간 전식, 대사헌 **서경우**, 장령 이계, 지평 박수문·김진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인혐하고 물러간 사간 김여옥을 체차하고 대사간 전식 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홍문관 교리 성이성 등의 차자

홍문관 교리 성이성(成以性), 수찬 최유해(崔有海)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사간 김여옥(金汝鈺), 대사간 전식(全湜),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이계(李烓), 지평 박수문(朴守文)·김진(金振)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대간이 일을 논할 때는 분명하게 잘라 말해야 하니, 만약 조목조목 말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출사하여 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여옥은 변호할 수 없는 죄를 변호하고 싶은 나머지 감히 피해서는 안 되는 혐의로 피혐하며 말하였으나, 설득력이 없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대사간 전식 이하의 경우, 논사(論事)하는 도(道)는 언제나 공의를 따르는 것이므로 공의가 한창 일어나 기어코 윤허를 얻고자 하였다면 전후로 논의에 참여하고 정계하지 않은 것에는 별로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사간 김여옥은 체차하고, 대사간 전식, 대사헌 **서경우**, 장령 이계, 지평 박수문·김진은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대사간 전식, 장령 이계, 지평 박수문·김진이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5일(정묘)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장령 이계, 지평 박수문·김진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6일(무진)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이계(李烓), 지평 박수문(朴守文)·김진(金振), 정언 김태기(金泰基)가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해숭위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지평 김진이 아뢰기를,

"-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행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지평 김진(金振), 정언 박계영(朴啓榮)이 아뢰기를,

"- 윤방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집의 조경이 청대한다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집의 **조경(趙絅)**이 청대하러 와 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인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3일(을해) 맑음 / 문정전 월랑에서 집의 조경을 인견할 때 동부승지 최유연 등이 입시하여 일본과 교유하고 천조에도 사신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午時)에 상이 문정전 월랑에 나아가 집의 **조경(趙絅)**을 인견하였다. 동부승지 최유연(崔有淵), 가주서 임규(林葵), 기사관 임전(林)·정태제(鄭泰齊)가 입시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신은 10년간 시종신(侍從臣)으로 있다가 병 때문에 영남에 칩거한 지 이미 한 해가 넘었습니다. 대가(大駕)가 파천할 때 미처 모시고 호종하여 산성에 들어가지 못한 신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고, 신이 연전에 외람되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박한 논의로 일을 그르친 죄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의 대신(臺臣)들이 모두 죄를 입어 파출당했는데 신만 유독 총애를 과분하게 받아 또 걸맞지 않은 직임을 맡았으니, 신이 비록 형편없기는 하지만 어찌 감격하고 황송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만 미천한 신의 병이 오래도록 계속되어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므

로 영남의 시골로 물러나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목숨 끊어지기 전에는 주인을 걱정하는 견마(犬馬)의 성심을 어찌 감히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까. 아, 국가가 전에 없던 이러한 변란을 만났지만 다행히 황천과 조종의 돌보심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로 있을 난처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소의한식(宵衣旰食)[41]하면서 근심하고 애쓰시고 신하들은 밤낮으로 공소(公所)에 있으니, 어찌 훌륭한 계책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신처럼 병으로 집에 칩거하는 미천한 자에게도 간혹 어리석은 생각과 계책이 있습니다. 대개 오늘날의 일을 석진(石晉)이 요(遼)나라의 야율덕광(耶律德廣)에게 한 것처럼 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구천(句踐)이 오(吳)나라에 한 것처럼 하려 하십니까? 신은 어느 쪽에 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상의 뜻이 향하는 바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묘사직이 무너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해 나의 치욕을 잊은 것이지 어찌 좋아서 했겠는가."
하자, **조경**이 아뢰기를,

"신도 성상의 마음이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위한 계책은 고식적인 것을 편안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국사는 이미 갈 데까지 간 상황이므로 고식적으로 있으려 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구천의 월(越)나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작은 월나라의 구천이 강한 오나라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부(大夫) 종(種)과 범려(范蠡) 등의 몇 사람을 쓸 수 있었던 데에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41) 소의한식(宵衣旰食) :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 임금이 정사(政事)에 부지런함을 비유한 말.

있었으니, 지금 만약 성심으로 찾는다면 온 동토(東土) 수천 리 땅에 어찌 범려나 종과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신이 전고(前古)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건대, 아무리 성인이라도 무력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들이 약(弱)으로써 강(强)을 제압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은 병졸들을 잘 훈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 나라로는 그래도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유하는 도리도 극진히 하지 못하였고 진실함도 없었으니, 장차 위급할 때 어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핏 들으니, 사실인지 거짓인지 천조(天朝)에서 일본에 통지해 징병하는 거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도중(島中)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조도 병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득이한 거조가 있는 것일 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웃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천조에 선수를 빼긴다면, 앞으로의 화란은 더욱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따로 문사(文士) 하나를 일본에 보내 교린과 성신의 뜻을 보이고, 또 우리나라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위급할 때 서로 구원하는 의리를 잘 타이른다면, 저들도 신의가 있는 나라이니 훗날 낭패를 당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과 상의하여 행하겠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오늘날 주사(舟師)[42]를 추가로 부방(赴防)[43]하게 하는 일은 참으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만약 불의의 변란이 있을 시에는 이것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42) 주사(舟師) : 수군(水軍)을 달리 이르는 말
43) 부방(赴防) : 조선시대 다른 지방의 병사가 서북 변경의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방위임무를 맡은 일.

오합지졸인 주사를 이끌고 한창 기세등등하던 왜적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 원문 빠짐 - 이때 원균(元均)은 앞서 대패하였는데 이순신은 승전보를 바쳤습니다. 이로 볼 때 비록 주사 - 원문 빠짐 - 훌륭한 장수가 아니면 도리어 무용할 뿐입니다. 신은 오늘날의 수신(帥臣) 중에도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 사람들은 왜구가 나올까 의심하고 있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꽤 두려워하며 동요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소 안정되었습니다. 대개 민심이 소요하는 것은 주사를 추가로 부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광(任絖)이 주사의 일을 대략 안다고 여긴다면 그에게 통제사의 직임을 맡겨서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면 됩니다. 하필 별도로 검찰의 직임을 맡게 하여 인심을 동요시킨단 말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임광이 주사를 순검한 것은 비단 금년만이 아니다. 작년에도 순검했었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조종조부터 지성으로 사대(事大)해 온 지 이제 200년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오늘날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 김육(金堉)이 천조(天朝)에서 나왔을 때 상께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중외의 신민이 누군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간혹 조정과 천조의 관계가 이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칠 수는 없다 해도 만약 틈을 봐서 소식을 전해 우리나라가 천조를 잊지 않고 있는 마음을 보인다

면, 훗날 천하와 후세에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이미 행하였다. 그러나 기밀에 속하는 일이므로 외방의 사람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또 게첩(揭帖)[44]으로 우리나라의 실상을 모두 설명하여 이미 도중(島中)에 통지하였다."
하자, **조경**이 아뢰기를,

"소신도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멀리 있는 사민(士民)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교를 듣고 나니 실로 신의 마음이 놓입니다. 당초 청나라와 약조한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세자가 아직 저들 중에 있으니 더더욱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말과 후한 예물만으로는 저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세자가 돌아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성상의 와신상담하는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들으니, 청나라의 황제가 몽고(蒙古) 땅으로 들어가 죽은 전마가 3만여 필이라고 하는데, 말이 죽어 나갈 때 군병이라고 어찌 모두 온전히 살았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는 중국과 몽고, 서달(西韃)이 서로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진달(眞韃)은 그 수가 3만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기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천금을 아끼지 말고 첩자를 잘 써서 저들 내부의 허실을 알아낸 뒤, 저들이 청하기 전에 먼저 원군을 보내 상황을 보아 진격하거나 퇴각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더라도 혹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나라는 군기(軍機)가 매우 비밀스러워 외국 사람이 알 방도가 없다.

---

44) 게첩(揭帖) : 어떠한 일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보고하는 공문서.

그러나 여러 인종들을 억지로 모아 놓은지라 진달의 수는 적으니, 자중지란이 없을 것이라 어찌 보장하겠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형세가 그러합니다. 저들은 본디 근본이 없는데 갑자가 강성해진 것이니, 어찌 장구하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요동(遼東) 지방은 성지(城池)가 정비되지 않고 인민이 적어서 오로지 초원에 짐승들의 흔적만 무성하다고 하니, 이곳도 장차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중원에서 다행히 기미를 먼저 알아채 선수를 쳐서 저들의 계책을 무산시키면 저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저 나라가 외인(外人)을 받아들여 쓰는 경우에도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두니, 그 역시 장구할 수 있는 형세가 아니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일은 강령이 확립되지 않아 이랬다저랬다 자꾸 바뀝니다. 경상도의 왜공목(倭貢木)은 당초 37척 내지 38척의 목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8승목 45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어 남방 사람들이 상당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왜인이 좋은 목(木)을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척수는 조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목의 필수가 이렇게 길었는가?"
하자, **조경**이 아뢰기를,

"지금은 교역할 때 기라(綺羅)나 약재 등의 여타 물품이 없기 때문에, 좋

은 목으로 골라 봉납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전(前) - 원문 빠짐 - 물화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목동(木同)은 저쪽에서도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지금과 같은 때에 막중한 것은 - 원문 빠짐 - 해이하며 장수는 병사를 모르고 병사는 장수가 익숙지 않습니다. 제대로 군대를 훈련시키지 못하는 데다 또 언제 진격하고 후퇴할지 병력 운용에도 어두우니, 이런 상태로 대적(大敵)과 부딪히면 적의 기세만 봐도 궤산될 뿐으로 군사의 숫자가 많은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얻어야만 군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군사가 정예해야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부견(符堅)의 백만 대군이 사현(謝玄)의 일만 병사를 당해내지 못하였고, 광무제(光武帝)의 오천 군대가 왕심(王尋)의 백만 대군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용병의 도(道)는 군사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로지 정예화하는 데 힘쓸 따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병농(兵農)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양병(養兵)할 수가 없다. 군사와 전마를 정예화하고자 한들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조종조 때에도 병농을 분리했었는데 지금은 궁궐을 지키는 위졸(衛卒) 외에는 달리 병농을 분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농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어찌 양병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외방 열읍(列邑)의 군사들은 신역(身役) 외에도 침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 그 노고를 감당하지 못하여 늘 흩어져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군대로

하여금 적과 대적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 읍의 군액(軍額)이 만약 100명이면 50명은 정병(正兵)으로 삼고 50명은 봉족(奉足)으로 삼아 정병의 의복과 식량을 대도록 하면, 군액의 수는 줄어들지만 병사가 모두 정예군이 되어 적과 대면했을 때 와해되는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옳지만 곤궁한 백성이 남의 봉족이 되어 매양 호수(戶首)의 침탈과 독촉을 당하게 되면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지금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조석을 보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조정에서 조금이나마 견감(蠲減)하는 은전을 베풀어도 백성들은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군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우니, 이는 실로 국가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신이 기사년(1629, 인조7)에 외람되이 암행 어사로 나가라는 명을 받고 황해도를 두루 돌아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봉산(鳳山) 등과 같은 곳에 비옥한 노전(蘆田)이 많이 있는데 모두 사대부 집안에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노전을 공가(公家)의 둔전(屯田)으로 만들어 매년 경작해서 수확하면 군향(軍餉)의 일부나마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처럼 많겠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둘레가 거의 수백 리나 되니,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이 어찌 적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올해 한재가 매우 심한데, 그대가 남방에서 올 때 본 바는 어떠한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4월에 다행히 몇 차례 가랑비가 내린 덕분에 경상우도에서는 근근이 올벼를 이앙하였으나, 충청도 지역에서 지나온 곳들은 한재가 매우 심하여 이앙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에 이르자 사방 천리가 모두 적지(赤地)로 그 참담함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양맥(兩麥) 농사도 이미 글렀으니, 앞으로의 민사(民事)를 어찌해 볼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남은 경기만큼 심하지 않은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경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경상좌도도 우도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남 한 도는 면적이 매우 넓은데 혹 쓸 만한 인재가 있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신도 들은 바는 없으나 그중에 그래도 한둘 인재라 칭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칠원(漆原)의 유생 중에 조임도(趙任道)라는 자가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칩거하여 학문을 닦고 이름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 나이는 얼마인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올해 오십 남짓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학행은 어떠한가?"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유서(儒書) 읽기를 좋아하고 효제(孝悌)의 도를 힘써 실천합니다. 우도(右道)에도 유생 김휴(金烋)라는 자가 있는데 의리에 침잠(沈潛)하는 경지는 아니지만 꽤나 강개한 지기(志氣)가 있습니다. 혼조(昏朝) 때에 정조(鄭造)가 독단으로 삭적(削籍)하여 거의 불측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외증손이며 김성일(金誠一)의 후예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 - 원문 빠짐 - 들은 적이 없다."
하니, **조경**이 아뢰기를,

"장현광(張顯光)이 죽은 뒤로 스승이 될 만한 훌륭한 유자(儒者)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언로는 한 나라의 혈맥(血脈)입니다.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게 되니, 이는 예로부터 이미 그러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징험된 일입니다.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에는 언로를 넓게 열어 주어 미천한 자의 말도 반드시 가려 쓰셨으나, 근년 이래로는 점차 예전 같지 않아서 비록 명색상으로는 간언을 받아들인다지만 역시 그 말이 실제로 채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간에 진언한 자들이 꼭 다 적절한 논의를 폈던 것은 아니겠지만 파직시키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사방에서 듣고 개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간언을 물 흐르듯 따르는 군주의 도에 위배되지나 않는지 삼가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말하는 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논을 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니, 그들을 내쳐서 끊어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막 큰 변란을 겪은 뒤라서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을 이미 모두 견감(蠲減)하였고, 거마(車馬), 의복, 기용(器用)도 모두 간소하게 하였습니다만, 괜한 겉치레가 제거되지 않아 폐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이 초야에 칩거하면서 납월(臘月)[45] 중에 나온 조보(朝報)를 얻어 보니, 시신(侍臣) 등에게 전약(煎藥)을 나눠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납약(臘藥)은 폐할 수 없다 해도 어찌 이런 물품까지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시기를 당해 보다 더 경계하고 조심하여 부화(浮華)함을 통렬히 제거한 뒤라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보면 신민들이 전하에게 바라는 바와는 크게 어긋납니다. 또 대간의 논계에 대해 어찌 이처럼 서로 버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죄가 종묘사직에 관련된 경우라면 대간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삼가 전하의 우레와 질풍과도 같은

45) 납월(臘月) : 음력 선달의 다른 이름.

위엄찬 기상에 흠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비록 죄가 무겁지만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벌을 시행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마땅히 누구나 한결같이 적용하는 법을 준용해야 하니, 어느 겨를에 추호라도 사의(私意)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신은 병이 누적된 여파로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전도되고 어긋나는 바람에 오늘 등대(登對)[46]하여 소회(所懷)를 모두 아뢰지 못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 일이라도 채용된다면 약간이나마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최유연이 아뢰기를,

"신은 노모가 있는데 병세가 매우 중하여 조석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자식 된 자의 마음에 차마 곁을 떠날 수가 없는데, 동료가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알지 못해 패초(牌招)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명을 어긴 데 대한 벌을 받게 되더라도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노모가 권해 들여보내므로 신도 억지로 직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성상의 지척인 연석에서 전도된 행동으로 실례를 범하였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죄하지 말라."

---

46) 등대(登對) : 어전(御前)에 나아가 임금을 직접 대함.

하였다. 나가려고 할 때 상이 이르기를,

"묘당(廟堂)[47]이 의처하는 일은 비밀리에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4일(병자) 아침에 흐리고 저물녘에 맑음 / 윤방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집의 **조경(趙絅)**, 지평 김진(金振), 정언 박계영(朴啓榮)이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출궁해서 여염에 살고 있는 나인은 미천한 부류에 속하므로 심상하게 자처한다 해도 사대부라면 의리상 감히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 부사 신준(申浚)은 출궁한 나인을 첩으로 삼아 데리고 살았으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준을 나국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신준의 일은 계사가 옳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영구히 출궁하였으니 첩으로 삼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였다.

---

47) 묘당(廟堂) : ①나라와 정치(政治)를 다스리는 조정(朝廷) ②조선(朝鮮) 때, 가장 높은 행정(行政) 관청(官廳). 의정부(議政府) ③종묘(宗廟)와 명당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4일(병자) 아침에 흐리고 저물녘에 맑음 / 예문관 제학 이경여를 본원 제조로 차하할 것을 청하는 승문원 도제조의 계

최유연이 승문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예문관 제학 **이경여(李敬輿)**를 승문원 제조로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6일(무인) / 문정전 월랑에서 주강을 행할 때 특진관 이시백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한 뒤 공물을 작미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에 상이 문정전 월랑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특진관 이시백(李時白), 동지사 **서경우(徐景雨)**, 참찬관 김광욱(金光煜), 시독관 **이경여(李敬輿)**, 검토관 최유해(崔有海), 가주서 임규(林葵), 기사관 임전(林)·정태제(鄭泰齊)가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시전(詩傳)》을 음으로 한 번 읽었다. **이경여**가 대전편(大田篇)을 진강(進講)하고,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각각 한 번씩 하였다. 상이 또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각각 한 번씩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이 장(章)에서 땅을 나누고 식록(食祿)을 정하는 방법은 맹자가 설명한 주대(周代)의 관계(官階)와 녹봉을 제정하는 제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9만

무(畝)의 땅에 공전(公田)을 만들어 경, 사, 대부가 9등분한 가운데 부분을 식록으로 하기 때문에 '1만을 취한다.'고 한 것이니, 대개 9분의 1 세법인 것입니다. 견(畎)은 밭 사이의 물길이고 농(壟)은 밭 가운데 솟아오른 곳인데, 농의 풀을 제거한 뒤 그곳의 흙을 가져다 쌓아서 어린 곡식의 뿌리를 잘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농이 다 없어져 밭과 평평해지면 어린 곡식의 뿌리가 아주 단단히 땅에 박혀 바람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농사법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자, 김광욱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육진(六鎭)에서 소로 그 밭 사이를 갈고는 흙을 쌓아 뿌리를 북돋아 주되 제초(除草)는 하지 않습니다만, 역시 이 일을 본뜬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뛰어난 선비들이 전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에서 처음에 농사짓는 일에 대해 말하고, 또 - 원문 빠짐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 각각 자신의 업에 종사하자 - 원문 빠짐 - 집은 이로부터 차츰 적어지고 곡식을 먹는 집은 이로부터 차츰 많아져서 전야에 있는 뛰어난 사람 또한 - 원문 빠짐 - 그리고 인군(人君)은 아래로는 만민을 다스리고 위로는 종묘사직을 받들며, 나라가 풍족한 뒤에 민생이 풍족해지고 제수(祭需)를 정결히 마련한 뒤에 제사를 받들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에게 녹봉을 제정하던 제도는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만, 녹을 후하게 해 준 뒤에 사대부의 염치를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가난하므로 옛 제도를 똑같이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왕의 제도를 본받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옳은 말이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먹을 것은 백성들의 하늘이니, 먹을 것이 있고 나서 백성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금은주옥이 있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치세에는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금옥을 천하게 여기며, 난세에는 금옥을 귀하게 여기고 곡식을 천하게 여깁니다. 이는 국가의 흥망과 생민의 화복이 달린 문제로 옛 성인이 사치를 경계한 까닭 역시 이 때문입니다. 대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겨야 할 것을 천하게 여긴다면, 나라에는 백성은 많고 재물은 풍족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최유해가 아뢰기를,

"고대에는 3년간 세를 거두면 반드시 1년 치를 비축해 두어 수재나 한재에 대비하였는데, 나누어 줄 때 종자로 쓸 것은 햇곡으로 주고 식록(食祿)은 묵은 곡식으로 주었습니다. 이 또한 백성을 구휼하는 큰 정사이니 오늘날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전에 전교하신 내용에 '공물(貢物)의 작미(作米)는 그 폐단이 많기는 하지만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통할 수 없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지금의 사세가 그렇기는 하지만 경비는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변통하여야만, 이 백성들이 먹고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관(史官)을 보내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진휼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절차가 매우 많아서 번신(藩臣)이 모

도(某道), 모주(某州), 모현(某縣)에 기근이 들었다고 아뢰어도, 반드시 해조로 하여금 복계(覆啓)하게 한 뒤에 그 대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道)가 아닙니다. 상께서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굳이 누누이 회계(回啓)하여 형식을 차린단 말입니까. 작미하는 일로 연해(沿海)의 주민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장차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으니, 그 폐단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해조에서는 우선 목전의 경비를 이유로 변통하지 않으니, 신은 삼가 근심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작미한 것은 딴 곳에 쓰려는 게 아니다. 상하 관원의 요식(料食)을 모두 여기에서 충당하니, 이것도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다. 김기종(金起宗)이 호조 판서일 때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사세가 이와 같아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지금의 상인(商人)은 그 의복과 음식을 사대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입습니다만, 농민은 1년 내내 고생하고도 기한(飢寒)을 면치 못합니다. 게다가 자신도 고된 역을 지고 있는데 10살도 되지 않은 아들, 손자까지 모두 군적에 편입시키니, 이 때문에 곤궁한 백성들은 전혀 버텨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영동(嶺東)의 산촌 고을은 풍년을 만나도 제대로 먹기 힘든데, 하물며 이렇게 병란 끝에다 또 흉년까지 든 때이겠습니까. 금년에 상번(上番)한 철원(鐵原)의 군사들은 특히 심하게 기한에 시달려 얼굴은 온통 누렇게 뜨고 몸에는 제대로 걸친 것이 없어 보기에 너무도 가련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번을 면제해 먼저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지금 백성들은 곤궁 - 원문 빠짐 - 상하가 모두 궁색하니, 국가에서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조금도 없다면 오직 백성들을 보전하는 데 힘쓰는 정사에 - 원문 빠짐 - 약간의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그 본성은 또 신령하니, 상께서 근심하고 애쓰며 아껴 주기를 마치 - 원문 빠짐 - 하면 어찌 감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전에 산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한데서 지내며 추위와 배고픔이 뼈에 사무쳤지만, 성상께서 다친 사람 대하듯 지성으로 염려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반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산성에 계실 때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삼가 바라오니, 그렇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어제 광주 부윤(廣州府尹)을 만나 보니, '산성의 동포루(東砲樓)는 이미 다 축조하여 곧 기와를 얹을 것입니다. 남포루(南砲樓)는 지금 재목을 운송해 들이고 있는데, 역군(役軍)의 수가 적어 역사를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청도 승군(僧軍)은 역(役)에 부쳐진 자가 많은데 비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올라온 승군의 수가 적습니다. 체성(體城)도 수축해야 하는데 역군이 이처럼 부족하니 너무도 걱정스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현재 역에 부쳐진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시백이 아뢰기를,

"겨우 200여 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달 내로 역사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시백이 아뢰기를,

"역군이 얼마 없어 역사를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나랏일이 이처럼 갈 데까지 가서 모양이 말이 아닌 데다가 이번 한재는 전고에 없던 것이니, 만약 경장(更張)[48]하지 않고 그럭저럭 날짜만 보내다가는 앞으로의 일을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백관의 늠료(廩料)[49] 및 각 아문에서 사환하는 하인을 다시 더 감축하여 일정한 규례를 세우면 혹여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이런 때를 당해 참으로 화포(火砲) 발사 훈련을 중지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 전 훈련도감의 포수가 방포할 때 어린아이 하나가 탄환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뒤로 비국의 감결(甘結)로 인해 한성부에서 방포를 일절 금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성중에 화포 소리가 끊어져 방포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심사숙고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앞으로는 금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근래 포수들이 방포 훈련을 조금 하는데, 약환(藥丸)이 매우 귀해 얻어 쓸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친림(親臨)해 시재(試才)하는 거조가 있으

48) 경장(更張) : 해이해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제도 등을 기존체제의 틀 속에서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것.
49) 늠료(廩料)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봉급

니, 군기시로 하여금 별비(別備)한 약환을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매번 줄 수는 없어도 근래 약환이 매우 귀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중일 습사(中日習射)하는 활터에서 입직한 금군 중에 재예(才藝) 있는 자를 뽑고 싶지만, 이곳은 다른 한가한 곳들과는 달라서 감히 앙달(仰達)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무방하다면 이곳에서 시사(試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임금의 도는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뜻을 세워서 본원이 맑아지면 만사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신이 삼가 근래 국가의 일을 보건대, 겉치레하는 폐습이 변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겉치레를 떨쳐 버리고 실질적인 정사를 행하는 데 힘쓰소서. 반정 전에 윤기(倫紀)를 세우고자 했던 마음과 산성에서 군민(軍民)들을 아끼고 가엾게 여겼던 마음을 되찾으신다면 중흥의 공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뜻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한때의 실정에는 모두 그 폐단을 해결할 방책이 있다. 뜻을 세우는 것 외에 또 다른 방책은 없는가?"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는 뜻을 세우고 학문에 힘쓰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뜻이 없습니다. 뜻이 세워지고 학문이 닦이면 일이 모두 뜻대로 됩니다. 성상께서 항상 - 원문 빠짐 - 늘 이를 염두에 두시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 원문 빠짐 -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이치에 맞지 않고 인재의 취사와 출척(黜陟)이 공의(公議)를 거슬러 결국 시비가 전도되는 데에 이르러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식견이 편협하고 정체되어 처사가 밝지 않은 탓에 이런 폐습을 초래하였다. 경의 계사가 매우 타당하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최유해가 아뢰기를,

"**이경여**의 말이 옳습니다. 반드시 성상께서 스스로 반성한 뒤라야, 좋아하고 싫어해야 할 것이 분명해져서 마치 천지와 덕을 합하고 일월과 밝음을 나란히 하듯이 호령을 발할 때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마음에 치우치는 바가 있으면 공(公)이 사(私)를 이길 수 없으니, 이는 학문의 공력이 없어서이다."
하였다. 최유해가 아뢰기를,

"경외(京外) 관원들의 포폄(褒貶)[50]을 6월에 시행해야 마땅하나, 수령을 전송하고 맞이할 때 끼치게 되는 민폐가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50) 포폄(褒貶) : 조선시대에 관료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이나 징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큰 변란 끝에 큰 가뭄까지 든 뒤라서 민사(民事)가 염려스럽습니다. 금년 6월의 포폄을 다소 물려서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자, **서경우**가 아뢰기를,

"포폄하는 일은 본래 정식(定式)이 있으니, 관원 한둘을 전송하고 맞이하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조종조의 금석과 같은 전장을 가벼이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재는 비단 금년뿐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물려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최유해가 아뢰기를,

"함경도 육진(六鎭)의 경우, 비록 유생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진 궁벽한 지역이라 견문이 고루하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생 중에 학문에 뜻이 있는 자에게 서울로 올라와 거주하면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인재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곳의 무사도 그 재주와 기국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변방을 용동(聳動)하게 하는 일로 삼는다면 기민을 진휼한 데 이어 인심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좋은 듯하다. 무사는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 어찌 조정에서 불러 모을 수 있겠는가."
하자, **서경우**가 아뢰기를,

"북도 초입 지방의 유생은 간혹 수학할 곳이 있지만, 먼 변방 지역에 이르면 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문에 뜻을 둔 자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경성(鏡城) 등지에 따로 문관을 두고 그로 하여금 학문을 권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기근이 혹심해 다른 일에 신경 쓸 경황이 없다. 그러나 무사에 관한 일이라면, 병조 판서가 여기 있으니 쓸 만한 사람을 수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얼마 전 한재로 인해 특별히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리셨는데 그 내용이 간절하고 측달하였으니, 중외의 그 누군들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릇 민폐에 관련된 일이라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성을 다해 극진히 말씀드려야 하고, 성상께서도 반드시 유념해 채용하실 것입니다. 차자 중에 말씀드린 은기(銀器) 문제는, 당초 경망한 생각에 검소한 덕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상께서 부화한 일을 없애시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이 기물은 다만 미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성상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편치 않게 여기시는 듯한 하교가 있었으므로 신은 몹시 황공합니다. 여러 궁가의 어염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쟁론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물의가 모두 답답하게 여기고 아랫사람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개 여러 궁가가 염분(鹽盆), 어살(魚箭)을 함부로 점유하는 폐단이 끝이 없어 갈수록 더 심해지므로 해변의 백성들이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떠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는 이렇게까지 곡진히 비호하시니, 신은 성상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어찌 그렇겠는가. 해서(海西) 지역은 연전에 대간(臺諫)의 - 원문 빠짐 - 거의 혁파하였다."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이 일은 범연하게 떠도는 풍문에 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부로 법을 어기는 폐단이 평시의 갑절이나 되어 경강(京江)의 뱃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와 정박할 때가 되면, 중간에 '궁가의 종 무리들이 궁가에서 입안(立案)을 받은 바다에서 잡은 것이다.'라고 칭탁하며 멋대로 강탈해 갑니다. 이 때문에 뱃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법부에서 적발하여 논죄하라."
하였다. 강(講)을 마치자 파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7일(기묘) 맑음 / 해숭위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집의 **조경**, 지평 김진이 아뢰기를,

"-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仕版)[51]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신준(申埈)이 영구히 출궁한 나인을 첩으로 삼은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신

51) 사판(仕版) : 관리의 명부(名簿).

준을 나국하여 정죄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삼남(三南) 곤수(閫帥)[52]의 직임은 이러한 때에 특히 중요하니, 충분히 가려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영달(李英達)은 위인이 패악스럽고 망녕된데다 또 천성이 술을 좋아하여 처음 제수될 때부터 이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도임한 뒤로 오직 음주만을 일삼아 매일 술에 취해 있는 바람에 거조가 엉망으로 전도되고 형장(刑杖)을 가혹하게 쓰는 한편 모든 사무를 잊은 채로 두니, 관하의 군졸들이 그 학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장령 조중려(趙重呂)는 제수된 뒤 계청하여 하유한 지 이미 5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올라올 기약이 없습니다. 병이나 사고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혹시 올라오더라도 기한을 넘긴 지 이미 오래되어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이 많은 때에 오래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조중려를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경 등과 신준은 모두 파직하고, 이영달은 추고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8일(경진)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집의 **조경**, 지평 김진이 아뢰기를,

52) 곤수(閫帥)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 윤신지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나인(內人)이었다면 지금은 비록 영구히 출궁했다 해도 사대부의 의리상 감히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데, 전 부사 신준(申浚)이 감히 데리고 살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상께서 파직하라고만 비답하셨으니, 신들은 실로 성상의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신준을 나국하여 정죄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영달(李英達)은 -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추고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니, 파직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새로이 출신(出身)이 된 자의 부방(赴防)은 막중한 군정(軍政)이므로 포(布)를 받고 부방을 면제하는 규례는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부서(赴西)하는 출신에게 포를 바치고 부방을 면제받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부자는 요행히 면제받는 것이 기쁘겠지만 가난하여 수자리 가는 자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수자리 가는 자가 많아 거둬들인 포가 적다면 국가 재정에 꼭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공연히 출신에게 포를 거두었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실로 구차하니, 출신에게 포를 거두는 공사를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파직하고 추고하였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포를 거두는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겠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19일(신사)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 집의 **조경**, 지평 박수문·김진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신준(申埈)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나국하여 정죄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이영달(李英達)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파직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사예(司藝) 김여옥(金汝鈺)은 사간으로 있을 때 합계(合啓)한 공의를 무시하고 감히 구원하려는 술책을 써 장황하게 인피하며 시비를 전도시켰습니다. 자신의 본의를 주장하려 하였으나 애매함을 면하지 못하였고, 공론에 영합하려 하였으나 안간힘을 쓰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사대부의 행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김여옥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새로 급제한 이진(李進)은 본래 대신 글 써 주는 것을 업으로 삼아 이재영(李再榮)과 함께 혼조 때에 나란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재영은 사륙변려문을 이진은 책문을 팔아 급제한 사람의 수가 한둘이 아닌데, 이재영과 같이 형벌을 받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분통해하였습니다. 게다가 관서(關西)에 호적을 올리고는 생원시와 진사시, 동당 초시(東堂初試) 때마다 글 못하는 교생(校生) 무리에게 대신 글을 지어 주어 군역을 면하게 해 주고는 큰 이익을 챙겨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졌으니, 이런 짓은 이재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뜻밖에 지금 감히 선비의 이름을 더럽히고 급제까지 하였으니, 사방에서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진을 삭과(削科)하고, 또 남의 글을 대신 지어 준 그의 죄를 다스려 흐려진 시속에 경종을 울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김여옥에게 벌을 시행하는 것을 불가하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진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겠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체차된 김진보다 잘못이 크므로 삭탈해 줄 것을 청하는 집의 조경의 상소

집의 **조경(趙絅)**이 상소하기를,

"어제 간원(諫院)이 본부를 처치하면서 김진이 간통하여 뜻은 그대로 두고 글귀만 바꾼 것을 두고 구차하다 하여 김진을 체차하기를 청하였는데, 뜻은 그대로 두고 글귀만 바꿔서 계사를 작성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요행히 책임을 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뻔뻔한 얼굴로 공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19일 상회례 때에 김여옥을 논핵하는 일을 석상에서 발의하였는데, 마침 대사헌 **서경우**가 식가로 참여하지 않아 계사의 초고를 작성하는 것을 신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지만 도리어 은폐하였고, 다른 단서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도리어 억제하였으니, 사대부의 마음가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구절은 신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서경우**가 '앞질러 그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나중에 수정해 고친 것도 신이 한 일입니다. **서경우**가 피혐하는 계사에서 이미 김진이라고 잘못 지적하였고, 간원이 처치할 때도 또다시 착오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어제 피혐한 계사에서 그러한 곡절을 전부 빠뜨린 데서 연유한 것이니, 신의 죄가 큽니다. 신의 망녕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그 사람은 체차되고 신은 출사한다면 물의가 신을 그르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로 신의 마음이 저잣거리에서 매 맞는 것보다 더 부끄럽습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특별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시어 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길 바라오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계자인을 찍어서 내렸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대사헌 서경우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 집의 **조경**, 지평 박수문·김진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인혁하고 물러간 대사헌 서경우 등을 출사시키고 지평 김진 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는 이경석의 계

이경석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는 '어제 동료가 간통하고서 계초를 보냈는데, 하나는 신준의 일로 임혁의 경우를 거론하며 몇 자 첨가해 넣었고, 또 이진과 김여옥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진의 일은 신도 물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삼가 알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신준의 일은 그 죄가 과연 중하기는 하지만 임혁과 똑같은 경우인지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은 「만약 달리 들은 바가 없다면 일단 전의 계사대로 하자.」고 답하였습니다. 김여옥의 일에 대해서는 신의 생각으로는 김여옥의 처사가 혹 미진하더라도 또한 제각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대뜸 그 마음을 배

척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답하기를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지만 앞질러 그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은폐하였다는 등의 말은 실로 이해할 수 없으니 일단 만나서 의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재삼 상의하였는데 김진의 답에 그 뜻은 그대로 두되 글귀는 바꾸겠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그가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이 심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일은 실로 등한히 할 논제도 아니고 또 갑자기 닥친 일도 아닌데 신이 근간에 김진과 공사(公事)로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건만 신이 참석하지 않은 날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였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조어한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웠으니, 바로 이 때문에 만나서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만나서 의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의가 결정되기도 전에 지레 스스로 전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평 박수문은 '신이 어제 제좌 때에 김여옥 등의 일을 상의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는데, 장관이 식가라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그에게 간통하고, 그 뒤 먼저 궐하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답통에 「이진의 일은 삼가 알았다. 신준의 일은 달리 들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의 계사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습니다. 김여옥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해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조어가 과도하지 않은지 의심하였습니다. 즉시 동료에게 간통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삼 상의하여 조어를 약간 고친 다음 장관에게 보내니, 「일단 만나서 의논하자는데, 굳이 글귀만 바꾸고 속뜻은 그대로 남겨 두고자 하니, 어찌하겠는가.」라고 답하였습니다.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아닌 듯하여, 궐문이 닫히려 하므로 다만 전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평 김진은 '김여옥의 일은 신이 실로 발론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김여옥이 피혐한 계사를 보았는데, 강도에서 범한 죄는 대부분 백성들이 처단해야 할 것인데 김여옥은 이러한 죄를 온 조정의 신하들에게 싸잡아 갖다

붙였습니다. 그가 공의를 무시하고 시비를 어지럽힌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며, 사대부의 마음가짐과 처사 역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의하여 논하였는데 뜻밖에 장관의 견해는 이와 달랐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의 **조경**은 '신준의 일은 신이 실로 그 논의를 처음 꺼냈습니다. 계사의 내용이 상당히 가벼웠는데, 서울에 오래 머물다 보니 입이 있는 자들은 모두 대간의 논평을 좋게 여겼으니, 이것이 신이 임혁을 거론하여 단안을 삼은 이유입니다. 김여옥의 피혐은 말을 돌려 하였고 또, 심대부의 논의를 거론하며 봉황의 울음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여옥의 마음가짐이 편향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처사만 부당할 뿐이겠습니까. 무릇 이 두 가지 일은 실로 물의로부터 채택하였지만, 장관의 논의를 따르지 않아 이토록 의견이 상충하게 되었고 종일 상의하는 바람에 결국 지레 먼저 전계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는데, 만일 논하는 일이 중대하다면, 우선 전의 계사대로 하고자 하고 또 만나서 의논하기를 요구한 것은 대개 세심하고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의견이 있는데 혹 범범한 것이 아니라면 상의하여 쟁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뜻은 그대로 두고 글귀만 바꾼 것은 구차한 말입니다. 지레 먼저 전계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사헌 **서경우**, 집의 **조경**은 출사하게 하고, 지평 김진·박수문은 체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논의가 정해지기도 전에 동료들이 멋대로 전계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어제 동료들이 상회례(相會禮)로 인해 개좌(開坐)[53]하였는데 신이 마침 식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동료가 간통(簡通)하고서 계초(啓草)를 보냈는데, 하나는 신준(申埈)의 일로 임혁(任奕)의 경우를 거론하며 몇 자 첨가해 넣었으며, 또 이진(李進)과 김여옥(金汝鈺)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진의 일은 신이 비록 논의를 매듭지을 때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신도 물의(物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삼가 알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신준의 일은 그 죄가 과연 중하기는 하지만 임혁과 똑같은 경우인지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은 '만약 달리 들은 바가 없다면 일단 전의 계사대로 하자.'고 답하였습니다. 김여옥의 일에 대해서는 계사 중에 '본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은폐하였고 새로 다른 단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억눌렀으니 사대부의 마음가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김여옥의 처사가 혹 미진하더라도 또한 제각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대뜸 그 마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답하기를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지만 앞질러 그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은폐하였다.」는 등의 말은 실로 이해할 수 없으니 일단 만나서 의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재삼 상의하였으나 동료들이 뜻을 견지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진(金振)의 답에, 뜻은 그대로 두되 글귀는 바꾸겠다고 말하고 이어 수정을 가하여 마치 글귀로 사람을 꾀려는 듯이 하였으니, 그가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이 심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일은 실로 등한히 할 논제가 아니고 갑자기 닥친 일도 아닌데, 신이 근간에 김진과 - 원문 빠짐 -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건만 아무 기미도 없다가 말을 꺼낼 때가 되자 신이 참석하지 않은 날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료가 글

53) 개좌(開坐) : ①낱낱이 자세하게 한 조목씩 열서(列書)함. ②법정이나 관청에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해 관원들이 자리를 정하고 벌여 앉는 것

을 작성하며 조어한 것을 신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역시 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여겼으니, 바로 이 때문에 만나서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어찌 시종 뜻을 돌리지 않고 급급하게 조금도 늦추지 않는단 말입니까. 비단 만나서 의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정해지기도 전에 멋대로 전계(傳啓)하였습니다. 출신에게 포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정계하는데도 이 역시 간통하지 않았으니, 이는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초한 신이 장관의 자리에 앉아 그 사이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태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주청사 때 데리고 갔던 가선대부인 군관 행 부사정 장위남을 별도로 데리고 가겠다는 홍보의 계

허계가 홍보(洪霦)의 말로 아뢰기를,

"신이 전에 주청사(奏請使)를 맡았을 때 데리고 갔던 군관 행 부사정(行副司正) 장위남(張偉男)이 일 처리 능력이 제법 있는데, 지금은 산성에서 성첩을 지킨 공으로 자급이 올랐습니다. 가선대부의 관계(官階)이므로 예전 **이기남(李箕男)**의 예에 의거하여 별도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0일(임오) 맑음 / 지레 먼저 전계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집의 조경의 계

집의 조경(趙絅)이 아뢰기를,

"신준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남쪽에서 오는 길에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신이 실로 그 논의를 처음 꺼냈습니다. 다만 대략만을 들었기 때문에 계사 내용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서울에 오래 머물다 보니 입이 있는 자들은 모두 대간의 논평을 좋게 여겼는데, 이것이 신이 임혁을 거론하여 단안(斷案)을 삼은 이유입니다. 장관이 이에 대해 유독 무어라 답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김여옥의 피혐이 윤방(尹昉)을 편들기 위한 것임은 가릴 수 없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을 돌려 모호하게 하였고 또 심대부(沈大孚)의 논의를 거론하며 봉황의 울음에까지 비유하였는데, 심대부가 과연 강도의 일을 용서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김여옥의 마음가짐이 편향되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처사만 부당할 뿐이겠습니까. 신도 장관이 왜 그를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이 두 가지 일은 실로 물의(物議)로부터 채택하였지만, 장관의 논의를 따르지 않아 이토록 의견이 상충하게 되었고, 또 종일 상의하는 바람에 끝내 지레 먼저 전계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신의 잘못은 동료들에 비해 특히 큽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문정전 월랑에서 조강을 행할 때 영사 신경진 등이 입시하여 《시전》 을 진강한 뒤 양사에서 논계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

해 논의하였다

조강이 있었다. 상이 문정전(文政殿) 월랑(月廊)에 나아갔다. 영사 신경진(申景禛), 특진관 이시백(李時白), 동지사 김수현(金壽賢),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특진관 조문수(曺文秀), 참찬관 김휼(金霱), 시독관 이주(李澍)·권우(權堣), 가주서 권박(權搏), 기사관 임전(林)·정태제(鄭泰齊), 윤대관인 장악원 정 최계훈(崔繼勳), 한성부 서윤 정시망(鄭時望), 선공감 첨정 정시웅(鄭時雄), 교서관 교리 김감(金鑑),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 최현(崔峴)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음으로 한 번 읽었다. ……

서경우가 아뢰기를,

"대사간 이경석이 오늘 뒤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갔는데 간원에 관원이 없어 신이 처치해야 합니다. 대사간 이경석은 어제저녁 동료를 처치할 때, 어두워졌을 때 들어와 야심해서야 퇴궐하였으니, 비록 뒤늦게 도착하였지만 달리 시간에 맞추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무슨 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위리안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시행한 벌도 가볍지 않고 그 정황이 용서할 만하지 않은 것도 아닌

데 지금까지 완강하게 고집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윤신지(尹新之)와 이경(李坰) 등의 죄를 이미 오랫동안 논열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윤신지는 관작을 삭탈하고 이경은 사판에서 삭거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사세가 외부의 사람은 들어오기가 힘들었던 듯하니, 이로 생각해 보면 논한 바가 과중하다. 그러나 여러 달 완강히 고집하므로 공론을 어길 수 없어 가볍게 벌을 시행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안은 실로 애매하니 정론(停論)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대신에게 답한 하교를 받들어 보니, 바로 소신이 피혐한 계사의 뜻이었습니다. 신준의 죄가 중하기는 중합니다만, 동료가 임혁의 죄와 비교해 동일시하였습니다. 임혁의 일은 신이 그때 수령이 되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대강을 들어 보면, 유희분(柳希奮)이 절친한 이에게 얘기하여 대간이 극형으로 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신준의 일은 비록 여염에 시끄럽게 소문이 퍼졌지만 막중한 죄를 감히 가벼이 논계해서는 안 되는데, 임혁의 죄와 동일한 사안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사 중에 가부를 말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은 만약 신준을 나문(拿問)한다면 그가 범한 죄상의 경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소신이 참석하지 않은 때에 가벼이 먼저 논계하였으니, 신이 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지금 또 탑전(榻前)에서 번거롭게 하니 너무도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가까이하던 궁인도 아니고 이미 영구히 출궁한 사람이니, 그 죄가 중대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파직하였으니, 그냥 놔두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 이영달(李英達)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하의 군졸이 흩어지게 될 우려까지 있으니, 파직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용렬한 사람은 아닌 듯하니, 비록 술로 인한 실수가 있었어도 - 원문 빠짐 - 지금 들으니, 폐해를 끼친 것이 적지 않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주가 아뢰기를,

"신이 김여옥(金汝鈺)의 죄를 진달하고자 합니다. 김여옥은 윤방을 변호하고 싶으면 마땅히 명쾌하게 분변해야 하는데, 감히 본색을 숨긴 언설로 현란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김진(金振)이 피혐한 계사에 대강 그 정상을 진달하였으나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남한산성(南漢山城)과 강도(江都) 모두 명분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실로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비를 알지 못하고서 이런 말을 하였다면 그 혼암함이 심한 것이고, 사리를 좀 알면서도 그 말이 이와 같다면 이는 심술(心術)에 해가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잘못된 일입니다. 성상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의 일은 그 죄가 과인의 몸에 있으니, 신료들의 죄가 아니다. 그의 말은 옳지 않지만 또한 각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니, 그냥 놔두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이주가 아뢰기를,

"각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명백하게 조어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않고서 피혐하는 계사 중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가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해 가면서 온 조정 군신(群臣)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더더욱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데 양사가 오랫동안 이를 규정(規正)하지 않았습니다. 헌부는 지금에서야 발론하고 나서도 또 의논이 합치되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서경우**가 아뢰기를,

"옥당이 김여옥의 일을 매우 엄중하게 진달하니, 너무도 황공합니다. 김여옥의 사람됨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이 승지로 있을 때 김여옥도 가주서로 있어 잠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 말에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 있겠습니까. 김여옥의 계사에 '남한산성과 강도 모두 명분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강도의 일은 강도에 있던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산성의 일은 산성에 있던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도 산성에 있었던 사람이니, 어찌 그 말에 혐의쩍고 거리끼는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당초 김여옥의 용심(用心)이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논계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발론한 뒤 의논이 합치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옥당의 심한 논척을 받았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

습니다."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이번 김여옥의 일은 양사에서 함께 발론할 일이 아닌 듯하였고, 본원에서는 성상소(城上所)[54]가 없어 논열하지 않았는데 지금 면전에서 옥당의 질책을 받았으니,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 以下 省略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김휼의 계

김휼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는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고, 집의 **조경(趙絅)**은 상소하였고, 장령 임득열(林得說)·유석(柳碩)은 지방에 있고, 지평 2원(員)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

54)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의 관원이 대궐문에 드나드는 백관(百官)들을 살피던 곳.

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1일(계미) 맑음 / 집의 조경의 피혐 전계를 부득이 봉입하겠다는 김광욱의 계

김광욱이 아뢰기를,

"대간이 한 가지 일로 재차 피혐하지 못하도록 이미 승전을 받들었습니다만 집의 **조경(趙絅)**이 또 피혐하여 전계(傳啓)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러한 뜻을 통지하자 오늘 재차 피혐하는 것은 그냥 재차 피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입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간은 서관(庶官)과는 같지 않으므로 부득이 봉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봉입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2일(갑신) 흐림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조경(趙絅)을 부응교로, 정호인(鄭好仁)을 병조 좌랑으로, 나윤소(羅允素)를 중화 부사(中和府使)로, 이여익(李汝翊)을 개성 경력(開城經歷)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병비가 김술(金述)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한여직(韓汝稷)을 도총관으로, 박일성(朴日省)·윤강(尹絳)을 문신겸선전관으로, 최득남(崔得男)을 평

산포 만호(平山浦萬戶)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2일(갑신) 흐림 / 인혐하고 물러간 대사헌 서경우는 체차하고 대사간 이경석 등은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옥당의 차자

옥당이 상차하기를,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대사간 이경석, 정언 박계영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똑같이 취급하여 감히 양쪽 다 명분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 원문 빠짐 - 그 식견이 밝지 못하고 논의에 조리가 없음이 심한데, 이를 잘 판별해 통찰하여 바르게 시비를 가리지도 못하고서 다만 김여옥이 강도, 산성이라고 한 것은 강도와 산성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그 자취가 몹시 치우치고 얽매여 있고 언사는 매우 구차합니다. 헌부에서 이미 발론하였으니 함께 거론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구례를 따라 전계(前啓)를 모두 정계하였으니 미처 논열하지 못한 것이 별다른 잘못은 아닙니다.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출사한 즉시 연신(筵臣)의 배척에 스스로 인혐해서는 안 됩니다. 대사헌 **서경우**는 체차하고, 대사간 이경석과 정언 박계영은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李敬輿)**, 행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지평 윤양(尹瀁), 정언 박계영(朴啓榮)이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신준(申埈)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나국하여 정죄(定罪)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사예 김여옥은 합계가 한창 진행되던 때 감히 이견을 내어 조어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명백히 하지 않았으니 공의에 죄를 지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므로 깊이 치죄할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과 강도(江都)에 관한 설은 식견이 옳지 않고 논의가 사리에 맞지 않으니 이러한데도 그냥 둔다면 훗날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실로 이것을 두려워하여 논집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오늘 사직에 친히 제사 지낼 때에 성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동서반 당상 이상의 인원수가 매우 적어 보기에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늙거나 병든 사람 외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모두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새로 제수된 장령 유석(柳碩)은 현재 충청도 괴산(槐山)에 있고, 집의 권심(權諗)은 현재 아산(牙山)에 있고, 지평 신유(申濡)는 현재 경상도 군위(軍威)에 있으니 모두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경 등의 일과 신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5일(정해) 맑음 / 인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정언 신익전을 서경해야 하므로 대사헌 이경여와 제좌하겠다는 지평 윤양의 계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정언 신익전(申翊全)은 아직 4품이 아니므로 서경(署經)[55]해야 하는데 집의 권심, 장령 임득열(林得說)·유석, 지평 신유가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비록 인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신이 대사헌 **이경여**와 부득이 서경을 위해 제좌(齊坐)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6일(무자) 맑음 / 윤방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55) 서경(署經) : 조선시대 관리임명, 법령제정 등에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

대사헌 **이경여(李敬輿)**, 행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지평 윤양(尹瀁), 정언 박계영(朴啓榮)·신익전(申翊全)이 아뢰기를,

"- 윤방(尹昉)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위리안치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하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6일(무자)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전 부사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신준(申浚)은 훈척 재신(勳戚宰臣)으로서 혐의쩍음을 생각하지 않고 한갓 사욕을 마음대로 부려 출궁한 나인을 감히 첩으로 삼았습니다. 분의(分義)에 관계되므로 여론의 분노가 날로 격해지니 성상께서는 구구한 사심으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죄상의 경중은 반드시 안핵(按覈)[56]한 다음에야 알 수 있으니, 나국하여 처치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한재의 참혹함이 이런 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눈앞의 위급함이 병화보다 심합니다. 성상께서 친히 사직에 기도 드릴 때에 한데에 서서 밤을 지새워 천심을 감격시킬 정성을 모두 다 썼는데도,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은 조짐이 아직 없으니, 언제나 감응이

56) 안핵(按覈) : 매우 자세히 조사하여 살핌.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단비를 바라는 마음은 날로 절실해집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잘 모르겠으나 밝으신 성상께서 - 원문 빠짐 -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옛날에 한 부인이 원한을 품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재를 멈추게 하는 방도는 - 원문 빠짐 - 백성의 원망과 관계되니 잘 변통하여 천심에 부응하는 데 있어 큰일, 작은 일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삼가 들으니, - 원문 빠짐 - 등의 물화(物貨)를 경황없을 때에 하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하인들이 산속으로 달아나거나 - 원문 빠짐 - 약탈당하기도 하고 도로에 버리기도 하여 끝까지 보존한 자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천에 한둘에 불과합니다. 각 아문이 장부에 따라 징수를 요구해서 침책(侵責)이 이웃과 겨레붙이에게까지 미쳤으니, 겨우 살아남아 몸뚱이만 남은 이들에게 이처럼 추후에 요구해서 해를 끼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외방에서 상납한 각색(各色)의 미포(米布)는 겨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병란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역시 도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어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나며, 또한 함부로 과하게 거두는 일도 많으니 하늘을 범한 원기가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각 아문 및 해조 당상과 회동해서 전후의 문서를 거두어들여 일체 탕척(蕩滌)[57]하게 하소서. 내수사와 상방(尙方)도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 역시 일체로 시행하여 공평하고 분명한 다스림이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각 아문에서 빚을 징수한 일은 각별히 명백하게 조사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57) 탕척(蕩滌) : 죄나 허물을 사면하여 깨끗이 하는 것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7일(기축)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신준(申浚)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각 아문 및 내수사, 상방의 재화 등 산실된 물품을 도로 징수하는 것과 외방의 각종 미포(米布) 중 병란으로 인해 바치지 못한 것에 대해 일체 탕척해 달라고 올린 신들의 요청은, 진위가 서로 뒤섞이는 폐단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밝게 조사하여 처치하라는 하교 역시 신중히 분별하려는 밝으신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인이 탕척해 주는 은전은, 마치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은택이 지란(芝蘭)이든 가시덤불이든 우로(雨露)를 골고루 적셔 주는 것과 같아서, 크든 작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 지극한 인으로 대합니다. 지금 만약 득실을 따져 깐깐하게 조사한다면 취사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꼭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성은이 널리 펴지지 못하여 원근의 민정(民情)이 천지같이 넓은 은덕에 유감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위에서 덜어 아래를 보태 주는 의리가 세상에 밝혀지지 못하고 담당 유사는 항상 경비를 걱정하니, 만약 성상께서 마음으로부터 결단하여 과감히 시행하지 않으시면 신들의 구구한 마음은 필시 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한 마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니, 좀 더 생각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려 주소서."
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신준(申浚)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하소서. - 각 아문 및 내수사, 상방의 재화 등 물품을 탕척하는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속히 윤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또 내수사는 별도로 도로 징수한 물품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내수사의 일을 잘 살피지 않고 논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내수사는 별도로 도로 징수한 물품이 없는데 신들이 잘 살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아울러 논함으로써 원근에서 듣고 본 이들로 하여금 성상의 청명한 덕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의 죄는 사실이 아닌 일을 논한

잘못뿐만이 아니니, 신들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8일(경인) 비 / 대사헌 이경여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현의 계

이현이 아뢰기를,

"대사헌 **이경여**와 지평 윤양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김휼의 계

김휼이 아뢰기를,

"대사헌 **이경여(李敬輿)**와 지평 윤양(尹瀁)은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집의 유심(柳淰), 장령 임득열(林得說)·유석(柳碩), 지평 신유(申濡)는 지방에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윤신지 등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정언 신익전의 계

정언 신익전이 아뢰기를,

"- 윤신지(尹新之), 이경(李坰)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 성각(成慤)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대사헌 **이경여**와 지평 윤양이 '내수사는 도로 징수한 물품이 없는데 신들이 잘 살피지 않고 범범히 아울러 논함으로써 원근에서 듣고 본 이들로 하여금 성상의 청명한 덕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의 죄는 사실이 아닌 일을 논한 잘못뿐만이 아닙니다.'라고 하고서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번에 간쟁하는 일은 오로지 내수사 때문에 발론한 것은 아니니, 아울러 논했더라도 무슨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언관을 경솔하게 체차해서는 안 되니, 대사헌 **이경여**와 지평 윤양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경 등의 일과 성각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5월 29일(신묘) 맑음 / 윤신지의 관작을 삭탈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 등의 계

대사헌 **이경여**와 지평 윤양이 아뢰기를,

"- 윤신지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관작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 이경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 - 신준의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 각 아문 및 상방의 재화 등 물품을 탕척하는 일로 조사는 위에 보인다. - 재삼 숙고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또 각사에서 빚을 징수한 일은 소소한 일이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이상은 신여본을 등서함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6월 8일(기해) 흐림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서경우(徐景雨) · 신득연(申得淵)을 승지로, **조경(趙絅)**을 흥해 군수(興海郡守)로, 조수익(趙壽益)을 이조 좌랑으로, 이시매(李時楳)를 이조 좌랑으로, 이주(李裯)를 이조 좌랑으로, 유영(柳穎)을 헌납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6월 12일(계묘) 맑음 / 체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최명길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최명길(崔鳴吉), 제조 심열(沈悅), 부제조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근래 무더위가 매우 심한데, 삼가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없다."
하였다.

- 《약방일기(藥房日記)》에 의거함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7일(무진) 맑음 / 인평대군 이요는 늦가을에 합문을 나가야 한다는 전교

전교하기를,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濟)**는 늦가을에 합문(閤門)[58]을 나가야 하니, 이 뜻을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 내하 일기초에 의거함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0일(신사) 맑음 /

58) 합문(閤門) : 조회(朝會), 의례(儀禮) 등 국가 의식을 맡아보던 관서. 각문(閣門)이라고도 씀.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59]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0일(신사) 맑음 / 서경하도록 양사의 성상소에 명초하라고 말할 것을 청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실록(實錄)을 상고할 일로 예문관의 관원이 지금 내려갈 것인데 검열 허적(許積)과 신면(申冕)은 양사에서의 지위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 원문 빠짐 - 오늘 안으로 서경하도록 양사(兩司)의 성상소(城上所)에 명초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2일(계미) 맑음 / 수령 등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59) 상참(常參) : 조선시대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略式)의 조회(朝會).

서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하직하는 - 원문 빠짐 - 수령과 변장(邊將)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5일(병술) 비 / 세자에게 능원대군을 보내 한번 만나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박로(朴)가 나올 때에 용장(龍將) - 원문 빠짐 - 그 뜻은 실로 동궁이 환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 원문 빠짐 - 그러므로 전일에 감히 반복해서 진달했는데 상께서 자못 난색을 표시했으므로 신들이 감히 힘껏 청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러가서 생각해 보니, - 원문 빠짐 - 양국이 친애(親愛)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이른바 단지 탄일(誕日)에 - 원문 빠짐 - 보낸다는 것은 대개 탄일과 동지는 그 사이가 다소 떨어져 있으므로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타향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대군은 거처와 봉양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데 바람과 이슬 속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길을 가기에는 진실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동궁이 - 원문 빠짐 - 이역 땅에 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어찌 일찍이 잠시나마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신하가 되어서 - 원문 빠짐 - 어느 곳에서인들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군과는 골육의 정을 나눈 혈족이니, - 원문 빠짐 - 맺힌 회포를 펴고자 하는 것 또한 어찌 지극하지 않겠습니까. **인평대군(麟坪大君)**은 약관(弱冠)도 되지 않은 나이인데 - 원문 빠짐 - 역

병을 앓았으니, 진실로 경솔하게 먼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되지만 능원대군(綾原大君)은 전하께서 사랑하는 동생으로 진실로 한번 가서 만나본다면 청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배로 - 원문 빠짐 - 게다가 대군이 한번 행차하여 - 원문 빠짐 - 성상께서는 비록 혹 어렵게 여기시더라도 대신은 반드시 억지로라도 행차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 원문 빠짐 - 부사(副使) 이하는 머물면서 동지사를 기다리고 동지 상사(冬至上使)는 - 원문 빠짐 - 탄일이 지난 뒤에 즉시 돌아오는 것이 매우 편하고 순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들은 - 원문 빠짐 -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병이 있으면 형세상 먼 길을 가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5일(병술) 비 / 전라 감사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정사를 열 것인지를 묻는 이조의 계

서경우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 감사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정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오늘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7월 29일(경인)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 옴 / 병든 어미를 구완할 수 있도록 체차해

줄 것을 청하고 사헌부에 재직하면서 논란을 고집한 죄가 있다는 대호군 이경여의 상소

대호군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국사가 어렵고 걱정스러우니 신하가 물러가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절박한 개인 사정이 있어 매우 간절한 심정을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크시어 특별히 은혜로운 휴가를 허락하시어 돌아가 병든 어미를 만나 보고서 구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모자는 감격하여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울을 떠나 성상과 멀리 외따로 떨어지니 대궐을 그리워하고 시사를 걱정하는 마음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행장을 꾸려 조정에 돌아가 반열에 나아가 힘써 일하여 신의 보잘것없는 정성을 바쳐 이생을 마치리라 마음먹었으니, 미천한 신이 평소 품고 있던 생각입니다. 어찌 감히 더디게 돌아와 스스로 명을 어기는 죄를 짓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미가 큰 병을 앓고 나자 기력이 다 없어졌고 게다가 - 원문 빠짐 -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충정을 굽어살펴 불쌍히 여기시어 아울러 체차해 주시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신이 지난번 사헌부에 재직하면서 의논하는 석상에서 논란을 고집한 일이 있었던 것은 심동귀(沈東龜)의 말을 그르게 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격양된 정성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는데 먼저 소요의 단서를 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스러운 형적을 염려했지만 결국 구차한 결과가 되어 버려 동료가 이미 발론한 것을 조정에 펴질 수 없게 하였으니,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유신(儒臣)의 배척이야말로 어찌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밝으신 성상을 섬긴 지 16년이나 되도록 진실로 한 가지 일도 볼만한 것이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오직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우리 임금을 속이지 않음으

로써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이번에 군주께서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어야 하는 날을 당하여 구차하게 살아난 나머지 거듭 관료의 비방을 불러들여 스스로 이처럼 누를 끼치고자 했겠습니까. 신은 그 당시 의견이 이미 어긋났고 금일의 이견을 조정하고 담당한 일을 처치하는 데도 곧게 헤아려 판단했던 옛사람에 비해 부끄러운 점이 있으니 결국 일을 같이 한 신하들만 무거운 견책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신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말이 되지 않으니 죄가 더욱 심하고 사리로 헤아려 보더라도 결코 요행으로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정세를 굽어살피시어 영원히 물리치심으로써 벼슬아치가 진퇴하는 의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6일(병신) 맑음 / 이비가 이행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이행건(李行健)을 동부승지로, 권임중(權任中)을 겸지평(兼持平)으로 삼았다.
병비가 **서경우(徐景雨)**를 상호군으로, 윤지(尹墀)를 대호군으로, 박계영(朴啓榮)과 유석(柳碩)을 호군으로, 박수문(朴守文)과 성이성(成以性)을 부사직으로, 원성남(元聖男)을 사직으로, 김지남(金地男)을 부사과로, 송국택(宋國澤)과 이준(李浚)을 부호군(副護軍)으로, 심승황(沈承黃)을 부사과로, 이원경(李元敬)을 부사맹으로 삼았다. 전(前) 부정(副正) 신영철(申永哲)에게 지금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가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6일(병신) 맑음 /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사 당상 이경여를 개차하고 후임을 이조 참의 정태화로 차하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경여(李敬輿)**가 말미를 받아 내려간 뒤 오랫동안 조정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우선 개차하고 그 후임을 이조 참의 정태화(鄭太和)로 차하하고 이식(李植)의 전례대로 부제조(副提調)의 칭호를 주어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8일(무술) 맑음 / 이비가 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김수현(金壽賢)을 부제학으로, 정치화(鄭致和)를 교리로 삼고, 거제 현령(巨濟縣令) 노효성(盧孝誠)에게 지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였으며,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성이성(成以性)을 부수찬으로, 민태형(閔泰亨)을 이산 군수(理山郡守)로, 윤빈(尹彬)을 창릉 참봉(昌陵參奉)으로, 홍진(洪瑱)과 박서(朴曙)를 겸춘추(兼春秋)로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1일(신축)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허계의 계

허계가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는 숙배[60]하지도 않고서 사직 차자를 올렸고, 집의 김광혁(金光爀), 장령 이상형(李尙馨), 지평 이도장(李道長)은 모두 지방에 있으며, 장령 이계(李烓)와 지평 김중일(金重鎰)은 모두 감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오늘은 감찰(監察)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1일(신축) 맑음 / 이계 등의 일에 대해 진달하고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차자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양사(兩司)의 장관을 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한마디 말로 조금도 보답한 것이 없이 오직 묵묵히 수행하며 죄만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또다시 지나친 성은을 입게 되었으니,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하찮은 신의 나이 이미 70세가 지나 정신은 혼몽하고 병은 점점 심해지는데 지난번에는 비종(臂腫)까지

60) 숙배(肅拜) : ①종친, 백관이 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전정(殿庭)에서 국궁사배(鞠躬四拜)함. ②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하직(下直).

앓은 탓에 승선(承宣)의 직책을 사직하여 체차된 지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옛 병이 다 낫기도 전에 새로운 명이 거듭 내려지니, 본직(本職)이 비록 밤낮으로 바쁜 임무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긴중한 자리인데 어찌 병든 몸으로 출사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물러나 엎드려 있자니 더욱 황공하고 답답한 마음만 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사를 생각해 볼 때 매우 극한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성상께서 노심초사하여 한밤중까지 근심을 늦추지 않으시니, 조야(朝野)가 몹시 절박함이 마치 조석도 보전하지 못할 듯한데, 대각의 신하만이 유독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분분함이 이 지경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신은 탄식함을 절로 그만둘 수가 없어 짧은 차자를 엮어 대략이나마 소견을 아뢰려고 했던 것인데, 방금 소보(小報)를 보니, 김중일의 계사는 한 개인의 말이지 실로 공론(公論)이 아니니 도로 내주라는 성상의 하교가 내렸고, 이어 이해창을 원찬하라고 명하셨다 하니, 신은 저 자신도 모르게 놀라고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성상의 진노가 이에까지 이르렀으며 어찌하여 성상의 잘못된 거조가 이 지경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신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상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계가 옥당의 여러 신하들과 사헌부의 장관을 거론하여 붓 하나로 모두 타도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보복함으로써 대각을 텅 비게 하여 기상이 쓸쓸해지게 하였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김중일이 먼 곳에서 오자마자 국사를 매우 염려하여 감히 스스로 진달한 것은 또한 그의 직책일 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말이지 공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계의 장계만이 유독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중일은 이미 인혐(引嫌)하지도 못하였고 또 정고(呈告)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신의 직분을 살폈다고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 자처하려 한단 말입니까. 소회가 있어서 반드시 말함은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이해창을 특별히 원찬하라고 명한 것에 있어서는 이해창이 말한 옳고 그름에 대해 신이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한마디 말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대번에 원찬하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성상의 탕탕평평(蕩蕩平平)한 덕에 어찌 해

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대각에서 함구하고 묵묵히 있는 것이 풍조가 되어 다시는 전하를 위해 곧바로 나아가 과감하게 말하는 자가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혹 공평한 마음으로 이치를 살펴 즉시 환수할 것을 명하신다면 일월과 같이 밝으신 성상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볼 것이고 언로(言路) 또한 거의 통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은명을 입음이 망극하여 물러가야 하는데도 물러가지 못하다가 이렇듯 전에 없던 거조를 만났으니, 어찌 감히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聖明)을 저버렸기에 대략을 간략하게나마 진달하려 하였으나 다 말씀드릴 겨를이 없어서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커졌습니다. 신은 나약한 자질로 이러한 때에 중임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데다가 천질(賤疾)마저 이와 같으니, 직분을 수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속히 체직하심으로써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고서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2일(임인) 맑음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최유연의 계

최유연이 아뢰기를,

"대사헌 **서경우(徐景雨)**는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집의 김광혁(金光爀), 장령 이상형(李尙馨), 지평 이도장(李道長)은 지방에 있고, 장령 이계(李

烓)와 지평 김중일(金重鎰)은 공무를 행할 수 없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3일(계묘) 비 /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에, 판서 남이공(南以恭), 참판 이경석(李景奭), 참의 정태화(鄭太和), 우부승지 이현(李俔)이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병이고, 참판 **이경여(李敬輿)**는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의는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지 이성신(李省身)은 나왔고 좌승지 허계(許啓)는 나왔다.
이비가 ……
이경여(李敬輿)를 병조 참판으로, 정치화(鄭致和)를 응교(應敎)로, 목성선(睦性善)을 부교리로, 심제(沈)를 수찬으로, 김세렴(金世濂)을 병조 참의로, 성태구(成台耉)를 예조 좌랑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15일(을사)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남이공(南以恭)은 나왔고, 참판 이경석(李景奭)은 비변사에 나아갔고, 참의 정태화(鄭太和)는 나왔고, 우부승지 이현(李俔)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비변사의 좌기(坐起)에 나아갔고, 참판 **이경여(李敬輿)**는 - 원문 빠짐 -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의 이성신(李省身)은 병이고, 참지 김세렴(金世濂)은 나왔고, 좌승지 허계(許啓)는 나왔다.

이비가 김영조(金榮祖)를 대사헌으로, 이숙(李琡)을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민하겸(閔賀兼)을 양현고 주부(養賢庫主簿)로, 이여익(李汝翊)을 장령으로 삼았다.
병비가 **서경우(徐景雨)**를 대호군으로, 이계(李烓)를 호군으로, 조후량(趙後亮)을 부호군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8월 20일(경술) 맑음 / 좌기 등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므로 가참의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허계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 참판 **이경여**는 지방에 있으면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참지 김세렴은 정사하여 말미를 받았고, 참의 이성신은 입직하였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인원은 판서 이시백뿐이어서 외사(外司)에서 좌기(坐起)할 때와 시사(試射)를 행할 때 인원을 갖추지 못할 형편입니다. 전례대로 가참의(假參議)를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9월 6일(을축) 맑음 / 어미의 신병 등의 이유로 본직과 겸직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병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

병조 참판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하의 절의로는 죽어 마땅합니다. 베를 짜는 과부가 북 실 끊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 주(周)나라를 염려한 것과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 몸 둘 곳이 없을까 근심한 것은 또한 평범한 사람의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양심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날 대소 조정 신료로서 임금에게서 밥을 먹고 임금에게서 옷을 입으며 사대부로 불리는 자이겠습니까.

미천한 신은 밝으신 성상을 만나 10년간 경연에 참여하고 세 번 번신(藩臣)의 임무를 맡아 중외(中外)의 직책을 역임하였는데 털끝만큼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높으신 은혜가 특별히 도타워 참으로 남달랐으니, 신이 이 한 몸 다 바쳐 일하더라도 만에 하나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은 일찍 아비를 잃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혈혈단신으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신은 형제가 없어 홀로된 어미를 혼자서 봉양하였는데, 지금 나이가 73세입니다. 누차 참화를 만나 질병이 끊이질 않아 기력이 다 떨어져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작년 변란 때는 신을 염려하느라 해도(海島)에 피난 가 있는 동안 음식은 들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사(時事)가 조금 안정된 뒤 그것이 고질이 되어 신이 영남(嶺南)에 있을 때 갑자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신이 은전을 입어 체차되어서 어미 곁으로 돌아가 겨우 목숨을 구해 신의 어미가 지금까지 잔약한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천지와 같이 생성해 주는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큰 병을 겪은 터라 마치 안개 속에 있는 듯 정신이 혼몽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숨이 미약합니다. 이러한 지경이니 자식으로서는 차마 하루라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사의 어려움과 근심이 날로 심해지니 물러나 거처하는 것은 의(義)가 아니고, 어미의 병환이 이러하니 버려두려고 해도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이 한 몸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는 세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불충과 불효는 어느 하나도 용납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신은 군주와 어버이에 대한 생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신의 마음은 이미 슬프다고 하겠고 신의

상황 또한 낭패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신이 은혜로이 말미를 받아 돌아가 병든 어미를 만났으니, 감격스럽고 사정(私情)으로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성상을 그리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여전하니, 지난날 상소하여 면직을 청한 것이 어찌 신이 원하는 바였겠습니까. 저의 진심이 성상께 전달되지 않아 형식적인 사직이 되어 버렸고 겸대한 직임도 개차되지 못한 채 새로운 명이 계속 내려오니, 신은 진실로 감격스럽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융숭할수록 신의 죄는 더욱 중해지니, 신은 영광이 두려움이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청을 올리니, 이는 또한 성상의 부모와 같은 사랑을 믿고 주륙의 형벌을 잊은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 신은 일찍이 남한산성에서 전 판서 김상헌(金尙憲)과 전 참판 정온(鄭蘊)이 죽음의 문턱에서 요행히 살아나 죽으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정황을 목도하였는데, 마음에 항상 애처롭고 안타까웠고 스스로 돌이켜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과거 옥당(玉堂)에 있었을 때 교지에 응하여 차자에 진술하기를, '살았더라도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인륜을 부지하였을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같지 않아 지금까지도 김상헌을 공격하고 배척하기를 마치 꽉 막힌 소인을 공격하듯이 하여 위리안치의 벌까지 청하였습니다. 무릇 천하의 시비에는 본디 천하의 공의가 있는 것이니, 일시적인 논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먼저 신의 죄를 바로잡아 앞장서 망언을 해 대는 자의 경계로 삼으시어 저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부응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본직만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9월 9일(무진) 맑음 / 정

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병비가 홍보(洪寶)를 부총관으로, 김치한(金致漢)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이복길(李復吉)을 함흥 감목관(咸興監牧官)으로, 조한위(趙韓魏)·신득연(申得淵)을 호군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대호군으로, 오단(吳端)을 행 부사직(行副司直)으로, 이상형(李尙馨)을 사직(司直)으로, 윤강(尹絳)을 부사직으로, 백현민(白賢民)을 부사과(副司果)로, 이중길(李重吉)을 부사정(副司正)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0일(무술) 흐림 / 우승지 이경여의 사직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우승지 **이경여**가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0일(무술) 흐림 / 인원을 갖출 수 없으므로 계복의 일을 변통할 것인지를 묻는 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내일 계복(啓覆)[61]하는 일은 3일 전에 별 탈 없는 날로 이미 품정(稟定)[62]한 것입니다만, 도승지 최혜길은 정사(呈辭)하여 말미를 받았고 좌승지 최연은 일이 있어서 정사하였는데, 한 관사에서 2건의 정사를 올릴 수 없으므로 도로 내주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 사진(仕進)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지 **이경여**는 최혜길과 자급은 같은데 자리가 선후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국기(國忌)[63]로 인해 본원에 놓아 두었고, 1원은 체차되었으나 아직 교대할 관원이 차출되지 않았으며 우부승지 이명웅은 감기로 집을 나서지 못했으므로 신 혼자만 있습니다. 본원이 인원을 갖출 수 없으니 막중한 계복의 일을 변통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기일을 물려서 정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이필영 등을 시상하는 데 대한 병조의 점목에 대해, 각각 숙마를 사급하라는 전교

이필영(李必榮) 등을 논상(論賞)하는 데 대한 병조의 점목과 관련하여 **이경여**에게 전교하기를,

"각각 숙마(熟馬) 1필을 사급하라."
하였다.

---

61) 계복(啓覆) : 조선시대 사형 죄인에 대한 최종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세 번 아뢰는 제도.
62) 품정(稟定) :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아뢰어서 의논하여 결정함.
63) 국기(國忌) : 왕(王), ,왕비(王妃), 왕세자(王世子), 세자빈(世子嬪) 등의 별세(別世)로 치르게 되는 국장(國葬), 또는 그 기일(忌日)을 뜻함.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정혜옹주의 조묘군은 횡간을 상고하여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병조의 계

이경여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예조의 계사에 정혜옹주의 조묘군은 횡간을 참고하여 적절히 줄이도록 한 일에 대해 조묘군을 적절히 줄이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횡간을 상고해 보니 조묘군 250명 내에 삼사(三司)가 동의하여 100명을 줄여서 실제로 150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정혜옹주의 조묘군은 50명을 줄여 100명으로 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7일(을사) 맑음 / 대간이 나가므로 개문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이경여의 계

이경여가 아뢰기를,

"대간이 유문(留門)[64]을 나가기를 청하였으니 개문 표신(開門標信)[65]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64) 유문(留門) : 특별한 사유로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 닫는 것을 중지시킴. 도성의 문은 인정(人定)에 닫고 파루(罷漏)에 열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선전표신을 이용하여 유문하였음.

65) 개문표신(開門標信) : 밤에 긴급한 일을 전할 때, 임금이 도성문 가운데 간문(間門권, 4장소문)을 여는 것을 허가하는 표신(標信).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8일(병오) 맑음 / 양 의사의 의관 및 의녀의 전수에 대한 이경여의 계

이경여가 아뢰기를,

"일이 위에 관계된 것이면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반드시 삼가는 것이 바로 널리 공경하는 의리입니다. 어약(御藥)을 제조하여 올리는 경우는 그 일의 사체가 중대하므로 전부터 납약(臘藥)을 조제할 때에는 여러 상사(上司) 및 다른 관사가 감히 내국(內局)과 일시에 같이 올리지 못하였으니 사체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 납약 및 드실 환약(丸藥) 때문에 두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을 조제할 의관을 정해 보내게 하였더니 해당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여러 상사에서 다투어 먼저 데려가는 바람에 남은 인원이 없다고 하면서 단지 일이 서툰 2, 3인을 보내왔습니다. 이 또한 세도가 변한 것이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변란 전에는 의관으로 종사하는 자가 매우 많았지만 그래도 반드시 - 원문 빠짐 - 소집한 연후에 비로소 기한에 맞추어 봉진(封進)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난리 뒤라 열에 두세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니, 만일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전부터 승전을 받드는 예가 있었지만 사체 - 원문 빠짐 - 두려워서 감히 번거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양 의사에 현재 있는 의관 및 의녀의 전수(全數)를 - 원문 빠짐 - 하는 내용으로 본원이 통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제조의 반열에 있으므로 직접 그 폐해를 보았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8일(병오) 맑음 /

청인들이 책비에 대해 질문한다면 대답할 말을 품정하여 지시해 주고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이경여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책비(冊妃)의 예에 대해 청인(淸人)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 이미 알고서 - 원문 빠짐 - 사신이 서로 만날 때에 저들이 먼저 말을 꺼내어 책봉을 청하는 부분까지 질문이 미친다면 거기에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품정하여 지시해 주고 보내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저들이 만약 말을 꺼낸다면 이제 책봉을 청하고자 한다고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인견 때에 하교하였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9일(정미) 맑음 / 염초를 구워 만드는 일이 긴중하므로 감관 송응현을 기복시켜 직무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이경여가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뒤에 도감에 저장된 화약이 거의 다 산실되어 현재 염초(焰硝)를 구워 만드는 일이 자못 매우 긴중합니다. 감관(監官) 송응현(宋應鉉)은 난리 전부터 염초 굽는 일을 감독하는 직임을 전적으로 맡아서 마음을 다해 종사함으로써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리 통에 유실

된 물건을 또한 많이 수습하였기에 일찍이 이런 내용으로 논상해 달라고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올겨울 빙한기에 역사(役事)를 정지하는 동안에 송응현 또한 부친상을 당하여, 염초 굽는 법을 배울 데가 없었고,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합당한 인물도 아직 차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고 내년 봄 해빙하는 즉시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마당에 만약 일이 서툰 자에게 맡긴다면 막중한 공역이 헛수고로 돌아갈 문제가 없지 않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송응현을 기복(起服)하여 그대로 직무를 살피게 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복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19일(정미) 맑음 / 도적의 괴수 대립을 율문에 따라 정죄할 것을 청하는 우변포도대장의 계

이경여가 우변 포도종사관이 전하는 대장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달 13일 나인(內人) 박씨(朴氏)의 종 사정(士丁)의 정장 내에, '이달 9일 밤에 도적 - 원문 빠짐 - 각각 활과 칼을 들고 상전 집에 돌입하여 담장 벽을 부수고 집안에 보관된 의복, 채단(彩段) - 원문 빠짐 - 및 금·은 등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갔으니, 적이 간 곳을 서둘러 규찰해서 - 원문 빠짐 - 물건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즉시 종사관 이원례(李元禮)를 보내 군관 □□의(□□義) 및 김축□(金築□), □종련(□宗連) 등 많은 - 원문 빠짐 - 를 거느리고 기찰하여 도적 대립(大立)을

먼저 체포하였고 청군관(廳軍官) 윤□□(尹□□)가 추문하였더니 도적질을 한 경위를 일일이 바른대로 공초하면서 같은 패거리인 흥금(興金), 순립(順立) - 원문 빠짐 - 여 명을 끌어댔습니다. 같은 날 2경쯤에 이원례 등이 위에서 말한 흥금, 순립을 잡아와서 추문하였더니 공초가 대립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훔친 의복, 채단 등 물건도 - 원문 빠짐 - 정장에서 말한 수효와 같았으므로 즉시 찾아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대개 대립 등은 포악한 큰 도적으로 도당이 매우 많고 경외(京外)를 횡행하면서 인명을 살해한 지 오래여서 규찰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체포한 것입니다. 그중 흥금, 순립 등은 장문(杖問)을 받다가 이미 물고가 났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도적 논산(論山) 등 - 원문 빠짐 - 끝까지 각별하게 규찰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괴수 대립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율문에 따라 정죄(定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1일(기유) 흐림 / 체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남이웅 등의 계

약방 제조 남이웅(南以雄), 부제조 **이경여**가 아뢰기를,

"계절이 한겨울에 이르러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 살피지 못하였습니다만 성상의 체후가 어떠하십니까? 감히 와서 문안합니다."
하니, 현재는 아픈 데가 없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의주의 미와 태를 실어 나를 쇄마의 단자에 대한 평안 감사의

장계에 대해, 미와 태를 어느 곳에다 쓰는지를 묻는 전교

평안 감사가 올린 장계의, 의주(義州)의 미(米)와 태(太)를 실어 나를 쇄마(刷馬)의 단자(單子)와 관련하여 **이경여**에게 전교하기를,

"장계에서 말한 - 원문 빠짐 - 미와 태를 내어 어느 곳에다 쓰는가? - 원문 빠짐 -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세자 책봉을 주청할 사신을 미리 의망하여 차출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이경여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세자 책봉을 주청하는 일은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사신의 출발 일정은 비록 - 원문 빠짐 - 기일 전에 차출해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미리 의망하여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에 차출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사관 등을 대명시키라는 전교

이경여에게 전교하기를,

"사관(史官) 1원을 대명시키고, 기마 3필을 대기시키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2일(경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남이공(南以恭)은 나왔고, 참판 김반(金槃)은 병이고, 참의 정태화(鄭太和)는 - 원문 빠짐 - 도승지 최혜길은 나왔다. 병비(兵批)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나왔고, 참판 이목(李楘)은 - 원문 빠짐 - 참의 이기조(李基祚)는 나왔고, 참지 이현(李俔)은 나왔고, 우승지 **이경여**는 나왔다. ……
병비가 성초망(成楚望)을 겸선전관으로, 홍조해(洪朝海)를 부장(部將)으로 삼았다. 부호군에 **한인급(韓仁及)**·정지우(鄭之羽)·남선(南銑) - 원문 빠짐 - 권엽(權曄), 대호군에 김시국(金蓍國), 호군에 변삼근(卞三近)을 차하하였다. 부솔에 - 원문 빠짐 - 단망하였다. 상호군에 윤휘(尹暉)를 차하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3일(신해) 맑음 / 김유선 등에 대한 비변사의 계

이경여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함경 감사와 북병사가 치계한 내용은 '김유선(金惟善) 등을 쉽게 효시할

수 없기에 모두 우선 단단히 가두어 두었는데, 혹 - 원문 빠짐 - 책하는 일이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묶은 채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니, '사실대로 청나라에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 - 원문 빠짐 - 생각에는 청나라에 누설하여 먼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힐문당하는 단서를 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지금 - 원문 빠짐 -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사실대로 자문을 보내는 것은 과연 곤란할 듯합니다. 김유선 등 5명은 우선 은밀히 옮겨 놓고 내지에 단단히 가두어 놓은 다음 저들의 - 원문 빠짐 - 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비답은 직접 알리자는 뜻이지 자문을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3일(신해) 맑음 / 형조 참판 허계를 유사 당상으로 차하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이경여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의 유사 당상인 전 판서 윤휘(尹暉)는 사명을 받들고 나갔고 이조 참의 정태화(鄭太和)는 말미를 받아 나갔으므로 형조 참판 허계(許啓)를 유사 당상으로 차하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4일(임자) 맑음 / 국기와 상치되므로 중일 습사를 물려 행하겠다는 도총부의 계

이경여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입직 군사가 중일 습사를 해야 하는데, 국기와 상치되므로 물려서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4일(임자) 맑음 / 국기인데 추국하는 것을 늦출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이경여의 계

이경여가 아뢰기를,

"금부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오늘은 국기인데, 막중한 죄인을 잡아다 추국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 12월 26일(갑인) 맑음 / 대명하고 있는 참판 김반을 물러가게 하라는 전교

이경여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 원문 빠짐 - 참판 김반(金槃)이 - 원문 빠짐 - 밖에서 대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동한기에 여러 날 한데서 - 원문 빠짐 - 반드시 더 상하게 될 것이니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

여 백

인조 17년 기묘
(1639, 숭정12)

여 백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숭문당에 지사 남이웅 등이 입시하여 《시경》을 진강한 뒤 세폐를 분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午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 지사 남이웅(南以雄), 특진관 이명(李溟), 참찬관 **이경여(李敬輿)**, 시독관 김진(金振), 검토관 정지화(鄭知和), 가주서 이천기(李天基), 기사관 이래(李崍)·이정영(李正英)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시경(詩經)》의 대목을 음(音)으로 한 번 읽었다. 김진이 〈한록편(旱麓篇)〉을 진강(進講)하였는데,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한 번씩 하였다. 상도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각각 한 번씩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백성에게 징수할 것은 줄이도록 힘쓰되 저들이 소문을 듣는다면 그것을 부풀리게 하는 데 매우 기묘한 방법을 쓸 것이니 잘 헤아려 처리하라."
하였다. 이명이 또 아뢰기를,

"해조가 달리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지만, 만약 저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혁파한 어살(漁箭) 가운데 해조에 이송된 것을 사람을 보내 수습하도록 하면 일부는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파한 뒤에 이미 해조에 귀속시켰으니, 해조가 스스로 처치해야 한다."
하였다. **이경여**가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유사(有司)와 상의한 일은 또한 눈앞의 요구에 응하는 일이므로 진

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천재지변이 갈수록 심해지니, 예전부터 재앙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안팎이 허둥대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더구나 흉년에다 전염병으로 더욱 절박한 재앙을 맞이한 때이겠습니까. 성상께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듯하지만,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의 원망이 이처럼 끊이지 않으니,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인덕에 미진한 점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것은 시행하고 조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상의 마음이 은미(隱微)한 가운데 털끝만큼의 허위가 없이 성실함으로 전일(全一)하신 뒤에야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키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밖의 조치는 마땅히 차례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은 바로 조종(祖宗)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령(英靈)들께서 전하를 돌아보시고 심지(心志)를 가다듬어 대업을 중흥할 마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시며 저승에서도 묵묵히 상상하실 것이니, 전하께서 차마 두려워하고 분발하여 조종의 영령들께 부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큰 근본이 서지 않고 성상의 뜻이 견고하지 않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전고(前古)의 일을 멀리서 인용할 겨를이 없이, 오직 밝으신 성상께서는 뜻을 굳건히 정하시고 반정(反正) 때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검소하게 하시며 사졸과 백성을 구휼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 몇 자 원문 빠짐 - 법(法)을 삼으신다면 엎어지고 위태로운 것을 부지하여 널리 어려움을 구제하실 것입니다. - 반 행 원문 빠짐 -"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말에 '거(莒)에 있던 일을 잊지 말라.' 하였으니, 경(卿)의 말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 반 행 원문 빠짐 - 미진한 바가 있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승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 몇 자 원문 빠짐 - 안으로 몸소 절검(節儉)을 실천하여 형식적인 겉치레를 제거하고 밖으로 감사와 수령을 전적으로 선택하여 - 원문 빠짐 - 근본의 대책이 아니니, 또한 눈앞의 위기만을 구차히 넘길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아뢸 것이 있으니, 인명(人命)은 지극히 귀중하여 애초에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 명의 승려에 대한 인사(人事)가 그리 중대하지 않은 듯하지만, 하나의 미물조차도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상의 덕에 의해 아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호남(湖南)의 승려 조형(照亨)의 공사(公事)를 입계할 때에 신이 마침 사적인 사정이 있어 승정원에 미처 달려오지 못하였으므로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입시했을 때 우연히 처치 공사(處置公事)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승려의 행위는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무지하여 함부로 행동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서 별다른 뜻은 없는 듯합니다. 만약 광망(狂妄)하다는 것을 이유로 극형(極刑)에 처한다면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상의 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신이 해방(該房)에 있어 구구한 소회(所懷)를 잠자코 있을 수 없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명이 지극히 귀중하니 어찌 귀천을 따지겠는가. 다만 이 승려의 행위는 국가의 기강에 관계되어 죄범이 작지 않다. 설령 수어사(守禦使)가 분부한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행해야 하거늘, 이러한 시기에 어찌 감히 전립(戰笠)과 전복(戰服) 차림으로 군사를 모아 모이기를 약속한단 말인가. 이 승려는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이경여**가 또 아뢰기를,

"무릇 격쟁하는 사람은 본래 외람되지만, 수금(囚禁)되어 형벌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고 하는 것은 필시 절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일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써서 입궐을 기도하니, 문을 지키는 관리가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형세가 쉽지 않습니다. 궐문은 지극히 엄하니, 출입을 모두 어렵게 하여 그 출입을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수문장을 태거하는 것은 억울한 듯합니다. 벼슬살이를 오래 한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파직까지 된다면 또한 가련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례대로 추고하되, 태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거하지 말라. 격쟁하는 사람이 누차 들어오면 해당 문의 수문장은 병조에서 곧바로 처벌하라."
하였다. **이경여**가 또 아뢰기를,

"신이 영남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 듣건대,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의 봉사손(奉祀孫) 조송년(趙松年)이 가난 때문에 유락(流落)하여 몸소 신주(神主)를 짊어지고 의성(義城)에 흘러들었는데, 곤궁하여 생활을 꾸려 갈 수도 없고 제사도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영남은 선비가 많은 고장으로 이 일에 대해 개탄하는 자가 꽤 있었습니다. 국가가 덕이 있는 이를 숭상하고 어진 이를 본받는 도리로 볼 때, 마땅히 걸맞은 직책을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제사를 받드는 일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조송년이라는 인물 역시 괜찮은 사람이고 지조도 범상치 않으며, 평소에 또한 - 1, 2자 원문 결락 - 출입하니, 어떤 일이라도 충분히 해낼 만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조정의 입장에서 말하더라도 인재를 잃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김자점을 임천으로 정배하였다는 의금부의 계

이경여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김자점(金自點)에 대한 정배 단자와 관련하여, '본가에 물었는지 물어서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김자점의 본가에는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돈인 이시백(李時白)에게 물었더니, 임천(林川)으로 하고자 하였으므로 그렇게 정배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이경여의 계

이경여가 아뢰기를,

"대사헌 남이공(南以恭)이 정사(呈辭)한 뒤에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감찰(監察)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내일 대간을 명초하겠다는 이경여의 계

또 아뢰기를,

"대간은 출사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궐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명초(命招)하여 말해 주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압송되는 중대한 죄인 윤대길이 탈출하여 격쟁하게 하였으므로 압송을 맡은 해당 차사원인 삼전도 승을 수금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이경여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평안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관향(管餉) 물화(物貨)를 아직 납입하지 않은 윤대길(尹大吉)에 대해 차사원(差使員)[1]을 별도로 정하여 압송하도록 본조가 복계(覆啓)[2]하여 윤허를 받았으므로 경기(京畿)로 하여금 차사원을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게 맡겨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대길이 격쟁하여 수금되었다고 합니다. 계하받아 압송되는 중대한 죄인이 임의로 탈출하여 궐에 들어가 격쟁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압송을 맡은 해당 차사원인 삼전도 승(三田渡丞)을 우선 수금하여 치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사무를 위해 임시로 파견하는 직원
2) 복계(覆啓) :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임금에게 엎드려 아룀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김자점에 대한 의금부의 정배 단자에 대해, 본가에 물었는지를 문계하라는 전교

의금부가 올린 김자점(金自點)에 대한 정배 단자(定配單子)와 관련하여 **이경여**에게 전교하기를,

"본가에 물었는지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7일(을축) 맑고 서풍이 붊 / 격쟁을 한 사노 끗복을 수금하여 치죄할 것 등을 청하는 병조의 계

이경여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사노(私奴)인 끗복(岦福)이라고 하는 자가 금호문(金虎門)으로 신부(信符)도 없이 들어와 차비문(差備門)[3] 밖에서 격쟁(擊錚)[4]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금(囚禁)하여 치죄하도록 하고, 이 금호문의 수문장 정흔(鄭昕)은 전례대로 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

3) 차비문(差備門) : 궁궐 편전(便殿) 앞의 문.
4) 격쟁(擊錚) : 조선 시대에 신문고(申聞鼓) 제도가 폐지된 뒤 대신 설치하여 궁성(宮城)의 차비문(差備門) 밖에 걸어놓은 징. 즉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의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아뢴 대로 하라. 정흔은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8일(병인) 흐리고 눈음 / 신여익 등을 풀어 주겠다는 의금부의 계

이경여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신여익(愼汝翊)과 이간엇금(李肝叱金) 등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에 복계한 대로 시행하도록 윤허를 받았으니, 풀어 주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9일(정묘) 맑음 / 이비가 송시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송시길(宋時吉)을 우부승지로, 권도(權濤)를 동부승지로, 조수익(趙壽益)을 집의로, 심제(沈)를 부교리로, 홍무적(洪茂績)을 광흥창 수(廣興倉守)로, 이유겸(李有謙)을 순창 군수(淳昌郡守)로 삼았다. 학유(學諭)에 유창진(柳昌震)을 단부(單付)하고, 영광 군수(靈光郡守) 이시환(李時煥)을 승호(陞號)하고, 예천 군수(醴泉郡守) 허한(許僩)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였다. 성하종(成夏宗)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김엄(金滾)을 기장 현감(機張縣監)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부제학으로, ……
삼았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0일(무진) 맑고 서풍(西風)이 붊 / 영원 군수 이기남이 하직하였다

영원 군수(寧遠郡守) **이기남(李箕男)**이 하직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5일(계유) 맑고 서풍이 붊 / 윤이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윤이지(尹履之)를 도승지로, 조위한(趙緯韓)을 좌부승지로, 최계훈(崔繼勳)을 장령으로, 이필달(李必達)을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한극술(韓克述)을 수성 찰방(輸城察訪)으로, 한극(韓)을 전적으로, 송극현(宋克賢)을 예조 좌랑으로, 서일원(徐一元)을 선공감 가감역(繕工監假監役)으로 삼았다. 전 군수(郡守) 박지양(朴知讓)·박제생(朴悌生)·정호학(鄭好學)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였다. 민응협(閔應協)을 보덕으로, 성과(成鈳)를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이상형(李尙馨)을 사간으로, 정뇌경(鄭雷卿)을 필선으로, 신유(申濡)를 문학으로, **이경여(李敬輿)**를 겸대사성(兼大司成)으로, 이흥발(李興浡)을 예조 좌랑으로, 홍무적(洪茂績)을 장령으로, 권임중(權任中)을 정언으로, 김진(金振)을 수찬으로, 남노성(南老星)을 직강으로, 이계(李烓)를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삼았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5일(계유) 맑고 서풍이 붊 / 양사의 관원을 처치해야 하므로 부제학 이경여 등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권도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양사(兩司)가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므로 본관(本館)이 처치해야 하는데, 부교리 신익전(申翊全)은 사직 상소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부제학 **이경여**는 오늘 승문원에서 포폄(褒貶)을 마감하는 일로 인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방금 겸대사성으로 하비(下批)되고 아직 숙배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소견이 고루하여 많은 관원을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부제학 **이경여**와 새로 제수된 김진을 즉시 패초하여 숙배하도록 한 다음 동참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6일(갑술) 맑고 서풍이 붊 / 부교리 심제 혼자 양사를 처치할 수 없으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명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권도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현재 양사(兩司)를 처치하고 있는데, 부교리 신익전(申翊全)과 수찬 김진(金振)은 지제교에 초선(抄選)된 사람이어서 모두 인피하고 참석하지 않았고, 부수찬 정지화(鄭知和)는 조수익의 피혐 계사 중에 자신의 종형인 정태화(鄭太和)의 성명이 거론되었다 하여 또한 감히 참석하지 않아, 부교리 심제(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처치를 혼자 행할 수 없으니, 부제학 **이경여(李敬輿)**를 다시 명초(命招)하여 그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명초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8일(병자) 맑고 서풍이 붊 /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 제수한 겸대사성의 직임을 먼저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성 이경여의 상소

대사성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띠고 있는 양관(兩館)의 직명은 이미 미천한 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연이어 누차 사장(辭章)을 올려 은혜로운 체직이 내리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게 해 드리고 외람된 짓이므로 감히 하지 못하고 억지로나마 맹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으니, 내치는 형전이 내리기를 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명이 천만뜻밖에 다시 내리니, 놀랍고 두려우며 위축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유(師儒)의 수장(首長)은 의례적으로 제수하는 경우에도 사람마다 외람되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더구나 이렇게 겸대(兼帶)시켜 책망하심으로써 상규와는 전혀 다르게 하시니, 반드시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훌륭하여 선비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여기에 걸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대한 밝은 조정에 뭇 영재들이 모두 모였으니, 선발을 진실로 정밀하게 한다면 어찌 적임자가 없겠습니까. 신처럼 용렬하고 비루한 자는 군신(群臣)들 중에서도 가장 못났으니, 업무를 섭행하는 서관(庶官)에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특별히 설치한 직임에 홀로 남보다 앞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셨으니, 현자(賢者)를 예우했던 전례를 지레 따르시려는 것입니까.

반정(反正)의 초기에 처음 이러한 조치가 있었으니, 고(故) 재신(宰臣) 정엽(鄭曄)이 이 자리에 선발되었습니다. 정엽은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매우 성과가 있었으니, 경적(經籍)에 힘을 쏟아 사람들이 해박하다는 칭찬을 하였고 밝으신 성상께 인정을 받아 당세에 존중을 받았으며, 또한 스스로 임무를 담당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센 물결이 이미 역류한 것과도 같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큰 변혁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을 옛날에 견주자면 어느덧 중고(中古)의 시절이 되었는데, 신은 선배에 비한다면 노마(駑馬)와 준마(駿馬)의 차이일 뿐만이 아니니, 선배가 앞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미천한 신이 오늘 대신한다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리라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임(久任)시켜 장차 실효를 기대하고자 하더라도, 적임자가 아닌데 구임하게 되면 그 폐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니, 인재를 얻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어찌 한낱 구임만을 중시하겠습니까. 공연히 직임을 받은 부끄러움은 신이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이고 함부로 시행한 정사(政事)는 또한 국가의 체통과 관계된 일이니, 상하가 서로 잘못하였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신은 차라리 명을 어기고 태만히 한 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소인이 조정에 있다는 비난을 차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천한 심정을 토로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에 물러나 있을 때 준엄한 소명(召命)이 문 앞에 당도하였는데, 부끄러움과 두근거림이 진정되지 않아 근심과 두려움이 그대로 병이 되어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하였으니, 죄과가 더욱 중대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절박한 신의 심정을 굽어살피시어 새로 제수한 겸대사성의 직임을 먼저 체차한 다음 적임자에게 제수하시어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은 진실로 이 직임에 적

합하니, 사직을 청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임을 살핌으로써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9일(정축) 맑고 서풍이 붊 / 입직할 인원이 없으므로 부제학 이경여를 패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송시길이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本館) 부교리 신익전과 부수찬 정지화가 오늘 정사에서 모두 대간에 이배(移拜)되어 현재 남아 있는 관원은 3원뿐입니다. 그런데 부제학 **이경여**는 겸직에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수찬 김진(金振)은 병이 중하여 사직 상소를 올렸으므로 부교리 심제(沈)만이 남아 있어 달리 입직할 인원이 없습니다. 부제학 **이경여**를 패초하여 숙배하도록 한 다음 추이(推移)하여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 패초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월 19일(정축) 맑고 서풍이 붊 / 지방에 있는 본사의 당상 행 호군을 체차하고 후임에 행 부제학 이경여를 개차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권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의 당상 행 호군 - 성명 원문 빠짐 - 지방에 있어 올라올 기약이 없으니 지금은 우선 체차하고, 그 후임에 행 부제학 **이경여(李敬輿)**를 개차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4일(임진) 흐리고 쇄우(灑雨)가 옴 / 조강을 행할 때 특진관 구굉이 입시하여 관청의 전마를 끌고 나간 도감의 마병을 효시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강을 행할 때 특진관 구굉이 아뢴 내용에,

"도감의 마병(馬兵) 한 명이 설 전에 관청의 전마(戰馬)를 끌고 나갔으나 간 곳을 몰랐는데, 그 뒤에 들으니 관청의 전마를 **영평(永平)**에서 사사로이 몰래 팔고 그는 중이 되었다 하므로 수소문해서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군중(軍中)에서 효시(梟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부류에 대해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하라."
하였다.

- 《훈국등록(訓局謄錄)》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9일(정유) 흐리고 동풍이 붊 / 인평대군 부인이 남자 아기씨를 해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인평대군 부인(麟坪大君夫人)이 오시에 남자 아기씨를 무사히 해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2월 22일(경술) 맑고 서풍이 붊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원진(李元鎭)을 부수찬으로, 신집(申楫)을 사예로, 심흡(沈洽)을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로, **서원리(徐元履)**를 대군사부로, ……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16일(계유) 흐리고 비 옴 / 인혐하고 물러난 정언 이괴 등을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행 부제학 이경여 등의 계

행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부교리 심제(沈), 부수찬 성이성(成以性)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정언 이괴(李襘), 사간 이상형(李尙馨), 장령 최계훈, 정

언 정태제(鄭泰齊), 지평 박수문(朴守文), 헌납 신익전, 장령 임득열, 대사헌 김수현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천하에는 본래 공적인 시비가 있는 것인데, 인심은 사적인 의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모순되어 경중이 일정하지 못하고 공의가 펴지지 못하여 실정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니, 혹 과격한 데로 귀결되기도 하고 혹 구차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원로대신(元老大臣)이 위태로움에 직면하여 명을 받아서 종묘사직의 신주를 배봉(陪奉)하다가 불행히 변고를 만나 끝내 더럽혀지게 하였으니, 죽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영령께 사죄하고 지우(知遇)해 주신 밝으신 성상의 은혜에 보답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와 변고에 대처하는 의리는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이것 말고는 잘 처리하고 잘 처리하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모두 구차할 따름입니다. 조정이 만약 이것을 가지고 실정과 율법을 헤아려 응당 시행해야 할 형벌을 속히 시행하여 - 1자 원문 빠짐 - - 몇 자 원문 잘 보이지 않음 - 입니다. 그런데 끌어다 변명할 때에 흐리멍덩함을 면치 못하였는데 관직을 삭탈한 뒤에 곧바로 거두어 서용하였으니, 여론이 후련하게 여기지 않고 공론이 앗달아 일어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혼이 빠져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경황이 없고 위태로울 때였다고 하면서 곳곳마다 제대로 봉심하지 못하였고 전담하여 점검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질책한다면, 형세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점이 있었지만 실정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였으니, 당초의 정세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스스로 할 말이 없을 것인데 다시 그 다음을 논한 것은 지루한 듯합니다. 그런데 대신(臺臣)이 눈으로 실상을 보고서도 지금에 이르러 뒤미처 말하였으니, 동석(同席)의 여러 관원들이 다 함께 모여 상의하여 논의할 만한 것은 논의하고 중지시킬 만한 것은 중지시켜 충분히 논의한 다음 함께 결론을 짓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며, 혹 서로 어긋날 경우에는 굳이 구차하게 의견을 같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형체를 숨겨 사전에 교묘하게 피하였고, 서로 잇달아 정고(呈告)하여 오히려 혹 뒤처질까 두려워하여 수일 사이에 대간의 자리가 모두 비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물리쳐 논의가 다시 제기되자 다시 인피하였는데, 좌우와 피차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이 되어 한 시대의 공의(公議)를 주도하는 자인데 작은 이해에 직면해서도 이와 같았으니, 오히려 어떻게 전폐(殿陛) 아래에 서서 임금의 위엄을 범해 가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릇 논사(論事)의 체모에 있어 정계할 때에는 동료들에게 간통을 띄워 논의를 하나로 귀결시킨 뒤에 논의를 정지하는 것은, 사리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스스로 정계한 것은 이미 규례에 어긋난 것이고, 스스로 선창하고 스스로 화답하여 마치 지시하듯이 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저들은 규례를 어긴 잘못을 면하기 어렵거니와 이 사람들은 경시를 당했다고 인혐할 것이 무에 있겠습니까. 정언 이괴, 장령 최계훈, 지평 박수문, 대사헌 김수현은 출사시키고, 사간 이상형, 정언 정태제, 헌납 신익전, 장령 임득열은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19일(병자) 맑고 서풍이 붊 /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김세렴(金世濂)은 나왔고, 우승지 허계(許啓)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병이고, 참판 김영조(金榮祖)는 병이고, 참의 이현(李俔)

은 병이고, 참지 박수홍(朴守弘)은 나왔고, 우부승지 이후원(李厚源)은 나왔다. ……
홍무적(洪茂績)을 장령으로, 정지호(鄭之虎)를 황주 판관(黃州判官)으로, **이경여(李敬輿)**를 이조 참판으로, ……
삼았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3월 28일(을유) 맑고 서풍이 붊 / 포천 현감 심합이 하직하였다

포천 현감(抱川縣監) 심합(沈詥)이 하직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4월 9일(병신) 맑음 / 사간원이 사간 조경을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일을 청하였다

사간원이 사간 **조경(趙絅)**을 올라오도록 하유(下諭)하는 일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5월 11일(정묘) 맑음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서울에서 모친을 봉양하면 충성과 효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답

이조 참판 **이경여(李敬輿)**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이 서울에서 모친을 봉양한다면 충성과 효도를 둘 다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니, 부디 왕사(王事)를 허술히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내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5월 12일(무진) 맑음 /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병이 나은 뒤에 올라와 바람에 부응하라는 비답

이조 참판 **이경여(李敬輿)**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상소에서 아뢴 내용은 실로 정리와 예의에 부합한다. 경은 내려가서 간병하되, 만약 함께 돌아오기 어려우면 병이 나은 뒤에 먼저 올라와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내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19일(을사) 맑음 / 경상 감사에게 공산산성과 독용산성도 살펴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신익량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에는 금오(金烏)와 천생(天生) 두 산성만 있는데 천생산성은 형세는 비록 험하지만 성터가 너무 좁고 또 우물과 샘이 없으니 실로 수비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 도내에서 믿을 곳은 금오산성뿐입니다. 작년에 전 감사 **이경여(李敬輿)**가 어류산성(御留山城)의 형승을 극력 말하고 지형을 그려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정이 비로소 수축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미 작은 사찰 하나를 지어 두어 왕래하는 사람이 몸을 부칠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현임 감사 이명웅(李命雄)이 하직할 때 상께서도 전교한 일이 있었으니 이미 오늘날의 계책이 되었습니다. 다만 듣건대, 본성은 안팎이 모두 험하여 발을 붙이기 어렵고 사방 100여 리에 암석이 험준하여 사람이 살 곳이 전혀 없고 양곡 운반이 어려우며, 봄가을로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 주고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로 더욱 염려스럽다고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모름지기 충분히 살펴야 하므로 이미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해 늦가을 낙엽이 진 뒤에 직접 가서 살펴보고, 양곡을 저축하는 일을 다시 더 충분히 강구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대구의 공산산성(公山山城)과 성산(星山)의 독용산성(禿用山城)이 형세가 아주 좋으며 본도의 사람도 축성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 합니다. 이 두 산성도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모두 살펴보게 한 다음 가능한 곳을 먼저 의논하여 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20일(병오) 맑음 /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일 등을 비국의 계사에 따라 수답할 것 등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전부터 금인(金人)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전일에 쟁집하던 일을 제기하여 공갈 협박하는 단서로 삼는 것이 바로 늘 하던 작태였습니다. 지금의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관한 일 같은 것이 그 하나인데, 이에 관한 것은 본래 문답한 예가 있으니 비국의 계사에 따라 수답(酬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경직(李景稷)은 병으로 3년간 벼슬하지 못하여 조정의 일을 알지 못하니, 이를테면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해 저들이 물어오는 일이 있을 경우 미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지시하게 하여 일에 닥쳐 우물쭈물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또한 유림(柳琳)과 이시영(李時英)은 바로 마사(馬使 마부대(馬夫大))와 정(鄭 정명수(鄭命守)), 김(金 김돌시(金乭屎)) 두 역관이 본래 항오(行伍)에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데, 만일 혹 그들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또 정축년에 칙사가 행차하였을 때도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날 것을 청하여 만나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만날 것을 청하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6월 21일(정미) 맑음 /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한 문답 등에 대해 회계하는 비변사의 계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영접도감의 계사에, '전부터 금인(金人)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전일에

쟁집하던 일을 제기하여 공갈 협박하는 단서로 삼는 것이 바로 늘 하던 작태였습니다. 지금의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관한 일 같은 것이 그 하나인데, 이에 관한 것은 본래 문답한 예가 있으니 비국의 계사에 따라 수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경직(李景稷)은 병으로 3년간 벼슬하지 못하여 조정의 일을 알지 못하니, 이를테면 도망쳐 돌아온 자들에 대해 저들이 물어 오는 일이 있을 경우 미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지시하게 하여 일에 닥쳐 우물쭈물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또한 이시영(李時英)과 유림(柳琳)은 바로 마사(馬使 마부대(馬夫大))와 정(鄭 정명수(鄭命守)), 김(金 김돌시(金乭屎)) 두 역관이 본래 항오(行伍)에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데, 만일 혹 그들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또 정축년에 칙사가 행차하였을 때도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날 것을 청하여 만나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만날 것을 청하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지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도망쳐 돌아온 자 가운데 - 2, 3자 원문 결락 - 자들과 같은 일은 따로 곡절이 있는데 본사의 당상 1원이 이미 도감을 겸하여 사진하기로 하였으니 문답의 내용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시영과 유림 등의 일은 사실대로 답해도 무방하고 **인평대군**을 만나 보는 것은 온편하지 않은 듯하니 말을 만들어 막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간곡히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품지하여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2일(정사) 맑음 / 칙사가 어제 잡은 물고기를 상께 진상하라고 하였다는 등 칙사의 동정에 대해 보고하는 영접도감의 계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

또 삼전도비를 만드는 일이 며칠이면 끝날지를 묻기에, '밤낮없이 역사를 감독하고는 있지만 5일 이전에는 결코 끝내기 어렵다. 대충 헤아려 본다면 10일쯤에 끝날 듯하다.'고 대답하니, '10일뿐만이 아니라 비록 20일, 30일이 된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으면서 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칙사가 내일 회례연(回禮宴) 뒤에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기에, 대군이 더위에 몸이 상하여 병이 있다고 말하니, 정 역관이 말하기를, '대군이 거둥에 참석한 것을 나 한 사람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보았다. 관반(館伴)이 막아서는 안 되니 만약 계달(啓達)한다면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와서 상의 명을 전하여 병이 들어서 서로 만날 수 없다고 고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다시 '대군이 와서 만난다면 질문하고 논란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어찌 병을 핑계 대어 막겠는가.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정 역관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물고기는 전해 바쳤다고 대답하고, **인평대군**에게는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가서 만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3일(무오) 맑음 / 정축년의 예대로 예단을 마련하여 대군이 잠깐 만나 볼 것을 청하는 영접도감의 계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인평대군(麟坪大君)**에게 병이 있다고 한 일로 정 역관의 말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니,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서 와서 만나 보라고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저들이 대군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안면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선물일 것이니, 호조로 하여금 정축년의 예대로 예단을 마련하게 하였다가 내일이 공일(空日)이니, 대군이 잠깐 와서 만나 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8일(계해) 비 / 신병이 있어 호가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직과 겸직하고 있는 양관의 직임을 모두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이조 참판 이경여의 상소

이조 참판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외람되이 말미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어미를 만나 어미와 자식이 마주 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하고서 겨우 증세가 덜해졌으니, 만약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 아랫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인자하심으로 특별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미와 자식이 서로 만나지 못하여 영원히 끝없는 아픔을 품었을 것입니다. 병든 어미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오늘까지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성상의 효치(孝治)의 마음을 미루어 넓힌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신은 말미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칙사가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하로서 죽는 의리에 있어 감히 물러나 전리(田里)에 있을 수 없어

서 애써 사정(私情)을 억제하고서 옷깃을 뿌리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후의 무덥고 비 올 때를 당해서 40일을 왕래하는 동안 더운 바람을 거듭 쐬어 중도에 몸이 더 상하여 식사도 못하고 물만 마시는데도 구토와 설사 증세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에 이르러서는 증세가 더욱 심해져 자리에 누워 신음하느라 떨치고 일어날 수 없어서 거둥할 때에도 호가(扈駕)하는 신하들 속에 끼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성상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자니 다만 스스로 머리를 들고 애가 타서 베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어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애써 노고하시고 신하들은 바삐 일하는데 신만 편히 지내고 있으니 죄가 이미 많고, 차지하고 있는 직명이 모두 중한 직임인데 이미 오랫동안 비워 두었으니 더욱 명을 어긴 죄에 해당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본직과 겸직하고 있는 양관(兩館)의 직임을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8일(계해) 비 /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지사 한인급의 상소

지사(知事) **한인급(韓仁及)**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운명이 기구하여 풍병(風病)에 걸렸는데도 고향에

는 약(藥)이 없어서 날로 더욱 고질병이 되어 가니, 다만 도성으로 돌아가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외람되이 거두어 서용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서 성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병을 참고 올라와서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군직(軍職)을 사은하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여러 증상이 더욱 심해져 사실(私室)에 몸져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만뜻밖에 마침 새로운 명을 받고 대례(大禮)가 또 임박하여 수척해진 끝에 억지로 나와서 사은하였음을 해조에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운검(雲劍)에 탈이 생기는 바람에 빈자리를 구차하게 채웠습니다만, 신이 앓고 있는 병은 절뚝거리는 것이 가장 심하여 칼을 차고 억지로 나아가면 호흡이 가빠져 고꾸라질 것이니, 하늘 같은 위엄을 지니신 성상을 지척에서 모시면서 불경스러움이 클 것이므로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아도 끝내 입시할 수도 없고 또 반열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본직이 비록 사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직임을 맡고서 조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 직명을 체차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7월 11일(병인) 비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 **이경여(李敬輿)**는 나왔고, 참의 김세렴(金世濂)은 정사(呈辭)하였고, 도승지 이기조(李基祚)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나왔고, 참판 정광경(鄭廣敬)은 병이고, 참의 이명한(李明漢)은 정사하였고, 참지 이현(李俔)은 나왔고, 좌부승지 목성선(睦性善)은 나왔다. ……

병비가 ……

부호군(副護軍)에 황집(黃緝)·김득진(金得振)·박진기(朴振基)·임련(林堜)·김준룡(金俊龍)·이정언(李廷彦)·**이성남(李星男)**·정문수(鄭文晬)·정충직(鄭忠直)·이위(李葳)·황호(黃浩)·홍민립(洪敏立)·김연(金淵)·문건기(文建基)·유한민(劉漢民)·지득남(智得男)·양신용(梁信容)·신기영(申起瀛)·이상원(李象元)·황직(黃溭)·권영(權榮)·이현달(李顯達)을 ……

제수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4일(기축) 맑음 / 탈이 있는 자가 많으므로 지중추부사 이경직 등을 본사 당상으로 차하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 본사의 당상은 탈이 있는 자들이 많아서 좌기에 나와 참여하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지중추부사 이경직(李景稷), 이조 참판 **이경여(李敬輿)**, 예조 참판 여이징(呂爾徵)을 본사의 당상으로 차하하되, 여이징은 그대로 유사 당상(有司堂上)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6일(신묘) 맑음 / 대례를 형편없이 만들었으므로 본직과 겸직한 여러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성 이경여의 상소

대사성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성균관의 장으로서 유림의 표상이니 임무가 매우 중합니다. 전후로 직임을 받은 자로 어찌 신처럼 재주 없고 무식하고 용렬하여 전혀 근접하지 않는데도 외람되이 이 직임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처음 명을 받았을 때에 소장을 올려 면직을 청하고 등대(登對)할 때도 간절하게 사직하였는데, 밝으신 성상께서도 미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으시니, 지엄한 성상 앞에서 감히 강변할 수 없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한 얼굴로 무턱대고 공무를 행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러나지 못하여 많은 선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결국 대례를 형편없이 만들었는데, 그러고도 구차하게 시일만 보내며 마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소신이 무슨 직임인들 감당하겠습니까마는 추졸함이 이미 드러났으니 잠시라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제사에 임박하여 병이 생겨 일을 그르치게 되었으니 이 두 가지를 아울러 끌어대어 감히 스스로 탄핵하며 부득불 위태롭고 곤궁함을 다 토로하여 우러러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본직과 겸직한 여러 직임을 속히 체차하시고 이어 신이 직무를 그르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선비들의 아름답지 못한 습성은 실로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려우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해 가르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8월 6일(신묘) 맑음 / 대사성 이경여가 상소에서 대례의 체면이 형편없게 되었다고 한 것은 석전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가리킨 것이라는 목성선의 계

목성선이 아뢰기를,

"'대사성 **이경여**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대례(大禮)의 체면이 형편없게 되었다고 한 것은 무슨 일인가? 승지가 물어서 아뢰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경여**에게 물으니, '이번 석전제(釋奠祭) 때 와서 참여한 생원, 진사가 겨우 십수 인이므로 재유(齋儒)로 하여금 개유하게 하여 재촉하였는데도 끝내 나오지 않아서 대례의 체면을 형편없게 만들었습니다. 난리 뒤에는 사자(士子)들도 사실 평소와 같지 않지만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자들조차 참여하지 않았으니 사체가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 본관의 장무관(掌務官)으로 하여금 10여 인을 뽑아내게 하여 정거(停擧)하는 벌을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4일(무오) 맑음 / 이비가 신천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신천익(愼天翊)을 집의로, 정태화(鄭太和)를 예조 참의로, 변호길

(邊虎吉)을 황해도 도사로, **양만고(楊萬古)**를 군자감 정[5]으로, 유창진(柳昌辰)을 성균관 박사로, 남궁집(南宮鏶)을 호조 정랑으로, 심택(沈澤)을 병조 정랑으로, 이익징(李翼徵)을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방명선(房明選)을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이공익(李公翼)을 안성 군수(安城郡守)로, 최문식(崔文湜)을 형조 정랑으로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4일(무진) 맑음 / 안변 부사 서경우에 대한 형조의 조율 공사에 대해, 전 공사에 빠진 글자가 있으므로 부표해서 내린다는 전교

안변 부사(安邊府使) **서경우(徐景雨)**에 대한 형조의 조율 공사(照律公事)와 관련하여 목성선에게 전교하기를,

"전 공사에 빠진 글자가 있으므로 부표해서 내리니, 이 뜻을 해사에 말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6일(경오) 맑음 / 식년 문과 강경 회시 시관으로서 명초 받은 뒤 칭병하고 나오지 않은 지중추부사 한인급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신익량의 계

5) 군자감정(軍資監正) :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관리·출납을 맡아본 군자감(軍資監)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관직.

신익량이 아뢰기를,

"지중추부사 **한인급(韓仁及)**이 식년(式年) 문과(文科) 강경 회시(講經會試) 시관으로서 명초받은 뒤에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았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8일(임신) 맑음 / 신병이 있어 문안의 반열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중추부사 한인급의 상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인급(韓仁及)**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병세가 이미 4, 5년 전에 깊어졌는데 작년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심해졌고 올해 들어서는 여러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바람이 범같이 두려우며 담열(痰熱)은 성난 조수가 해안에 부딪치는 것 같은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작합니다. 지난번 소명(召命)이 집에 이르렀을 때 달려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러고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상께서 기후를 조용히 조섭하시는 때에 문안의 반열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무식하지만 견마(犬馬)의 충정과 신하로서의 분의를 또한 일찍이 조금 알고 있으니, 황공하고 미안한 마음을 어찌 감히 잠깐이라도 마음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직명을 지닌 몸으로 일정한 녹봉으로 먹고사니 성상의 은혜는 이미 깊고 신의 죄는 날로 쌓여 불행하게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저 편한 대로 편안히 지낼 수 없어서 길가에 나와 엎드려 대궐을 우러러보며 석고대죄합니다. 그리고 거듭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이 두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렇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직임을 파직하시어 신의 죄를 바로잡고 어리석은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19일(계유) 맑음 / 칙사 행차가 나왔으므로 파직된 전 응교 정치화를 특별히 낭청에 서용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목성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칙사의 행차가 뜻밖에 나왔는데, 본사의 낭청은 일찍이 일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을 얻어야 사달이 생길 걱정을 면할 수 있으니 위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병인년(1626, 인조4)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이조 참판 **이경여**가 당시 파직된 상태였는데 특별히 서용되어 낭청에 차임되어 제수되었다고 합니다. 전 응교 정치화(鄭致和)를 만약 이 전례대로 한다면 일이 또한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서용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24일(무인) 맑음 / 여러 도의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올려 보내는 일을 잠시 정지하고 본도에 교육을 맡길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목성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여러 도의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올려 보내는 일을 잠시 정지하기를 청한 본사의 초기에 '일이 어린아이 장난과 같다. 다시 참작하여 처리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경여(李敬輿)**가 처음으로 탑전(榻前)에서 아뢰어 시작된 일인데, 신들이 당초 복계(覆啓)할 때도 너무 이른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부(師傅)가 된 신하가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급하다고 여겨 이렇게 갑자기 청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뜻인지라 상의하여 행하도록 계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국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고 걱정스러우니 교육에 대한 정사는 참으로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국가에 비축된 것은 겨우 올겨울을 버틸 정도인데 갑자기 칙사가 나온다는 보고마저 있었으니 앞으로 들어갈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국사가 이 지경이 되다니 몹시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도에서 올려 보내는 인재가 일시에 상경하면 - 3, 4자 원문 빠짐 -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틀림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부들로 하여금 - 3, 4자 원문 빠짐 - 낙담하게 하여 끝내 수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우선은 본도에 교육을 맡기고 국가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를 기다려 불러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9월 26일(경진) 맑음 /

인평대군이 만 장군을 찾아볼 때의 예단 수량을 더 마련하여 들이겠다는 호조의 계

김육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만 장군을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찾아보는 일에 관한 비변사의 계사와 관련하여 '칙사의 예대로 만나 보고 예물을 주게 하되, 이 사람은 지난해에 호위하여 간 은혜를 입었으니 특별히 더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칙사의 경우 대군이 찾아볼 때의 예단이 적은데다 연회에 차리는 여러 물품도 그 수량이 소략하기 때문에 수량을 더해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0월 27일(경술) 맑음 / 양만고의 상소에 대해, 진달한 일은 의처하겠다는 비답

양만고(楊萬古)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가 올린 소장(疏章)을 살펴보고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조목조목 진달한 일은 종당엔 의처하겠다."
하였다. - 원래의 상소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3일(병인) 흐림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 **이경여(李敬輿)**는 나왔고, 참의 이경의(李景義)는 나왔고, 도승지 이기조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병이고, 참판 이식(李植)은 나왔고, 참의 한형길(韓亨吉)은 병이고, 참지 이성신(李省身)은 병이고, 우승지 구봉서는 나왔다.

이경여(李敬輿)를 형조 판서로, ……

삼았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7일(경오) 맑음. 서풍 / 적임자가 아니므로 새로 제수한 본직을 체차하고 자헌대부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 요행히 창성한 날을 만나 큰 은혜를 융숭히 입어서 화현직(華顯職)을 역임하고서 이 자리를 맡기까지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두렵고 놀라워서 영광을 두렵게 여겼고 전형(銓衡)을 맡은 자리에 대신 참석하여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축낸 일도 많았습니다. 마침 성상의 기후가 편찮으신 것으로 인해 온 나라가 근심하고 황황해하고 있으므로 신하의 분의(分義)상 감히 사퇴할 수 없어 주저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총애하여 발탁하는 명이 천만 뜻밖에 갑자기 내려 감격스럽고 황공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형조의 장(長)은 형정(刑政)의 근본이니 반드시 공명(公明)하고 진실한 인재를 얻어야 바야흐로 다스림을 돕는 이익이 있고 옥송(獄訟)이 공평해질 것입니다. 신처럼 대범하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사방의 문안(文案)을 전적으로 총괄하여 온 나라의 옥송을 도맡아 판결하여 성조

(聖朝)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스려지는 교화를 돕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어버이의 나이가 이미 70을 넘었는데 집에 형제가 없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지만 곁에서 모실 사람이 없으므로 조석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미 어미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한 데다 또 위태로운 어미를 놓아두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형세상 전념하여 종사(從仕)하기 어려운 실상은 이미 전후의 상소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효치(孝治)의 인(仁)과 아랫사람을 알아주는 현명함이 있으시니 통촉하여 불쌍히 여기는 바가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새로 제수한 본직을 체차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의 가자(加資)를 개정(改正)하는 은혜를 내리시어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의 재학(才學)이 실로 탁용(擢用)하는 데에 적합하니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19일(임신) 맑음 / 적임자가 아니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지금 신의 위태롭고 절박한 사정은 실로 공사(公私)에 관계되어 우러러 숭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지만 성상께서 마음을 돌리시지 않고 격려와 표창이 뒤따라 이르렀으므로 황공하고 감격스러움이 다시 배나 더해졌

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오직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의리상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성상의 하교에 언급하신바 비록 옛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에 임하게 하더라도 서로 부합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은 신처럼 용렬한 자는 전혀 걸맞지 않아서 대부(大夫)가 타는 수레에 탄 학(鶴)[6]이나 기린(麒麟) 모형[7]과 같아 다만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입니다. 신이 만일 은혜와 영광을 탐하고 연연해하여 제 소유인 것처럼 하였다면, 스스로 신의 마음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밝으신 성상을 속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성상을 속여서 은혜를 저버리고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큰 소리로 호소하여 성성을 번거롭게 하여 죄를 얻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비록 형편없으나 옥후가 편찮으신 이때에 객사가 장차 이를 것이니 지금이 참으로 어떤 때인데 정섭하시는 데에 재차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주륙(誅戮)을 당할 죄를 스스로 범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주시어 체차하는 은혜를 특별히 내려 주소서. 그리하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나의 뜻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다시 굳게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1월 22일(을해) 맑음 / 적임자가 아니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

6) 춘추 시대 위(衛)나라 의공(懿公)이 학을 좋아하여 대부가 타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학도 있었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春秋左氏傳 閔公2年》
7) 당(唐)나라 양형(楊炯)이, 덕(德)이 없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조관(朝官)들을 조롱하여 부른 말이다. 《朝野僉載》

의 상소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하늘을 두려워하고 아비를 존중하는 것은 인정이 모두 그러합니다. 더구나 옥후가 편찮으신데 미천한 신하가 간절한 사정(私情)을 가지고 숭엄(崇嚴)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두세 차례에 이르렀으니,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의 인심(仁心)에 의지하여 한 것이나 또한 사정이 절박하여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무릇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한 몸에만 해당될 경우 신하의 의리로는 오직 명을 받들어 분주히 일해야지 일후에 실패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의 거취(去就)는 실로 나라의 체모에 관계되는데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주는 명기(名器)가 외람되이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쳤으니, 이것은 실로 잘못한 처사입니다. 법사(法司)의 장을 가벼이 재주가 없는 자에게 준다면 끝내는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니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 원문 빠짐 - 서료(庶僚)에 있어서도 신중히 가려 뽑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 경(卿)의 반열은 나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임인데 밝으신 성상께서 총애하여 발탁한 것이 이미 가당찮은 은혜를 베푼 것이 되었고 미천한 신하가 맡는 것 또한 영예를 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천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불러들이는 재앙은 미미한 신의 재앙이겠지만 비웃음을 사고 나라를 욕되게 하면 조정에 대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옛사람이 열 번 사양한 이유이고 또한 신이 죽을 각오로 슬피 하소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 사람인데 어찌 - 4, 5자 원문 빠짐 -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신의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특별히 체차하도록 허락하셔서 다 죽어 가는 목숨을 연장시켜 주소서. 그리하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이조에 계하하였다.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5일(정해) 흐리고 눈음 / 이유양이 복계할 때 망녕되이 법례에 따라 시행하려 한 죄는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대죄한다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계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조관(朝官)이 세 차례 항거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직첩(職牒)을 거두고 진래(進來)하여 추고하고 지만(遲晩)하지 않은 뒤에야 의금부로 옮겨 처치하기를 계청하는 것이 통행하는 규례입니다. 종전에는 수령이 세 차례 항거하면 직첩을 거두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형추(刑推)를 청하였으니, 경외(京外)의 사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령의 형추는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신들이 항상 온당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이유양(李有養)이 세 차례 항거하여 사감(査勘)한 다음 복계(覆啓)할 때 망녕되이 법례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역시 형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대의(大意)를 따져 보면 전후가 다름이 없습니다. 말 사이에 - 원문 빠짐 - 지금 율관(律官)을 추고하라고 명하셨는데, 망녕되이 함부로 행한 죄는 전적으로 신들에게 있지 율관이 마음대로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감히 와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7일(기축) 맑음 / 감당할 수 없는 직임이고 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겸직과 실직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신 같이 용렬한 자가 전후로 직임을 맡은 것은 모두 가당치 않은 은혜입니다. 주자(胄子)를 가르치는 곳의 장(長)으로 말하면 많은 선비를 책임지고 거느리는 자리이고 근밀(近密)은 조정의 계책을 협찬(協贊)하는 자리인데 신이 두 직임에 더욱 걸맞지 않아서 자리에 기대 앉아 졸다가 비웃음과 꾸짖음만 당하고 발언하여 논사함에 걸핏하면 시의(時宜)에 어긋났으므로 이미 직임을 그르쳤으니 스스로 처신해야 합당합니다. 또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와 관차(官次)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좌차(坐次)가 몹시 불편하니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섭(靜攝)[8]하시는 중에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두려워, 수치를 무릅쓰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축내는 잘못을 날로 쌓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신이 맡고 있는 직임은 옥송(獄訟)이 많이 모이는 자리니 보잘것없는 신으로서는 결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히 일하므로 정력(精力)이 미치지 못하여 도처에서 전착(顚錯)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동시에 병들고 겸직(兼職)과 실직(實職)이 모두 방치되니 조금도 보탬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불안하고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피시어 비국 당상을 먼저 체차하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러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이 이토록 사직하니 비국 당상에 대해서는 마

8) 정섭(靜攝) :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함

지못해 경의 뜻을 따라 주겠다."
하였다.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18일(경자) 흐림 / 신병이 있는 어미를 봉양할 수 있도록 걸군하는 형조 판서 이경여의 상소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에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간절한 사정(私情)을 가지고 숭엄(崇嚴)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사람의 뜻을 하늘이 따라 주어 은혜로운 허락을 받았습니다. 늙은 어미에게 전보(傳報)하니 병중에 놀라 감격하여 신에게 짧은 편지를 부쳤는데 모두 두 손 모아 축하하는 뜻이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마음으로 날수를 계산하며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해가 바뀌게 되었는데도 지극한 소망을 아직 이루지 못 하였는데 가당찮은 은혜가 거듭 더해졌으니 미천한 신에게는 지극히 영광이지만 신의 늙은 어미는 실망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일신의 총영(寵榮)만 취하고 조금이나마 어버이의 마음을 위로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구하지만 절박한 정성을 부모에게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 형편없는 것이어서 천지간의 한 죄인이니, 이러한 처지로 어디에서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외람되이 청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신의 죄는 참으로 크지만 신의 사정도 긴박합니다.
생각건대 신이 홍성한 때를 만나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은혜가 더욱 내

려져 10년 동안 경연에서 모시고 이곳에서 신명(身命)을 바쳤으며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니 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어찌 논변(論辯)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일찍 아비를 여의어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로, 출입하고 우러러보고 굽어봄에 오직 밝으신 성상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또 어렵고 근심스러운 때를 만나 국세가 매우 기울어져 가니 어찌 잠시라도 대궐을 떠나 편하려는 계책을 스스로 도모하려 하겠습니까. 다만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치상 경중이 없고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기간에 장단(長短)이 있습니다. 신의 어미는 나이가 80세에 가까운데 평소 질병이 많아서 목숨이 실낱같으니 세상에 살날이 며칠이겠습니까. 편안하게 봉양하려는 계책을 실행할 기회를 지금 놓친다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슬픔이 황천에 영구히 맺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이 이에 미치면 말을 하려다가도 목메어, 몹시 황급하여 미치지 못할 것처럼 애탑니다. 늘 근심하는 이 마음은 신명(神明)이 임하여 살필 것입니다. 게다가 신은 강가에 객거(客居)하고 있어 수재를 혹독하게 입었으므로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악식(惡食)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니, 자식 된 몸으로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심정이 이에 이르러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 몇 행 원문 빠짐 - 무릇 자급(資級)에 따라 직임을 논하는 것은 유사(有司)의 상격(常格)이고 효자의 덕행을 펴서 인(仁)을 실행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큰 공입니다. 이러하므로 옛 조종조(祖宗朝) 때에 노□□(盧□□)가 총재(冢宰)로서 김해 부사(金海府使)에 제수되었고 선조(先朝)에 이르러 심집(沈楫)이 형조 판서로서 안변 부사(安邊府使)가 되었으니, 이것이 다 봉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1행 원문 빠짐 - 신처럼 형편없는 자는 비록 옛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하나 - 반행 원문 빠짐 - 홀로 관질(官秩)의 고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정상을 살피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별도로 재처(裁處)하는 은혜를 내리시어 - 반행 원문 빠짐 - 1장 빈 종이를 갖추니 필부필부(匹夫匹婦)도 모두 천지(天地)가 덮고 비호해 주는 환경 아래에서 그 은혜를 입으므로 신은 상소에 임해 눈물을 흘리며 아뢸 바를 모르겠습

니다."
하였는데, 계자인(啓字印)[9]을 찍어서 내렸다.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20일(임인) 맑음. 서풍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 이경의(李景義)는 나왔고, 참의 김세렴(金世濂)은 나왔고, 도승지 정광경(鄭廣敬)은 나왔다. ……
이경여(李敬輿)를 대사성으로, 박장원(朴長遠)을 봉교(奉敎)로, 이문주(李文柱)를 금부 도사로 삼았다.

< 以下 省略 >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12) / 12월 20일(임인) 맑음. 서풍 / 재신인 형조 판서 이경여가 어버이의 신병으로 정사를 올렸으므로 봉입한다는 정광경의 계

정광경이 아뢰기를,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에서 병으로 정사(呈辭)한 사람이 각각 1원인데 이미 봉입(捧入)[10]하였습니다. 방금 형조 판서 **이경여(李敬輿)**가 어버이

9) 계자인(啓字印) : 계자(啓字)를 새긴 도장. 이를 찍어 임금의 승낙을 받았음[啓下]을 표시함
10) 봉입(捧入) : 백성의 청원(請願) 서류로서 임금에게 올린 것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접

의 병으로 인한 정사를 직접 와서 올렸습니다. 재신(宰臣)이 정사한 것이므로 봉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수하거나, 각조(各曹), 각사(各司)에서 수리하여 승정원에 회부(回付) 진달(進達)하여 올리는 것을 말함.

인조 18년 경진
(1640, 숭정13)

여 백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월 12일(갑자) 아침에는 눈 오고 저녁에는 맑음 / 말미를 받아 나갔다 들어오려는 대군사부 서원리에게 초료를 성급하여 속히 들어오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또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대군사부[1] **서원리(徐元履)**가 정장(呈狀)하기를, '양모(養母)를 귀장(歸葬)하기 위해 말미를 받아 나와 - 원문 빠짐 - 장기(葬期)가 점차 물려져 말미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 일로(一路)의 초료(草料)[2] 등의 일에 대해 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초료를 성급(成給)하게 하여 속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월 12일(갑자) 아침에는 눈 오고 저녁에는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이경여(李敬輿)를 대사헌으로, ……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3일(을유) 맑음 /

1) 대군사부(大君師傅) :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2) 초료(草料) : 관원(官員)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경유하는 길의 각 관(官)과 역참(驛站)에 대하여 마필(馬匹)과 숙식 등의 제공을 명령하는 문서이다

병든 어미를 떠날 수 없으므로 본직 및 겸임하고 있는 성균관 대사성 등을 아울러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이경여의 상소

대사헌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신이 부여(扶餘)의 본가에서 삼가 유지(有旨)를 보니 '경을 대사헌으로 삼으니 속히 올라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신의 부모가 연로하여 감히 멀리 떠나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이고 조정에서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 2행 원문 빠짐 - 병세가 매우 위중한 터라 마음이 어지러워 황급히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 몇 자 원문 빠짐 - 돌아가 늙은 노모를 보고 성은을 입었다고 말하니, 노모는 숨이 끊어질 듯하여 마치 장차 - 몇 자 원문 빠짐 - 눈을 감은 채 쓰러져 누워 있으면서도 오로지 축하할 줄을 알아 머리를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죽기 전에 너를 볼 수 있어 성은이 망극하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천(上天)에 계신 영령 덕분에, 토혈(吐血)이 아직 멈추지 않아 식음을 전폐한 채 사람의 젖과 미음만으로 조석을 때우고 있지만 심화(心火)가 치솟기도 하고 술에 취한 듯 정신이 혼미하여 신이 직접 부축하고서 미음을 들기를 권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에 넣습니다. 신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도 또 떠날까 염려하여 잠시라도 곁을 떠나려 하면 반드시 가는 곳을 물으니, 지금 신의 형편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곳일지라도 결코 어미를 내버려 둔 채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신이 겸임하고 있는 직명 역시 헛되이 지닌 채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어서 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천만뜻밖에도 소명(召命)이 궁벽한 신의 집에 갑자기 이르러 놀랍고 감격스러워 대궐 쪽을 바라보며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지극히 우매하고 비루한 노신

(老臣)이 이렇게까지 곡진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운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다만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 일하다 죽으려 하였으니, 이는 신이 평소 가슴속에 담아 둔 생각입니다. 만일 잠시라도 명령에 달려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참으로 어느 때인들 성은을 저버리고 스스로 편안할 계책을 도모하여 멍에 매기를 기다렸다가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죽게 된 어미를 버려두고 영화를 탐내어 나아간다면 미천한 신이 명교(名敎)에 한 명의 죄인이 될 뿐만이 아닐 것이니, 이렇게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에서도 매우 미워해서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절박하기 그지없는 심정으로 우러러 숭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참으로 크지만 신의 사정 또한 딱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보잘것없는 사정(私情)을 굽어 헤아리시어 본직 및 겸임하고 있는 성균관 대사성, 예문관 제학, 승문원과 사직서의 제조를 아울러 체차해 주심으로써 병든 노모를 구료하는 데 전념하게 하여 불효하는 신하로 하여금 성조(聖朝)의 사대부 반열에 나오지 않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어찌 미천한 신에게만 다행이겠습니까. 국가의 돈화(敦化)에도 일조가 될 것이니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본직만 체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4일(병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김세렴(金世濂)은 나왔고, 우승지 이덕수(李德洙)는 나왔다. ……

성신구(成信耉)를 **영평 현령(永平縣令)**으로, - 몇 행 원문 빠짐 - 유정(柳頲)을 학유로, 유황(兪榥)을 충청 도사로, **이경여(李敬輿)**를 대사성[3] 으로, ……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11일(계사)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병비가 ……
이시술(李時術)·오경(吳慶)을 시직(侍直)[4]으로, 심정(沈靖)을 위솔(衛率)로, 오준(吳竣)·우상중(禹尙中)을 동지(同知)로, 변삼근(卞三近)을 동지로, 도신수(都愼修)를 문겸(文兼)으로, 신량(申湸)을 익위(翊衛)로, 이상우(李象羽)를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로, 홍보(洪寶)를 부총관(副摠管)으로, 윤원지(尹元之)를 익위로, 김후명(金後明)을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0일(임인) 맑음 / 대제학을 차출하는데 당상관 중에 합당한 사람을 천망하여 권점할 것인지를 묻는 빈청의 계

빈청(賓廳)이 아뢰기를,

---

3)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당상관으로 성균관의 장(長:泮長)이 됨.
4) 시직(侍直) : 정8품직으로 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음.

"지난 선조(宣祖) 신묘년(1591, 선조24)에 **이덕형(李德馨)**이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승진하여 대제학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후 병자년(1636, 인조14)에 대제학을 차출할 일이 있었는데 당상관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가려내어 권점(圈點)하도록 하교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대로 당상관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천망(薦望)하여 권점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1일(계묘) 맑음 / 이비가 목성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

한인급(韓仁及)을 겸 지의금부사[5]로, **이경여(李敬輿)**를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이동(李崠)을 군자감 정으로, 박립(朴雴)을 장악원 주부로, 조척(曺倜)을 공조 정랑으로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3일(을사) 맑음 / 대사성을 겸직으로 계하한 전례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윤이지의 계

윤이지가 아뢰기를,

"'대사성을 겸직으로 계하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작년 1

5)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조선시대 특별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義禁附)의 정2품 문관직. 다른 관직을 겸임하였던 당상관 4인 가운데 하나로서 의금부의 최고위직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함께 업무를 관장하였음.

월에 신이 대사성을 차출하는 일로 탑전에서 계품(啓稟)하니, 실직(實職)에 있는 자를 대사성으로 삼는 경우에는 겸임하라는 전교를 직접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경여(李敬輿)**를 부제학 겸 대사성으로 계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김육은 형조 참의를 대사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례로 여겨 이처럼 써서 들인 것인데, 성상께서 수고로이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나도 황공합니다. 형조 참의는 부제학과 다르니 이런 경우는 겸임하지 않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겸임하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3일(을사) 맑음 /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에, ……

양만고(楊萬古)를 사복시 정[6]으로, 안헌징(安獻徵)을 종부시 정으로, 김계(金械)를 양천 현감(陽川縣監)으로 삼았다. 직강에 조한영(曺漢英)을 단부(單付)하였다. 사옹원 부제조에 풍천도정(豐川都正) 이경운(李景雲), 영성도정(泳城都正) 이형충(李亨忠)을 제수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5일(정미) 아침에 눈 오고 저녁에 맑음 / 연로한 신임 사복시 정 양만고를 체차

6) 사복시정(司僕寺正) : 조선시대 왕이 사용하는 수레와 말 및 말의 사육과 방목을 맡았은 사복시(司僕寺)의 정삼품(正三品)으로 정원은 1원이다.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전 등의 계

헌납 임전(林), 정언 윤득열(尹得說)이 아뢰기를,

"태복(太僕)[7]의 관직은 다른 관사에 비해 더욱 막중합니다. 따라서 대시(臺侍)[8]를 지낸 명망 있는 사람을 장관(長官)에 차임하는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닙니다. 새로 제수된 사복시 정 **양만고(楊萬古)**는 나이가 많아 노쇠하고 명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와 같은 사람을 수장(首長)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합하지 않은 일이 별로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윤1월 26일(무신) 흐림 / 연로한 사복시 정 양만고를 속히 체차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전 등의 계

헌납 임전(林), 정언 윤득열(尹得說)이 아뢰기를,

"신들이 사복시 정 **양만고(楊萬古)**를 체차해 달라는 일로 논열(論列)하니, 성상께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 별로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비답을 내려 하교하셨습니다. 평소 명망도 없고 나이도 많아 노쇠한데 어

7) 태복(太僕) : 궁중의 말과 수레를 맡은 벼슬아치.
8) 대시(臺侍) : 대간(臺諫)으로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맡아보던 직분. 또는 그런 사람. 사헌부의 장령(掌令), 지평(持平) 등이 이에 속한다.

떻게 동료들을 바로잡아 정사를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2월 2일(계축)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가 ……
이성남(李星男)을 철원 도호부사(鐵原都護府使)로, 김상(金鏛)을 병조 좌랑으로, 신경진(申景禛)을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으로, 김자점(金自點)을 낙흥군(洛興君)으로, 홍보(洪霦)를 풍녕군(豐寧君)으로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2월 28일(기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
양만고(楊萬古)를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3월 15일(병신) 맑음 / 집의 조경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집의 **조경(趙絅)**이 현재 충청도 홍주(洪州)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3월 28일(기유) 흐림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
송시철(宋時喆)을 헌릉 참봉(獻陵參奉)으로, 이괴(李襘)를 전적으로, 신득연(申得淵)을 겸 동지의금부사로, 민응협(閔應協)을 겸 춘추관 편수관으로, 한세량(韓世良)을 겸 명과학 교수(兼命課學敎授)로, 심기원(沈器遠)을 청원군(靑原君)으로, 김선민(金善民)을 함경도 심약(咸鏡道審藥)으로 삼았다.

- 정축에 의거함 -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4일(을묘) 흐림 /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형조 판서 한인급의 상소

형조 판서 **한인급(韓仁及)**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정축년(1637, 인조15)에 중풍이 든 뒤로 점점 고질이 되어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상하 관원들치고 누군들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지난해에는 자식까지 잃어 정신이 완전히 나갔으며, 여러 가지 괴이한 증상들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

지만 마침 왕세자가 돌아오는 때여서 하는 수 없이 나가 숙배하였는데, 며칠 사이에 극도로 쇠약해져 바야흐로 - 5, 6자 원문 빠짐 - 또 문안하는 날에 거듭 - 8, 9자 원문 빠짐 - 효력이 없어 물러나 사직하여 체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형조 판서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니, 신이 어리석기는 하지만 감격한 나머지 나가서 사은숙배할 것을 간절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몸져누운 채 몸을 일으켜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는 결코 대궐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 원문 빠짐 - 혈담(血痰)이 다소 덜해져서 한번 사은하게 되더라도 끝내는 필시 직무를 방치하게 될 것이니, 추부(秋部)[9]의 중요한 자리를 어찌 하루라도 헛되이 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 살펴 주시어 본 직임을 속히 체차하심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8일(기미) 맑음 / 형조 판서 한인급의 상소에 대해, 해조에 내리라고 전교하였다

형조 판서 **한인급(韓仁及)**의 상소와 관련하여, 해조에 내리라고 김육에게 전교하였다.

9) 추부(秋部) : 형조(刑曹)의 별칭.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9일(경신) 맑음 / 병비가 변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병비가 ……

대호군(大護軍)[10]에 김수현(金壽賢)·**한인급(韓仁及)**을, 호군에 홍득일(洪得一)을, 사직(司直)에 김영조(金榮祖)를, 부사직에 김경(金坰)을, 사과에 채성귀(蔡聖龜)를, 부사과에 이이존(李以存)을, 사정(司正)에 심지명(沈之溟)을, 첨지에 구인기(具仁堅)를, 도총부 도사에 최율(崔嶅)을, 사산감역(四山監役)에 한수원(韓壽遠)을 제수하였다. - 원문 빠짐 -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4월 16일(정묘) 맑음 / 사간 조경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간원 정언 김상의 계

사간원의 계사이다. 정언 김상(金鏛)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사간 **조경(趙絅)**은 현재 충청도 홍주(洪州)에 있고, 장령 유경집(柳景緝)은 현재 경기 양주(楊州)에 있고, 지평 정유(鄭攸)는 현재 경상도 풍기(豐基)에 있고, 정언 이빈(李彬)은 현재 전라도 강진(康津)에 있습니다. 모두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0) 대호군(大護軍)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12원이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9일(기축)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으로 사간 조경이 사직 상소를 올려 보내는 일을 보고하였다

충청 감사의 서목은, 홍주(洪州)에서 "사간 **조경(趙絅)**의 사직 상소를 올려 보냅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이었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13일(계사) 맑음 / 목릉의 일로 조경에게 탄핵을 받았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영의정 홍서봉의 차자

영의정 홍서봉(洪瑞鳳)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어리석고 비루한 자질로 외람되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므로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한 채 날로 죄만 쌓일 따름입니다. 이번에 **조경(趙絅)**이 올린 상소와 관련하여 삼가 그 대강의 내용을 들었더니, '을해년(1635, 인조13)에 목릉(穆陵)이 붕괴된 것은 벼락으로 인한 변고가 분명한데도 봉심(奉審)한 신하가 감추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추숭(追崇)하여 부묘(祔廟)할 때 풍악을 벌인 것은 무식한 유사(有司)의 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故) 정승 오윤겸(吳允謙)은 대신(大臣)으로 나아갔고, 신경진(申景禛)은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로서, 신은 예조의 당상(堂上)으로서 실로 따라갔습니다. 서로 함께 그 주위를 돌아보며 간심(看審)한 것이 서너 번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복명(復命)하던 날에 목격한 실상대로 서계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보

는 눈이 같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바로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 '벼락으로 인한 변고가 분명한데도 신하들이 속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떠들썩하게 되어 곧바로 온 나라에 두루 퍼졌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경시하는 것은 쇠퇴한 세상의 일반적인 작태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자들이 과연 이런 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죄를 소급해서 바로잡는 것은 진실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만, 천벌을 받았다는 설에다 반드시 자연스레 맞추려는 것은 매우 의혹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소에서 말한 '부묘할 때 풍악을 벌였다.'라는 일은, 신이 당시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등록(謄錄)과 전례(前例)를 가져다 살펴보니, '여러 능에 일이 생겨서 개수(改修)할 때 아직 정일(正日)이 되기 전에는 나라의 모든 예를 거행함에 있어 일찍이 이 때문에 정폐(停廢)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묘하는 예를 애당초 물려서 거행하고자 했다가 상신(相臣)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그대로 행하고 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풍악을 사용한 일은 바로 절목상의 일이 전례로 굳어서 행해져 온 것이므로 역시 별도로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전하를 그르치게 했다는 죄를 신이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식견과 기력이 본래 남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일흔의 나이여서 정신이 흐릿한 증상과 잘 잊어버리는 증상이 뒤얽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하는 일마다 잘못되어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 지적한 간관(諫官)의 올바른 논의를 만났는데, 신의 잘못에 딱 들어맞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한결같이 수치를 잊은 채 주저하면서 떠나지 않아 거듭 관직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명을 체차하여 공의(公議)를 중히 하고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차자에서 말한 일 가운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5월 16일(병신) 맑음 / 이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백대진(白大璡)을 도총부 도사[11]로, ……
제수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6월 2일(임자)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신병이 있는 사간 조경이 체차해 줄 것을 청하였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충청 감사의 서목은, 홍주(洪州)에서 "사간 **조경(趙絅)**이 병이 중하여 직명을 체차해 주소서."라고 보고하였다는 일이었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6월 3일(계축) 맑음 / 사간 조경이 사장을 올려 체차되었다

사간 **조경(趙絅)**이 사장(辭狀)[12]을 올려 체차[13]되었다.

---

11)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사무인 오위도총부에서 사무를 담당한 관직.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7월 16일(을미) 맑음 / 경기 감사 허계가 대군을 배행하여 들어왔다

경기 감사 허계(許啓)가 대군(大君)을 배행하여 들어왔고, 사부(師傅) 서원리(徐元履)가 들어왔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8월 16일(을축) 맑음 / 인평대군 부인의 신병에 소용되는 약재를 가지고 가게 금군을 정해 보내므로 의주에서 전해 보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인평대군(麟坪大君)** 부인의 병환에 소용되는 약재를 가지고 가도록 금군 중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1명을 정해 보내니 의주에서 전해 보내라는 내용으로 부윤에게 - 원문 빠짐 - 작성하여 보내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9월 24일(임인) 맑음 / 심양에 들어가는 봉림대군에게 의자와 하사미 등을 인평대군의 예대로 마련해 주라는 전교

김육에게 전교하기를,

---

12) 사장(辭狀) : 사직서를 일컫는 말.
13) 체차(遞差) : 관리(官吏)를 갈아 내어 바꿈.

"봉림대군(鳳林大君)이 다음 달 10일쯤 심양(瀋陽)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예단과 여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대군에게 의자(衣資)와 하사미(下賜米) 등의 물품을 일체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예대로 마련해 주라."
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0월 2일(기유)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집의 조경의 사직 상소를 올려 보낸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충청 감사의 서목은, 홍주(洪州)에서 "집의 **조경(趙絅)**의 사직 상소를 올려 보냅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이었는데, 체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0월 3일(경술) 맑음 / 이비가 이숙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이숙진(李淑鎭)을 감찰로, 윤택지(尹擇之)를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로, 김인(金寅)을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이지굉(李志宏)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시해(李時楷)를 사복시 정으로, **양만고(楊萬古)**를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
삼았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1월 18일(을미) 맑음 / 집의 조경의 사장에 대해, 체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집의 **조경(趙絅)**의 사장(辭狀)과 관련하여, 체차하라고 신민일에게 전교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1월 24일(신축) 맑음 / 전라 우수사 김술 등이 하직하였다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김술(金述), **포천 현감(抱川縣監)** 이동언(李東彦), 축산 만호(丑山萬戶) 이□□(李□□)가 하직하였다.

인조 18년 경진(1640, 숭정13) / 12월 13일(기미) 맑음 / 집의 조경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집의 **조경(趙絅)**이 현재 충청도 홍주(洪州)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여 백

인조 19년 신사
(1641, 숭정14)

여 백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월 26일(임인)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는 비답

사간원이 아뢰니, 답하기를,

"이원영(李元榮)은 공이 높고 연로하니 승품(陞品)해도 무방할 듯하다. **양만고(楊萬古)**가 이른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듯하다. 이중신(李重信)은 공이 있는 사람이니 체차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두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내하 일기초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2월 3일(무신)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양만고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

사간원이 아뢰니, 답하기를,

"장단 부사(長湍府使)가 돌아가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양만고(楊萬古)**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내하 일기초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2월 4일(기유) 맑음 / 사간원의 계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

사간원이 아뢰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어전(漁箭)의 역(役)은 잔약한 고을에도 있는데 해마다 막는다면 너무 박절하지 않겠는가. 대군(大君)의 가사(家舍)는 사재(私財)로 수리하므로 별로 폐해를 끼칠 일이 없으니, 그대로 두라. **양만고(楊萬古)**의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3월 28일(계묘) 맑음 / 팔왕에게 보낼 인평대군의 회답 예물을 평안 감사에게 전해 주어 삭선을 가지고 갈 때에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호조가 아뢰기를,

"팔왕(八王)[1]에게 보낼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신행(贐行)[2]에 대한 회답 예물을 이미 마련하여 계하받았습니다. 지금 들여보내야 하는데, 현재 왕래하는 인편이 없으니 금군(禁軍)이 출발할 때에 평안 감사에게 전해 주어 그로 하여금 삭선(朔膳)[3]을 가지고 갈 때에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1) 팔왕(八王) : 청 태조(淸太祖)의 제12자인 화석영친왕(和碩英親王) 아제격(阿濟格)이다.
2) 신행(贐行) : 먼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시문(詩文)이나 물건.
3) 삭선(朔膳) : 매달 초하루에, 각 도(道)에서 나는 산무로 음식(飮食)을 차려서 임금께 올리던 밥상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몰래 보내게 하라."
하였다.

- 《병조등록》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5월 20일(갑오) 맑음 / 이행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서경우(徐景雨)**를 종부시[4] 제조[5]로, 강윤형(姜允亨)을 예조 정랑으로, 정인경(鄭麟卿)을 주서로, 유창진(柳昌辰)을 형조 좌랑으로, 권오(權澳)를 사재감 주부로, 임담(林墰)을 판결사로, 백이문(白以文)을 전연사 직장으로 삼았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7월 15일(기축) 맑음 / 창원 부사 백대진 등이 사은하였다

창원 부사(昌原府使) **백대진(白大璡)**, 대구 부사(大丘府使) 성익(成鈘), 호조 정랑 장중인(張仲仁), ……
은 사은하였고, 병조 좌랑 유진삼(柳晉三)은 겸감찰(兼監察)에서 감하되어

---

4) 종부시(宗簿寺) :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5) 제조(提調) : 조선시대에 각 사(司)·원(院)의 관제(官制) 상 우두머리가 아닌 종일품(從一品), 또는 정·종이품(正·從二品)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겸직으로 임명되고, 그 관아(官衙)의 일을 지휘·감독하게 했다.

숙배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7월 26일(경자) 비 / 창원 부사 백대진 등이 하직하였다

창원 부사(昌原府使) **백대진(白大璡)**과 대구 부사(大丘府使) 성익(成鈶)이 하직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8월 7일(경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이도장(李道長)을 부응교로, 김영조(金榮祖)를 이조 참판으로, 김진원(金震遠)을 학록으로, 심제(沈)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6일(기묘) 흐림 / 충청 감사가 전한 조경이 노모의 병세가 위중하여 올라가지 못한다는 일을 보고하는 서목을 올렸다

또 올린 서목은, 홍주(洪州)에서 "전한 **조경(趙絅)**이 노모의 병이 중하여 올라가지 못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이었는데, 입계하니, 체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5일(무자) 맑음 / 예를 함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이번 광해(光海)의 상(喪)에 예관이 성상의 두터운 은의(恩意)를 받들어 좇아야 하는데, 왕법(王法)으로 결단할 줄은 생각지 않은 채 백관들은 복(服)으로 갈아입고 모여서 곡해야 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상은 후한 쪽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는 함부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선위(禪位)한 임금을 위해 비록 발상(發喪)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역시 예문(禮文)에 없는 예에 해당하니 예관이 이를 취하여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광해처럼 스스로 폐위와 내침을 초래한 경우는 전고에서 찾아보아도 비교해 볼만한 전례가 없으니, 어찌 선위한 임금에게 비겨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때 이런 뜻을 사대부들에게 언급하고 예관이 깊이 생각지 못한 것을 매우 괴이하게 여겼는데 예관이 아뢴 바가 마침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비록 두텁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예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바가 없습니다. '피위(避位)'라는 말은, 이 말이 한번 《춘추》에 나온 이후로 후세에는 마침내 폐위된 군주에 대해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관이 아뢸 바를 창졸간에 조어하느라 한갓 고인이 이미 사용했던 문자를 취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오늘날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범연한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바로 성상께서 반정(反正)하신 거사를 광명정대하지 못하다고 한 것인데, 자신이 허황하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어휘를 잘못 쓴 것을 대번에 죄로 삼는 것은 후하게 용서하는 뜻에 맞지 않은 듯합니다. 신이 지난날에 본직을 맡아 조금의 책임

은 있는데 우매하여 소견이 이와 같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신이 진실로 면하기 어렵지만 원래의 차자가 내려오기 전이라 감히 인혐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간원이 이로써 피혐하고 나서야 비로소 와서 피혐하게 되었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5일(무자) 맑음 / 옥당이 대사간 김남중 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옥당이 올린 차자의 대개는,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사간 정치화(鄭致和), 정언 채성귀, 대사헌 **서경우**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6일(기축) 맑음 / 정언 채성귀 등이 직임을 행하였다

정언 채성귀(蔡聖龜),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사간 정치화(鄭致和), 대사

헌 **서경우(徐景雨)**가 직임을 행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9월 16일(기축) 맑음 / 집의 이행우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의 계

대사헌 **서경우**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집의 이행우(李行遇)는 현재 전라도 담양부(潭陽府)에 있고, 장령 권억(權億)은 현재 경기 남양(南陽)에 있습니다. 모두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0월 20일(임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
이후산(李後山)을 병조 좌랑으로, 김시국(金蓍國)을 겸 동지의금부사로, 박회무(朴檜茂)를 황산 찰방(黃山察訪)으로 삼았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0월 24일(병인) 맑음 / 내일 행할 망궐례의 의주를 들여보낸 결과를 보고하는 접대청의 계

또 아뢰기를,

"방금 내일 행할 망궐례(望闕禮)의 의주(儀注)를 들여보냈는데 정역이 말하기를, '예모(禮貌)를 전일 동지 망궐례의 예대로 해야 마땅하니 백관을 4경 초두에 일제히 모이도록 하고, 또 대군(大君)이 와서 참석할지의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역관들이 답하기를,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와서 참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1월 26일(무술) 맑음 / 완성부원군 최명길에게 규례대로 대제학을 천망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비변사의 계목에,

"첨부한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의 차자에 운운하였습니다. 삼가 대제학을 천망(薦望)하는 규정을 살펴보니, 반드시 전 대제학이 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전전 대제학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전의 대제학이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해년(1599, 선조32)에 천망할 때에 전 대제학이 연고가 있었는데, 그전 대제학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이 병으로 우의정에서 체차되어 집에 있었으므로 사관을 보내어 천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전 대제학 이식(李植)이 지방에서 오지 않았고 전전 대제학 이경석(李景奭)은 멀리 심양에 있으니, 그전의 대제학에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항복**이 처음 대제학에 제수된 뒤로 즉시 사면하여 체차되기는 하였지만 천망할 때에 이르러서 사면했다는 말은 듣

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최명길(崔鳴吉)이 차자를 올린 것은 겸손한 사양에 지나지 않고 또 일의 형편도 마침 이러하니, 예전의 규례대로 천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4일(을사) 맑음 / 흉악하고 간교한 두릉도정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권억(權億)·정시망(鄭時望), 지평 유준창(柳俊昌)·이행원(李行源)이 아뢰기를,

"두릉도정(杜陵都正) 이희안(李希顔)은 위인이 패악하고 형편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웃에 사는 출신(出身)과 서로 다투더니 자식과 함께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출신의 집에 돌입하여 출신의 어미를 마구 때리고 가산을 전부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출신의 연로한 어미가 구타를 당하여 곧 숨이 끊어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희안은 그녀가 죽을까 두려워하다가 먼저 자기 집의 늙은 노파를 죽이고서 출신이 와서 죽였다고 거짓 핑계를 대고 소리 높여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먼저 공격하여 상대를 제압할 계책을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고 대론(臺論)이 계속되어 점차 대옥(大獄)이 형성되어 사건에 관여된 자들이 실토하기에 이르자 이희안이 비로소 승복하였습니다. 그의 심사가 지극히 흉악하고 간교하니 극죄(極罪)로 처벌해야 마땅한데, 다만 나이를 속여 입적(入籍)한 까닭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형률을 감하여 석방하였으므로 물정이 아직도 지극히 분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람하게 서용하라는 명까지 받들었으므로 보고 듣는 자들이 해괴하게 생

각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두릉도정 이희안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해 죄입어 형벌을 이미 시행하였다. 또 거듭하여 흉년이 들어 매우 가난할 것이다. 노인의 일은 예법에 맞게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니, 지극한 뜻을 헤아려 더는 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5일(병오) 맑음 / 흉악하고 모진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권억(權億)·정시망(鄭時望), 지평 유준창(柳俊昌)·이행원(李行源)이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보니, 종실(宗室)을 두터이 대접하고 가난한 이를 구휼하려는 성대한 뜻이 지극하고 극진하였습니다. 다만 이희안(李希顔)은 작질(爵秩)이 높은 종실로서 두 자식을 거느리고 백주 대낮에 몽둥이로 남의 노모를 구타하고 가산을 파괴하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나도 패악스럽습니다. 더구나 직접 집안의 늙은 할미를 죽여 먼저 일을 일으켜 남을 제압할 계책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였으니, 그 흉악하고 모진 정상은 더 이상 인간의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에 형률을 감하였을 때에도 물정이 오히려 분하고 한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용하라는 은전까지 입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해괴하게

생각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런 흉악한 자를 다스리지 않으면 악을 자행해도 징계할 수 없고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소중하므로 원망을 품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라."
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6일(정미) 흐림 / 두릉도정 이희안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대사헌 서경우 등의 계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권억(權憶)·정시망(鄭時望), 지평 유준창(柳俊昌)·이행원(李行源)이 아뢰기를,

"두릉도정(杜陵都正) 이희안(李希顔)에 대해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0일(신유) 맑음 / 좌승지 김육은 도승지 서경우와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처치하겠다는 홍무적의 계

홍무적이 아뢰기를,

"좌승지 김육(金堉)은 새로 제수된 도승지 **서경우(徐景雨)**와 혼인한 집안으로 상피 관계에 있으므로 해조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0일(신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서경우(徐景雨)**를 도승지로, 윤휘(尹暉)와 이명한(李明漢)을 동지의금부사로, 심연(沈演)을 대사간으로, 이식(李湜)을 성균관 박사로, 유경창(柳慶昌)을 사서로, 김시번(金始蕃)을 부수찬으로, 목성선(睦性善)을 예조 참의로, 성진한(成振翰)을 양현고 직장으로, 김상(金尙)을 승지로 삼았다. - 이하 원문 빠짐 -

-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4일(을축) 맑음 / 도승지 서경우 등이 사은하였다

도승지 **서경우**와 대사간 심연(沈演)이 사은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 12월 25일(병인) 맑음 / 정사에서 수령을 의망한 이유를 보고하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수령의 망(望) 가운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어찌 한 사람도 의망되지 않았는지 물어서 아뢰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비에 물어보니, 회령 부사(會寧府使)는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양(河陽), 곡성(谷城), 웅천(熊川)의 경우는 감찰과 의금부 도사 가운데 사일(仕日)이 차서 천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의(備擬)하였으며, 회양(淮陽)의 경우는 일찍이 시종신을 지냈던 사람과 잘 다스렸던 자로 의망하였으며, 명천(明川)의 경우는 모두 호종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과 도사들을 굳이 전부 수령으로 제수할 필요가 없다. 이후로는 공이 있는 사람을 가려 의망하라."
하였다.

여 백

인조 20년 임오
(1642, 숭정15)

여 백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8일(무인) 맑음 / 체후의 조섭 등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약방 제조 이명(李溟)과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춘설이 또 내려 날이 몹시 차가운데 성상께서는 체후(體候)의 조섭이 어떠하십니까? 일전에 지어 들인 중만분소환(中滿分消丸)은 아직 다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들이 지극히 구구한 염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환약을 다 복용하였는데 현재 뚜렷한 효험은 없다."
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0일(경진) 맑음 / 연안 부사 유전에게 베푼 은전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도승지 서경우의 계

도승지 서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황해도 암행 어사의 서계를 보니, '연안 부사(延安府使) 유전(柳篆)은 평범하게 정사를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 접대한 물품이 지나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평범하게 하여 해를 끼친 일은 없다.' '지나칠 정도는 아니었다.' 등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비록 폄하할 만한 정상은 없으나 사실 포상받을 만한 특이한 정사도 아닌데 특별히 표리(表裏)를 하사

받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속으로 지나치다고 여겼지만 감히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논의를 들어 보니, 대부분 분에 넘쳤다고 하고 어사 역시 포상까지 한 일은 사실 과분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이 시상하는 일은 찌푸리거나 웃는 것도 오히려 아껴야 하거늘 더구나 시상해서는 안 되는데 시상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유전에게 베푼 은전을 환수해야 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3일(계미) 눈 / 체후의 조섭 등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약방 제조 이명(李溟)과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근래 봄추위가 더욱 매서운 데다 눈발마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성상께서는 체후의 조섭이 어떠하십니까? 지난번 지어 들인 중만분소환(中滿分消丸)은 드셨습니까? 신들이 지극히 구구한 염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과 마찬가지다. 환약은 어제부터 먹었다."
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월 18일(무자) 맑음 / 성체의 조섭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제조 이명 등의 계

약방 제조 이명(李溟)과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근래 봄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성체(聖體)의 조섭은 어떠하십니까? 신들이 지극한 염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과 다름없다고 답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7일(병자) 맑음 / 예문관 봉교 홍처대에 대한 추고를 속히 처치할 것을 청하는 도승지 서경우의 계

도승지 **서경우**가 아뢰기를,

"예문관 관원은 봉교 홍처대(洪處大)뿐인데, 추고를 당해 나간 뒤로 겸춘추를 입직하게 한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본관의 하번(下番)은 직임이 매우 중대하여 잠시도 비워 둘 수 없는데, 홍처대는 추고가 종결되기 쉽지 않고 겸관이 대신 입직하는 것은 몹시 온당치 못한 일이니,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3일(임오) 맑음 / 기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제조 이명(李溟),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늦봄이 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여전히 에는 듯합니다. 성상의 기후는 근래에 또 어떠하십니까? 몹시 우려스러워서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
하니,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답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6일(을유) 맑음 / 전한 조경이 사은하였다

전한(典翰) [1] **조경(趙絅)**이 사은하였다.

- 《경연일기》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19일(무자) 맑음 / 기후에 대해 묻고 중만분소환을 더 지어 들일 것인지를 묻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제조 이명(李溟),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요사이 성상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전날 지어 들인 중만분소환(中滿分消丸)은 날마다 드시면 오는 22일에 다 드실 것인데, 과연 계속해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어 들여야 할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1) 전한(典翰) : 조선시대 궁중의 경적(經籍) 관리, 문한(文翰) 처리,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홍문관(弘文館)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증후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 환약은 오는 25, 6일이면 다 먹게 될 것이다."
하였다.

- 《약방등록》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25일(갑오) 맑음 / 기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제조 이명(李溟),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세찬 비가 막 지난 뒤로 추운 날이 많고 따뜻한 날이 적으니, 며칠 동안 성상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신들은 우려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한결같다고 답하였다.

- 《약방등록》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3월 30일(기해) 맑음 / 능원대군과 인평대군을 능성부원군 구굉과 함께 인견하였다

능원대군(綾原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을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과 함께 인견하였다.

- 이상은 내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4월 16일(을묘) 비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홍명일(洪命一)을 홍문관 응교로, 이빈(李彬)을 병조 정랑으로, 변사기(邊士紀)를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임항수(林恒壽)를 자산 군수(慈山郡守)로, 최몽욱(崔夢旭)을 성균관 전적으로, 유준창(柳俊昌)을 병조 정랑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예조 정랑으로, **양만고(楊萬古)**를 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2]로, ……
삼았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4월 19일(무오) 맑음 / 봉림대군방의 왕손이 죽었으므로 기후의 조섭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삼가 들으니 봉림대군방(鳳林大君房)의 왕손(王孫)은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상께서 기후를 조섭하시는 중인데 이런 놀랍고 슬픈 일을 당하시니, 필시 더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신들이 지극히 구구한 염려를 이기지 못하여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과 같다고 답하였다.

2) 통례원우통례(通禮院右通禮) : 조선시대 의례(儀禮)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에 두었던 정3품직.

- 《약방등록》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9일(정축) 맑음 / 체후의 차도에 대해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부제조 서경우가 아뢰기를,

"근일 이후로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하지만 낮에는 제법 따뜻합니다. 성상의 체후는 아직도 차도가 없으십니까? 신들이 구구히 우려되어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과 다름이 없다고 답하였다.

- 《약방등록》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0일(무자) 맑음 / 진하사 인평대군이 심양에 들어갔다

진하사(陳賀使)[3]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2일(경인) 맑음 / 인평대군이 진하 상사로 심양에 들어갔다

3) 진하사(陳賀使) : 조선 시대 중국에 보낸 임시 사신의 하나. 중국 황실에 경사가 났을 때 파견된 축하 사신으로 주로 새 황제의 등극, 존호(尊號), 존시(尊謚), 황태자, 황후 등의 책립을 비롯하여 외적의 토평(討平) 등을 축하하기 위해 보냈음.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진하 상사(陳賀上使)로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 내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5월 23일(신묘) 맑음 / 인평대군이 먼 길을 떠나 회포가 화평하지 못해서 조섭 중인 옥체가 손상될까 문안하는 약방 도제조 이성구 등의 계

약방 도제조 이성구(李聖求), 동부승지 이유성이 아뢰기를,

"한 번 비가 온 뒤로 연일 날씨가 음산한데 **인평대군(麟坪大君)**이 또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러한 때에 성상의 회포가 화평하지 못해서 조섭 중이신 옥체가 손상될까 구구히 염려되어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답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3일(신축) 비 / 폐모론에 대한 의견을 가장 먼저 낸 성주 목사 조정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난 혼조(昏朝) 계축년(1613, 광해군5) 연간에 조정에 간흉들이 그득하여 모후(母后 인목왕후(仁穆王后))의 폐위를 도모하였습니다. 7세의 대군

(大君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화근(禍根)이라고 하면서 자전(慈殿)의 품에서 빼앗아서 강도(江都)로 내보냈다가 또다시 죄를 가하자는 논의를 꺼냈으니, 이것이 폐모론(廢母論)의 근거였습니다. 상신(相臣) **이덕형(李德馨)**과 **이항복(李恒福)**이 충분(忠憤)의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전은(全恩)을 청하는 차자를 계속하여 올리자 지금의 성주 목사(星州牧使) 조정립(曺挺立)이 당시에 대간으로서 가장 먼저 흉악한 의견을 내어 두 신하를 유배하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흉악한 심사와 패륜한 논의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정(反正) 초기에 처형을 면하고 유배에 그치니, 식자들은 너무 가벼운 형률을 오히려 분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상께서 포용하시고서 특별히 죄를 씻어 주는 은전을 베풀어 용서해 주는 은택을 받았으니 다시 향리로 돌아가 집에서 늙어 죽어도 충분한데, 다시 사판(仕版)에 들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큰 고을의 수령에 발탁하여 제수하고서 또다시 유장(儒將)[4]에 추천되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공론(公論)에서 죄를 얻고도 도리어 발탁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사(時事)가 위태롭고 기강이 날로 허물어지는 와중에 한 가닥의 공론마저도 여기에서 없어진다면 장차 어떻게 나라의 맥을 유지하고 선비들의 기풍을 유지시키겠습니까? 성주 목사 조정립을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조정립은 이미 중벌을 받았으니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김형의 일은 사실인 듯하니 더욱 상세하게 살피고 이척연과 김광립 등은 추고하라."

---

4) 유장(儒將) : 유사시의 상황에 쓰기 위하여 문신(文臣)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장수의 명칭을 주는 제도이다. 유장을 선발한 사례는 성종조 이후의 실록(實錄)에 나타난다.

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승정15) / 6월 4일(임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 중관 나업이 서목에서 5월 30일 인평대군 행차가 평양에 이르렀는데 하루 머물렀다가 출발하겠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중관(中官) 나업(羅業)이 올린 서목은 "**인평대군(麟坪大君)**의 행차가 5월 30일에 평양에 이르렀는데, 기체(氣體)에 매우 피곤한 증후가 있으므로 하루 머물렀다가 출발하여 전진하겠습니다."라고 한 일이었다.

인조 20년 임오(1642, 승정15) / 6월 4일(임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 인원이 부족하므로 호군 이경여 등을 제조로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승문원 도제조의 계

승문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의 제조가 단지 3원뿐이니 평시에 문서를 검토 대조하는 일과 앞으로 있을 포폄(褒貶)과 고강(考講)의 성적을 매길 때에 장차 모양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호군 **이경여(李敬輿)**, 좌윤 김시국(金蓍國), 동지 허계(許啓)를 제조로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6일(갑진) 맑음 / 천거된 유장을 정밀하게 가려 써야 한다고 말한 일로 상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이후산의 계

지평 이후산(李後山)이 아뢰기를,

"신을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대간의 반열에 발탁해서 두었으니, 임금의 덕에 잘못이 있으면 한결같이 그때마다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어찌 묘당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여 꺼려서 논열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천거된 유장의 수가 매우 많은데 적합한 사람이 한두 명 그 사이에 들어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상의 일가(一家) 사람이 아니면 아마 틀림없이 서로 절친한 사람 중에서 추천해서 취했을 것이고 기량이 있다는 사람도 장수의 망에 모두 부합되지는 않으니 여론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대부로서 풍모에서 약간이라도 기량(器量)이 있는 듯하면 이 이야기를 서로 전하면서 우스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번 장수의 망에 들지 못하겠는가.' 하니, 이 일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유장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억지로 명칭을 만들어서 조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시무(時務)를 아는 것은 준걸(俊傑)의 몫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이 모두 시무를 아는 자라면 상신(相臣)이 계사에서 '대간의 탄핵은 지나치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래 공심(公心)이 사심(私心)을 이기지 못하여 크고 작은 관직에 사람을 쓸 때 인망(人望)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므로 유장의 추천에 대해 나라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떠들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벼슬에 막 나온 사람으로서 마침 언관의 지위에 있는데 정밀하게 가려 써야 한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신이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지휘(指揮)한다.'라는 등

의 말로 준엄하게 비난할 줄은 실로 예상하지 못했으니, 신이 망녕되이 말한 잘못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7일(을사) 맑음 / 인혐하고 물러난 지평 심세탁 등을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심세탁(沈世鐸), 집의 홍명일(洪命一), 장령 김원립(金元立), 지평 **이후산(李後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유장(儒將)으로 추천된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중에 문무의 재망(才望)이 간혹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변방에만 조용(調用)한다면 진실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라는 명칭으로 갑자기 초탁(超擢)하여 위급에 대비하기에는 그들의 재능이 미치지 못할 듯하여 오래도록 물의가 분분합니다. 정밀하게 가리기를 청한 것은 그들 중에서 다시 선택하여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어서 여망(輿望)을 흡족하게 하려는 것뿐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사체로 헤아려 보면 실로 묘당을 지휘한 혐의는 없으니 지평 심세탁, 집의 홍명일, 장령 김원립, 지평 **이후산**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승지의 직책은 실로 출납을 맡는 중임이라서 아무나 함부로 자리를 차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해조에서 신중하게 가리지 않는 일이 많아서 주의(注擬)할 때에 재망과 이력은 논하지 않고 좌목(座目)에만 의거하여 전례대로 망(望)을 갖추는데, 정사의 체모로 헤아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부승지 안헌징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천총 민응건은 당상 무신으로서 그제 대낮에 대로에서 술기운에 적동(笛童)과 함께 여러 번 말을 타고서 피리를 불면서 지나다녀 보는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도 그 죄를 알고 탄핵받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대관(臺官)의 집으로 달려가서 선처를 부탁하였으니, 그의 분수를 모르는 태도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응건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안헌징은 특별히 그 직임에 부적합한 것이 없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 집의 이하는 모두 직임에 나오게 하라."
하였다.

-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0일(무신) 비 / 유장 추천에 대해 함부로 논계한 일로 상신의 발론을 받았으므로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지평 이후산의 계

지평 이후산(李後山)이 아뢰기를,

"미천한 신이 외람되이 언관의 자리에 처음 들어와 기휘(忌諱)해야 할 일도 피하지 않고 함부로 논계했던 것은 대신이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합당한 조처를 취해 주기를 바란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 좌의정이 차자에

서 진술한 내용을 보니 불만스러운 말투였는데, 신이 함부로 발언한 죄를 면하기 어려움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장(儒將)으로 뽑힌 사람의 태반은 시종신(侍從臣)이며 모두 관직에 써 본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그 직임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상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므로 지금 다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묘당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가리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것은 다만 그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략 가려 뽑자는 것뿐이니, 어찌 지휘의 뜻이 있어서 묘당의 체면을 손상시키겠습니까. 묘당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대각의 신하도 일반 관원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임금의 존엄함으로도 오히려 너그럽게 용납하여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하므로, 이미 내려진 임금의 명에 대해서도 논열하여 다시 거둬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유장에 대한 논계에서 체면을 대단하게 손상시킨 점이 무엇이 있기에 상신(相臣)이 계사와 차자로 계속하여 발론하기를 논쟁하듯이 합니까. 신의 어리석고 망녕된 처사 때문에 전에 없는 일을 초래하였으니 대각의 체면이 실로 신 때문에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묘당에 관련된 일이면 이보다 중대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앞으로는 반드시 침묵하면서 다 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신의 죄가 여기에서 더욱 큽니다.

또 성상소에 유고(有故)가 있으면 신이 차관(次官)으로서 연계(連啓)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일 전부터 서풍(暑風)[5]을 심하게 앓아 구토와 설사 증세가 심해서 재차 사직 단자를 올렸지만 정원에서 물리쳤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피혐합니다. 궐계한 실수가 실로 신에게 해당되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동료를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

5) 서풍(暑風) : 열이 성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경련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1일(기유) 비 / 인혐하고 물러난 지평 심세탁을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심세탁(沈世鐸)과 **이후산(李後山)**, 장령 김원립(金元立), 집의 홍명일(洪命一)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고, 이미 궐계(闕啓)하였으니 재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논의의 시비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아뢰었기에 지금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궐계한 실수의 경우에 성상소(城上所)는 애당초 일을 같이 하였으므로 관련된 동료를 처치하기는 사세상 곤란하니, 어찌 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지평 심세탁을 체차하고 지평 **이후산**과 장령 김원립, 집의 홍명일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1일(기유) 비 / 이조가 승문원 제조의 삼망에 이경여 등을 천망하였다

이조가 천망(薦望)한 승문원[6] 제조(承文院提調)의 삼망은 **이경여(李敬**

6) 승문원(承文院) :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아울러 이문(吏文)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興), 김시국(金蓍國), 허계(許啓)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6월 12일(경술) 맑음 / 지평 이후산이 사직하였다

지평 이후산(李後山)이 사직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18일(병술) 맑음 / 충청 감사가 서목에서 대사헌 이경여가 병세가 위중하여 올라가지 못하므로 상소를 올려 보낸다는 일을 보고하였다

충청 감사의 서목은, 부여(扶餘)에서 "대사헌 이경여(李敬輿)가 병이 중하여 올라가지 못하므로 상소를 올려 보냅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이었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19일(정해) 맑음 / 대사헌 이경여의 상소에 대해, 본직만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대사헌 이경여(李敬輿)의 상소에 본직만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7월 25일(계사) 비 / 정

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김취장(金就章)을 겸춘추로, 이여택(李汝澤)을 예조 좌랑으로, 권임중(權任中)을 군기시 정으로, 윤순지(尹順之)를 병조 참지로, 김진(金振)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득가(李得可)를 통정대부로 삼았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5일(임자) 맑음 / 대사헌 서경우가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세 번째 정사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체차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8일(을묘) 비 / 인평대군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8월 18일(을묘) 비 / 인평대군 등이 들어왔다

인평대군, 호군(護軍) 변삼근(卞三近), 사과(司果) 홍처량(洪處亮)이 들어왔다.

-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9월 20일(정해)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
이후산(李後山)을 사간원 정언[7]으로, ……
삼았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9월 24일(신묘)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이경여(李敬輿)**를 예조 판서로, 조전소(趙全素)를 사헌부 지평으로, 최무(崔茂)를 사복시 주부로 삼았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0월 10일(정미) 맑음 / 인흥군의 전답에 대한 한성부의 계목에 대해, 계축년에 측량한 양안 등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비답

한성부가 올린 원래의 문건을 첨부한 계목은 **인흥군(仁興君 이영(李**

7)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 正三品 堂上), 사간(司諫: 從三品), 헌납(獻納: 正五品) 각 1원씩 있다.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瑛))의 전답에 관한 일이었는데, 답하기를,

"계축년(1613, 광해군5) 연간에 균전사(均田使)[8]가 측량한 양안(量案)[9]과 저수지를 만든 궁가(宮家)의 수도 자세히 조사하며, 칼로 베어 낸 연유는 그 당시의 관리들을 모두 추문(推問)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 이상은 내하 일기초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1월 8일(갑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
이후산(李後山)을 병조 정랑으로, 최후헌(崔後憲)을 칠곡 부사(漆谷府使)로, 이경선(李景善)을 신녕 현감(新寧縣監)으로 삼았다.

- 정목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1월 19일(을유) 맑음 /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정인경(鄭麟卿)을 결성 현감(結城縣監)으로, 윤대

8) 균전사(均田使) :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공평히 할 목적으로 백성의 실정을 살피고 토지의 등급을 다시 사정(査定)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던 관료.
9) 양안(量案) :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형(尹大亨)을 강음 현감(江陰縣監)으로, 강유(姜瑜)를 병조 정랑으로, **이경여(李敬輿)**를 예조 판서로, ……
권칙(權伋)을 **영평 현령(永平縣令)**으로, 정창주(鄭昌胄)를 호조 정랑으로, 이정영(李正英)을 병조 좌랑으로, 신익량(申翊亮)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 정목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12일(무신) 맑음 / 정사를 하였다

정사를 하였다. 이비가 ……
이경여(李敬輿)를 겸 동지경연사(兼同知經筵事)로, 이시척(李時陟)을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로, 신유(申濡)를 사간원 헌납으로, 이기발(李起浡)을 예조 정랑으로, 성하명(成夏明)을 사헌부 장령으로, **양만고(楊萬古)**를 성균관 사예로, 이영발(李英發)을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이경여(李敬輿)**를 겸 동지춘추관사(兼同知春秋館事)로, ……
삼았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23일(기미) 맑음 / 정사를 하였다

정사를 하였다. 이비가 ……
이경여(李敬輿)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김진(金振)을 사간원 헌납으로 삼았다.

- 정목에 의거함 -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윤11월 26일(임술) 맑음 / 참찬 이경여의 차자에 대해, 사양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참찬 **이경여(李敬輿)**가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았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인조 20년 임오(1642, 숭정15) / 12월 6일(신미) 맑음 / 허사 첨사 최승렬 등이 사은하였다

허사 첨사(許沙僉使) 최승렬(崔承烈), 병조 좌랑 임중(任重), 우참찬 **이경여(李敬輿)**가 사은하였다.

여 백

참 고 사 항

인조 15년에서 20년간에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우리 고장과 관련 있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등장일자순)

○ 이경여(李敬輿) : 감사 11페이지에 달하는 인견담을 진술, 사간, 사직소를 수차 올렸으나 불허하였다.

○ 인평대군(麟坪大君) : 특남, 칙사 인견 3회, 병고 3회 기사 내용으로 등재되었다.

○ 이기남(李箕男) : 기사에 인용 8회 등재되었다.

○ 조경(趙絅) : 누구나 아는 대로 청백리 조경이기에 환로가 활짝 열리지 못하고 조정에 든 것은 고작 몇 년에 걸치고 변방 외직으로 돌았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터이다. 인조 15년 부호군으로 등장하여 부호군 인견하여 장황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직소를 수없이 올렸어도 윤허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은 공의 강직함과 충성심을 임금은 알고 있으나 주변의 시기, 질투에 의해 모함이 컸던 것으로 유추된다. 부호군, 사간을 역임하였다. 167회에 걸쳐 등장한다.

○ 한인급(韓仁及) : 소를 올림, 겸 지의금부사를 역임했다.

○ 서원리(徐元履) : 부사, 대호군 부사, 대군사를 역임하였으며, 8회 등장하였다.

○ 서경우(徐景雨) : 인조 15년 비변사로 환로에 들어 호조, 병조, 이조에 등용되고 예조참판, 사직소, 대사성, 대사헌, 대사간 등에 재임하면서 임금께 옳은 일은 옳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직간이 많았으며 사직소도 수없이 올린 인물로 263회에 걸쳐 기록에 등장한다.

○ 양만고(楊萬古) : 가납받지 못하는 상소 수차, 군자감 정, 통례원 우통례, 사복시 정, 영해부사를 역임하였다.

○ 백대진(白大璡) : 선공감 주부, 도총부 도사를 역임하였다.

○ 이후산(李後山) : 지평, 병조좌랑, 사간원을 역임하였다.

이하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인흥군(仁興君), 포천(抱川), 포천현감(抱川縣監), 영평(永平), 이성남(李星男), 이시술(李時術), 송시철(宋時喆) 등이 대화를 비롯한 인견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인용되어 이름이 등재되어 나타난다.

抱川鄕土史料叢覽 -承政院日記編- (仁祖 15~20年)

2013년 12월 30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편 집 인 :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이 석 구

발 행 처 : 포 천 문 화 원 사 무 국

감 수 : 대진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박 경 자

제 자 : 백 림 이 병 찬

우 487-803
포천문화원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92
T E L : (031) 532-5015
F A X : (031) 536-1020
E-mail : pc5015@naver.com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인 쇄 : 스피드디지털인쇄(☎ 531-1777)

(비매품)

※ 이 책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도서 전재 허가를 받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포천시의 지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